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

2024.1

A Financial Platform adding Value through Innovation

일러두기

본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상장규정 등과 이의 적용을 위한 그 간의 업무처리 관행에 근거하여 작성된 실무 해설서입니다.

본서에 게재된 내용은 법규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공시업무 수행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법규개정 여부 등을 확인 후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해설서의 내용이 관련 규정업무처리 관행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 등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의무로서, 공시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거래소의 공시문안 검토는 상장법인이 스스로 그 공시문안을 정정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가 되었다거나 거래소가 공시문안을 검토하였다고 하여 해당 공시정보의 진실성을 거래소가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은 종전의 편제를 유지하면서 전년도판 발간 이후 상장규정 및 공시관련 법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본 해설서가 공시정보를 작성·이용하는 공시실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의미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 제1장

공시업무	I. 공시제도의 개요	010
	II. 수시공시	018
	III. 공정공시	129
	IV. 자율공시	146
	V. 조회공시	151
	VI. 자율적 해명공시	162
	VII. 시장신고사항	165
	VIII. 공시유보	168

● 제2장

상장업무	I. 우회상장	178
	II. 추가·변경상장	193
	III. 의무보유	200

● 제3장

상장관리업무	I. 불성실공시	210
	II. 매매거래정지	234
	III. 투자주의 환기종목	239
	IV. 관리종목	245
	V. 형식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	258
	VI.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268
	VII. 업종심사 및 소속부 심사	282
	VIII. 공시교육 및 기업설명회(IR)	289
	IX. 공시우수법인 등 시상 및 혜택	291

● 제4장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I. 공시제도	296
	II. SPAC의 합병 및 상장관리	312

● 제5장

상장외국법인	I. 공시제도	326
	II. 상장외국법인 유의사항	327

부록	시장조치를 수반하는 공시목록	342
	주요 시장조치 재무제표 적용기준	347
	전자공시 실무	349

공시서식 작성실무안내	355
-------------	-----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요경영사항 공시 ■

공시의무사항	관련근거	page
일반회사 수시공시	공시규정 제6조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①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정지처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가목]	25
②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나목]	26
③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 체결·해지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26
④ 제품의 수거·파기 결정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라목]	28
⑤ 생산활동의 중단·폐업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마목]	28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증권에 관한 사항]		
① 유·무상증자·자본감소(감자)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	29
② 주식소각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2)]	33
③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3)]	34
④ 주식 분할·병합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4)]	37
⑤ 액면·무액면주식 전환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5)]	38
⑥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6)]	39
⑦ 해외증권시장 관련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9)]	42
⑧ 상장폐지 결정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0)]	43
⑨ 어음 위·변조사실 확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1)]	43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		
⑩ 신규시설투자·시설외 투자·시설증설·별도공장 신설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4)]	44
⑪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5)]	45
⑫ 타법인주식 또는 출자증권 취득·처분 /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처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6)]	46
⑬ 출자 비상장법인의 부도·회생절차·해산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7)]	49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⑭ 단기차입금 증가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1)]	50
⑮ 채무면제·인수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3)]	51
⑯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4)]	52
⑰ 금전의 가지급·대여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5)]	53
⑱ 사채의 원리금 미지급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6)]	54
⑲ 대출원리금 연체 발생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7)]	55
[손익에 관한 사항]		
⑳ 재해발생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1)]	56
㉑ 벌금·과징금 등 부과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4)]	57
㉒ 횡령·배임사고 발생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6)]	58
㉓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실발생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7)]	59



공시의무사항	관련근거	page
24 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8)]	60
25 가장납입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9)]	61
[결산에 관한 사항]		
26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1)]	63
27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정적 등 사실확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2)]	65
28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등 사실발생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2)]	66
29 손익구조변경 또는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3)]	67
30 주식배당 결정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4)]	69
31 현금·현물배당 결정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5)]	70
32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6)]	72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	73
2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6)]	75
3 상법상 주식교환·주식이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7)]	76
4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분할합병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8)]	77
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9)]	79
[상장법인 존립에 관한 사항]		
6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금지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1)]	81
7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2)]	83
8 해산사유 발생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3)]	84
9 은행·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4)]	86
10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5)]	87
[소송 등의 제기·신청 또는 판결·결정 관련 사항]		
11 상장증권 등에 관한 소송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다목(1)]	88
12 청구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소송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다목(2)]	88
13 경영권분쟁 등 관련 소송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다목(4)]	90
1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다목(5)]	90
[주주총회 관한 사항]		
15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주주총회결과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라목]	92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		94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		96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주의 공시		97

제1장 공시업무



- Ⅰ. 공시제도의 개요
- Ⅱ. 수시공시
- Ⅲ. 공정공시
- Ⅳ. 자율공시
- Ⅴ. 조회공시
- Ⅵ. 자율적 해명공시
- Ⅶ. 시장신고사항
- Ⅷ. 공시유보

I 공시제도의 개요

1. 기업공시의 의의

기업공시(Corporate Disclosure)는 상장법인이 경영과 관련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을 관계 법령과 거래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위이다.

2. 기업공시의 기능

기업공시는 “정보형평을 통한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과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까지 수행한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시장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적시공시(Timely Disclosure)와 정확한 공시(Accurate Disclosure)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기업공시의 원칙

1 공시의 신속성

기업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정보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신속하게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공시된 이후에 해당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판단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이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함에 있어 신속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증권시장에 풍문 등이 발생하여 주가가 왜곡되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로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기업은 공시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필요한 내부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2 공시내용의 정확성

기업이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의 주체, 거래 상대방, 향후 진행계획, 투자 위험요소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시정보가 허위이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정보 이용에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인 다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공시내용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3 이해의 용이성

공시정보는 투자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단순하고 간결·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증권시장에는 전문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공시정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쉽고 단순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전달의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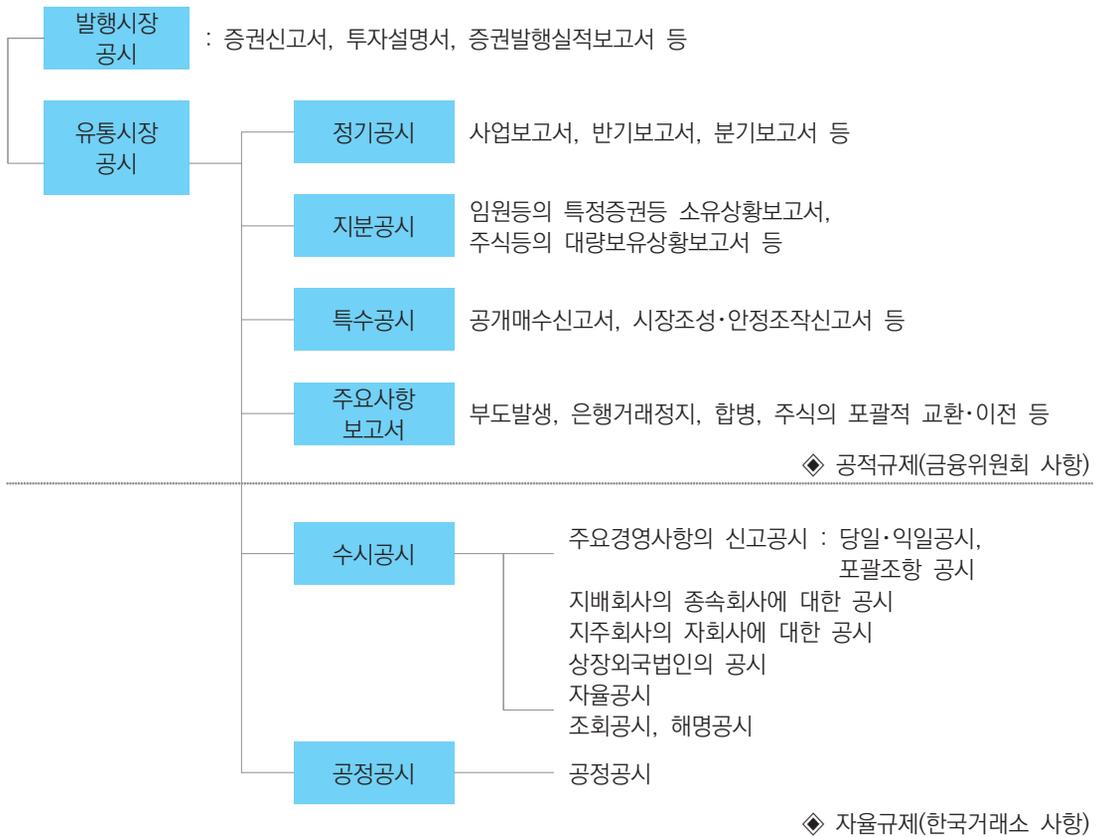
기업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적절한 정보전달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공시시점에 모든 투자자가 공평하게 기업정보를 획득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기업이 제출한 모든 공시정보를 공시매체(전자공시시스템, 증권정보단말기, 증권시장지 등)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HTS 및 각종 정보벤더에 해당 공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전달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도입·정착된 전자공시제도(거래소 KIND, 금융감독원 DART)를 통하여 투자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공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전달의 공정성은 크게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기업공시제도의 법적 근거 및 유형

1 법적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159~161조, 제39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의무 법적 근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공시의무사항에 관한 거래소 공시규정 마련·운영의 근거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시장 중심의 공시내용을 규정 유통시장 공시내용도 포함
공시규정(한국거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의무 규정

2 공시분류





5. 상장법인의 성실공시의무

(1) 공시의무의 성신행행 책임

상장법인은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 또는 번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정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 동 내용이 코스닥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인이 그 책임을 진다.

(2) 내부정보의 관리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과 기타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코스닥협회가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및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3) 공시책임자·담당자 지정제도

■ 공시책임자·담당자 지정

상장법인이 공시한 내용의 법률적 효과는 해당 법인에 귀속되므로 공시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코스닥기업(대표이사)이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공시업무 수행을 위해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상근이사(등기 및 비등기)로서 코스닥기업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서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상근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로 지정해야 한다. 한편, 최근 3년 이내 횡령·배임혐의로 공시되거나, 동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공시책임자가 될 수 없다.

공시담당자는 대리 이상의 해당 업무 담당직원으로 지정한다.

■ 공시책임자·담당자의 책임성 강화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공시체계 구축을 위해 공시책임자·담당자가 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이거나 공시교육 미이수자인 경우 거래소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우선,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담당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고의, 중대한 위반 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교체요구 대상이다. 또한, 과거 2년 이내에 공시의무교육을 미이수한 공시책임자·담당자도 교체요구 대상이다.

상장법인이 거래소의 교체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불성실공시 관련은 3점 이내, 공시의무교육 관련은 2점 이내에서 별점을 부과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상장관리업무, 불성실공시제도 참조)

■ 공시책임자·담당자 의무교육 이수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는 공시의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초 신고되는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는 6개월 이내에 거래소 또는 코스닥협회가 개설하는 공시 전문가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공시 전문가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별도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공시 전문가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상장법인 교육 의무 현황

이수의무 교육	교육대상자	이수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소 또는 코스닥협회가 개설하는 공시 전문가과정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등	연 단위 1회 이상 - 다만, 공시책임자·담당자·대리인 최초신고(변경신고 포함)의 경우 신고일(신규상장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소 또는 코스닥협회가 개설하는 공시 관련 법규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 제36조에 의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거래소가 인정하는 교육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변경(신규 포함)시 신고서류**

상장법인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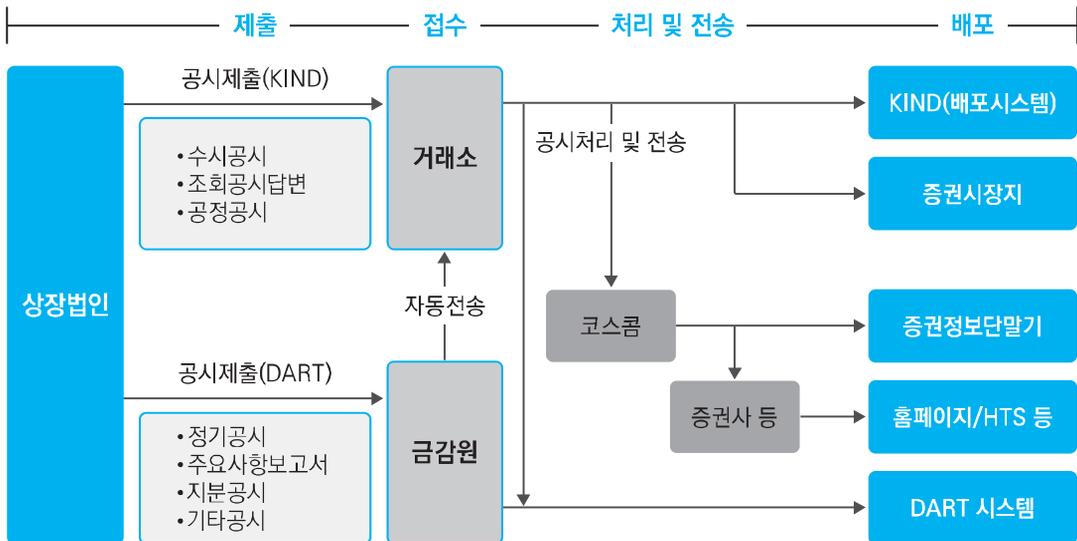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신규·변경) 신고서 [공시규정 세칙 공시서식 5]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임원인 공시책임자에 한해 제출)
- 공시책임자 직무수행 승낙 확인서 [공시규정 세칙 공시서식 6]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공시책임자에 대한 공시권한 위임장
(공시책임자가 미등기임원인 경우에 한해 제출) [공시규정 세칙 공시서식 10]
- 재직증명서(공시담당자 및 등기임원이 아닌 공시책임자에 한해 제출)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거주 주소는 삭제 후 제출
 - ※ 공시서식양식 : law.krx.co.kr → KRX 법규 → 코스닥시장 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내용 밑에 각 서식이 나열되어 있음)

6. 공시처리 체계 및 방법

(1) 기업공시의 일반적 체계

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DART)과 거래소(KIND)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다.

■ **기업공시의 일반적 체계** ■



(2) 수시공시 일원화에 따른 전자공시 제출방법

합병 및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 등의 주요사항보고와 거래소 수시공시는 서식 및 제출처를 금융감독원의 DART로 단일화하여, 한 번의 제출로 주요사항보고 및 거래소 수시공시를 이행(공시사항은 당일 또는 익일 공시사항이며, 거래소 승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상장법인이 DART를 통해 접수한 문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거래소의 KIND로 즉시 전송된다.

※ KIND 및 DART 공시서식 비교는 참고자료의 “공시 FAQ” 참조

■ 제출기관·시스템 및 처리절차 ■

구 분	제출기관	제출시스템	승인여부
①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항목을 제외한 모든 수시공시)	한국거래소	KIND	○
② 수시공시 - 주요사항보고서 공통항목 감자결정,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자기주식 처분 결정, 채권은행등의 관리절차 중단,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 사유 발생, 자기주식취득 결정,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사유발생, 교환사채권발행결정, 무상증자결정, 부도발생, 소송등의 제기,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결정, 영업정지, 외국법인등의 외국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해제, 외국법인등의 외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영업양도 결정, 영업양수 결정, 외국법인등의 외국법령 등 변경,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에서의 공개매수,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에서의 안정 조작 등, 외국법인등의 해외법규위반으로 인한 조치, 은행거래정지·금지,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유·무상 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형자산 양도결정, 해산사유발생, 유형자산 양수결정, 해외증권시장주권등 매매거래정지등 조치, 해외증권시장 주권등 상장, 해외증권시장 주권등 상장결정, 해외증권시장 주권등 상장 폐지, 해외증권시장 주권등 상장폐지결정, 회생절차 개시신청, 주권 관련 사채권 양도 결정,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주식교환·이전 결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 결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회사분할 결정, 회사분할합병 결정, 회사합병 결정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DART (KIND로 전송)	○ (당일공시)
③ 지분공시(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 상황보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DART	×
④ 정기공시(사업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등)			

* 밑줄친 항목은 익일공시 사항

** 법인별·서식별로 상이할 수 있음



7. 사전확인 면제법인(공시규정 제5조제4항, 동 세칙 제4조의2)

(1) 의의

상장법인의 공시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시정보의 적시성을 위하여 공시 우수법인을 대상으로 수시공시 및 신고사항을 거래소의 확인 없이 바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20.9.7일부터 사전확인 면제법인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2) 면제 법인 지정 및 해제요건

■ 지정 및 해제

● 신규지정(정기)

- (지정요건) 상장기간(상장 후 3년 경과),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해제 후 3년 경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후 3년 경과)을 고려하여 면제법인 선정*

* 상장외국법인 및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

- (지정시기) 정기심사를 통해 매년 7월 최초 매매거래일에 신규 지정

● 지정해제(수시)

- 불성실공시법인·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시 지정일부부터 제외

■ 면제 범위

- 모든 수시공시 항목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조치 수반 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시사항*은 제외한다.

* 매매거래정지, 관리·상장폐지사유, 우회상장심사 관련 공시 등

■ 사전확인 면제법인 사후 관리(공시정정 요구 등)

- 기 공시된 확인절차면제 공시내용 중 오류, 누락사항 등 발견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요구* 불이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 정정요구 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공시

II 수시공시

1. 개요

(1) 수시공시(주요사항공시) 제도의 의의

자본시장법에서는 유통시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 발생시마다 즉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은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공시시한(당일 또는 익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결정이란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의미한다.

*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하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여부를 부기하여야 함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공시사항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투자판단혼란 야기 여부, 근거 서류 첨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공시매체를 통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시한다. 다만, 이러한 사전절차가 면제되는 상장법인의 공시는 신고와 동시에 공시매체를 통해 공시한다.

(2) 재무항목 적용기준

비율기준 공시항목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재무항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함)으로 한다.

자기자본은 결산 이후 변동분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본다.

*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합병(간이합병/소규모합병 포함), 분할·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효력발생 일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금액으로 하고, 증자·감자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반영)

다만, 횡령·배임, 매출채권 이외의 손상차손,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 의무사항은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상장법인도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과 연계된 공시는 상장규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참고 **상장규정과 연계된 공시**

- ① 결산시점 관리종목/상장폐지/실질심사 우려(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3)(나), (다))
- ②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서식(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1)(나), (다), 공시규정제37조제2항제4호)
- ③ 반기검토보고서 공시대상(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2)(나))

한편,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동 또는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공시(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3))에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이사회결의, 기타 결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공시규정 제3조제2항).

재무정보 등의 적용기간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공시규정 제3조제4항).

※ 단, 상장외국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

■ 적용 사례(12월 결산법인) ■

2024 회 계 기 간			
'24.01.01		'24.12.31	
	'24.03.31	'24.04.01	'25.03.31
'22년 감사보고서 적용		'23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정보 적용기간	

(3) 수시공시 시한

1 공시시한

공시구분		공시 시한
수시공시(당일)	사유발생 당일 18:00까지(익일 07:50까지)	
수시공시(익일)	사유발생 익일 18:00까지**(매매거래일 기준)	
조회공시	풍문·보도	오전 공시요구사항 : 당일 18:00까지 오후 공시요구사항 : 익일 12:00까지 (단, 매매거래정지 사항은 익일 18:00까지)
	시황급변	익일 18:00까지
공정공시	해당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기 이전까지	

* 해당 신고사항이 시한종료일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상장법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익일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 까지 제출 가능

** 익일 공시사항은 당일 공시사항처럼 익일 07:50까지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시간 : 거래소 공시제출(filing)시스템(07:30~18:00)

금융감독원 DART(07:30~18:00, 우편함 18:00~19:00*)

* 18:00~19:00 접수된 공시는 익일 07:30에 배포됨

2 증권시장 운영시간

구분	매매시간
거래소시장 운영시간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 08:00 ~ 09:00(08:00부터 호가접수)
	정규매매 : 09:00 ~ 15:30(08:30부터 호가접수)
	장종료후 시간외매매 : 15:40 ~ 18:00(15:30부터 호가접수)

3 공시와 관련된 기간 계산법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매매거래일에 의해 계산한다.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한 때에는 역(歷)에 의해 계산한다. 또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 회사 자체 휴무일(창사기념일 등) 및 연말휴장일도 기간 산입

※ 예외 :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4)[주식배당 결정], 제10조제2항단서[조회공시 요구 면제기준], 제28조[공시번복 기간 산정기준], 제68조[집합투자업자 의결권행사 공시 기간 산정기준],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의2[단일판매·공급계약 정정공시 면제 판단기준]의 경우 역(歷)에 의해 계산



(4) 주요 용어정의

-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pm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공시규정 제2조제6항)
 -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상법 제522조(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및 제530조의2(분할, 분할합병)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효력발생일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금액
 - ※ 자본잠식기업[자기자본<자본금]의 경우 최근의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 또한, 자기자본의 변화가 없는 무상감자, 무상증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계산시 증감 부분은 미반영
- **(최대주주)**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가목)
 -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동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최대주주로 되는 자도 경영에 참가하는 경우 최대주주로 보며(공시규정 제2조제7항),
 - 전문투자자인 주주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함(공시규정 세칙 제3조)
 - ※ 특수관계인(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주요주주(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나목)는 관련 법률 참조
- **(소액주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최대주주등(특수관계인 포함)에 해당하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음(공시규정 제2조제11항)
- **(대기업)**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공시규정 제2조제17항)
- **(대규모법인)**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공시규정 제2조제27항)

- **(파생상품)** 자본시장법(제5조)상 파생상품 정의를 말함
 -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선물/선도)
 -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옵션)
 -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스왑)

- **(계열회사)**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12호)

- **(지주회사)**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

- **(자회사)** 지주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8호,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



(5) 수시공시의무 공시내용 등에 따른 분류

1 공시내용에 따른 분류 (총 52개 항목 - 당일 공시 46개, 익일 공시 6개)

※ 아래 표 중 밑줄 친 항목은 익일공시 항목. 다만, 익일공시의 정정사항은 당일에 공시함

구분	공시 항목	
영업 및 생산활동 관련 사항 (5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 ■ 거래중단 ■ <u>단일판매·공급계약</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중단·폐업 ■ 제품수거·파기
재무구조 관련 사항 (32개 항목)		
발행증권 (9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감자 ■ 주식소각 ■ 자기주식 취득·처분 (신탁계약 등 체결, 해지, 연장 포함) ■ 주식·증권예탁증권 분할·병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면·무액면 전환 ■ 주식관련사채 발행 등 ■ <u>해외중시 주권상장</u> ■ 자진상장폐지 ■ 발행어음 위·변조
투자활동 (4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시설투자 ■ 유형자산 취득·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법인 출자·처분 /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처분 ■ <u>출자 비상장법인 존폐 관련사항</u>
채권·채무 (6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차입금 증가 ■ 채무인수·면제 ■ 담보제공·채무보증 및 <u>피보증(담보)법인 존폐 관련사항</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금급·금전 가지급·대여 ■ 사채 원리금 미지급 ■ 대출 원리금 연체 사실 발생
손익 (6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 ■ 벌금 등 부과 ■ 임·직원 횡령·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파생상품 거래손실</u> ■ 매출채권 이외 채권 발생 손상차손 ■ 가장 납입
결산 (7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보고서 제출 ■ 반기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부적정 등 ■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등 ■ 매출액 및 손익구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배당 ■ 현금·현물(분기·중간)배당 및 이를 위한 기준일 설정 ■ 회계처리기준 위반
경영활동 관련사항 (15개 항목)		
지배구조 (5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 상법상 주식교환·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양수도·합병(간이·소규모합병)·분할 등 ■ 경영권변경 등에 관한 계약체결
존립 (5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은행거래정지 ■ 회생·파산 관련 사항 ■ 해산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금융채권기관의 경영관리 ■ <u>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u>
소송 (4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증권의 효력 및 위·변조 소송 ■ 일정청구금액 이상 소송(비송사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관련 경영권 분쟁 소송 ■ 증권 관련 집단소송
주총소집 (1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총소집 이사회결의 및 주총결의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p>열거된 공시의무항목 이외 추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p>		

2 비율기준에 따른 분류 : 2단계 비율 [5%, 10%]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이며, 일부 항목은 대기업(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대규모법인(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대해 완화(1/2수준)하여 적용한다.

자기자본** 기준		매출액 기준	
• 시설투자/시설외투자	10%(대규모 5%)	• 제품수거·파기	10%(대규모 5%)
• 출자/출자처분 • 피보증법인 부도 등 • 담보제공, 채무보증 • 채무인수/면제 • 금전대여, 선급금지급 등 • 사채/대출원리금 미지급 • 출자비상장법인 부도 등 • 파생상품 손실 발생	10%(대기업 5%)	• 영업일부 정지 • 거래처와 거래중단 • 공급계약 체결/해지 • 생산활동 중단	10%
• 단기차입 결정	10%	자산총액 기준	
• 손해배상 소송 • 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 • 직원의 횡령·배임*(별도)	5%(대기업 3%)	• 재해발생	10%(대기업 5%)
•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손상차손(별도)	누계 50%	• 유형자산취득/처분	10%

* 임원의 횡령·배임은 금액 불문하고 공시사항

**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공시규정 제2조제6항) 기준, 매출액 및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단,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합병(간이합병/소규모합병 포함), 분할·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효력발생일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금액으로 하고, 증자·감자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반영)

포괄조항 공시의 경우 공시의무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의 10%(대규모법인 5%)로 적용하되, 공시의무비율 적용이 곤란한 정보는 경영이나 재산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일반회사 수시공시

(1)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

1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정지처분 [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2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

기업의 영업활동 정지는 해당 상장법인의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에 결정적인 차질을 초래하여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다. 매출액 10% 이상 또는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이 있을 때 및 상장법인이 영업정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공시의무가 있고, 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

Key-point

◆ **(실질심사)** 주된 영업이 정지되어 잔여사업부문 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①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
(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업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② 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의 취소 또는 반납
- ③ 주된 영업의 양도 또는 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 등
- ④ 기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주된 영업 정지의 판단은 매출액(개별·별도)을 기준으로 함
 - 공시 제출 시 과거 3년간의 잔여 사업부문 등의 매출액이 구분된 매출액 확인서 첨부 필요
(감사·검토보고서로 부문별 매출액 확인이 어려울 시, 감사인 확인이 요구되므로 사전준비 필요)

◆ **(매매거래정지)**

- ①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초과시 30분 정지(14시 30분 이후 공시시 익일 거래재개)
- ② 영업활동의 전부·일부정지 등에 대해 풍문 등에 의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주권은 매매거래정지
- ③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해소시까지 매매거래정지

2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거래처와의 거래중단은 주된 거래처로부터의 거래중단 사실을 통보받거나 상호 거래중단을 합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면 공시대상이다.

Key-point

- ◆ **(실질심사)** 거래처와의 거래중단으로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위탁생산 계약이 취소되어, 다른 품목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등)
 - ※ 주된 영업 정지의 판단은 매출액(개별·별도)을 기준으로 함
 - 공시 제출 시 과거 3년간의 잔여 사업부문 등의 매출액이 구분된 매출액 확인서 첨부 필요 (감사·검토보고서로 부문별 매출액 확인이 어려울 시, 감사인 확인이 요구되므로 사전준비 필요)

3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 체결·해지 [익일 공시사항]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계약금액이 세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경영활동에 있어서 국내외 상거래나 무역거래는 목적달성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기업의 중요한 단일판매계약체결은 기업경영의 중요한 성과로 연속적인 경영활동의 기반이 된다. 일반적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의 유형에는 쌍방 간의 계약체결에 의하는 방법과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이고 3억원 이상인 경우 단일판매·공급계약이 공시 대상이며, 공시의무 발생시점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해지일이다. 상장법인은 기업경영상 비밀보호 등을 위해 필요 시 공시유보(Ⅷ. 공시유보 참조)가 가능하다. 다만, 자율공시의 경우 공시유보 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시서식에 기재된 계약금액, 계약상대방 등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계약서에 계약의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약의 구속력이 낮은 경우 공시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공시 FAQ, 단일판매·공급계약 참조)가 필요하다.



[유의사항]

- ① 계약서상 계약일자와 실제 계약일자가 다른 경우(소급하여 계약하거나 지리적 여건으로 양 당사자 간의 서명에 소요기간이 긴 경우 등)에는 그 사유 및 실제 계약체결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
- ② 계약건별로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이 여러 건이라 하더라도 계약일과 계약 상대방이 동일하고, 계약조건이 유사 또는 연관되어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이는 경우 합산하여 공시의무 비율을 판단하고 하나의 공시로 제출
- ③ 전체 판매·공급 계약금액 중 일부만 확정금액이고 잔여분은 불확실성이 있는 조건부 계약은 계약금액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함을 투자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확정/조건부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 ④ 계약금액,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 내용의 기본계약은 공시대상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주문서가 제출된 시점에 건별로 공시
- ⑤ 단일판매·공급계약의 경미한 변경사항(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10일 이내 변경에 한함)은 정정공시 대상이 아니지만(공시규정 제30조), 계약금액, 조건 등의 변경은 정정공시 의무가 있음(사유발생일 당일까지)
- ⑥ 공동입찰 등으로 다수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상 할당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시 의무비율을 산정. 다만, 계약금액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상치를 기재한 후 추후 금액 확정시 정정공시
- ⑦ 투자판단 관련 중요성이 낮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이라도 해당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시의무가 발생
- ⑧ 계약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며, 유통공급계약 등의 경우 재무제표의 매출액에 반영되는 금액을 기준 산정

Key-point

- ◆ **(공시변경)** 공급계약 체결 공시 후 ① 계약금액의 50% 이상 변경시, 또는 ②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 계약기간의 2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이행금액이 50% 미만인 경우 공시변경 해당
 - ※ 최초 공시를 제출한 이후에 공시내용 정정으로 인한 적극적 투자자 보호를 위해 두가지 공시변경 기준 도입·운영. “①”은 계약기간 변경이 없는 경우 적용. “②”는 계약기간 변경이 있는 경우로, 공시변경 여부는 최초 공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후에도 계속하여 기간변경 시 추가로 공시변경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
 - ※ 자율공시의 경우 “②”는 공시변경으로 보지 않음
- ◆ **(매매거래정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이상(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인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시를 제출하는 때

4 제품의 수거·파기 결정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라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기 판매된 제품이나 판매과정에 있는 제품은 그 품질에 이상이 있어 인체에 해를 미치거나 성능 등의 하자로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관계당국이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폐기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상장법인이 자진하여 제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침과 동시에 판매활동이 위축되어 매출액의 감소를 초래하고 결국 기업 경영에 증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대규모 5%) 이상이 공시대상이고, 이로 인한 생산중단 및 영업정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5 생산활동의 중단·폐업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마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상장법인이 생산활동 중단 등을 하면 매출액이 감소하고 주가도 하락하게 된다. 생산활동의 중단은 단위 공장의 조업이 전면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 생산라인의 일부 중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과거 생산활동의 정상 재개도 공시 대상이었으나 '15.9.7일 자율공시로 이관되었다.

[유의사항]

- ① 중단기간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노사분규, 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업 전면 중단의 경우에도 공시대상에 해당
- ②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단기간(생산중단 당일)에 해소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나, 매출액 감소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 해당



Key-point

- ◆ **(실질심사)** 생산활동 중단·폐업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로, 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생산 및 판매 활동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로 한정
 - ※ 주된 영업 정지의 판단은 매출액(개별·별도)을 기준으로 함
 - 공시 제출 시 과거 3년간의 잔여 사업부문 등의 매출액이 구분된 매출액 확인서 첨부 필요 (감사·검토보고서로 부문별 매출액 확인이 어려울 시, 감사인 확인이 요구되므로 사전준비 필요)

(2) 재무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증권에 관한 사항

1 유·무상증자·자본감소(감자) [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5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상장법인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감자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 당일에 공시하여야 한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증가와 동시에 회사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자기자본 조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자본금)에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조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회사의 총자산에는 전혀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재무제표상의 항목 변동을 통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형식적인 증자이다.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은 대부분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자본감소란 회사의 자본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와 회사의 결손으로 인해 명의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본감소는 합병으로 인한 자기주식 처분,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 합병의 전단계로서 자본감소를 하는 등의 목적으로 주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감소는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나누어진다.

[증자관련 유의사항]

- ① 증자시 정관상의 발행예정주식총수 한도 및 1회 한도, 제3자배정 근거 확인
- ② 증자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주금 납입일 기준)하여야 함
- ③ 증자와 관련한 의무보유 대상 여부 확인(제2장 III. 의무보유 참조)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의무보유 대상
 -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 시, 신주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종목이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환기종목인 경우, 발행되는 신주는 의무보유 대상(소액공모인 경우에도 동일)
 - * 대규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본잠식을 50%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시가총액 미달 사유에 한함
 - 우리사주 예탁분의 경우 무상증자 신주지급일 기준 남은 예탁기간이 3개월 미만 이면 무상증자 증분에 대하여 예탁하지 않을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 ④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하는 경우 제3자배정 근거 정관조문,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회사와의 관계, 자금조달 목적 등을 공시문안 및 이사회 의사록에 반드시 표시
 - 경영권 분쟁이 있는 법인 또는 제3자 배정자가 사외이사인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
- ⑤ 발행가액 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규정”) 제5-18조)

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기준가격 산정 절차를 폐지하고 완전 자율화
일반공모	청약일전 과거 제3매매거래일부터 제5매매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할인율 30% 이내)
제3자배정	청약일전 과거 제3매매거래일부터 제5매매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할인율 10% 이내) [1년간 의무보유 선택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 (할인율 10% 이내)

주1) 가중산술평균주가 = 기간 중 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

주2) 주권이 매매거래정지 중인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주3) 산출된 기준주가에서 할인율을 적용한 다음 원미만 절상 또는 호가단위 미만 절상을 적용한 가액이 신주의 발행가액이 됨

주4) 유상증자 증액시 증액분 만큼 발행가액 재산정(정정이사회 결의일 전일이 기산일)



※ 전환주식 발행 시 전환가액 산정 방식 등

전환주식의 전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달리 증발공 제5-24조의2에 근거하여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결정)에 따라 산정되며 동규정 제5-21조(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제5-23조의2(전환가액의 상향조정)를 준용함에 유의

- ⑥ 발행방식(주주배정, 일반공모, 제3자배정)을 변경하려면 기존 공시를 철회하고 새로운 결의를 한 후 이를 공시
- ⑦ 무상증자결정 공시일 이후부터 배정기준일 사이에 유상증자/전환청구 등으로 주식 추가발행 시 무상증자공시 정정 필요
- ⑧ 해당공시 이후 연계공시 등
 - 주식명의개서정지 안내공시 : 권리주주 확정
 - 1차발행가액 및 최종발행가액 확정시 공시
 - 청약결과 공시 : 청약결과(자율공시) 서식 이용
 - 주금납입결과 공시 :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서식 이용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신청 : 증서상장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
 - 추가상장신청 : 추가상장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
 - ※ 의무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장일 전일 및 당일에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전일 : 의무보유청구내역, 당일 : 의무보유증명서)
 - ⇒ 해당 서류 미발급시 상장일 변경을 위한 공시 진행

[감사관련 유의사항]

- ① 감사일정 중 매매거래 정지기간은(감자기준일* - 1매매거래일)부터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 감자기준일은 감사된 주권을 갖게 될 주주들이 정해지는 주주 기준일로, 전자 등록법상 주권의 '병합기준일'의 1매매거래일 전을 말함

매매거래정지(D일)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
감자기준일(D+1일)	감사의 주권을 갖게 될 주주들이 정해지는 주주 기준일
병합기준일(D+2일)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발생 (=효력발생일)

- ② 해당공시 이후 연계공시 등
 - 주주총회 개최결의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 주식명의개서정지 안내공시 : 권리주주 확정

- 변경상장신청 : 변경상장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

- ※ 의무보유가 있는 유상증자 등과 상장일이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전일 및 당일에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전일: 의무보유청구내역, 당일: 의무보유증명서)
- ⇒ 해당 서류 미발급시 상장일 변경을 위한 공시 진행

Key-point

- ◆ **(매매거래정지)** 배정비율이 20% 이상인 무상증자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인 자본감소
- ◆ **(공시변경)** ① 유·무상증자(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금액), 감자(감자비율, 감자주식수)의 20%이상 변경시, ②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 ◆ **(우회상장)**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이후 1년 이내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타법인출자 또는 영업양수가 있는 경우 우회상장 해당여부 검토를 위해 [상장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7호, 19호, 21호 서식의 확인서 및 첨부서류 등 제출
- ◆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해당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출자 등이 공시로 확인된 경우 지정
- ◆ **(실질심사)** 증자와 관련한 일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해당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출자에 관한 결정 등을 하였음이 공시로 확인된 경우
 -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증자(가장납입)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참고 소액공모

- **(한도)**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일 기준 과거 1년간 유상증자, CB, BW의 소액공모금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은행, 한국증권금융 중 1곳과 관리계약을 체결 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시 내용기재 및 첨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7조)
- **(유의사항)** 청약일 3일 전까지 유상증자결정(소액) 공시
 - 예) 이사회 결의일이 '23년 9월 14일 목요일인 경우
 - '23.9.14(목) 이사회결의일 18:00시 전에 공시가 되어야 하며, 청약일은 '23.9.18(월) 또는 이후로 됨
 - ☞ '23.9.14(목) 18:00 이후에 접수가 되면 '23.9.15(금) 07:00에 투자자들이 공시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일 3일 전을 위배한 것이므로 주의



2 주식소각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2)]

주식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이 경우 (1)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사항은 (1)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소각이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여 간접적으로 이득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소각하면서 그만큼의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와는 달리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후 액면가와 총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유의사항]

- ① 자본감소에 의한 주식소각(상법 제343조)은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야 하며 감자결정 서식을 이용
- ② 자기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단서)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
 - *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상법 341조)
- ③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 공시와 “주식소각 결정” 공시를 함께 해야 함
- ④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주식소각 결정)로 “자기주식 처분” 공시를 같음함
- ⑤ 상장법인은 주식소각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거래소에 변경상장을 신청(변경상장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해야 함

Key-point

- ◆ (매매거래 정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인 주식소각
- ◆ (공시변경) 주식소각 주식수의 20% 이상 변경 시

3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 [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8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3)]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신탁 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자기주식은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는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에 따라 이익배당의 한도 내에서 일정 절차에 의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 임직원에게 대한 공로금·장려금 등 지급, 주가 안정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의사항]

- ① 자본시장법 외에 상법 등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모두 공시대상
 - 다만, 합병, 영업양수, 주식매수청구권, 단주처리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다른 행위에 자기주식 취득이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처분 공시대상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 교부 시 자기주식 처분결정은 공시의무사항이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음(내부문서 등 첨부)
- ② 자사주 신탁계약 관련
 - 신탁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 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해지 결정”에 대한 별도 공시 필요(해지확인서 등 첨부, 이사회 결의 필요). 다만, 신탁계약기간 종료로 해지 시에는 별도 공시의무 없음(이사회 결의도 불필요)
 - 신탁계약 등의 해지 및 종료 시 해당 자사주로 반환받는 경우 별도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는 불필요
 - 신탁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 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결정”에 대한 신규 공시 대신 기존에 제출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결정” 공시를 정정(신탁회사 변경 시에는 신규 공시 필요)



- 신탁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매매하는 것에 대하여 공시규정상 공시 의무는 없음. 다만, 취득한 자기주식을 신탁계약 중에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신탁계약 등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장외처분 결정” 공시를 하여야 함
- ③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해지 포함)을 결정하는 경우 취득수량 한도 및 중첩 제한기간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공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증발공규정 제5-4조, 제5-9조, 제5-11조)
 - 자기주식 처분(신탁계약 해지) 후 3개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간 금지 등(기간 계산일 월력 기준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금지 기간(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1. 타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시장조성 기간 및 미공개 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5. 처분 후 3개월간 또는 취득 후 6개월간(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 인한 자기주식 교부 등은 예외)

- ④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기주식매매거래 계획’을 설정한 후 주문을 위탁하여야 함(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5조)

Key-point

- ◆ **(공시변경)** 예정기간 내에 취득 및 처분 예정주식수 미만으로 매매거래 주문 시(직접 취득의 경우 취득 예정금액 초과 취득시 제외)
 - 자사주 신탁의 경우에는 취득 및 처분 예정주식수를 신고하지 않으므로 공시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 자기주식 취득·처분 진행절차**■ 증권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

- ① 주요사항보고서 서식 제출
- ② 자기주식 취득·처분
 - 취득 :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 익일부터 3개월 이내
 - 처분 :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 익일부터 3개월 이내
 -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 후 6개월간 처분 제한, 처분 후 3개월간 취득 제한
- ③ 자기주식 취득(처분)결과보고서 제출
 - 취득(처분) 완료 후 또는 기간만료 후 5일 이내

■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

- ① 주요사항보고서 서식 제출
- ② 자기주식 취득
 - 계약기간 이내 취득(증권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 방법만 허용)
 -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 후 1개월간 처분 제한, 처분 후 1개월간 취득 제한
- ③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제출(단, 기간만료전 기간연장의 경우 별도 제출 불요)
 -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그 날부터 5일 이내
- ④ 신탁계약 해지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⑤ 신탁계약 해지 결과보고서 제출(해지한 날부터 5일 이내)



4 주식 분할·병합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4)]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주식분할은 법인의 자본이나 자산의 변경 없이 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 유동성이 둔화되는 경우에 유통주식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주식의 시장성(유동성) 향상, 이익배당액의 조정 및 신주의 발행이나 합병준비를 위한 경우 등에 실시한다.

주식병합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여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합병하거나 단순히 권면액을 인상하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

[유의사항]

- ① 상장주식의 권면액은 액면주식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으로 정해야 함(상장규정 제28조)
- ② 주식병합 및 주식분할은 주주총회 승인(정관 변경사항으로 특별결의 필요)을 통하여 최종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주주총회 개최결의·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총회 결과 공시와 변경상장신청* 등이 발생
 - * 주식병합의 변경상장신청시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통주식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양식은 상장공시 제출시스템 > 공시제출 > 새로만들기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통주식현황표)
- ③ 주식분할 및 병합과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상장법인은 주식분할·병합을 위한 전자등록변경기간(舊 구주권 제출기간) 확보 등을 위해 실무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 ④ 전자증권 변경·말소 등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 효력발생일 2영업일 전부터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전자등록 변경 등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Key-point

◆ (공시변경) 분할 또는 병합비율의 20% 이상 변경시

5 액면·무액면주식 전환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5)]

상법 제329조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때

무액면주식이란 주식의 권면에 주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무액면주식은 액면금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제가치를 반영하는 시점의 시장가치에 의하여 발행되고, 자본금도 그 발행가액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무액면주식과 액면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는 없다.

[유의사항]

- 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가액의 1/2 이상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정함
 - ※ 무액면주식 발행절차: ① 이사회 결의 → ② 주주총회 승인(특별결의, 정관변경) → ③ 전자등록변경기간 → ④ 매매거래정지 → ⑤ 신주권 변경상장
- ② 정관상 “1주당 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필요
 - 액면 또는 무액면주식 전환결정 공시 이후 주주총회 개최결의 및 주주총회결과공시,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한 주식명의개서정지 안내공시 등이 발생
- ③ 전자증권 변경·말소 등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 효력발생일 2영업일 전부터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전자등록 변경 등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6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9호)]****[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6)]**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른 사채와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때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나) 조건부자본증권(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기업이 경영활동상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직접금융의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유형이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이다.

회사채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은 무보증사채 등 일반사채를 발행하게 되지만, 사채로서의 안정성과 함께 주식으로 전환하여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신종사채로 발행할 수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형태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이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기업이 사채권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조건으로 발행법인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로, 상법에서 그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비용은 일반사채보다 저렴하여 많은 법인들이 자금조달시 이용하고 있다.

교환사채는 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자기주식을 포함)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공시 FAQ, 교환사채 발행 참조)

증권예탁증권은 자국 주식을 외국에서 거래하는 경우 주식의 수송·법률·제도·거래관행·언어·통화·양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 발행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해외 현지 예탁기관의 대리인인 국내은행이 예탁기관 명의로 보관하고, 그 대신 예탁기관이 국내주식을 해외 현지에서 주식예탁증서 형태로 발행·유통하게 함으로써 원주(原株)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증권을 말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워크아웃, 적기시정조치 등 증권 발행 당시 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전환형)되거나 원리금이 감면(상각형)되는 신종사채로 주식과 회사채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Hybrid) 증권으로, 그 발행에 관한 결정, 주식전환, 상환, 이자지급의무 감면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의사항]

- ① 상장법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제한(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해야 함)
 - 주주배정공모 및 불특정다수 대상 일반공모 발행의 경우 1개월 경과 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가능(제3자배정방식 공모발행 불가)
- ②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시 최대주주 변경유무 확인(CB전환은 청구일, BW행사는 납입일 기준)
- ③ 주식관련사채의 발행결정 공시를 하는 경우 공시문안 및 이사회 의사록에 기한이의 상실조항, Option(Put, Call) 조항, 손실보전약정 등 기타 약정사항을 반드시 명시
- ④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제한기간
 - 발행제한기간 중에는 상법에 따라 주주에게 사채인수권 부여, 모집하는 방식 또는 일반공모발행 방식으로만 CB, BW 발행가능

[발행제한기간(증발공규정 제5-21조, 제5-24조)]

- 소수주주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그 소집의 허가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시부터 해당 임원의 해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무집행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상기의 내용에 준하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분쟁사실이 신고·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 ⑤ 해외 CB, BW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증발공규정 제2-2조의2)
 - 미제출할 경우 1년내 국내유입(해당 CB, BW 및 그 전환주식) 방지 조치(예탁원 예탁 등) 의무화



- ⑥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한 후 전환가액,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및 교환가액 등이 변경된 경우 “전환가액·신주인수권행사가액·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서식을 이용하여 이를 신고
- ⑦ 경영권 분쟁이 있는 법인 또는 제3자 배정자가 사외이사인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
- ⑧ 시가하락 시 전환(행사)가액이 하향조정되는 CB, BW를 사모발행한 경우에는 하향 조정 이후 시가상승 시 최초 발행 당시의 전환(행사)가액을 한도로 하여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함
- ⑨ '21.12.01 이후 발행 결의된 CB와 관련하여 제3자가 CB콜옵션을 행사하거나, 만기전 취득한 CB를 재매각하는 경우, 각각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 전환사채매수 선택권행사,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제출의무가 발생함(거래소 수시공시 사항은 아님)
 - 다만, '21.12.01 이전 발행 결의된 CB 및 CB 이외의 주권 관련 사채권의 경우, 동 사항 발생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를 통해 공시

Key-point

- ◆ **(공시변경)** ① 증권발행금액,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50% 이상 변경, ② 주권관련 사채권의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
- ◆ **(우회상장)** 제3자배정 방식의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결정시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회상장 심사대상

참고 주식관련사채 개요

<p>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s)</p>	<p>모든 법인들에게 적용되는 상법에서 발행을 인정하고 있음 발행비용도 일반사채보다 저렴하여 현재 대부분의 법인들이 자금조달방법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신종사채로 사채권자에 대해서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행법인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p>
<p>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p>	<p>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 등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p>
<p>주식예탁증서 (Depository Receipt)</p>	<p>자국 주식을 외국에서 거래하는 경우 주식의 수송·법률·제도·거래관행·언어·통화·양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원활한 유통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 발행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해외 현지 예탁기관의 대리인인 국내은행이 예탁기관 명의로 보관하고 이 대신 예탁기관이 국내주식을 해외 현지에서 주식예탁증서 형태로 발행·유통하게 함으로써 원주(原株)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증서</p>

**7 해외증권시장 관련 [익일공시사항, 주요사항보고서(법시행령 §171③3호)]****[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9)]**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의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미 상장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

- (가)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한 결정이 있을 때 및 해당 주권등을 상장한 때
- (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후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 공시할 것을 결정하거나 보고서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때. 다만, 국내 증권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제출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 (다)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그 밖의 조치(해당 법인이 이를 요청한 때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 또는 상장폐지된 때
- (라) 해당국 증권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때

국내 상장법인이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였거나 상장하려는 경우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해외증권시장은 외국에 소재한 거래소 시장 등을 의미하며, 주권등이란 외국에서 모집·매출되는 주권과 증권예탁증권을 의미한다.

국내신고사항이 아닌 사항으로서 해외거래소 등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해외증권시장에 공시할 사항에 관한 결정사실이 발생하거나, 사업보고서 등에 준하는 공시서류를 해외거래소 등에 신고 또는 제출한 경우 국내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조회공시요구 등 조치를 받는 경우, 상장법인이 자진해서 거래정지를 요청하거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참고 일반적 해외상장 진행절차

- ① 해외상장 추진결정: 이사회결의 또는 사실상 권한이 있는 자(대표이사 등)의 결정
- ② 해외상장 등록신청: 해당 국가 증권관계기관 등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 ③ 해외증권 상장신청: DR 등 발행을 위한 유상증자 결의 등과 함께 해당 국가에 상장신청
- ④ 해당 국가 해외증권 상장승인 및 상장

8 상장폐지 결정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0)]

해당 법인이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때

상장법인은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상장폐지 결정사항에 대한 공시 이후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승인(기업심사위원회)을 위한 주주총회개최 등 관련사항 및 상장폐지 이후 잔여 소액주주 보호대책 등에 대한 공시 등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게 피흡수합병 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는다.

Key-point

◆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관련 투자자보호 목적(상장폐지여부 결정시까지)

9 어음 위·변조사실 확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1)]

발행한 어음의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한 때

어음의 위·변조 사고 신고를 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시까지 추가적인 자금부담 없이 부실 기업의 부도연기 수단으로 악용(상장폐지 사유인 어음·수표의 부도 회피)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상장법인에 어음이 지급제시 되는 경우 어음 위·변조 관련 고소장 등*을 첨부하여 지급은행에 제출하고 위·변조 신고를 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 고소장, 발행인의 진술서, 위·변조 어음의 사본, 서약서 등

[유의사항]

- ① 어음 위·변조발생시 “어음·수표 부도처리확인서” 및 “고소·고발 접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② 주권상장법인의 어음 위·변조 신고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반드시 공시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

10 신규시설투자·시설외 투자·시설증설·별도공장 신설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세척에서 정하는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상장법인이 신규시설투자,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 등을 결정하는 경우 공시대상이다. 시설외 투자란 영화·음반·연예·공연물, 게임·프로그램 및 교육·지식·정보·출판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 등을 통한 투자를 말한다.

[유의사항]

- ① 공시사항이 관련법이나 승인, 인가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주의 필요
 -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석유정제시설 등에 대한 시설투자는 관련 행정기관 등에 신고 또는 인가 필요
 -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때 추후 번복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공시를 할 때에는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인허가 여부에 따라 변경 또는 번복될 수 있다는 주의문구 기재
- ② 시설투자금액 등이 건설 과정 중에 사후정산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 경우 변경계약 시점에 변동사항을 공시해야함
- ③ 경영상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금액 등에 대한 공시유보 신청 가능

Key-point

- ◆ (공시변경) 투자금액의 50% 이상 변경 시

11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5)]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유형자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또는 처분[법상의 특정금전신탁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해당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취득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6)에서의 취득 또는 처분에서 같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하며, 주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영업용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등 사업설비 자산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 유형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로 규제한다.

[유의사항]

- ① 취득 및 처분금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②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은 제조업의 경우 원재료 구입 및 처분에 해당하므로 공시대상에서 제외
- ③ 사모간접투자기구 등에 의한 간접적 취득 및 처분의 경우라도 상장법인이 해당 자산 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상장법인이 직접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와 실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공시의무 대상
- ④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 서식으로 제출(당일공시이며 거래소 승인 필요)

Key-point

◆ (공시변경) 유형자산 취득·처분금액의 50% 이상 변경 시



참고 자산양수 형태에 따른 공시양식 정리

양수자산형태	취득 방식	공시 형식
지분증권	구주취득 & 자산 10%이상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신주취득 or 자산 10%이내 구주취득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주권관련) 채무증권	기발행 채무증권 & 자산 10%이상	주권관련 사채권 양수결정 (주요사항 보고서)
	새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or 자산 10%이내 기발행 채무증권 취득	주권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유형자산	기존에 만들어진 유형자산 & 자산 10% 이상	유형자산 양수결정(주요사항보고서)
	새로 만드는(건축하는) 유형자산 & 자기자본 10% 이상	신규시설 투자 등
무형자산	기존에 만들어진 무형자산 & 자산 10% 이상 ex) 콘텐츠 혹은 특허권 등 취득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미승인 주요사항보고서)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
	새로 무형자산 제작 & 자기자본 10% 이상	시설외 투자 등

〈유의사항〉

- 기존 유형자산 보유자가 유형자산을 담보로 채무가 설정된 자산을 상장법인이 유형자산과 함께 채무를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 양수결정(주요사항보고서) 뿐 아니라 채무인수 결정 공시도 필요하며, 이 경우 유형자산 양수금액이 10%에 미달하여 공시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유형자산을 담보로 설정된 채무가 공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고 기준이상시에는 채무인수 결정 공시를 하여야 함

12 타법인주식 또는 출자증권 취득·처분 /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처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6)]

최근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출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 다만,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법률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개매수신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처분(담보권 등 권리 실행에 의한 출자·출자지분 처분을 포함한다)

타법인 출자란 신규 또는 이미 설립된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권 관련사채권 취득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취득을 말한다. 기업은 타법인 출자 등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출자의 경우에는 상장 법인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 법인이란 민법상 법인설립 등기를 통해 설립된 것으로 재단, 사단, 비영리법인, 뮤추얼펀드 및 해외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을 말한다. 상법상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법인형태로 설립되므로 이에 해당되며, 기타 계약관계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 및 계약형 투자신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법에 의한 합자조합은 법인으로 간주한다.

타법인 출자 및 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 방법으로는 ① 신규 또는 이미 설립 법인의 유상 증자 또는 주권관련사채 발행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주권관련사채권을 취득하는 방법, ② 최대주주와의 인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 ③ 증권시장을 통하여 취득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한편, 제3자배정으로 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출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에 관한 결정은 상장법인에 실질적인 자금공급이 없는 증자로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가 있는 경우도 공시대상이며,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인 상장법인에 이러한 공시가 있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의사항]

- ① 이사회 결의일 또는 내부 결정일이 공시 기준일이며, 증권시장 내에서의 매매를 통한 타법인 주식·출자증권/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처분의 경우 사유발생일은 결제일 기준이 아닌 매매거래일 기준임
- ② 타법인은 뮤추얼펀드 및 해외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을 말하며, 간접투자기구에 의한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은 상장법인이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
- ③ 취득 및 처분금액은 취득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실제 취득·처분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재하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출자의 경우에는 대상 채권의 평가액(장부가액)과 출자전환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 ④ 주권관련사채권 취득으로 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양수)결정 공시 이후 사채권 행사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하여야 함
- ⑤ 대상법인의 유상감자 발생시 출자지분의 감소분만큼 환급받게 되므로 출자지분의 처분 공시에 해당됨
- ⑥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인 중요한 자산양수도*는 주요사항 보고서 서식으로 한번만 제출(당일공시이며 거래소 승인 필요)
 - *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 ⑦ 제3자배정으로 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출자는 그 제3자배정자의 증자에 상장법인인 참여(상호출자)하는 것만 해당하고 구주취득은 해당되지 않으나, 그 제3자배정자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자에 해당
- ⑧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우회상장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우회상장 관련 확인서(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서식)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과 우회상장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우회상장 해당 및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거래소와 협의해야 함

Key-point

- ◆ **(실질심사)**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출자 또는 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 일반종목의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 ◆ **(공시변경)** 타법인 주식·출자증권 / 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처분 금액의 50% 이상 변경시
- ◆ **(우회상장)**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이전 1년 또는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으로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매 거래정지 조치 및 우회상장 해당여부 심사

13 출자 비상장법인의 부도·회생절차·해산 등 [의일공시사항]**[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나목(7)]**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을 출자(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경우로서 유가증권시장주권 상장법인이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제3호 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신청·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종결결정·폐지신청·폐지결정, 파산신청·파산 신청기각·파산선고에 해당하는 때
- (3) 「상법」 제517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상장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부도·회생절차·해산 등의 중요한 기업내용의 변동은 상장법인은 물론 출자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의 경영활동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장법인인 피출자법인의 부도·회생절차·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상장법인이 공시해야 한다.

[유의사항]

- ① 출자법인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워크아웃 신청 등 포함) 등으로 인하여 채무면제 및 인수가 있는지 확인 필요
- ② 출자금액은 해당 출자 비상장법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 중에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③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공시책임자를 회생관리인으로 변경해야 함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14 단기차입금 증가****[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하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단기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은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의 촉매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과다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재무구조가 부실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차입금의 규모 등이 법인의 존폐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거래소는 상장법인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단기차입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자자에 이를 알리고, 상장법인도 차입에만 의존하는 경영행태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유의사항]

- ① 단기차입금은 회계처리기준상의 단기차입금(당좌차월의 경우 당좌차월한도금액을 말함) 및 만기 1년 이내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금액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 차입기관이 다르더라도 결정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1건으로 간주함
 - 제외대상 : 콜차입, 만기 7일 이하로 발행되는 기업어음(CP), 만기 7일 이하의 증권금융차입, 금융기관에 의한 무역금융·구매자금 대출, 유동성장기부채, 매출채권 할인(어음할인) 및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 포함)은 단기차입금에서 제외(다만, 유동성장기부채가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상 변동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 ② 단기차입금 한도만 설정하여 실제로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도 설정금액 내에서 단기차입이 가능하므로 공시의무 대상
- ③ 단기차입금의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다면 단기차입금의 증가분이 없으므로 공시의무 대상이 아님

Key-point

◆ (공시변경) 차입금액의 50% 이상 변경 시

15 채무면제·인수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인수하기로 결정한 때

채무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인수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무면제는 상장법인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의사항]

- ① 금융기관, 공공적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경우 동 공시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공시규정 제6조제3항)
- ② 타인(출자법인 포함)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등이 있는 경우, 상장법인 또는 출자법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워크아웃 신청 등 포함) 등으로 인한 채무면제 및 인수가 있는지 확인 필요

Key-point

◆ (공시변경)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금액의 50% 이상 변경시

**16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등****[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및 그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이 경우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잔액 및 채무자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신청·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종결결정·폐지신청·폐지결정, 파산신청·파산 신청기각·파산선고에 해당하는 때
 (3) 「상법」 제517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채무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428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채무는 평상시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지만,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인 상장법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채무의 변제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법인이 우발적인 채무(손실)를 부담할 수 있다.

담보제공은 민법상 계약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적 담보와 보증채무, 연대채무 등의 인적 담보가 있다. 상장법인이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상장법인에 불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① 상장법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은 해당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만 공시의무 발생. 다만, 금융기관, 공공적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경우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공시규정 제6조제3항)
- ② 공시의무의 발생여부는 결정일 기준 건별로 산정하되, 채권자, 담보(보증)조건 등이 다르더라도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1건으로 봄. 기간 연장은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므로 새로운 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봄

- ③ 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은 특정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액의 일정률을 적립하는 형태의 보증이므로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공시대상에서 제외
- ④ 타인(출자법인 포함)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등이 있는 경우, 상장법인 또는 출자법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워크아웃 신청 등 포함) 등으로 인한 채무면제 및 인수가 있는지 확인 필요
- ⑤ 피보증(담보)법인의 부도, 회사정리절차, 파산신청, 해산 등 존폐 관련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익일공시 사항임
- ⑥ 상법 제542조의9(동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주요주주·특수관계인, 임원등(업무집행 지시자 포함)을 위한 담보제공·채무보증은 금지됨
- ⑦ 건설사의 담보·채무보증 및 금전대여·금전의 가지급·증권대여의 재무위험에 대한 정보도 공시대상임

Key-point

◆ (공시변경) 담보제공, 채무보증 금액의 50% 이상 변경 시

17 금전의 가지급·대여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5)]

최근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다만, 종업원·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의 경우 지급 또는 대여 상대방에 대한 세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 또는 증권의 대여 등은 기업의 경영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선급금은 주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화 및 용역 등의 구입을 위하여 선지급한 가액이고, 가지급



금은 계정과목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임시 지급한 경우를 말하며,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주권, 채권, 수익증권 등) 및 어음 또는 CD를 말한다. 또한,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선급금,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않는다.

한편, 제3자배정으로 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선급금, 금전대여 등을 하는 것은 상장법인에 실질적인 자금공급이 없는 증자로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가 있는 경우도 공시대상이며,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인 상장법인에 이러한 공시가 있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의사항]

- ① 금융기관, 공공적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경우 전술한 공시기준을 적용하지 않음(공시규정 제6조제3항)
- ② 기존 금전대여에 대한 기간 연장 역시 공시대상임
- ③ 자기자본 10% 해당여부 판단 시 같은 날에 다수의 타인에게 금전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 개인별로 해당여부를 판단

Key-point

- ◆ **(실질심사)**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일반종목의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 ◆ **(공시변경)** 금전의 가지급 또는 대여금액의 50% 이상 변경 시

18 사채의 원리금 미지급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6)]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미지급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채의 원리금 미지급은 상장법인의 재무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공시대상이 되는 사채는 일반 회사채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및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유의사항]

- ① 공시의무는 사채의 원리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않은 날의 다음 날에 발생
- ② 신고금액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 미지급금액 중 이미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 누계 기준이며, 향후 발생 가능한 추가 미지급 내용을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함
- ③ 상장법인은 사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수시로 확인 필요
- ④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사채권인수계약서 상 '기한이익 상실요건'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해당시 미상환금액을 확인하여 사채원리금 연체 사실 발생 공시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사채권자가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지만 상환 청구 하지 않아 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지만 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

19 대출원리금 연체 발생**[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다목(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미지급된 누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미지급은 기업의 부실징후를 알려주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상업어음할인, 당좌대출, 운전자금, 시설자금, 무역금융, 신탁계정대출, 기업어음할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자금대출,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환어음매입, 매입외환(신용위험), 외상채권매입(팩토링채권), 기업구매자금전용카드, 신용카드채권(직불카드, 신탁 포함), 환매조건부채권(신탁포함), 콜론(신탁포함), 신탁계정 금전채권, 할인어음, 팩토링어음, 금융 리스채권, 운용리스채권, 기타(원화대출금, 대출채권, 리스채권 등)를 의미한다.



[유의사항]

- ① 공시의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않은 날(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다음 날에 발생
- ② 신고금액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 미지급금액 중 이미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누계 기준이며, 향후 발생 가능한 추가 연체내용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
- ③ 상장법인은 대출금 연체사실을 수시로 확인 필요

손익에 관한 사항

20 재해발생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1)]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재해(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발생한 때

재해발생이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적·물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상장법인은 돌발적인 재해발생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받게 되어 향후 기업경영이 불투명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유의사항]

- ① 재해발생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재해가 발생한 자산의 재해내용을 고려하여 산정
- ② 재해로 인해 보험금 등을 수령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10%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당일에 공시

21 벌금·과징금 등 부과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4)]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이상의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

벌금이란 각종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거쳐 부과하는 재산형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몰수와도 구분된다.

과태료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행정상 제재로서 형벌인 벌금과 구분된다. 법률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형식적인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 과해지는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해지는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집행벌로서의 과태료가 있다.

과징금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것으로서, 조세는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하위법에 근거한 과징금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수수료·사용료·특허료·납부금 등이 있다.

추징금이란 범죄 또는 조세미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을 경우 그 효과를 상실 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액이다.

[유의사항]

- ① 사유발생일은 벌금,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과징금 부과통지서 접수시점이며 납부시점이 아님. 부과될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수령한 경우에도 미리 공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보도자료”에서 부과사실 및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통상 뉴스에 보도됨) 당일 공시하여야 함
- ② 세무조사 후 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하는 추가 납부세액도 추징금에 해당
- ③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의 경우에는 공시대상이 아님

Key-point

- ◆ (실질심사)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22** 횡령·배임사고 발생**[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6)]**

임원·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 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 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이 경우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3) 이상의 금액에 한한다.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확인은 일반적으로 사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해당 혐의의 확인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횡령·배임은 상장법인(대표이사 등 포함)이 직접 확인하거나 검찰 또는 감독기관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유의사항]

- ① 악의적 고소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횡령·배임에 대한 혐의는 당해 상장법인 (대표이사 포함)이 직접 확인하거나 감독기관(검찰기소) 등에 의하여 확인
- ② 횡령·배임 관련 구속, 검찰기소 등에 대한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조회 공시를 요구(“횡령·배임혐의설”)하여 상장법인의 확인을 요구
- ③ 임원 등의 범위는 상법상 이사 및 감사,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 지시자 등을 뜻하며, 퇴직한 자를 포함
 - 예를 들어 최대주주, 실질경영자, 미등기임원 등도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이 확인되는 경우 공시의무 발생
- ④ 임원 등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공시의무 발생
- ⑤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최초로 확인될 때 ‘횡령·배임 혐의발생’으로 공시 (판단주체가 당해법인, 검찰 또는 감독기관인 경우 모두 해당 공시서식 사용)
- ⑥ 최초 ‘횡령·배임혐의 발생’ 또는 ‘횡령·배임사실 확인’ 공시 이후 다음의 진행사항이 확인되는 당일에 ‘횡령·배임혐의 진행사항’ 공시를 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횡령금액 상환, 고소장 접수·취하, 법원판결(1심, 2심), 항소 제기 등이 있음. 또한, 최초 공시 당시와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사고금액 증감이 있거나 공법인 혐의자가 추가되는 경우 및 최초 ‘횡령·배임 발생 공시’ 당시와 다른 사고이지만 최초공시 시점과 동일한 혐의자에 대한 추가 배임혐의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도 ‘횡령·배임혐의 진행사항’ 공시를 제출

- ⑦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법원의 최종심에서 판결된 사실이 확인될 때 ‘횡령·배임 사실확인’ 공시 서식을 사용하여 공시
- ⑧ 횡령·배임 관련 구속시에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서식으로 공시함

Key-point

- ◆ **(실질심사)** 횡령·배임으로 상장법인이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 전·현직 임원 등은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직원은 자기자본의 5% 이상시 실질심사 대상. 이 경우 개별 공시 건별로 대상이 되는 여부를 판단(다수 공시 금액을 합산하지 않음)
- ◆ **(매매거래정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횡령·배임이 공시되거나 검찰기소가 확인되면 매매거래 정지. 다만, 구속단계라도 횡령·배임이 구체화되어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매매거래정지 가능

23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실발생 [익일공시사항]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7)]

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외부감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손실(미실현분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다.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원자재, 통화, 증권, 이자율 등에 기초하여 성립된 선물·옵션·스왑·선도 기타 이와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상계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 수단을 지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한 손익발생에 대한 공시는 투기거래, 차익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의사항]

- ① 신고금액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 발생손실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재하며, 다수의 거래가 있는 경우 손실·이익을 상계처리



- 손실액을 산정하는 경우 미실현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에 있어 손익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공시
- ②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는 기업회계기준상 높은 위험회피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적용
 - 대상항목과 회피수단간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의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 회피기간 동안 80% ~ 125% (회계법인의 유권해석 증빙서류 필요)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24 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8)]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실을 확인한 때, 이 경우 손상차손 대상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 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 장부가액과 회수가능 가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이라고 한다. 공시대상은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만이 대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계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유의사항]

- ①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금액은 회계장부상 계상되는 채권 중에 매출채권을 제외한 장·단기 대여금, 선급금, 미수금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상차손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함
- ②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손상차손 누계금액이 공시대상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Key-point

- ◆ (실질심사)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으로 상장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개별·별도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25 가장납입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9)]

임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가장납입 혐의를 확인한 때 및 가장납입금액 상환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가장납입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시 실제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상장법인의 가장납입은 투자자 피해, 기업 재무구조 훼손 등을 유발하는 중대한 시장건전성 훼손행위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실의 발생시점에 발견되기 어려우므로 사실의 확인 즉시 공시해야 한다.

[유의사항]

- ① “임원 등”의 범위는 상법상 이사 및 감사,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 지시자 등을 뜻하며, 퇴직한 자를 포함
 - 예를 들어 최대주주, 실질경영자, 미등기임원 등도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이 확인되는 경우 공시의무 발생
- ② 상장법인의 증자대금 등에 대한 가장납입 혐의는 해당 사실의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이므로 사실의 확인 즉시 공시되어야 함
 - 가장납입에 대하여 상장법인이 직접 확인 또는 감독기관(검찰기소)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며,
 - 동 사항과 관련하여 공시의무사항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소송의 제기·신청공시가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 요함

Key-point

◆ **(실질심사)** 가장납입 혐의가 공시로 확인되고, 동 가장납입을 통해 재무관련 상장폐지기준(자본전액잠식 등*)을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6호, 제56조제1항제3호 하목·거목·너목



정기결산절차 개요(12월 결산법인 사례)

일정	공시·신고사항	관련 시장조치	비고
2주간 전	- 주주명부폐쇄기간 신고 - 배당 기준일 결정 공시		
10일전(역력)	- 주식배당 결정 공시	- 매매거래정지(배당비율 20% ↑ 변경시)	- 배당비율 20% 이상 변경시
< 기준일, 결산일 >		- 배당락	- 결산일·기준일 분리가능
주총 6주간 전 (결산이사회)	- 내부결산 공시 (매출·손익 30% ↑ 변동시, 관리종목·상폐사유발생시) - 현금·현물배당 공시 - 별도·개별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 관리종목 지정사유(매출액, 자본잠식 등) 발생시 공시규정상 매매거래 정지 -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상장규정상 매매거래정지 - 재무제표 미제출시 징역(3년 ↓) 또는 벌금(3천만원 ↓)	- 배당금 20% 이상 변경시 - 내부결산 실적 사후심사
주총 4주간 전	- 연결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 재무제표 미제출시 징역(3년 ↓) 또는 벌금(3천만원 ↓)	
주총 2주간 전 (주총소집이사회)	- 주주총회개최 결의 공시 - 주총소집통지·공고 (상법시행령 제31조 각 호의 사항 포함)		
주총 1주간 전 (외부감사인인 감사보고서 수령)	-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 - 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발생시)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실발생 (발생시) - 사업보고서 제출 (상법시행령 제31조제4호)	- 관리종목지정(매출액, 자기자본,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 등)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영업손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시) - 상장폐지(감사의견 등) - 실질심사(대규모손상차손 등)	- 제출 지연시 회계 법인 공문 제출
< 주총일 >	- 정기주총결과 공시 - 임원현황총괄표(주총 익일) 제출	- 정족수 미달로 사외이사 미달, 감사위원회 미구성 사유 발생시 소명자료 제출	- 기준일 3월이내 개최
결산일+90일~7일 [결산일+95일] *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시한	- 사업보고서 제출(감사보고서 첨부) [주주명부요약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업종심사자료 제출(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 외국기업 감사인 선임·미선임 공시 - 사업보고서 연장신고서 제출	-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보고서 미제출, 사외이사 미달, 감사위원회 미구성,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 매출액 미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등) - 투자주의환기종목(외국기업 감사인 선임의무위반) -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부득이 사업보고서 제출연장이 필요한 경우(회계감사인과 사전 협의 필요, 5영업일 이내 연장가능,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연장 사유서 첨부)	
결산일+90일+15일		-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주식분산조건 미달시)	
결산일+90일+30일	외국기업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 정기업종변경 실시 - 외국기업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보고서 미제출, 외국기업 감사인 선임의무위반, 회계처리 기준 변경 등)	(업종변경시기) 12월결산법인: 5월 첫 매매거래일

※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제4호) 개정('21.1.1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개정내용)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주주총회일의 2주 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함. 다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통지 등은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주의사항) 개정 법령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KIND·DART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사실을 공시하여야 함

26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1)]

외부감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다만, 해당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가) 감사의견(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 (나)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자본잔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거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인 사실이 확인된 때
- (라)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하는 때

상장법인의 회계감사인은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사항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중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장법인이 동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때에는 사유발생일 당일에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유형

- ① **(적정)**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 ② **(한정)**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을 경우
- ③ **(부적정)**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의 표명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 또는 불완전성을 공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 ④ **(의견거절)** 감사범위의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 ① 상장법인이 공시하기 전에 거래소가 풍문 등으로 자본잠식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조회공시 요구 시점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음
- ② 공시의무발생일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DART파일 수령일 기준)
 - 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상장법인에 대해 정기주총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관한 공시는 늦어도 정기주총 1주일전까지는 이루어져야 함



- 정기주총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제출
- ③ 정기주총 1주일 전의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 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24.3.25일이 주총일인 경우, '24.3.15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Key-point

- ◆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당일) 사유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있는 경우
- ◆ **(관리종목/ 상장폐지/ 실질심사/ 투자주의 환기종목)**

구 분	유 의 사 항	시장조치사항
감사의견 (별도&연결 기준)	•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연결 감사의견 포함)	상장폐지
매출액 (지주회사 : 연결, 그외 기업 : 별도)	• 30억원 미만	관리종목 지정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분기 3억원/반기 7억원 미만	실질심사 실질심사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연결 기준, 비지배지분 제외)	• 자본잠식률[(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이 50% 이상	관리종목 지정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실질심사
	• 자본잠식률 2년 연속 50% 이상 • 2년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상장폐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연결 기준, 비지배지분 포함)	• 최근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이 있고 최근 사업 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 위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재차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10억원 이상)하는 경우	실질심사
영업손실 (지주회사 : 연결, 그 외 기업: 별도)	• 최근 5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다만, 기술성장 기업의 경우 예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대규모 손상차손 지주회사 : 별도, 그 외 기업: 별도)	•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해당 사업연도 누계)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50% 이상의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실질심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 외부감사법 제2조의2·제2조의3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외국 기업은 외국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토와 관련하여 중요한 취약점 존재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 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27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2)]

회계감사인의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

- (가) 회계감사인의 반기 검토의견·감사의견(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방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감사의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 (나) 최근 반기말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반기검토보고서상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인 경우 기업의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있거나 향후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 반기보고서 제출 연장 가능 여부

- 반기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대해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해 5영업일 이내에서 제출기한 연장 가능
- (주의사항) ① 당해연도에 사업보고서 제출 시 이미 연장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반기보고서 제출 연장 불가
- ② 반기 검토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 제출기한 연장 불가

Key-point

- ◆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있는 경우
- ◆ **(관리종목 지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내 미제출 (정기보고서 미제출)
-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 (2)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3)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28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등 사실발생****[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2)]**

회계감사인의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

(가)·(나) 생략

(다)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또는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 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상 개별·별도 매출액이 일정금액(분기 3억, 반기 7억) 미달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기보고서 제출 이전에 수시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의사항]

- ①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 등 연간 매출액 30억 미달 관련 관리종목지정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실질심사 요건 면제
- ② 상기 실질심사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상장법인의 경우 공시의무 면제
- ③ 수익인식기준 변경에 따라 온기 누적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여 매출액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 후 회계처리 방식으로 분기별 매출액을 재분류했을 경우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공시전에 소명해야 함. 소명자료는 원칙적으로 회계법인 확인서, 감사보고서 주석, 또는 분·반기 보고서 정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함. 분기별 매출액 확인을 위한 회계법인 확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질심사가 진행 될 수 있음에 유의

Key-point

- ◆ **(매매거래정지)** 최근 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미달이 확인되는 경우
 - 분·반기 매출액 미달 등에 대해 품문 등에 의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주권은 매매거래정지 조치됨
- ◆ **(실질심사)** 최근 분기의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반기의 매출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29 손익구조변경(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30%이상) 또는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 발생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3)]

최근 사업연도 결산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결정이 있을 때. 이 경우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항목 및 자산·부채·자본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6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파목부터 너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실적은 기업경영에 대한 중대한 평가지표로 상장법인의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상장법인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받기 전 내부적으로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가결산)을 확정하게 되면 직전사업연도와 비교하여 손익구조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① 상장법인의 공시 이전에 거래소가 풍문 등으로 자본잠식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조회공시 요구시점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음
- ② 결산 잠정재무실적(수정전 재무제표 :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이 전년대비 30%[대규모 법인 15%] 증감사실 발생시 공시
 - 해당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여타항목(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포함) 및 자산, 부채, 자본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
 - 매출액·영업손실·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자본잠식·자기자본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사유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의무 부여
 -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승인(또는 내부결산 확정) 당일에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날에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공고하는 경우 손익구조 변경공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직전사업연도 재무수치는 직전사업연도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 흑자 또는 적자 전환인 경우에도 모두 공시대상에 해당



* 증감비율 = (해당 사업연도 금액 - 직전사업연도금액) ÷ | 직전사업연도 금액 | × 100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하되, 감소의 경우 負(-)표시]

구 분	해당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증감금액	증감비율(%)
A기업 영업이익	2,0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100.0%
B기업 영업이익	-1,000억원	-500억원	-500억원	-100.0%
C기업 영업이익	-1,000억원	500억원	-1,500억원	적자전환
D기업 영업이익	1,000억원	-500억원	1,500억원	흑자전환

* 증감비율 표기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적자전환 또는 흑자전환으로 표기

- ③ 결산이사회 시점에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공시가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만 제출
 - 그러나 내부결산시점에는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변동” 공시를 했으나,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수정사항 확정시점에서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를 별도로 제출
- ④ 결산기를 변경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를 그대로 비교하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공시의무에 해당한다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공시하되 공시서식상 “4.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또는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동 결산기 변경사항에 대해 기재

Key-point

- ◆ **(매매거래정지)**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발생이 최초 확인된 경우
 -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면 상장폐지사유 해소 시까지 정지
- ◆ **(내부결산 사후심사)** 내부결산 재무실적과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간 근거없는 과도한 수치 오차 발생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검토

30 주식배당 결정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4)]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이 경우 기준일 10일전까지 그 예정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배당이란 배당가능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이윤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축적과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라는 상반되는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주권의 액면금액 분할에만 그치는 주식분할과 구분되며, 재원이 배당가능이익이라는 점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인 무상증자와 구별된다.

주식배당은 기업측면에서 자금의 사내유보,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의 시장성 증대, 자본금 증가로 신용도가 제고되며, 투자자측면에서 실질적인 배당금과 주식수 증가로 유동성 증대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신주발행 비용의 부담, 향후 배당압력 가중 등의 단점이 있으며, 이를 악용시 기업지배권 확보의 수단, 자본잠식, 주가조작에 의한 투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유의사항]

- ① 상장법인은 주식배당 예정내용을 주식배당의 기준일 10일 전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 후 당일 공시하며, 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배당락조치 실시
- ② 주식배당의 결정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하여 최종 확정되며, 승인과정에서 기 공시된 주식배당 결의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 공시 사항을 정정신고(취소포함)하여야 함
- ③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상장법인은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상인 경우 이익배당 총액을 전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165의13①)
 - 해당 주식배당 결정공시 이후 동 법인이 현금배당 결의를 하는 경우 배당총액이 이익배당총액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Key-point

- ◆ (매매거래정지) 주식배당비율 20% 이상인 주식배당을 결정한 때
- ◆ (공시변경) 주식배당비율의 20% 이상 변경시

**31 현금·현물배당 결정 등****[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5)]**

현금·현물배당(분기·중간배당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의를 한 때 및 그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결정한 때(정관에서 특정한 일자를 배당기준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배당신고는 세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하며 액면배당률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현금(현물)배당이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현금(현물·상품 등 비화폐성 자산)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는 배당을 위한 기준시점에 따라 분기·중간 및 결산배당으로 구분된다.

상장법인의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배당가능이익은 감사인의 감사 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의사항]

① 공시시점은 결산배당과 분기·중간배당이 상이

- **(결산배당)** 결산배당을 위해 정관에서 특정한 일자를 배당기준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결산배당을 위한 기준일(또는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한 경우 이를 공시하고, 이후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등에서 현금·현물 배당에 관한 구체적 결의가 있는 때에 정정공시를 통해 확정사실 공시

- **(분기 및 중간배당)** 분기 및 중간배당을 위한 기준일(또는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공시하고, 이후 이사회 결의* 등으로 구체적인 배당금액 등을 확정시 현금·현물배당 결정사실을 공시하여야 함

* 분기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함

②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의 경우 정관상 근거가 필요

- 분기배당(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9월말 기준 주주에게 배당

-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 :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일을 기준으로 주주에게 배당

- ③ 시가배당률은 배당기준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 2매매 거래일 전일(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부터 과거 1주일간의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 가격(종가)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 배당금(현물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한 시가배당률을 말함
- ※ 시가배당률 = (주당 배당금 ÷ 기산일부터 과거 1주일간 증가산술평균) × 100
- ④ 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1주당 배당금 및 시가배당률을 산정하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차등 배당사항을 기재
- ⑤ 상장법인이 현금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 있음. 결산배당에 있어 현금 배당 또는 현물배당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결정한 때 신고한다. 다만, 정관에서 특정한 일자를 배당기준일로 정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 ⑥ 공시제출시 이사회 의사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첨부하고, 배당이행 여부는 이체 증명서 등 첨부한다

Key-point

◆ (공시변경) 주당배당금의 20% 이상 변경 시

참고 현금배당 지급시기

구분	배당 결의 주체	배당금 지급시기
결산배당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 재무제표 승인 권한 보유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3,6,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 중간 및 분기배당은 지급시기를 정관에 정한 경우 그에 따름(상법 §464의2, 자본시장법 §165의12)



32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6)]

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 위반행위(이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 (나)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사실이 확인된 때
- (다) 임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는 상장법인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로 인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상장법인은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당일에 공시하여야 한다.

Key-point

- ◆ **(매매거래정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
- ◆ **(실질심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①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검찰의 기소내용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법인에 대하여 검찰 고발·통보(전·현직 임원에 대한 경우 포함)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③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3)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변경된 때. 이 경우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최대주주란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을 말한다.

[유의사항]

- ① 최대주주 변경 공시의무 발생시점
 - (사유발생 기준) 최대주주가 장내매매를 통해 소유주식을 처분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거래일,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의 경우 대금 지급(수량)일과 주권인도(인수)일 중 빠른 시점, 최대주주의 분할·합병 등이 있을 경우 그 분할·합병 등의 등기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 (변경확인 기준) 지분관련 공시(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등)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분 공시 제출일이 변경기준일이 됨
- ②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이후 양수도 계약이행(잔금 납부 및 주식인수도 등)으로 계약 종료 시 최대주주변경 공시
 - 양수도 계약일과 계약이행이 같은 날인 경우 최대주주 변경만 공시
- ③ 특수관계인 간에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시의무 발생
 -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여 아들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증여일에 최대주주 변경 공시의무 발생
- ④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고장 등을 첨부하여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하며, 추후 확정시 {정정}공시 하면 됨

* 변경 후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에는 “-”으로 표기하며,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에는 추후 확정 시 재공시할 예정임을 기재함



- ⑤ 무의결권 우선주나 CB, BW의 경우 의결권이 없으므로 최대주주를 판단할 때 소유 지분에 포함하지 않음
- ⑥ 공시규정에서는 최대주주인 본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소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자를 최대주주로 봄
- ⑦ 최대주주 변경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이 있는지 확인 필요
- ⑧ 최대주주변경 관련 첨부서류

가. 공통 필수서류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잔고 증명서(신규취득 외 기존 보유주식 확인)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확인서
- 주식양수도에 따른 경우 입금증, 계좌대체내역, 계약서(양수도계약공시 생략 시)등

나. 새로운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 조합일 경우 추가서류

- 상장법인 인수관련 확인서(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6호) 및 부속서류
 - 1) 법인의 경우 매출증빙
 - * 적정건전 감사보고서, 세무당국 발급 납세증명(당시 제출한 재무제표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납부 내역 증명포함) 또는 회계법인의 매출액 확인서(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7호)
 - 2) 변경 후 최대주주가 단체 및 조합인 경우 재무/대표자 등 증빙서류
 - * 대표자(업무집행조합원) 및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등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전년도 재무제표, 법인 등기부, 조합원(주주) 명부, 조합규약 등

다. 새로운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최근 1년내 매출액 3억원 미만)일 경우 추가서류

- 의무보유확약서(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4호)
- 의무보유 청구내역(신주), 의무보유증명원(신주 및 구주)
- 구주 및 신주 포함 모든 의무보유 조치 종료 후 “최대주주 변경 관련 의무보유내역(명목회사· 조합 등)” 공시 제출 필요 (첨부: 의무보유증명서)

Key-point

- ◆ (투자주의환기종목) 기한 내 의무보유 대상주식 조치 미이행시
- ◆ (실질심사)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최대주주 변경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다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신주의 발행을 통하여 최대주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 ◆ (우회상장) 최대주주 변경시 우회상장 해당여부 등 확인 필요

참고 최대주주 등의 개념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가목)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나목)
특수관계인	<p><최대주주 본인이 개인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본인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다만, 독립경영자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 등은 특수관계인에서 제외 가능)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p><최대주주 본인이 법인 등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특별관계자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법시행령 제141조)

2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6)]

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새로이 편입 또는 탈퇴된 때

【 지주회사, 자회사 등 개요 】

지주회사	<p>(일반지주회사)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벤처지주회사 3천억원) 이상인 회사 (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p> <p>(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p> <p>※ 주된 사업 :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공정거래법시행령 §2②,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2④)</p>
자회사	<p>지주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공정거래법 제2조제8호,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p> <p>※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공정거래법시행령 §3,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3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동일인이 다른 주요주주와의 계약·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임면·임원의 100분의 50 이상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간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거래·채무보증 등 관계가 있는 경우



**지배/
종속회사**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주식회사를 지배회사, 다른 회사를 종속회사라 하며, 20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조)

※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보며,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 결정,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 임명·해임, 이사회나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 행사의 경우도 지배하는 것으로 규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13)

[유의사항]

- ① 최초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회신’을 접수하는 시점에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으로 지주회사의 전환사실 및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세부 내역을 공시
- ②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조제2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편입(탈퇴)된 때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공시

3 상법상 주식교환·주식이전 [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6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7)]

「상법」 제3편제4장제2절제2관 및 제3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을 때

주식교환이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기 설립된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는 방법을 말한다(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이란 완전 자회사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신규로 설립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360조의15).

Key-point

- ◆ **(매매거래정지)** 주식교환·주식이전 결정을 공시한 때
 - 우회상장 해당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관련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우회상장 해당여부 통지일까지 매매거래정지
- ◆ **(우회상장)** 주식교환·주식이전으로 우회상장 해당여부 등 확인 필요

4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분할합병 등 [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6·7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8)]

「상법」 제374조,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2, 제530조의12 및 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결의가 있을 때

영업양수도, 영업임대차,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은 해당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영업 활동 지속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기업의 영업활동 및 재산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법인의 주가에 큰 변동을 야기하는 등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중대한 투자판단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영업의 양수도란 양수(도)인이 양도(수)인에게 그 영업의 경영자 지위에 있게 할 목적으로 영업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채권계약을 말하며, 특히 영업양수도에 의하여 이전되는 재산에서는 단순한 물건 또는 권리의무 뿐만 아니라 거래처, 영업상의 비결, 경영조직 등의 사실관계도 포함한다.(상법 제37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1호~제4호)

상법 (제37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 제1호~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양도 •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 표의 부채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

경영위임이란 기업경영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계약행위로 대외적으로 위임자가 영업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임대차란 임대인이 소유자로서 임대료를 받고 임차인은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여 손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계약행위를 말한다(상법 제374조).

합병이란 법적 절차에 따른 회사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되고, 그 재산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존속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동시에 그 소멸법인의 주주가 존속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효과를 갖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522조).

**참고**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

- **(간이합병)** 1) 피흡수합병회사의 총 주주의 동기가 있거나 2)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흡수 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흡수합병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상법 제527조의2)
- **(소규모합병)** 흡수합병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흡수합병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상법 제527조의3)

회사분할이란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적인 법적 행위를 말한다. 회사분할은 분할된 회사의 형태에 따라 단순분할, 분할합병, 신설 및 분할합병으로 분류되며, 분할 회사의 지분소유 방법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 인적분할이며,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를 물적분할이라고 한다.(상법 제530조의2, 제530조의12)

* 인적분할시에는 별도의 감사결정 공시는 받지 않음

Key-point

- ◆ **(매매거래정지)** 합병(간이합병, 소규모합병 제외), 분할(물적분할 제외), 영업양수·도 등 결정을 공시한 때
 - 우회상장 해당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관련 확인서 제출한 경우 우회상장 해당여부 통지일까지 매매 거래정지
- ◆ **(우회상장)** 합병(간이합병, 소규모합병 제외), 영업양수 시 우회상장 해당여부 등 확인 필요
- ◆ **(실질심사)** 주된 영업부문을 양도 또는 분할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해당 시 매매 거래 정지대상)
 - * 주된 영업의 정지 : 매출액 기준으로 함(3년간 개별·별도 매출현황 필요)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 중인 경우 제외
 - ** 인적분할은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아목 추가검토
- ◆ **(공시변경)** ① 영업양수·도 금액의 50% 이상 변경시
② 합병, 분할·분할합병 비율의 20%이상 변경시

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9)]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 등의 해제·취소 등이 발생한 때

- (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등(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 포함) 또는 임원의 임면, 정관 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 등. 이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나)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 등(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최대주주 변경 이전에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임원의 임명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공시의무 대상이다.

[유의사항]

- 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계약 등에 대한 공시 후 계약내용 변동, 경영지배인 선임, 최대주주 변경 등 확인 필요(☞ 해당공시 이후 연계공시 등은 최대주주 변경 공시 참조)
- ② 최대주주(본인만)가 주식 담보 계약체결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공시 대상)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담보권 실행시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또는 해당 계약의 해제·취소 등 발생시

구 분	내 용
최대주주 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시 ①본인(특수관계인 포함)의 보유주식수가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보다 적어지거나 ②본인·특수관계인 내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 회사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분공시, 주주명부 등을 통해 가장 최근의 지분현황 등으로 판단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계약 체결, 기존계약의 연장계약(계약내용 변경 등 포함) 체결 등
해제·취소 등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조기상환, 기간 만료(차입금 상환), 무효 등을 포함
복수의 주식담보계약 존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채권자와 다수 계약 체결 또는 복수 채권자와 각각 계약 체결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모두 합산하고, 합산된 주식의 모두 처분되면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



- (공시 시기) 주식담보계약 “체결일 당일”이며, 이번 계약을 포함하여 주식담보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상기 공시대상*에 해당되면 해당 주식담보계약의 체결일 당일에 공시

*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모두 합산하고, 합산된 주식이 모두 처분되면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 (공시 방법) ① 신규 공시, ② 정정 공시, ③ 해제·취소 공시로 구분

제출 유형	내 용
신규 공시	① '15.9.7일 이후 신규로 주식담보계약 체결 ② '15.9.7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연장·계약내용 변경 등 → 담보제공분이 모두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 변경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정 공시	① 기 공시된 계약의 연장·계약내용 변경(반대매매 포함) 등 ② 기 공시된 계약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채권자와 주식담보계약 체결 ③ 기 공시된 계약 중 일부 계약해소(계약의 해제·해지, 중도상환, 기간 만료, 무효·취소 등) 등 → 담보제공분이 모두 실행될 경우 여전히 최대주주 변경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제·취소 공시	• 기공시한 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 해소(계약의 해제·해지, 중도상환, 기간만료, 반대매매 실행, 무효·취소 등) → 담보제공분이 모두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 변경가능성이 없는 경우

- (합산) 여러 건의 주식담보계약 합산 시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별로 주요 계약내용을 ‘개별 담보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에 기재

Key-point

- ◆ (실질심사)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또는 경영권 변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의 체결이 공시되는 경우 실질심사 대상
- ◆ (우회상장)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또는 주식의 이전이 있는 경영권 변경인 경우에는 우회상장 해당여부 등 확인 필요

상장법인 존립에 관한 사항

6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금지 [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1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상장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어음교환소가 참가 은행으로 하여금 당좌예금거래를 불허하여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에는 사유발생일 당일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도란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이 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발행인이 일정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즉 만기가 되어 돌아온 어음이나 수표는 정상적인 경우 발행인이 당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결제해야 하는데 이를 결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단순 어음뿐만 아니라 수표 및 유가증권원리금영수증 등과 같은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증서 17개 포함 (어음교환업무규약 제3조제2호 및 동 규약 시행세칙 제39조)

** ① 예금 또는 지급자금 부족 ② 무거래 ③ 형식불비(법정요건 누락, 인감불선명, 금액·발행일자 오기, 배서 불비 등) ④ 안내서 미착 ⑤ 사고신고서접수(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⑥ 위·변조 ⑦ 제시기간 경과·미도래 ⑧ 인감서명상이 ⑨ 지급지상위 ⑩ 법적 지급제한 ⑪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 초과(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

부도 발생시 지급은행은 부도사실을 어음 제시은행에 통보하고, 관련내역을 어음교환소*에 전송하여 참가은행** 전체에 고지한다.

* 어음을 교환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의미하나, 별도의 독립된 기구나 법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음교환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결제원이 운영

** 어음교환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특별은행

은행거래정지처분은 은행으로부터 신고된 부도어음내역 중 부도어음대금의 미납 등 거래 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되어 어음교환소가 해당 어음의 발행인에 대해 당좌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①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로서 은행으로부터 부도어음대금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 ② 무거래로 인한 부도가 있을 때(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 ③ 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부도로서 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의 입금 통보가 없을 때(부도일로부터 제3영업일) ④ 1년간 4회 이상 예금부족, 사고신고서접수 또는 지급정지 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어음의 부도가 있을 때(부도일의 익영업일) ⑤ 위·변조로 인한 어음 부도의 경우 위·변조 증빙자료 제출확인서를



교환소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각 제출마감일의 익영업일) ⑥ 1년간 2회 이상 “한도초과”로 인한 부도가 있을 때(부도일의 익영업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

[유의사항]

- ① 어음·수표의 부도 발생시 공시의무가 발생하나, 상장폐지 대상인 부도는 ‘최종 부도’*임에 유의
 - * 어음이 지급제시된 후 어음교환소에서 교환되는 날에 결제되지 않는 뒤(“1차부도”) 그 익일에도 결제되지 않는 경우로 거래정지조치 수반되는 경우 의미
 - ** 회생정리절차기업의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제한 부도의 경우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제89조)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사유(최종부도) 미해당
- ② 상장법인을 대신한 거래소의 공시(공시규정 제39조)
 - 거래소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어음교환소, 거래은행 등)에 요청하여 확인한 발행 어음·수표의 부도 및 은행거래정지 등의 사실을 주권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제392조제1항에 따라 어음·수표의 부도 및 은행거래정지 등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도 거래소가 대신하여 공시할 수 있음

Key-point

- ◆ (매매거래정지) 해당 사실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에 대해 풍문 등에 의한 조화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주권은 매매거래정지 조치됨
- ◆ (상장폐지사유) 발행한 어음·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 ⇒ 매매거래정지 조치 후 상장폐지절차 진행

7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등 [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3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개시신청 기각
- (나) 회생절차 개시결정·개시결정 취소
- (다)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 (라) 회생절차 종결신청·종결결정·폐지신청·폐지결정
- (마) 파산신청·파산신청기각·파산선고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포함)란 재정적 궁핍 등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생의 가망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사업의 정리·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 채무가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에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의미하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또는 법원사무관 등을 간이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파산은 채무자가 총채권자에게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상태에 대처하는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전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이다.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 결정은 회사의 존폐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그 개시신청 자체만으로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다. 상장법인은 동 사항의 신청 또는 법원의 결정 사실을 확인한 때 등의 경우 사유발생일 당일에 공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① 상장법인 본인, 최대주주, 주주 또는 채권자인 상장법인 임원 등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일 또는 신청일 당일 공시의무가 발생하나,
 - 상장법인과 관계없는 제3자인 채권자 또는 주주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한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한 당일(신청서 부분 접수일 등) 공시



- ② 간이회생절차제도 신설('15.7월)에 따라 회생절차 뿐만 아니라 간이 회생절차 관련 사항 발생 시에도 공시
- ③ 상장법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 및 대출 원리금 연체 사실 발생 확인 필요
- ④ 파산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이나, 악의적인 파산신청으로 인한 상장법인과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Key-point

- ◆ **(매매거래정지)** 해당 사실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회생절차 개시 결정시 매매거래정지 해제)
 - 파산신청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 매매거래정지
 -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등에 대해 풍문 등에 의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주권은 매매거래정지 조치됨
 -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거래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등은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
- ◆ **(실질심사)**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안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 등이 있을 때 실질심사 대상
 - 다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는 제외함

8 해산사유 발생 [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4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3)]

「상법」 제517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 즉 회사가 영업 활동을 정지하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목적의 범위(청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해산사유로는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해산판결, 휴면회사의 해산 의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합병이나 파산을 원인으로 하는 해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회사가 존속하게

된다.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존속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산은 회사의 존립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회사의 계속을 전제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유의사항]

- ①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결의 등의 경우는 해당 수시공시 의무사항과 중복되므로 해당 공시로 같음함
- ② 상장법인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채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 원리금 연체 사실 발생 확인 필요

Key-point

- ◆ **(매매거래정지)** 해당 사실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 해산사유에 대해 풍문등에 의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주권은 매매거래정지 조치됨
- ◆ **(상장폐지사유)** 해산사유 발생시 매매거래정지 조치 후 상장폐지절차 진행

**9 은행·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 [주요사항보고서(법시행령 §171③1호)]****[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4)]**

코스닥시장상장방법인이 거래은행 또는 금융채권자에 경영관리를 신청·신청취하하거나 거래은행 또는 금융채권자가 법인의 경영관리를 개시, 중단 또는 해제한 사실을 확인한 때

거래은행 또는 금융채권자의 경영관리(또는 공동관리)는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로 나누어진다.

-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 금융채권자는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자구 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을 거쳐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금융채권자협의회 의 소집 및 운영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하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에 대하여 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 **(주채권은행의 관리)**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 기업으로부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자구 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부실징후기업)**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관리절차는 아니지만 거래은행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Key-point

- ◆ **(매매거래정지)** 해당 사실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다만, 그 내용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10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익일공시사항]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5)]

주채권은행 또는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법인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체결”을 하게 된 때 공시하여야 한다.

*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여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체결하는 약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또는 판결·결정 관련 사항

〈 소송 관련 공통 유의사항 〉

- ① 소송이란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私人間) 또는 국가와 사인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는 절차를 말함
 - 소송사건, 비송사건(가처분신청 등) 등을 모두 포함
 - * (사례) 상장주권의 발행효력에 관한 소송 외에 무효소송의 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합병무효소송 외에 합병으로 발행할 신주의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등도 포함
 - 특허권 침해, 공해발생 등으로 야기되는 손해배상청구 등 포함
- ② 소송의 제기·신청 또는 소송의 판결·결정사실을 상장법인이 확인한 날 당일 공시의무가 발생
- ③ 상장법인이 “원고”가 아닌 “피고”인 소송에 한하여 공시의무 발생. 다만, 상장법인이 “원고”여서 공시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도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이 새로이 “피고”가 되어 공시의무가 발생
 - 상장법인이 패소하여 결과 공시를 한 다음 상장법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기 공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상장법인이 원고임에도 항소 제기사실을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로 공시



11 상장증권 등에 관한 소송 등 [주요사항보고서(법시행령 §171③2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다목(1)]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

소송이란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私人間) 또는 국가와 사인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허권 침해, 공해 발생 등으로 야기되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공시규정에서 말하는 “소송 등”이란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상장증권 등에 관한 소송은 상장 또는 상장 대상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권, 주식관련 사채 등의 발행 효력에 관한 소송 및 해당 증권의 위·변조에 대한 소송이 공시대상이다. 증권의 권리변경에 관한 소송은 해당 증권에 부여된 의결권, 전환청구권 등 주권, 주식관련 사채 본연의 권리변경에 관한 소송으로 의결권이 부여된 우선주를 무의결권으로 변경하거나, 우선배당권이 부여된 주권에 우선 배당권을 소멸시키는 등의 권리변경을 말한다.

[유의사항]

- ① 증권은 주권, 주식관련사채를 포함하는 사채권(CB, BW 등), 신주인수권 등이 포함됨
- ②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신주발행무효소송 등과 같이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효력에 관한 소송(가처분 포함)이 제기되는 경우, 거래소는 법원의 확정 판결시까지 동 증권의 상장을 유예(거래안전 저해소지 낮은 경우 제외)할 수 있음(상장규정 제46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1조제1항)
- ③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 서식과 거래소 서식이 하나로 합쳐서 주요사항 보고서 서식으로 한번만 제출(DART로 제출하되 거래소 승인 필요)

12 청구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소송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다목(2)]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이상인 소송(비송사건을 포함한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영위해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송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기업의 존폐 문제와 연관될 수도 있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공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① 소송 제기 당시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대기업은 3%) 이상이 되어 공시한 경우에는 이후 해당 청구금액이 공시대상금액 미만으로 되더라도 후속공시(판결·결정 등) 필요
 - 청구금액은 원칙적으로 전체를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판별하되, 각 피고별 부담할 금액이 소장 또는 결정문에 구분 표기되어 있다면 상장법인이 부담해야할 소송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의무여부 판별 가능
- ② 소송 제기 당시에는 공시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공시의무금액 이상이 되었다면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 자기자본 변동 등) 동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공시의무가 발생
- ③ 청구소송 등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채무이행 등 회사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 비송사건을 포함
- ④ 채권자 압류신청의 법원 인용 시에는 ‘소송 등의 판결·결정’만 공시
 - 압류신청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경우 채무자가 압류대상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후 동 사실을 상장법인에 통보

- 비송사건은 민사소송에서 공익에 관한 것이나 신속한 결정을 원하는 것이어서 정규소송에 의하지 않는 사건을 말함
 - 민사비송사건 : 법인(法人), 신탁(信託), 재판상의 대위(代位), 보존·공탁·보관과 감정, 법인의 등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등에 관한 사건이 있음
 - 상사비송사건 : 회사와 경매, 사채(社債), 회사의 청산(清算), 상업등기(商業登記) 등에 관한 사건이 있고, 그밖에 과태료에 관한 사건이 있음
-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와 가사비송절차 등은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측면을 아울러 갖고 있음. 형식적 형성소송(形成訴訟)은 실질적으로는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소송사건으로 처리됨



13 경영권분쟁 등 관련 소송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다목(4)]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의 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분쟁 소송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상장법인이 아니라 상장법인의 임원인 경우도 존재한다. 그 외 상장법인 임원 개인에게 제기된 개인적인 소송은 공시대상이 아니다.

[유의사항]

- ①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은 상장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현직 임원, 최대주주 등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 포함
- ② 경영권분쟁중 기업의 CB, BW 발행(사모)이 제한됨
- ③ 소송 목적이 임원의 선·해임 및 직무집행에 관한 경우에 한해 공시의무 부과
- 검사인 선임, 신청 목적이 임원 선임·해임 및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장부열람등 사가처분 등은 공시대상이 아님

1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다목(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피해자 집단 중에서 대표자가 나서서 집단구성원 전원의 청구총액을 일괄하여 제소함으로써 한 번에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말한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제1호).

집단소송은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고 해당 소송이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만 허용된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고도의 법률지식과 소송기술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소송수행을 강제하고 있으며,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법원은 소제기 사실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후 법원은 소송요건 등을 검토하여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허가가 결정된 경우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집단소송은 여타 소송과 달리 소취하·화해·청구 포기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없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유의사항]

- ① 상기 소송의 경우 소송 제기(상소를 포함한다)·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 결정, 소취하(상소취하를 포함한다)·화해·청구포기(상소권포기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 공시하여야 함
 - 증권 관련 집단소송 공시는 최초 공시에 한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해당 공시 이후의 진행사항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 등에 대한 공시는 매매거래정지대상이 아님
 - * (사례) 직전심급의 판결·결정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 ②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에 따른 소의 제기·허가신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과 관련한 사항, 기타 동 관련법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 받은 사항은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할 수 있음

Key-point

◆ (매매거래정지) 해당 사실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 일반적 소송 진행절차 】

소의 제기	소를 제기하려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을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소장 심사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어 사무분배에 따라 사건이 배당되면 담당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함
소장의 송달	재판장은 소장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하여야 함 * 소장각하 : 소장에 당사자 자격이 없거나 청구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장의 흠결로 보아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하고 이를 원고에게 송달함
소송의 진행	소장의 송달과 동시에 재판장은 소송의 심리를 개시하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자기주장을 구술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원고는 준비서면, 피고는 답변서로 제출하기도 하며, 이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등이 행해짐
종국판결	법원이 소송의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종국판결을 함

주주총회 관한 사항

15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주주총회결과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라목]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있을 때, 이 경우 사업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의 선임·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란 주주가 모여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기관으로서 결산기마다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주로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의 승인,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지며, 임시총회는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 회사경영상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시 소집된다. 기업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소집장소 등에 관하여 상법의 정함에 따라야 한다.

[유의사항]

- ① 배당사항, 감사 등 기 공시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기 공시된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기 공시사항의 정정공시(취소포함) 필요
- ②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첨부
 - ※ 상법상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사 외의 2개 이상 다른 회사(외부감사법 대상법인 포함)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일 경우 사외이사직 상실

- ③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므로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은 금번 정기주총에 상근감사 선임의 건을 반드시 상정(이사 선임의 건과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
- ④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등을 통해 자격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선임하여야 함
- ⑤ 주주총회 안건 추가 또는 변경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 시한인 주총 2주간 전(D-15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이사회 결의시점에 기존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제출
- ⑥ 해당공시 이후 연계공시 등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안내공시 : 권리주주 확정
 - 주주총회결과 공시
 - 대표이사 변경 공시
 - 본점소재지 변경, 상호변경, 결산기 변경 공시
 - 임원현황총괄표, 주주명부요약표
 - * 사외이사 선임·해임 중도 퇴임에 관한 신고 : 금융감독원 DART 신고사항
 - 변경상장신청 : 변경상장일 5일전에 신청
- ⑦ 연회하는 경우 기타 투자판단사항에 연회일시/연회장소를 기재하고, 향후 연회일자에 결과공시를 정정

Key-point

- ◆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그 수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참고 1> 상법 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① 정관에 정함이 있고, ②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며, ③감사(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 가능
-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함
-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현금·현물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승인



<참고 2>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관련 공시요령

공시 항목		공시 방법
주주총회 소집결의	감사보고서 제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총안건에 재무제표 보고의 건으로 기재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일 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할 예정임을 기재
	감사보고서 제출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총안건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으로 기재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예정일 기재(미확정시 기재 불필요)
정기주주총회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총안건에 재무제표 보고의 건으로 기재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일 기재

3.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포괄조항에 의한 공시사항 제외)

■ 공시대상 및 기준

종속회사(비상장 또는 상장)의 경영사항이 연결실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지배회사(상장)에 공시의무를 부여*하되, 공시대상은 현행 주요사항보고서 항목으로 한정한다(공시규정 제6조의2). 공정공시 및 조회공시 또한 종속회사의 신고의무사항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 종속회사 공시와 자회사 공시 중복 ➡ 종속회사 공시만 수행
- 종속회사 공시와 10%이상 출자·담보제공법인 공시 중복 ➡ 종속회사 공시만 수행
- 종속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공시 + 종속회사 자체 공시

■ 공시시한

해외 종속회사 비중 및 상장법인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국내 종속회사의 존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익일공시로 운영한다. 공시시한은 이사회결의 당시 한국시간 및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국내 종속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다음 사항은 당일 공시
- ① 부도발생·당좌거래정지, ② 회생절차 개시 신청, ③ 해산사유 발생 시

참고 용어 정의

지배회사	외부감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지배회사)
종속회사	외부감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종속회사)
주요종속회사	종속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 지배·종속의 관계 :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K-IFRS) 등에 따라 판단(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사항 및 기준】

연결종속회사 발생사실 (공시대상항목)	공 시 기 준	
	종속회사 관련 판단요소	지배회사 관련 제출기준
영업활동의 정지	정지된 해당 영업부문의 매출액 규모가	연결 매출액의 10%이상인 경우
자본증가(감소) 결의	자본의 증가(감소) 금액이	연결 자기자본의 10%이상인 경우
EB 발행	지배회사에 대한 EB 발행시	지배회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요한 영업양수도 (i , ii , iii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양수도 대상 영업부문의 자산 금액이	연결 자산의 10%이상인 경우
	ii) 양수도 대상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연결 매출액의 10%이상인 경우
	iii)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부채 금액이	연결 부채의 10%이상인 경우
중요한 자산양수도	자산양수도 해당 가액이	연결 자산의 10%이상인 경우
중요한 자산의 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계약 등 체결	‘중요한 자산의 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규모가 연결 자산의 10%이상인 경우
주식교환·이전	주식교환 등이 결정된 종속회사 자산 규모가	연결 자산의 10% 이상인 경우
분할·합병·분할합병 등 (물적분할 포함)	합병 등이 발생한 종속회사 자산 규모가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매매거래 정지 조치	해외시장 상장폐지 등 사유가 발생한 종속회사의 자산 규모가	
부도발생 및 당좌거래 정지	부도 등이 발생한 종속회사 자산 규모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종속회사 자산 규모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조치	종속회사 자산 규모가	
해산사유 발생	해산되는 종속회사의 자산 규모가	
증권에 대한 중대한 소송제기	소송관련 청구금액이	

※ '15.9.7부터 일괄적으로 10% 기준 적용

4.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포괄조항에 의한 공시사항 포함)

■ 공시대상 및 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자회사가 주요경영사항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 또는 익일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지주회사 공시로 처리 가능한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자회사가 상장법인 경우 거래소에 연계공시를 신청하면 자회사만 공시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신고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주식분할·주식병합, 액면·무액면 전환, 최대주주 변경, 주주총회소집결의·주주총회결과

■ 공시기준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 범위 기준은 최근 사업연도말 지주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자회사 주식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나, 자회사의 부도·해산·회사정리절차 신청 등의 경우에는 모든 자회사를 공시대상으로 한다.

자회사 주식가액은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며, 사업연도 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회사 비중*	당일공시	익일공시
10% 이상	부도/당좌거래정지, 회사정리절차, 해산 등	그 외 공시사항
10% 미만	-	부도/당좌거래정지 등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별도재무제표 기준)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상장법인의 자회사 경영사항은 공시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시점부터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의무사항은 공시대상이 아니며, 기존에 공시했던 부분이라도 제외 시점 이후 자회사에서 발생한 내용은 공시의무 없음



5.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주의 공시

(1)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주의 공시 개념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는 열거된 공시의무항목 외에 “해당 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규정은 주요 경영사항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괄조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중요정보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시규정 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공시규정 제6조제4항)하고 있다.

- 첫째, **연관성 요건**으로 해당 정보가 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중요성 요건**으로 해당 정보가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구체성 요건**으로 해당 정보가 구체적인 사실 또는 결정이어야 한다.

※ 포괄조항에 따른 공시의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시규정 제26조 및 세칙 제13조에 따른 자율 공시 항목은 판단대상에서 제외됨

(2) 포괄주의 공시 도입목적

우리나라는 그동안 규정에 열거된 공시항목에 대해서만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은 상장법인에게 공시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하여 상장법인 입장에서 손쉽게 공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열거주의 공시체계는 공시의무사항을 규정에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상장법인 입장에서는 공시여부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열거된 항목은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Material Information)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공시가 누락되어 투자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문제도 발생한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운영 중으로, 중요정보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여부 판단은 1차적으로 상장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정보의 중요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12월 수시공시항목 중 포괄조항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시규정을 개정('16.5.2일 시행) 하였다.

참고 포괄주의 공시체계 개관

- 수시공시 운영구조와 관련하여 공시의무를 규정하는 방식 기준으로 거래소가 공시항목을 정하는 '열거주의' 및 중요정보의 개념만 정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포괄주의'로 구분

열거주의	중요정보를 거래소가 사전에 정하여 공시규정에 열거
-------------	-----------------------------

포괄주의	중요정보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중요정보 해당 여부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판단
-------------	---

- 현재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주요거래소는 포괄주의 공시체계로 운영 중이며,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도 포괄조항을 명문 규정화하여 열거주의 공시체계의 한계를 보완

〈 주요 국가별 수시공시 규율체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홍콩	호주	일본
공시체계			포괄주의			열거주의

- 포괄주의 공시체계에서는 “중요정보”의 개념이 핵심적인 바, 국가마다 일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규정

〈 각 국가별 중요정보의 개념 〉

미국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보
영국	주가민감정보
독일	상장법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내부정보
호주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정보
홍콩	주가민감정보

- 포괄주의 공시체계 하에서는 “중요정보” 여부를 1차적으로 상장법인이 판단하고 있으며, 거래소 등은 중요 정보 판단과 관련한 상장법인의 해석·적용상 혼란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공



(3) 포괄주의 공시 시한

■ 포괄주의 공시는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공시

상장법인은 사실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6조제1항).

* 당일 18:00까지. 다만, 불기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익일 07:50까지

(4) 포괄주의 공시 세부내용

■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의 주요 내용(요약) ■

구 분	주요 내용								
① 연관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보가 영업 및 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과 관련성이 있을 것 ※ 제외 : 시장정보(경제·금리·산업정책 등), 테마주 여부 등 								
② 중요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보가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을 것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margin: 0;">【 중요성의 구체적 기준 】</p> <p>① 공시의무비율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 확정적 수치로 산정 가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영업 및 생산활동 등에 관한 사항</th> <th style="text-align: center;">매출액의 1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재무 구조</td> <td style="text-align: center;">발행증권, 채권·채무, 손익, 결산 등에 관한 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자기자본의 10%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투자활동 등에 관한 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의 10% 이상</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5px;">* 대규모법인(자산총액 2조원 이상) : 5%</p> <p style="margin-top: 5px;">※ 단,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제외</p> <p>② 공시의무비율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 확정적 수치로 산정 곤란)</p> <p style="margin-left: 20px;">- 해당 기업의 특성(규모, 현황, 업종 등)을 고려시,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p> </div>	영업 및 생산활동 등에 관한 사항		매출액의 10% 이상	재무 구조	발행증권, 채권·채무, 손익, 결산 등에 관한 사항	자기자본의 10% 이상	투자활동 등에 관한 사항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의 10% 이상
영업 및 생산활동 등에 관한 사항		매출액의 10% 이상							
재무 구조	발행증권, 채권·채무, 손익, 결산 등에 관한 사항	자기자본의 10% 이상							
	투자활동 등에 관한 사항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의 10% 이상							
③ 구체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보가 구체적인 사실 또는 결정일 것 ※ 제외 : 실현가능성 및 구속력 낮은 MOU 등 								

※ 자율공시는 판단대상에서 제외

1 연관성: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사실 또는 결정이 해당 상장법인의 ① 영업 및 생산활동, ② 재무구조 또는 ③ 기업경영활동 등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사실 또는 결정이 현행 공시규정상 공시의무항목의 분류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 수시공시 중 열거항목 분류기준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공시항목)
영업·생산활동	-	영업정지, 거래중단, 단일판매·공급계약, 제품수거·파기, 생산중단
재무구조	발행증권	증자·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
	투자활동	신규시설투자, 유형자산 취득·처분, 타법인 출자 등
	채권·채무	단기차입금 증가, 채무인수·면제, 담보제공 등
	손익	재해발생, 벌금 등 부과, 횡령·배임, 파생상품 손실
	결산	손익구조변동, 감사보고서 제출, 배당, 분식회계 등
기업경영활동	지배구조	최대주주 변경, 주식교환·이전, 합병·영업양수도 등
	존립	부도, 회생절차, 해산 등, 채권은행 공동관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등
	소송	발행효력, 손해배상, 경영권 분쟁, 증권집단소송 등
	-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이는 수시공시 열거항목의 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열거된 공시의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하며, 다음의 사항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분류	중분류	준하는 사항(예시)
영업·생산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판매·공급계약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판매·공급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 체결 • 게임 퍼블리싱 계약 체결 등
재무구조	투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자산 취득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기업경영활동	지배구조·구조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사업재편계획의 신청·승인 • M&A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안 제출 등



다만, 경제·산업 또는 증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정보, 천재·지변, 테러 등 발생은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기업경영활동 등과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경제부처의 경제·조세정책, 특정산업 육성·진흥 등의 산업정책 등이 시장정보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경제·시장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천재·지변, 테러 등도 해당 사실 인지시 그 영향도를 손쉽게 예상 가능하므로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기업경영활동 등과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조조정 등 특정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발표되는 경우 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기업경영활동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화재 등으로 공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소실 등 특정 기업에 직접적으로 자산총액의 10%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열거된 공시의무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공시하면 될 것이다.

사 례

① (사례1) 정부가 특정산업 육성·지원 등의 정책을 발표한 경우

☞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투자자의 분석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사례2) 지진, 테러 등 발생으로 여행 관련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사실이 발생하면 언론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지 가능한 사항이고 투자자의 분석영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업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열거된 공시의무항목인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재해 발생은 해당 사유로 인적·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구분할 필요

③ (사례3) 해당 상장법인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소위 '테마주'로 인식되는 경우

☞ 테마와의 관련성 여부는 시장에서 분석·평가 등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해당 기업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율적 해명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형성된 테마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임 (공시규정 세칙 제13조의2제3항제1호)

2 중요성: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사실 또는 결정이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시규정은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중요정보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획일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아, 일반적으로 중요정보 해당 여부는 사안에 따라 해당 상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그 판단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중요정보라 하고, 가이드라인에서 예시 사항 제시 등을 통해 상장법인이 스스로 중요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요정보 해당 여부 판단과 관련한 상장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참여자의 공시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여 중요정보의 판단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요정보의 구체적 기준을 국내외 판례상 형성된 중요정보 해석기준이 아닌 ① ‘공시의무비율기준 적용이 가능한 사항’과 ② ‘공시의무비율기준 적용이 곤란한 사항’으로 구분한 후 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내외 판례상 형성된 중요정보 해석기준은 표현의 추상성 등으로 인해 상장기업이 실무상 해석·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① 공시의무비율기준 적용이 가능한 사항(공시규정 세칙 제7조의2제1호)

해당 사실 또는 결정이 수치로 산정 가능한 사항인 경우에는 “공시의무비율기준”을 통해 중요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시의무비율기준은 해당 사실 또는 결정과 가장 유사한 항목에 적용되는 공시의무비율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 영업·생산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
- 나. 재무구조 등에 관한 사항 중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채권·채무, 손익,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자기 자본의 10% 이상
- 다. 재무구조 등에 관한 사항 중 투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자기자본 또는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



상기 “다”의 투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열거된 공시의무항목에 적용되는 공시의무비율기준을 고려하여 자기자본의 10% 또는 자산총액의 10%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10% 여부로 판단할 사항을 공시의무 회피를 위해 임의적으로 자산총액의 10%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공시의무비율기준 차등 적용을 위해 ‘대규모법인’(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비율기준을 “5%”로 설정하였다. 다만,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공시의무비율기준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10%”로 하였다.

■ 정보 유형별 중요정보 판단기준 ■

구 분		판단 기준*
영업 및 생산활동 등에 관한 사항		매출액의 10%
재무 구조	발행증권, 채권·채무, 손익, 결산 등에 관한 사항	자기자본의 10%
	투자활동 등에 관한 사항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의 10%

* 대규모법인(자산총액 2조원 이상) : 5%

다만, 공시의무비율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상장법인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제외된다. 이는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반복적·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운영 또는 관리활동 등 사회통념상 일상성이 인정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생산·공급 등을 위한 원료의 매입, 은행에 예금 또는 인출, 매출채권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충당금 설정, 한도대출갱신 등 운영자금 차입행위, 경상적인 비용지출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사 례

① (사례1) 특정 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업체와 독점 판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판권취득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 매입측면의 계약으로 열거된 공시의무항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독점적으로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 매출발생이 가능하므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장법인의 특정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ex. 대리점 계약 등)의 경우, 동 계약을 근거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주문서(Purchase Order)가 제출된 시점에 건별로 단일 판매·공급계약 공시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독점판매권 부여 계약의 경우, 최소주문수량 등이 정해져 있더라도 이를 강제할 계약상 권리가 없는 특성을 고려할 때 구체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② **(사례2)** 제품의 생산을 위해 구매(매입)하는 부품·원재료 등의 금액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해당하여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 하여도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③ **(사례3)** 그동안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던 제품의 부품·원재료 등의 공급원과 거래가 중단되어 매출액의 10% 이상 타격을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매입대상 거래처에 해당하여 기존 열거된 공시의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으로서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이므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사례4)** 해당 상장법인의 중요기술 등을 바탕으로 하는 국책사업 과제에 선정되는 경우
- ☞ 기술력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중요기술 등에 대한 정부의 국책과제 선정(총 과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은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⑤ **(사례5)** 상장법인이 지식재산권을 취득·양도·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해당 취득·양도·양수금액 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경우
- ☞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지식재산권의 취득·양도·양수는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식재산권 취득 중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해당 상장법 인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로 그동안 자율공시 예시사항으로 제시되었던 특허권 이외에도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② 공시의무비율기준 적용이 곤란한 사항(세칙 제7조의2 제2호)

해당 사실 또는 결정이 수치로 산정하기 어려운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규모·현황·업종 등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인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로 중요정보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재무수치 산출이 곤란한 사항은 정보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가 중요 사항이다.



우선, 해당 법인의 규모·현황·업종 등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기업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중요정보 여부를 개별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규모)** 대형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 등 기업의 크기에 의한 특성을 의미
- **(현황)** 사업재편·구조조정 등 구조개편 중인 기업, 소송 등 분쟁발생 중인 기업, 재무상태 악화기업, 사회적으로 큰 이슈사항과 관련된 기업 등 개별 기업이 처한 경영상 사정 등
- **(업종)** 제약·바이오, 게임·엔터테인먼트 등 해당 법인이 속한 업종별로 투자자의 투자 의사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 **(기타)** 규모·현황·업종 이외에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항을 말하며, 예를 들어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달리 준거법규, 자국내 외환규제 등 규제환경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야 함

또한,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 또는 결정이 해당 법인의 경영 또는 재산의 기본적인 상황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에 상당한 영향은 지배구조, 구조개편, 존립, 소송 등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등도 포함되며, 그 외에 기업경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은 공시의무비율기준 적용을 위한 확정적 재무수치 산출이 곤란하거나 매출액·자기자본·자산총액에 미치는 영향 파악의 어려움 등 단순 비율로 포섭되기 곤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예상금액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상금액을 통해 개략적으로 가장 유사한 공시의무비율기준의 10%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예상금액 산출이 쉽지 않은 경우에도 영향의 규모·정도를 예상하여 판단할 수도 있다. 다만, 예상금액 산출 또는 영향의 규모·정도 파악은 막연한 기대, 단정적 주장 또는 단순·모호한 추정 등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인 추론과 분석 등에 근거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정보 여부 판단에 있어 해당 상장법인의 입장이 아닌 합리적인 투자자(Reasonable investor)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투자자는 투자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투자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사 례

① **(사례1)** 해당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 신설을 결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

☞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 신설은 기업의 지배구조 및 조직구조의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오므로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사례2)** 해당 상장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적용 제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제외를 통보받은 경우

☞ 지주회사 적용 제외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신설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지배구조 및 조직구조의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오므로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17.6월 시행)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요건 중 자산요건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지주회사는 '27.6월까지 지주회사 제외를 희망하는 경우 신고한 날부터 지주회사 제외가 가능합니다.

③ **(사례3)** 해당 상장법인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요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관청에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 과잉공급분야에 대하여 기업이 중요한 사업재편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합병, 분할, 주식 이전, 회사의 설립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기자본의 10% 미만인 생산설비를 매각하면서 법인세 이연과 정부 R&D 지원을 받기 위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한 경우 등 해당 계획의 중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법인의 경영과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④ **(사례4)** 경영권 분쟁 또는 M&A 과정 중 해당 상장법인이 경영지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 하는 경우

☞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은 경영지배인 선임·해임은 해당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으나, 경영권 분쟁 또는 M&A 과정 등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서 경영지배인 선임·해임은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⑤ **(사례5)** 해당 상장법인이 월드클래스300 등 정부 등이 주관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해당 상장법인의 보유기술이 우수기술로 선정되는 경우

☞ 선정사실 이외에는 기업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등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⑥ **(사례6)** 해당 상장법인에 대하여 중요한 지식재산권(특허권 등), 영업기밀과 관련한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된 경우

☞ 지식재산권(특허권 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대규모 로열티 지급 등에 따른 제품 경쟁력 약화 등으로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특허권 등) 또는 영업기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열거된 공시의무 항목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라 공시하고, 청구금액이 산정되기 어려운 소송의 경우에는 개별 사안마다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⑦ **(사례7)** 상장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이 본국 소재 자회사에 정상적으로 유입되지 않은 경우

☞ 국내기업과 달리 상장외국기업은 본사 및 자회사 소재 국가의 외환규제 등으로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해외 소재 자회사에 대한 송금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향후 정상적 자금유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법하지 않은 송금은 향후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⑧ **(사례8)** 상장외국법인이 결산기간 중 외부감사인 계약을 해지한 경우

☞ 국내기업의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 해지가 불가하나, 상장외국법인의 경우 자유로운 계약해지가 가능한 바, 만일 결산기간 중 외부감사인 계약을 해지하면 회계감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상장 외국법인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⑨ **(사례9)** 주요제품 원료에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해 해당 상장법인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매출감소금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된다면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확정적 수치 산정은 곤란하나, 예상금액이 매출액의 약 10% 이상에 해당된다면 재무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⑩ **(사례10)** 해당 상장법인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 투자부적격으로 변경되는 경우

☞ 통상적 수준에서의 신용평가등급 변경은 반드시 해당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나, 해당 기업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부적격등급을 받거나, 투자부적격등급에서 투자적격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⑪ (사례11) 중요한 게임 퍼블리싱 계약 및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게임 개발업체인 상장법인의 경우 큰 규모의 게임 퍼블리싱 계약체결은 장래 해당 기업의 매출액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로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계약금액이 확정적 수치로 산출가능하고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단일판매⑨공급계약 체결'로 공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게임 퍼블리셔인 상장법인의 입장에서는 퍼블리싱 예정 게임의 내용(인기게임의 후속작, 업계 관심이 높은 게임 등) 등에 따라 동 계약체결로 인해 큰 폭의 매출액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게임 퍼블리싱계약 : 개발업체가 개발한 게임물 또는 개발업체에게 개발비를 지원하여 개발된 게임물을 퍼블리셔(publisher)가 국내 또는 국외시장에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고 적절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

⑫ (사례12) 인기게임 또는 업계 관심이 높은 게임의 중요한 등급 변경 또는 그 속작에 대한 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

☞ 전체 이용가, 12세 또는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이 변경되는 등 게임의 중요한 등급 변경은 해당 게임의 이용대상자 변동을 통해 해당 상장법인의 매출 및 수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⑬ (사례13) 매출·수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연예인의 활동이 장기간 중단(군입대 등)되는 경우

☞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경우 소속 연예인이 회사의 이익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바, 해당 상장법인의 매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의 연예활동이 군복무 등 상당한 기간 동안 확정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의 매출 및 수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⑭ (사례14) 매출·수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연예인과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또는 전속 계약 등)이 중도 해지된 경우

☞ 사례14와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경우 소속 연예인이 회사의 이익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또는 전속계약 등)이 중도 해지되면 그 연예인의 활동을 통한 매출 또는 수익 등이 감소하므로 해당 상장법인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 여부 또는 출연료 등의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외 홍보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며 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전속계약 : 가수(또는 가수지망생)가 연예기획사에게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연예기획사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계약[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보통 전속계약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

※ 계약금액이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인 5%) 이상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또는 전속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공시의무항목인 '시설외 투자 등'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⑮ **(사례15)** 매출·수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연예인이 해당 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또는 전속계약 등)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송 등의 절차를 제기·신청한 경우

☞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또는 전속계약 등)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엔터테인먼트기업을 위한 연예인의 활동은 중단되므로 해당 상장법인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또는 전속계약 등)과 관련하여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소송 등의 절차를 제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공시의무항목인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⑯ **(사례16)** 채권금융기관 등이 출자전환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규모의 주식에 대하여 공동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 최대주주가 변경될 규모의 채권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의 처분계획의 수립은 해당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구조개편 및 존립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⑰ **(사례17)**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구속 등이 있는 경우

☞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등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상변동 사항은 해당 상장법인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국내외 판례상 형성된 중요성 해석기준

-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를 통해 “중요정보”에 대한 법원의 해석기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하여 “중요정보” 여부는 질적인 판단이 불가피하여 美國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례상 해석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판례에서 제시된 해석기준은 ①가능성·중대성, ②상당한 개연성을 기초로 하되, 정보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③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① 가능성·중대성 기준 : 해당 정보가 사실로 확정될 ‘가능성’과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중대성’이 인정되는 정보
 - ② 상당한 개연성 기준 :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있어 그 정보를 중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보
 - ③ 총체적 판단 기준 : 각각의 개별 사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상장법인은 공시규정 및 세칙에 따라 중요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판례상 형성된 중요정보 해석기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성: 구체적인 사실 또는 결정

일반적으로 기업정보는 성립유형에 따라 ‘발생사실’과 ‘결정사항’으로 대별될 수 있다. 발생사실은 발행한 어음의 위·변조사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기소사실, 공장의 화재 발생 등 내부결정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정보를 의미한다. 결정사항은 기업의 인수, 공급계약 체결 등 상장법인의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 등 사실상 권한이 있는 자의 결정 등 기업의 내부결정으로 발생한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발생사실’ 또는 ‘결정사항’은 충분히 식별가능하여야 하고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하는 등 정보가치를 가질 정도의 구체성이 필요하다. 특히, 결정사항은 구체성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개연성)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추측, 애매한 희망과 견해, 향후 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합의 등은 구체적인 결정이라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성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구속력이 낮은 MOU 및 이와 유사한 계약 등은 최종적으로 성사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인 결정 또는 사실 발생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MOU에 기재된 문구상 금액, 대상, 기간 등의 계약내용과 위약벌 또는 위약금 등 이행강제사항이 규정되어 계약내용의 대강이 확정된 경우에는 MOU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약체결, 합병 등 협상단계별로 정보가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협상내용 등 해당 정보가 어느 정도 정확성 및 구체성을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사실 또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Key-point

◆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없는 결정사항을 중요정보 관련 포괄조항에 따라 공시한 후 이를 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공시반복)될 수 있음

사 례

① (사례1) 입찰을 통한 M&A와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한 M&A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M&A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 내부결정이 있을 때 공시무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내부결정 이전단계라도 관련내용이 구체화·명확화 되는 시점에서는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찰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는 사실 발생은 M&A 진행과정에서 M&A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단계로서, 그 구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적인 입찰에 의한 M&A 절차 >

- 준비단계 → 인수의향서 체결, 비밀유지약정서 체결 → 입찰절차 진행 → 입찰 적격자 선정 및 예비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양해각서 체결 → 이행보증금 납부 → M&A

② (사례2) 입찰을 통한 단일판매·공급계약, 유형자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 일반적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장비수주, 대규모 유형자산 취득·처분 등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특정 업체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계약체결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 내부결정이 있을 때 공시무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내부결정 이전 단계라도 관련내용이 구체화·명확화 되는 시점에서는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낙찰'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는 사실 발생은 계약 체결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단계로서, 그 구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적인 입찰에 의한 계약 절차 >

- 계약방법 결정(일반경쟁, 제한경쟁 등) → 입찰공고 → 준비단계 → 입찰 → 낙찰자 결정(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도 가능) → 필요시 협상 → 계약 체결

③ (사례3) 해당 상장법인이 단일판매·공급계약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

☞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특정되지 않고 체결내용 위반시 벌칙 또는 책임을 부과한다는 강제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는 내용상 구체성 및 구속력이 낮은 경우로서 구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④ (사례4) 해당 상장법인이 일정기간(예 : 1년) 또는 특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적 판매·공급 등과 관련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본계약서의 내용상 판매·공급 관련 구체적 수량·가격 등이 적시되지 않아 공급받는 기업의 주문에 의해 판매·공급금액이 결정되므로 기본계약 체결 자체로는 구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⑤ (사례5)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제3자간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주식양수도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

☞ 명칭이 MOU라도 계약조건이 구체적이고 이행강제 담보를 통해 법적 구속력도 있는 등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⑥ (사례6) 해외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해당 국가에서의 개발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구체적인 계약금액, 시기, 내용 등은 미확정이고 단순히 '향후 협력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한 경우

☞ 계약체결 협력의무 이외에 계약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이행강제 담보도 없는 등 실현가능성이 낮아 구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자율공시 대상 제외

상장법인은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된 항목(수시공시 의무사항) 이외에 해당 법인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자율공시”할 수 있다(공시규정 제26조제1항). 공시규정 세칙 제13조에서는 상장법인의 자율공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자율공시 항목 〉

- 자원개발 투자 결정
- 자원개발 관련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 단기차입금 감소, 채무면제·수증 및 파생상품거래 등으로 인한 이익 발생 또는 증여 결정
-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과점주주 되거나 그 지위변경,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8% 미만, 재무제표 확정, 부실초래와 관련하여 소송 제기
- 금융기관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등 조치 또는 임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
-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관련 소송 제기·신청 또는 판결·결정사실 확인
-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 변경
- 유상증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등 청약·발행결과 확정
- 녹색경영정보 관련 인증, 관리업체 지정, 행정조치 등



- 유형자산 분류별 자산재평가 실시 최초 결정, 자산재평가 결과 금액 증가 또는 감소시
- 가족친화경영 관련 인증 또는 인증 취소, 과태료 부과조치
- 생산활동 중단·폐업 후 사유해소로 생산활동 재개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 공개 결정
- SPAC이 비상장법인과의 합병 결정 이후 해당 비상장법인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결정
-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 이사회 성별 구성의무 준수
- 기타 상기항목에 준하는 사항 또는 의무공시사항 중 비율기준에 미달시

원칙적으로 자율공시 항목 중에서도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경우에는 중요정보에 해당되어 중요정보 관련 포괄조항에 의한 공시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도입 초기, 상장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율공시 항목은 중요정보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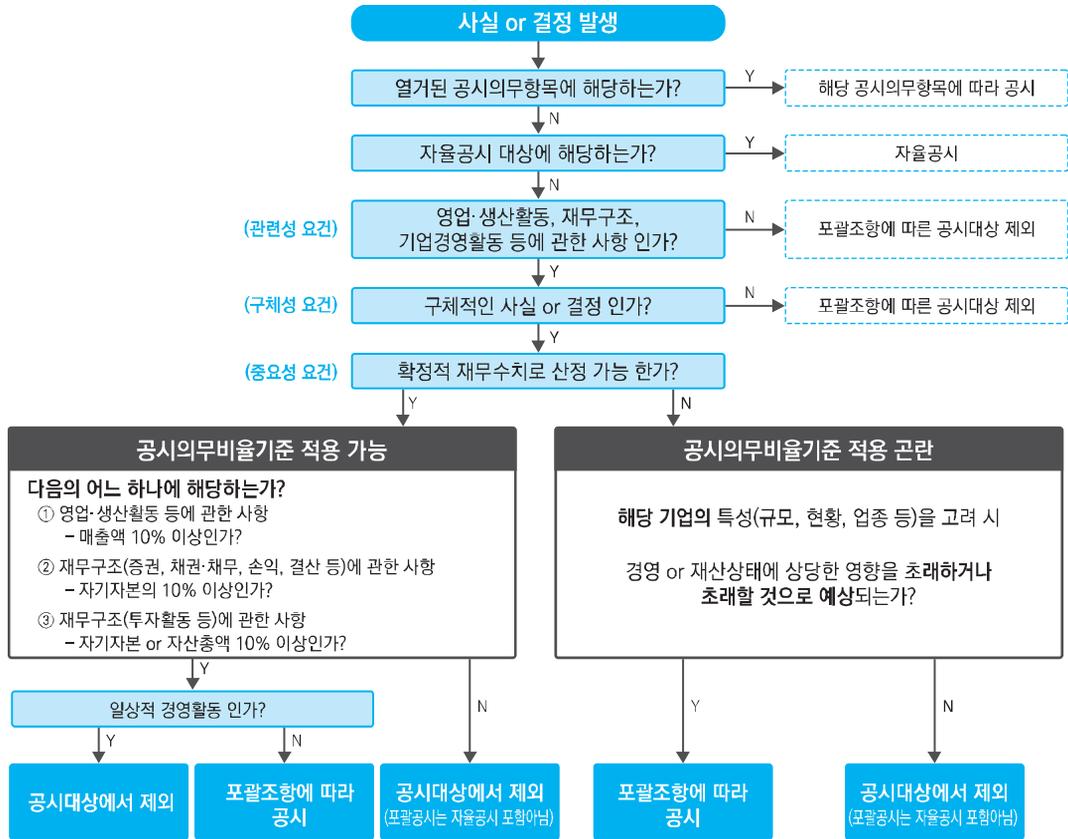
특히, 특허권의 취득·양수·양도결정이 자율공시 예시항목에서 삭제됨으로써 '17.1.2일부터 중요한 특허권을 취득·양수·양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자율공시가 아니라 중요정보 관련 포괄조항에 의한 공시의무(포괄공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공시서식 : '기타 경영사항(특허권 취득)(자율공시)'가 아닌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자율공시 항목 중 삭제항목 〉

- 특허권의 취득·양수·양도 결정
- 신물질·신기술에 관한 중요한 자산(무형자산)의 취득·양수·양도 결정
- 중요한 임상시험 단계 개시 또는 종료(중도 포기·취소 포함)
-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과금체계 결정 또는 변경
- 기술도입·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의 중도 해지 등

■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해당 여부 점검 절차 ■





(5) 제약·바이오 업종 포괄조항 공시 대상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투자자를 위해 공시정보가 더욱 충실히 제공될 필요에 따라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가이드에는 제약·바이오 업종 상장법인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판단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업종에 특화된 포괄조항 공시 가이드를 추가로 마련하고, 구체적인 공시 사례를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공시 기재사항 등 세부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시한다.

1 임상시험 관련 사항

사 례

① (사례1) 상장법인이 중요한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한 사실 및 그 결과

☞ 제약·바이오 기업은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향후 신약 출시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수익 증가 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임상시험은 해당 기업의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상장법인이 식약처, FDA(美) 등 의약품규제기관에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IND)을 한 사실은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임상시험 단계별 IND가 있을 때마다 공시될 필요)

또한,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규제기관 등의 심사 결과 승인, 제한 또는 보류(Clinical Hold) 등 결정 통보받은 경우에도 역시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임상(=비임상, 인체에 대한 임상시험 실시 前 동물에 대해 후보물질의 약리·독성을 실시하는 시험), 식약처의 사전 검토, FDA(美)의 Pre-NDA Meeting 등 공식적인 임상시험에 선행되는 사전적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공시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주의) 규제기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있는 경우, 이를 ‘임상시험 승인’으로 공시하면 투자자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용어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의) 상장법인과 기술이전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임상 계획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이 임상시험의 주체가 아니므로 포괄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사례2) 임상시험 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신청한 사실 및 그 결과

☞ 기존에 승인받은 임상시험 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신청한 사실 및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은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 승인사항에 대한 단순하거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 공시 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때 및 규제기관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사례3) 임상시험이 중지(중단, 취소 등 포함)된 사실

☞ 진행 중이었던 임상시험이 규제기관에 의하여 중지되거나, 상장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중단된 경우 등은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사항의 위반, 임상시험자 자료집의 허위 기재 또는 중대한 안전성 문제 등의 사유로 규제기관이 임상시험 중지(Clinical Hold),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또는 회수·폐기 등 조치를 한 경우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상시험 중지 조치에 대한 상장법인의 회신(Clinical Hold Complete Response) 및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후속조치 등 제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법인이 임상시험 진행의 중도 포기, 취소, 장기간 중지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역시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④ (사례4) 임상시험이 종료된 사실 및 그 결과

☞ 임상시험 종료 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품목허가 신청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므로, 임상시험 종료 사실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등으로부터 임상시험 Topline Data 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linical Study Report)를 제출받거나, 해당 내용을 임상 관련 학회, 학술지 등을 통해 발표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상관련 주요내용(임상진행 경과, 임상시험 통계적 유의성 여부(1차지표) 등 임상 결과에 대해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등 주관적인 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향후 계획'은 임상시험 진행 관련 사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 등에 대해 규제기관의 검증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CRO 확인을 거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주의) 신약 개발의 성패(成敗)는 임상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규제기관이 시판을 허가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중간단계인 임상시험 결과를 '임상시험 성공'으로 공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 결과 공시는 1차 지표(주평가지표)의 통계적 유의성(statistically significant) 여부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시되어야 합니다.

※ (주의)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하여 제3의 기관인 CRO 등이 분석한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회사의 자체적 판단·분석 내용만 공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품목허가 관련 사항

사 례

① (사례1) 개발 신약 등을 의약품규제기관에 품목허가 신청한 사실 및 그 결과

☞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의약품규제기관의 품목허가는 해당 국가에서의 신약의 제조 및 판매를 허가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서, 향후 매출액 및 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 오리지널 신약 외에 개량 신약, 바이오시밀러도 해당

제약·바이오 기업이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안전성이 입증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하여 국내외 의약품 규제기관에 품목허가(NDA·BLA)를 신청한 사실은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규제기관의 심사 결과 허가 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역시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심사 단계에서 보완요청서한(CRL : Complete Response Letter)을 송부받는 경우 등은 규제기관의 최종 결정이 아니므로, 공시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주의) 상장법인과 기술이전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이 품목허가의 주체가 아니므로 포괄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사례2) 시판 중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처분을 받은 사실(매출액 10%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시판 중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안정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발견되어 의약품규제기관이 품목허가 취소, 판매·유통 금지,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등 처분을 한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 및 재산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만료(예정)된 의약품에 대한 규제기관의 품목허가 갱신이 불승인된 경우 역시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사례3) 품목허가 前의 의약품에 대하여 조기 처방 프로그램(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 및 그 결과

☞ 조기 처방 프로그램(치료목적 사용승인(식약처), EAP(美), CUP(EU), NPP(EU) 등)은 복수의 환자에 대한 긴급·중대한 질병 등의 치료 등을 위해 품목허가 前인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의약품규제기관이 안전성·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조기 처방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실 및 규제기관의 승인 여부 관련 결정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의사의 책임 하에 개별 환자 치료를 위해 동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제기관이 해당 임상시험 용의약품의 임상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시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사례4) 중요한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의약품규제기관의 GMP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품목허가 후 사후적으로 국내외 의약품규제기관의 정기심사 등 과정에서 GMP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의약품 생산 중단, 제조 금지, 판매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규제기관의 GMP 부적합 판정은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의약품의 제조·공급을 위해 생산 시설의 구조·설비를 포함하여 원료 구입부터 출하까지 쉰 생산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
- * GMP 적합 판정은 의약품 판매허가를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
- *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KGMP), 미국 FDA(cGMP), 유럽(EU-GMP) 등 각 국가별로 기준을 마련·운영 중

※ GMP 적합 판정은 의약품 허가, 생산시설 증설 등 절차에 수반되는 필수사항이기도 하며, 이때는 '품목허가', '신규 시설투자' 공시 외에 GMP 적합 판정에 대한 공시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적합 판정이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품목허가 취소(사례2), GMP 부적합 판정(사례4) 등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의약품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열거된 공시사항인 '생산중단'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의 판매정지가 있는 경우에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열거된 공시사항인 '영업정지'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3 기술이전(도입) 계약 관련 사항

사 례

① (사례1) 제약·바이오 등 기술기반 관련 상장법인의 기술이전(도입) 계약금액이 자기자본(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중요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약 출시 등 상품화에 따라 수익 증가 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기술이전(도입) 계약은 해당 기업의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시험을 위한 공동개발, 기술이전, 또는 국내(해외) 독점 공급·판매권 계약 등 계약의 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판단하며, 해당 금액이 자기자본(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수적으로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자산 2조원이상은 5%)

또한, 기존에 도입한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2차 계약 역시 공시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사례2) 중요한 기술이전(도입)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등

☞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 계약 조건의 미성취(예: 임상시험 중단, 품목허가 미승인) 등의 사유로 기존에 체결된 기술이전(도입)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③ (사례3) 확정된 마일스톤, 로열티 금액이 자기자본(매출액)의 10%

☞ 기 공시한 기술이전(도입)계약의 조건 달성으로 마일스톤, 로열티 등의 수령(지급)이 확정된 경우 단일 마일스톤 등의 금액이 기업의 수익(비용)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요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도입) 이후 단일 마일스톤 등의 수령(지급) 금액이 자기자본(매출액)*의 10%이상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 보수적으로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자산 2조원 이상은 5%)

4 국책과제 등 기타 사항

사 례

[국책과제 선정]

① (사례1) 해당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중요기술 등을 바탕으로 하는 국책사업 과제에 선정된 사실

☞ 기술력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중요기술 등에 대한 정부의 국책과제 선정*(총 과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경우) 사실은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 국책과제 사례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산업기술혁신사업(산자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보건 복지부),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사업(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 다만,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는 경우는 개별 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공시사항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특허권 관련 계약]

① (사례1) 해당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허권의 취득 또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

☞ 기존에는 특허권의 취득·양수·양도결정이 자율공시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의 공시 여부는 상장법인의 자율적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항이 자율공시 항목에서 삭제

(’17.1월)됨에 따라, 중요한 특허권의 취득·양수·양도결정은 자율공시가 아닌 포괄조항에 의한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여타 공시의 사례를 적용하여 해당 계약금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 등으로부터 특허를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금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특허권의 내용을 평가하여 중요한 특허권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령, 전임상 단계의 신약 후보물질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사업화 단계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실현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공시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제약·바이오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시행일 2022. 2. 7 2023. 5. 2)

□ 임상시험 종료에 관한 가이드라인 정비임상시험 공시항목별 표준서식 도입

- 포괄공시 일관성 제고를 위해 제출 빈도가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유형화가 가능한 임상시험 관련 공시에 한하여 표준서식 도입
 - * 임상관련 공시 중 6개 항목(①임상계획승인신청, ②임상계약승인, ③임상결과, ④자진취하, ⑤변경승인신청, ⑥변경승인)에 대하여 도입

□ 임상시험 중요정보인 1차 평가지표 공시 의무화

- 임상시험계획승인 공시 및 임상시험결과 공시에 임상시험계획서(Protocol)에 기재된 1차 지표(주평가 지표)를 반드시 기재
- 임상 목적에 따라 1차 지표에 대한 하위 분석 또는 2차 지표가 중요 정보에 해당할 경우 일부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1차 지표의 하위지표 또는 2차지표 '전부'를 기재
 - * 1차 지표와 구분하여 별도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기재
- '임상시험결과' 공시 시 공시문구에 주관적 내용을 최소화하고, '향후계획'은 임상 관련 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재

□ 품목허가의 범위 명확화임상정보확인서 제출 의무화

- '임상시험계획승인' 공시 제출 시 임상시험의 주요정보를 기재한 '임상정보확인서' 제출 의무화
 - * 1차 지표 및 통계분석 방법 등 임상시험의 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한 후 임상수탁기관(CRO)의 확인을 받아 제출
 - * '임상정보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계획승인' 공시 및 '임상시험결과' 공시문 안에 기재 불가

□ 기술이전(도입)관련 공시대상 확대임상시험 공시 표준서식 도입



(6)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과 여타 공시기간 관계

1 자회사 공시

지주회사인 상장법인은 자회사(자산총액 10% 이상)의 주요 경영사항이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에 해당될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7조제1항). 자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가액(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이며, 사업연도 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기준)이 해당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회사를 의미한다.

자산총액 기준	공시대상	부도, 해산, 회생절차 개시	여타 공시의무사항* (포괄조항 포함)
10% 이상		당일 공시	익일 공시
10% 미만		익일 공시	공시의무 無

* 주식분할·병합,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 전환, 최대주주 변경, 주주총회 관련사항은 제외

2 종속회사 공시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의 경우 종속회사의 공시 신고사항에 포괄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포괄조항 시행 초기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이 공시규정 제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종속회사의 공시의무사항 뿐만 아니라, 해당 종속회사의 모든 주요 경영사항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상장법인의 종속회사 공시의무사항에는 포괄조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3 조회공시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적용을 받는 사실 또는 결정사항은 품문·보도 관련 조회공시 요구대상에 해당 된다(공시규정 제10조제1항). 또한, 사항 관련 조회공시 요구대상인 중요정보에도 포함되므로(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및 세칙 제9조제3항), 사항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중요정보 없음”으로 답변 공시하는 경우, 열거된 공시의무항목 이외에도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적용 대상인 정보 유무를 확인·검토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0조제6항).

〈 시황 관련 조회공시 요구 대상인 중요정보의 범위 〉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또는 해지(매출액 10% 이상) [제6조제1항제1호다목]
- 증자 또는 감자결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
- 이익소각 결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2)]
-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신탁계약 등의 체결·해지·연장 포함) [제6조제1항제2호가목(3)]
- 주식분할·병합 결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4)]
- CB·BW·EB 또는 증권예약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결정 등 [제6조제1항제2호가목(6)]
- 자진상장폐지 결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0)]
- 자기자본 10% 이상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결정(주권 관련 사채권 포함) [제6조제1항제2호 나목(6)]
- 주식배당 결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4)]
- 현금·현물배당(분기·중간배당) 결의, 분기·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기준일) 결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5)]
-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변경 [제6조제1항제3호가목(1)]
- 주식교환·주식이전 결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7)]
- 상법상 합병, 영업양수도, 경영위임, 분할, 분할합병 등 [제6조제1항제3호가목(8)]
-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또는 경영권 변경 목적 계약 체결 또는 해지 등 [제6조제1항제3호가목(9)(가)]
- 상기사항 이외에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된 사항 또는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 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추가·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시황 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공시일부부터 15일 이내에 답변 사항 이외에 중요정보 관련 포괄조항에 따라 공시한 경우로서 추가·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거쳐 공시번복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조회공시 답변에 유의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28조제2항제1호). 또한, 시황 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공시한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요정보 관련 포괄조항에 따라 공시한 경우로서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이 가능하여 공시번복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후 심사를 거쳐 공시번복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조회공시 답변에 유의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28조제2항제5호).

4 품문·보도 등에 대한 해명 공시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적용대상이 되는 사실 또는 결정사항에 대해 잘못된 품문·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율적 해명공시'를 통한 해명이 가능하다(공시규정 제26조의2 제1항).



5 공정 공시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적용대상이 되는 사실 또는 결정사항을 공시 전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한다(공시규정 제12조제1항제4호).

(7) 중요정보 공시 관련 필요 절차

1 거래소와 사전 협의

① 사전협의의 필요성

상장법인은 어떤 정보가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상장법인은 정보가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제6조제1항제4호의 포괄조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인 ‘중요한 정보’의 해당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상장법인이 중요정보가 영업 및 생산활동, 재무 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과 관련성이 있고,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또는 결정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 공시하는 포괄주의 공시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공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오히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MOU 체결을 중요정보라 판단하여 공시하여 투자자를 현혹시킨 후, 최종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필요시 중요정보 해당 여부를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매매거래정지 관련 판단

상장법인이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거래소는 30분간 매매거래정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에 의한 공시를 모두 매매거래정지(30분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 등을 위해 주지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거래정지 등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참고 중요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공시사항이 주가 또는 거래량이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30분간 매매거래를 정지(공시규정 제37조제1항제2호)
 - 다만,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중요정보는 열거된 수시공시 의무항목과 달리 정형화하기 어려운 정보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매매거래정지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
- 따라서, 상장법인은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에 의한 공시와 관련하여 매매거래정지 필요 여부 등에 대해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
 - ※ 해외 주요거래소도 중요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하고 있음

③ 공시유보 관련 판단

상장법인은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공시사항 중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 공시유보를 신청하려면 거래소와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공시규정 제42조제1항). 이 경우, 상장법인은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와 유보범위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세칙 제20조제1항제3호).

- ※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공시유보 신청에 대해 기업 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시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이를 승인(공시규정 제42조제2항)

2 정보 관리

① 정보관리 원칙

상장법인은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적용대상 여부 확정 및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 전 그 내용이 증권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한다. 기업 공시는 주요 경영사항의 적시 및 정확한 공시로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중요정보를 거래소에 신고하여 시장에 공표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인이 그 책임을 진다.(공시규정 제4조제3항)



② 내부정보 통제

이를 위해 상장법인은 내부정보의 종합관리와 적절한 공개를 위해 공시책임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되도록 하여야 하고(공시규정 제45조제1항), 코스닥협회가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45조제2항). 또한,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를 위한 적절한 통제절차를 수립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③ 정보누설·유포 대응

상장법인은 정보가 누설되거나 유포될 경우를 대비하여 즉각적으로 거래소에 신고하여 시장에 공표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밀리에 협상 중인 M&A, 공급계약 등이 언론 등 외부에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정보가 중요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래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

상장법인이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 또는 기 공시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변경하는 등 성실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는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 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공시규정 제35조제1항~제3항).

이 과정에서 거래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별점(2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별점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별점 산정에 포함된다(공시규정 제35조제4항 및 세칙 제17조의3).

* 최근 1년간 공시규정에 의한 별점누계가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차목)

(8)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공시 관련 시장관리절차

1 공시 서식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공시는 신설 서식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그간 이용하였던 “기타 주요경영사항”은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

지 정하는 열거된 공시의무항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별도로 정해진 공시서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면 된다.

2 거래소의 공시문안 사전확인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공시 내용의 투자판단 혼란 야기 여부, 근거서류 첨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가 공시내용을 사전 확인한다(공시규정 제5조제4항 및 동 세칙 제4조의2제5항).

3 공시위반 제재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에 해당되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는다.

■ 포괄공시 관련 주요 불성실공시 유형 ■

유형	내용
공시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의무사항을 기한 내에 미신고 ■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 ■ 공시유보사유 해소에도 불구하고 유보내용을 미공시
공시번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 ■ 풍문·보도 내용 부인공시 후 1개월 이내 상반된 내용을 결정 ■ 풍문·보도 내용 부인공시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반된 내용 공시가 공시번복 기한 회피로 인정되는 경우 ■ 시황관련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전·후 포괄조항 사항 공시
공시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공시한 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여 공시



III 공정공시

1. 개요

1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공정공시제도란 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도입 목적

① 시장참가자간에 정보의 불균형 완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방지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동일한 시점에 기업의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참가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특정인이 공시되지 않은 기업의 중요정보를 불공정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인 기업분석을 유도하는 증시환경 조성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이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데 비교우위를 갖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고, 애널리스트가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기업분석에 전념하도록 유도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증시환경을 조성한다.

③ 수시공시제도를 보완하고 공시제도 선진화의 기반조성

수시공시의 신고시점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던 기업 정보에 대한 시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하지만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여 기존의 수시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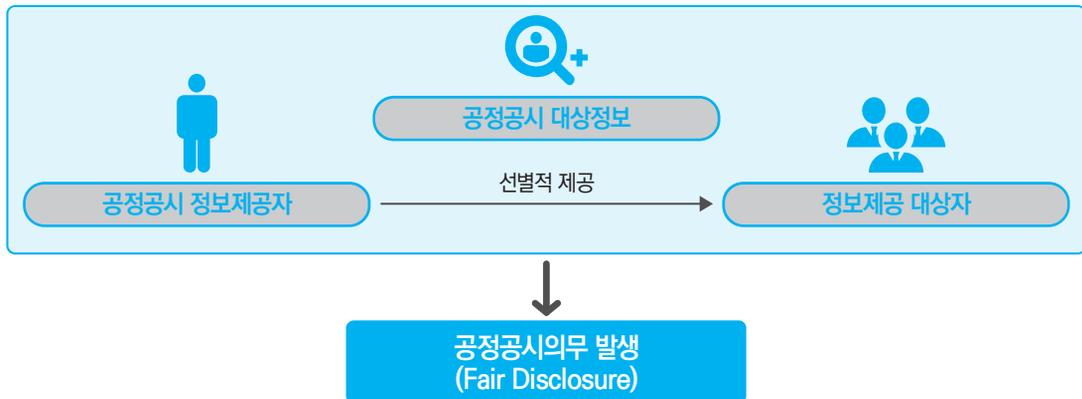
2. 공정공시 의무의 기본 틀

(1) 발생요건

공정공시 의무는 회사 및 그 대리인, 임원 또는 관련부서의 직원(공정공시 정보제공자)이 공시되지 않은 기업의 중요정보(공정공시 대상정보)를 특정인(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법률, 행정목적상 필요, 또는 정보 통계관리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각종 업종별 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통계청 등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정보는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정공시의무는

- ①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되지 않은 “공시대상 대상정보”를
- ②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 ③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 ④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불이행, 공시반복, 공시변경 및 변동사항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공정공시에서의 공시불이행은 사전에 공정공시를 하지 않고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선별 제공했을 때 발생한다.



(3) 타 공시의무와의 관계 및 기 공시사항의 변동사항 신고

(공시규정 제14조제2항,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10조)

1 다른 공시의무 등과의 관계

공정공시 의무는 다른 공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정공시 의무이행이 다른 공시의무(수시·정기·특수·발행공시 등 모든 공시)의 이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 공정공시를 한 사항이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게 된 때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이사회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를 선별제공함에 따라 공정공시 했던 사항이 추후 이사회결의 등으로 확정된 경우 수시공시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고, 그 신고시한은 각 수시공시사항에 적용되는 시한(당일 또는 익일)까지이다.

3 공정공시 이후 수시공시의무 확정 전, 기 공시한 공정공시 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

이때의 신고시한은 당일까지이고, 변동사항의 신고는 변동내용의 선별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기 공정공시된 사항이 수시공시로 확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에 변동이 있었을 경우, 수시공시 서식에 의한 신고내용에 변동 사실을 정정공시하면 된다.

(4) 자회사 및 종속회사 관련 공정공시의무

1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관련된 공정공시의무(공시규정 제13조,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4조)

지주회사인 상장법인의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자회사의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예시

① 지주회사인 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자회사의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선별 제공한 경우

→ 상장법인인 자회사는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아니므로, 자회사에게 공정공시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동 사안이 자회사의 수시공시사항인 경우, 자회사에 수시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별도의 사안임

② 상장회사인 자회사가 자신의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 상장법인인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지주회사의 정보가 아니므로 공시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자회사의 정보가 지주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등에는 지주회사의 투자자들을 위해서 지주회사가 자율공시의 형태 등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음

2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와 관련된 공정공시의무

종속회사가 공시규정 제6조의2(종속회사의 공시신고사항)에서 정하는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은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종속회사 관련 공정공시의무는 규정 제6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 제공할 때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므로, 공정공시 대상 정보 4가지 범주 중에서 “수시공시의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에만 적용된다.

참고 지주회사-자회사간 공정공시 의무와 지배회사-종속회사간 공정공시 의무의 차이점

➡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범위가 다름

지주회사-자회사간 공정공시 의무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는 4개 범주가 모두 해당되나, 지배회사-종속회사간 관계에서 공정공시 의무는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만 해당



3. 공정공시 시한 (공시규정 제12조제4항,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7조)

공정공시 시한은 공정공시 대상 정보가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이다. 기업 설명회(IR),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컨퍼런스콜, 워크숍 등을 통해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행사의 개시 이전까지 해야 한다. 공정공시 내용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이를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공시한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실 또는 착오*로 공정공시 대상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후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인지 후 신고를 지연한다면 고의적인 공시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공정공시 해당여부, 기 공시여부, 상대방의 정보제공 대상자 해당여부 등에 대한 착오를 의미

** 정보제공시점이 휴장일이거나 공시 접수마감 이후인 경우에는 익일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 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공정공시 운영기준 제7호④)

참고 공시시한 위반

수시공시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사항을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선별 제공한 경우(공시규정 제14조 제2항)

→ 규정 제12조제1항제4호의 공정공시 사항이 수시공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공시 서식으로 공시 하여야 하며, 이때 공시시한은 공정공시 신고시한(정보제공 이전)을 적용함. 만약 공정공시 시한을 경과 하여 공시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해당 수시공시 신고시한(당일 또는 익일)까지 위반하게 되면 2회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보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음

(공시시한 예시)

- IR 등 경우 : 기업설명회 등 개시시점 전까지
- 보도자료 배포시 : 보도자료 배포전까지 신고
- IR, 기자간담회 등 진행 중 미신고 공정공시 대상정보 제공시 : 행사 종료 후 즉시
- 주주총회 진행중 주주의 질문에 공정공시 대상정보 제공시 : 주총 종료 후 즉시

4. 정보제공자와 정보제공 대상자

(1)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공정공시운영기준 제4조)

1 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대리인”이라 함은 상장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상장법인에게 귀속하는 대리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임원(이사, 감사 또는 사실상 동등 지위자 포함)

등기 또는 상근 여부 불문(사외이사, 감사위원 포함)하며 직원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제공자에 해당한다. 또한,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는 상법 제401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를 의미한다.

참고 업무집행지시자

- 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②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 ③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미등기 집행임원 포함)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3 정보대상 접근이 가능한 직원

공시업무 관련부서 직원 및 관련업무 수행부서 직원(홍보 및 IR 담당직원 포함) 등을 말한다. “직원”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의 직원*(해당 공정공시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는 부서의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공시내용·시기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부서의 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공시업무에 관여하는 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 영업·마케팅(매출액 정보), 경리·회계부서(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정보) 등



4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의제

공시규정 제15조제2호 각 목에 따라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를 받더라도 상장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상장법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의 공정공시 정보제공자에 해당한다.

참고 (공시규정 제15조제2호)의 공정공시의무 적용예외를 받는 자

-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
- 나.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 다. 법 제335조의3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의 인가를 받은 자
-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자로 거래소가 정하는 자

(2)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 (공시규정 제12조제3항,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6조)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란 국내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종사자와 일반투자자들에 비해 공정공시 대상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로, 7가지 범주로 구분

1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와 그 임원·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에 있는 자

* 임원·직원의 범위는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참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해당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 등을 포함)와 그 임원·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에 있는 자

참고 위임·제휴관계

- **(위임관계)**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위임인의 위임에 의해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하는 하는 계약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를 포함
예) 소송수행을 의뢰받은 변호사, 공시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 가치분석 등을 의뢰받은 기술평가사, 회계법인
- **(제휴관계)**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판매·제품개발·투자 등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술·생산·자본 등을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영위하거나 협력하는 것

- 2**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 의함) 및 그 임원·직원
- 3** 위에서 규정하는 두 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자들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전문투자자* 및 그 임원·직원
- * 금융회사, 투자회사, 헤지펀드 등
-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원·직원
- * 언론사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언론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 또한 포함됨
- 5**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원·직원
- * 상장법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말하며, 인터넷증권정보사이트, 인터넷증권방송, 유·무선 증권정보 제공업자 등을 포함
- 6**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의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
- * 상장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제외
- 7** 위 6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자들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 *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①~⑥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



5. 공정공시 적용 예외

(1) 개요

언론기관 종사자의 보도목적 취재에 응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 받는 자 등 상장법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법인 발행 주식의 매매거래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2) 내용 해설

1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방송사 및 신문·통신 등 언론사에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도목적의 취재”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 종사자가 일반 대중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상장법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 임·직원과의 접촉을 통하여 분산된 개별 정보를 수집·종합하여 보도가치가 있는 정보를 생산해 내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언론사 또는 애널리스트 등이 상장법인의 장래 사업계획, 기업실적 등의 내용을 유추·분석하여 보도하거나 보고서를 발표한 경우, 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의무가 없다.

* (주의) 그러나 애널리스트 등이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기업실적 전망치 등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의 대리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

언론기관의 종사자가 능동적으로 회사에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상황에 ‘공정공시의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상장법인이 능동적으로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적용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장법인이 언론기관의 취재에 응하여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기사가 게재되는 시점에 자발적으로 공정공시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공시정보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언론의 취재 후 보도된 내용을 상장법인이 외부 정보제공대상자에 제공하거나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상장법인과 위임계약에 따른 수입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3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에게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참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및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공정공시운영기준 제9조제2항)

□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 등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함

1.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위임사무 대행, 소송업무 수행 등을 위한 위임계약
2. 공인회계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인회계사와의 외부감사, 경영 또는 증권업무 관련 컨설팅, 세무조정대행, 외자유치를 위한 업무처리대행, 회생절차를 위한 자산·부채실사, 합병·분할 등을 위한 기업가치분석, 해외법인관리업무 등을 위한 위임계약
3.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는 세무사와의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등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관련 상담 또는 자문 등 세무대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위임계약
4. 인수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주관회사 등 인수단과의 인수계약(인수계약서상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
5. 금융기관의 대출, 지급보증, 신용장개설 심사 등에 관한 계약(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서면에 의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함. 다만, 은행법 제66조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 지급보증, 신용장개설 심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비밀유지동의를 요하지 않음)
6. 기업의 자금조달, 영업활동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계약(서면에 의한 계약에 의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
7.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의 서면에 의한 비밀유지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기타 전문지식을 요하는 위임업무의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증소지자(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한함)와 체결한 위임계약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위에 해당되는 자들에 “준하는 자”로 거래소가 정하는 자에게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준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상장법인이 각종 인·허가, 자격, 인증, 확인 등을 위해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 및 이들로 부터 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 등을 의미한다.

6. 유형별 세부기준

(1) 향후 3년 이내의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공시규정 제12조제1항제1호,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3조제1항)

1 개요

회사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8개의 사항으로 향후 3년 이내의 계획

① 신규사업의 추진, ② 신시장의 개척, ③ 주된 업종의 변경, ④ 회사조직의 변경, ⑤ 신제품의 개발 및 생산, ⑥ 신기술의 개발, ⑦ 국내외 법인과외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계약체결 ⑧ 기존사업의 변경(중단·폐업·매각 등)

장래 사업계획·경영계획 관련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요건은 ① 중요성과 ② 구체성으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 등이 제시되는 계획만이 공정공시 대상 정보로 인정된다. 따라서, 중요성·구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일으키는 홍보성 공시 또는 허위공시로 간주되어 공시유보 처리될 수 있다.

2 중요성 기준

- **(규정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 공정공시 운영기준은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사항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된 8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요성에 대한 판단 주체)** ‘중대한 영향’에서의 ‘중대한’에 대한 기준은 회사에서 판단하는 사항으로 8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상장 법인이 그 내용이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한다면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 **(중요성 기준 도입 이유)** 상장기업들이 홍보성 공시를 남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불신을 예방하기 위함
 - * 중요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자회사의 영업점 개점 안내, 소속 연예인의 공연계획 안내, 매출액에 크게 영향이 없는 신제품 출시에 대한 안내 등에 관련한 공시는 회사 경영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3 구체성 기준

- **(구체성 요건)** 해당 계획의 목적, 세부내용, 추진일정, 예상투자금액 및 예상효과 등이 공시내용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예상효과”란 동 계획이 실현되는 경우 회사의 매출 또는 이익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가되는 매출액 또는 이익금액 등이 수치로서 표현할 필요
 - 장래 사업계획에 따른 매출 증대, 비용 감소, 이익 증가 등의 효과가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실적지표의 수치로써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홍보성 공시로 간주되어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공시유보 될 수 있음
- **(정정공시 및 불성실 관련)** 장래 사업계획으로 발표된 내용은 수정될 경우 즉시 정정공시하며, 만약 공정공시 내용과 실제치가 크게 변동하거나 반복할 경우 불성실공시로 지정될 수 있음에 유의



주요 Q&A

- ❶ '회사조직의 변경'이 공정공시 대상정보가 되는 요건은?
 ▲ 조직의 변경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히 매출이나 수익 등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단순히 회사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변경은 회사의 영업실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❷ 향후 3년을 초과하는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은 공시할 수 없는 것인가?
 ▲ 3년 이내의 계획인 경우 공정공시 의무사항이지만, 3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계획인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중요성 요건과 구체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공정공시를 할 수 있음
- ❸ 연초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경영계획을 발표하는 경우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는가?
 ▲ 중요성·구체성 요건을 충족하는 공정공시 대상정보인 경우라면 동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발표하는 방법 등에 따라서 공정공시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함. 보도자료 배포, 기자간담회 개최, 자사의 홈페이지 게재,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언론사 기자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발표하는 경우 공정공시의무가 발생. 그러나 당사 직원들이 참석하는 신년 하례식이나 조회에서 발표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❹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가 없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공정공시 가능 여부
 ▲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가 없는 공정공시를 할 수 없음

(2) 향후 3년 이내의 매출액, 영업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시규정 제12조제1항제2호,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3조제2항)

1 개요

향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2 공시대상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망 또는 예측의 최소 기간은 분기 이상으로, 월별 실적에 대한 전망은 공정공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 수시공시 사항인 손익구조변경*은 일정비율 이상의 변동[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30%(대규모 법인 15%)]만을 공시하도록 하지만, 본 공정공시는 증감비율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공정공시의무에 해당한다.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15%) 이상 변동」 공시

상장법인은 실적전망 또는 예측공시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시점에 주기적으로 그 달성 실적을 점검하여 애초 공시한 전망·예측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꼭 정정하여야 한다.

3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조항(Safe Harbor)과 불성실공시

상장법인이 향후의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하여 공정공시(예측·전망 실적)한 사항이 다음의 방법으로 이행되었다면 해당 예측 또는 전망실적이 사업연도 종료 후 실제의 실적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 ① 예측정보라는 사실 명시
- ②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 명시
- ③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전망·예측
- ④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 명시

다만, 회사가 전망·예측한 영업실적은 투자자들의 중요한 투자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전망·예측 실적을 발표하는 경우 합리적 가정과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상기 방법으로 공정공시를 하더라도 향후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공정공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매출액 항목의 예측오차가 상당한 경우 또는 이익항목에서 흑자예측 후 적자를 실현한 경우 등

또한 Safe Harbor는 전망·예측치가 실제치와 다를 경우에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장래 사업계획 및 경영계획, 잠정영업실적에 대해서는 Safe Harbor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Q&A

- ❶ 장래 실적에 대한 '목표'도 '장래 실적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의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포함되는가?
 ▲ 합리적인 가정이거나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단순히 회사가 내부적으로 목표로 하는 희망실적은 전망·예측 실적과는 분명하게 다르므로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공시 불가
 그러나 상장법인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목표치라도 언론보도 또는 IR,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발표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내부 목표치를 대외적으로 알릴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 공표해야 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대외 발표된 자료에 대해서는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❷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 4개 영업실적 항목 중 일부만 선택하여 전망 또는 예측 공시를 할 수 있는가? 또는 별도 지표를 통해서도 공정공시를 할 수 있는가?
 ▲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을 같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를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음
 또한, 상기의 4가지 손익 관련 계정항목 대신에 영업실적을 추정할 수 있는 영업 관련 지표가 있다면, 소속된 산업의 성격에 따라 동 지표를 통하여 회사 전체의 영업실적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동 지표를 이용하여 공정공시 하는 것도 가능
 * 예) 완성차 업계의 경우 차량 판매 대수, 이동통신 업계의 경우 가입자 수, 반도체 또는 모바일 기기 생산업체의 경우 판매개수 등

(3) 사업·분반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전의 매출액, 영업손익 등 영업 실적의 잠정실적(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1항3호,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3조제3항)

1 개요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보고서 등의 해당 사업연도, 반기 및 분기의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의 영업실적(이하 "잠정실적")을 말하며, 여기에는 월별실적도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포함됨

2 잠정실적

잠정실적은 상장법인이 분·반기 또는 사업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전의 가결산 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사업연도 실적의 경우 상장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수시공시("감사보고서 제출")하기 전의 실적에 해당한다. 전년 동기실적, 전기실적 등 비교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분기 이상인 경우

에는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월별실적을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월별 결산의 성격상 실제로 제공하는 정보만 공시할 수 있다.

잠정실적을 각종 비율,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한다.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을 제공하여 당기순이익이 추정 가능한 경우, 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을 통해 매출액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공정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잠정실적은 추정치가 아니므로 Safe Harbor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유의한다.

예 시 우회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

- 직접적인 영업이익 수치는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 매출은 15% 증가, 영업이익은 20% 증가”와 같이 전기·전년 동기 대비 증감비율, 증가 또는 감소 금액이나 그 사실, 흑자 또는 적자전환 사실 등 간접 정보를 언론매체에 제공하는 경우도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함

공정공시 한 잠정실적이 감사보고서 또는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공시한 실제 실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최종 실적이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서 공시되었으므로 정정공시 할 필요는 없으나, 기 공시된 잠정실적과의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클 경우에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정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예 시

수시공시 의무와의 관계(사업연도 결산결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30%이상 변동)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3)(가))

- ①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잠정치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비하여 5% 증가한 사실을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공정공시 의무만 발생하며, 수시공시 의무는 없음 (신고시한 : 공정공시 정보제공 이전)
- ②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잠정치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비하여 35%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외부에 선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수시공시 의무만 발생하며, 공정공시 의무는 없음 (신고시한 : 수시공시 시한에 따라 당일공시)
- ③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잠정치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비하여 35%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당일 수시공시하기 전에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 공정공시 의무와 동시에 수시공시 의무가 발생 (수시공시 신고서식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신고시한은 공정공시 신고시한을 적용)



연결재무제표 대상 상장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잠정실적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실적이 먼저 집계되어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한 후 연결재무제표 잠정실적 집계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잠정실적 중 일부 실적이 집계되지 않은 경우 먼저 집계된 잠정실적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출액, 영업손익만 집계된 경우 이를 먼저 공정공시 할 수 있다.

(4) 수시공시 관련 사항으로서, 그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공시규정 제12조제1항제4호,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3조제4항)

1 개요

수시공시 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①이사회 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과 ②수시공시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 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

2 관련 사례

①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예

- 이사회에서 현금배당 결정하기 전에 내부적인 배당계획을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예) 투자자가 상장기업의 배당계획 등에 관하여 문의하여 아직 이사회 결의에 이르지 않은 미확정의 배당 계획 등 수시공시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

② 수시공시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의 예

-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오전 중에 유상증자에 관한 결의를 하고 공시담당자가 동 사실을 공시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부득이하게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확정여부에 따른 투자자 혼선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수시공시를 하기 전에는 선별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자유평시

1. 개요

상장법인은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공시규정 세칙 제13조)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공시할 수 있다.

2. 자유평시사항 [공시규정 세칙 제13조] (익일공시; 정정은 당일공시)

(1) 자원개발투자 결정

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매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7일 이내에 해당 자원개발에 관한 진행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자원개발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시한다.

(2) 자원개발 관련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후 그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공시하는 사항으로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성을 평가받고 그 보고서를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익일까지 공시한다.

※ 자원개발의 경제성 평가가 가능한 외부기관

가. 한국광물자원공사

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 5년 이상 자원개발 평가업무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및 해외거래소 상장법인을 포함)의 자원개발 관련 경제성 평가실적이 있는 자



(3) 단기차입금 감소, 채무면제·수증 및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증여 결정

- **(단기차입금 감소)** 단기차입금은 회계처리기준상의 단기차입금(당좌차월의 경우 당좌차월한도금액을 말함) 및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금액 기준)을 말함
 - ※ 콜차입, 만기 7일 이하로 발행되는 기업어음(CP), 만기 7일 이하의 증권금융차입, 금융기관에 의한 무역금융·구매자금 대출, 유동성장기부채 및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황을 위한 차입금(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 포함)은 단기차입금에서 제외
- **(채무면제)** 회생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를 통하여 해당 상장법인의 재무상태 개선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발생을 확인한 때 공시함
- **(수증·증여)** 수증·증여 등의 대상이 주식 등인 경우 타법인 주식·출자증권의 취득·처분 공시기준 해당여부 확인
-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파생상품거래 이익(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외부감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높은 위험회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발생한 때 공시함. 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제한 누계이익 중 기 공시분을 제외한 누계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파생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함

(4) 상장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에 다음의 사실 발생

- 상장법인(또는 그 최대주주)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
- 상장법인(또는 그 최대주주)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으로 낮아진 때
- 상장법인(또는 그 최대주주)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매분기별로 확정된 때
- 상호저축은행 부실관련 과점주주의 예금 등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 소송이 제기(「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제2항 관련)된 때

(5) 상장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이 관계 법규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때

-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계법규에 의한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개선 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 금융기관의 임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때

(6)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또는 그 승인 주총결의 무효·취소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판결·결정사실 확인

(7)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 변경

-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를 의미
-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해의 법인 포함)를 의미하며,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합니다.

(8) 유상증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청약 또는 발행결과

증권의 발행방법이 유상증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CB, BW, EB) 등의 발행인 경우

(9)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다음 사항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 녹색성장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또는 취소
 - 녹색성장법에 따른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또는 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10) 유형자산 분류별로 자산재평가 실시에 관한 최초 결정이 있을 때 및 자산재평가 결과 자산재평가 증가금액 또는 감소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
- (11) 가족친화 경영정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 가족친화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 (12) 생산활동 중단 또는 폐업 이후 해당 중단 또는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 (1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시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

- (1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하기로 결정한 때
- (15)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제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와 관련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받은 사실
- (16) 자본시장법(제165조의20)에 따른 이사회 구성 의무 준수 여부
- 개정법률 시행일(20. 8. 5일) 이후 2년간 경과기간 부여되어 '22. 8. 5일부터 적용되나, 그 전에 성별 구성 의무를 준수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가능
- (17) 위에 준하는 사항 또는 규정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공시신고사항 에서 정하는 비율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으로서 회사 경영·재산 및 투자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단일판매·공급계약 등을 자율공시한 후에 이를 전면취소 또는 부인하는 경우 공시변복 불성실공시 사유에 해당되며, 자율공시한 내용 중 각각의 기준에 따라 금액·비율·발행 주식수의 50% 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변경으로 인한 불성실공시 사유에 해당됨



V 조회공시

1. 개요

조회공시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① 기업의 주요경영사항과 관련한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여부의 확인과, ② 풍문 등이 없더라도 주가·거래량이 급변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가 있는지의 여부를 거래소가 상장기업에게 확인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조회공시 대상

(1) 풍문 및 보도 (공시규정 제10조제1항)

수시공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공시, 지주회사의 자회사공시, 자율공시 및 공정공시 사항과 관련하여,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해당 조회공시 요구 사실 및 그 내용을 공표한다. 풍문·보도는 상장법인의 기업 내용에 관하여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 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말한다. 다만, 풍문 등의 내용이 1개월 이내*에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변경,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등, 임원의 임면·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 등,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 등, 영업양수도, 합병(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포함), 분할 및 분할합병, 물적분할 등의 결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은 3개월

(2) 주가 및 거래량 급변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풍문 등이 없더라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여 거래소가 정한 시황변동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를 조회하고 공시를 요구한다. 다만, 최근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등으로 인한 조회공시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회공시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포괄주의 공시사항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적용을 받는 사실 또는 결정사항은 조회공시 요구대상에 해당 (공시규정 제10조제1항)한다.

※ 상세사항은 상기 II-5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주의 공시” 참조

3. 조회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풍문 및 보도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거래소는 조회공시 요구 시 해당 주식의 매매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 ②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 개시
- ④ 최근 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 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다.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매출액 30억 미만
- 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⑥ 기타 추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상기의 풍문 등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한 시점부터 상장법인이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즉 상장법인이 거래소의 조회공시 사항에 대한 답변 사항을 공시한 시점부터 30분 후에 매매거래는 재개된다.

조회결과 공시답변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오전9시)부터 30분 경과 후 매매거래 재개한다. 공시답변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 거래종료 60분전 이후(오후2시30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4.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1)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시한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시한은 품문(보도 포함)인 경우와 시황급변인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한다. 조회공시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권의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의 재개는 상장법인이 조회공시에 대해 답변을 한 후 30분이 경과되면 거래가 재개된다.

■ 조회공시 사유별 답변시한 ■

조회공시 사유	답변시한
품문 또는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공시 요구 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 6시까지 - 조회공시 요구 시점이 오후인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 매매거래 정지를 수반하는 사항일 경우 1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함(조회공시 요구 시점 오전· 오후 관계없이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주가 및 거래량 급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이내 (조회공시 요구 시점 오전· 오후 관계없이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 조회공시 요구 대상정보가 최대주주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의 확인을 거쳐 공시하여야 함

(2)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유형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 경우 확정내용을 공시하고, 검토 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경우 미확정으로 공시한다.

■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유형 ■

구 분	표준모형(예시)	비 고
확정 내용공시	사실이 아닐 경우 (전면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무근 • 특이사항 없음 • 중요정보 없음 • 검토(고려)한 바 없음 	- 일정기간 이내 상반되는 내용 공시시 불성실공시 해당
	사실일 경우 (확정·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서식(유상증자결정 등)으로 공시 •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확정답변임을 기재 	
미확정 내용공시	검토(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적으로 검토(고려)하고 있으며 확정여부는 재공시하겠습니다. 	- 검토배경, 이유, 목적, 내용, 추진 상황 등 구체적 상황을 포함 - 추후 번복시 사안에 따라 불성실공시 가능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중이며 최종 확정(결정) 재공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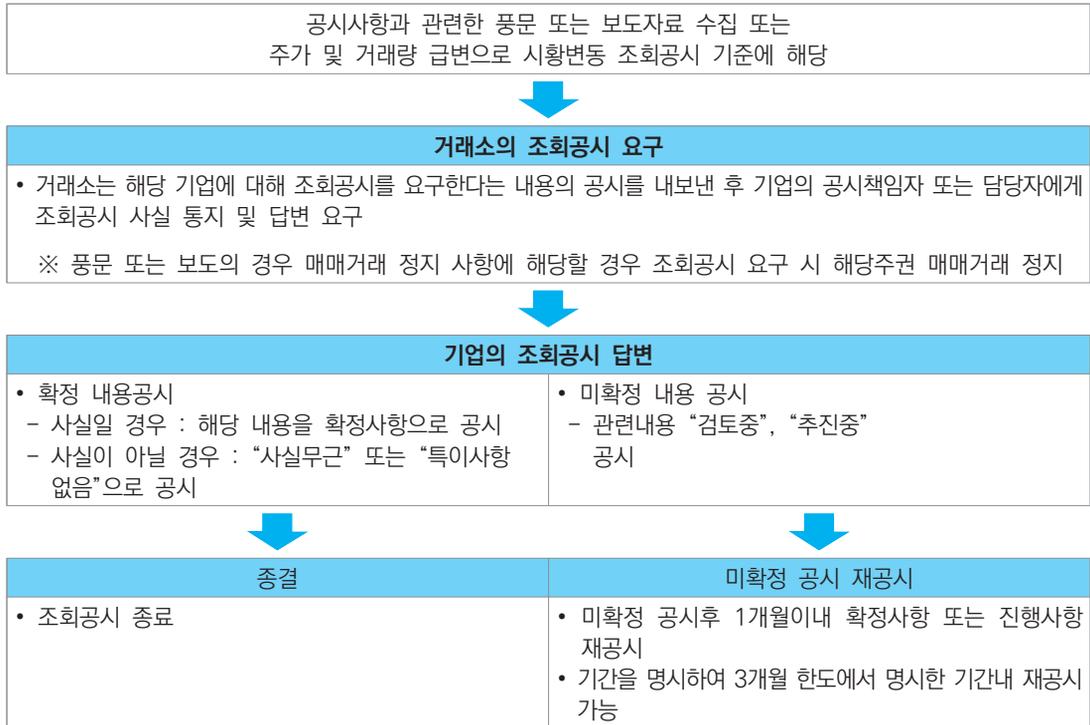
Key-point

◆ 조회공시 미확정 공시 후 재공시

-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미확정 공시를 한 상장법인은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사항을 미확정 공시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여야 함
- 1개월의 재공시 시한까지 해당 사항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확정 시한을 명시하여 미확정 사항으로 공시한 후 명시한 기간 내에 재공시할 수 있음(기본 1개월이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 거래소와의 협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최대 3개월 이내에서 기간 설정가능)

5. 조회공시 진행절차

■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유형 ■





6. 조회공시 관련 불성실공시

(1) 공시변복

1 품문 또는 보도의 경우

품문 또는 보도의 내용을 부인하는 공시를 한 후 1개월 이내에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공시변복에 해당한다.

2 주가 또는 거래량 급변의 경우

주가·거래량 급변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한 후 15일 이내에 답변한 사항 이외에 아래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공시변복으로 불성실 공시 사유가 된다.

■ 공시변복 항목 ■

구분	공시사항	근거규정(공시규정)
1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또는 해지(매출액 10% 이상)	제6조제1항제1호다목
2	증자 또는 감자결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
3	이익소각 결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2)
4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신탁계약 등의 체결·해지·연장 포함)	제6조제1항제2호가목(3)
5	주식분할·병합 결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4)
6	CB·BW·EB 또는 증권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결정 등	제6조제1항제2호가목(6)
7	자진상장폐지 결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0)
8	자기자본 10% 이상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결정(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 포함)	제6조제1항제2호나목(6)
9	주식배당 결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4)
10	현금·현물배당(분기·중간배당) 결의, 분기·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기준일) 결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5)
11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변경	제6조제1항제3호가목(1)
12	주식교환·주식이전 결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7)
13	상법상 합병, 영업양수도, 경영위임, 분할, 분할합병 등	제6조제1항제3호가목(8)
14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또는 경영권 변경 목적 계약 체결 또는 해지 등	제6조제1항제3호가목(9)(가)

(2) 조회공시 사후심사

1 품문 또는 보도의 경우

- ① 품문 등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중단·취소 또는 부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 ⇒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이 가능하여 공시변복 기한(1개월)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후심사를 거쳐 공시변복 여부 결정(공시규정 제28조 제2항제4호)
- ② 품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개월+15일이 경과한 후 기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중단·취소 또는 부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 ⇒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이 가능하여 공시변복기한(1개월+15일)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시내용의 중요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시변복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사후 심사를 거쳐 공시변복 여부 결정(공시규정 제28조제2항제4호나목)
- ③ 재공시 기한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의사결정 중에 있다는 기 공시 내용의 확정이 지연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후심사를 거쳐 공시 변복 여부를 결정(공시규정 제28조제2항제2호)
- ④ 미확정공시 이후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변경·중단·취소한 경우로서 의사결정의 변경·중단·취소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후심사를 거쳐 공시변복 여부를 결정(공시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2 주가 또는 거래량 급변의 경우

- ① 답변공시 후 15일 이내 공시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상기 14가지(상기 표의 공시변복 항목) 외의 주요공시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후심사를 거쳐 공시변복 여부 결정(공시규정 제28조 제2항제1호)
- ② 답변공시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 공시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변복기한(15일)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후심사를 거쳐 공시반복 여부 결정(공시규정 제28조 제2항제5호)

- ③ 재공시기한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의사결정 중에 있다는 기공시 내용의 확정이 지연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후심사를 거쳐 공시 반복 여부 결정(공시규정 제28조제2항제2호)
- ④ 미확정공시 이후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변경·중단·취소한 경우로서 의사결정의 변경·중단·취소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후심사를 거쳐 공시반복 여부 결정(공시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7. 조회공시 답변 작성 사례

(1)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확정 답변시

확정공시(유상증자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자기주식 취득 결정 등) 서식의 맨 아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다음의 문구를 기재하여 공시한다.

“이 공시는 XXXX년 XX월 XX일 조회공시(품문 또는 보도)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례) 신규 단일판매계약 체결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상태에서 당일 중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단일 판매·공급계약 체결' 서식을 이용하여 공시를 제출하되 서식중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이 공시는 xxxx.xx.xx일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임'을 기재

(2)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부인 답변시

1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부인 답변시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상태에서 중요정보가 없는 경우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중요정보 없음)' 서식을 이용하여 공시를 제출하되 경영 현안과 연관성에 대한 검토사실을 답변내용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한다.

(사례) 당사는 조회공시 요구(XXXX.XX.XX)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 공시책임자 대표이사 ●●●

* 이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XXXX.XX.XX일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공시사항임

(3)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미확정 답변시

1 미확정 공시 허용범위

상장법인은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현재 의사결정 과정에 있으며 향후 1월(또는 상장법인이 명시한 3월 이내의 기간) 이내에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 또는 추진’ 과정에 있다는 내용의 미확정 공시를 할 수 있다. 합리적 근거에 의해 검토되지 아니한 가설적 사업계획은 ‘미확정 공시’로 공시할 수 없다.

2 미확정 공시 답변

답변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미확정 상태라는 사실만 기재하는 것은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확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사례 1) 불명확한 미확정 공시 사례

- ① 000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② 000 인수와 관련하여 검토중이나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 ③ 000 지분매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될 경우 즉시 재공시하겠습니다.

(사례 2) 명확한 미확정 공시 사례

- ① XX.XX.XX일 000 인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우선협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입찰 추진 주체인 000는 XX.XX.XX일까지 우선협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므로 추후 우선협상자 선정 등이 확정 되는대로 재공시하겠습니다.
(입찰신청서 첨부)
- ② XX.XX.XX일 000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에 입찰참여를 하였으나 확정적인 낙찰통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발주처인 000는 XXX으로 인해 프로젝트 시행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XXX요인이 해소되는 대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3개월 이내 수주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찰신청서 첨부)



③ 당사의 최대주주 000는 소유 주식 XXX주의 매각을 위하여 △△와 구속력없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XX.XX.XX일부터 실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사자는 모두 3개월 이내에 지분매각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이에 따라 XX.XX.XX까지 구체적인 진행 결과에 대하여 재공시하겠습니다. (최대주주 확인서 및 양해각서 첨부)

8. 참고자료

(1) 조회공시 불성실공시 심사 요약

■ 품문·보도 ■

조회공시 요구	조회공시 답변유형	공시반복기한 (1개월) 내	공시반복기한 이후 인접기한 (무기한)*	기타
품문·보도 ⇒ (답변시한 : 반일)	확정 (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 수사공시 해당서식으로 공시	-	-	-
	부인 (품문·보도가 사실이 아닌 경우)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 공시 ⇨ (현행) 불성실공시	기 공시내용과 상반 되는 내용 공시 ⇨ 사후심사	-
	미확정** (“검토중”, “추진중” 공시) * 단, 1개월내 또는 확정 기일에 진척사항 재공시	-	-	① 미확정 공시내용의 변경·중단·취소시 ⇨ 사후심사 ② 미확정 공시기한 까지 확정공시 미 이행시 ⇨ 사후심사

* 1월+15일 이내 공시반복기한(1월)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1월+15일 경과후 공시내용의 중요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시반복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미확정 공시 내용의 구체성 확보(입증자료 첨부 의무화)

■ 사항 변동 ■

조회공시 요구	조회공시 답변유형	공시번복기한 (15일) 내	공시번복기한 이후 인접기한(7일) 내	기 타
사항변동 → (답변시한 : 익일)	확정 (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 수시공시 해당서식으로 공시	① 확정사항 이외의 공시번복사유 공시 ⇨ (현행) 불성실공시 ② 확정사항 및 공시번복사유(15가지) 이외의 기타주요경영사항 공시 ⇨ 사후심사	확정사항 이외의 공시번복사유 및 기타주요경영사항 공시 ⇨ 사후심사	-
	특이사항 없음 (중요정보가 없는 경우)	① 공시번복사유 공시 ⇨ (현행) 불성실공시 ② 공시번복사유 이외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 ⇨ 사후심사	공시번복사유 (15가지) 및 기타주요경영사항 공시 ⇨ 사후심사	-
	미확정* (“검토중”, “추진중” 공시) - 단, 1개월내 또는 확정 기일에 진척사항 재공시	① 미확정사항 이외의 공시번복사유 공시 ⇨ (현행) 불성실공시 ② 미확정사항 및 공시번복사유 이외의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 ⇨ 사후심사	미확정사항 이외의 공시번복사유(15가지) 및 기타주요경영사항 공시 ⇨ 사후심사	① 미확정공시내용의 변경·중단·취소시 ⇨ 사후심사 ② 미확정공시기한까지 확정공시 미이행시 ⇨ 사후심사

* 미확정 공시 내용의 구체성 확보(입증자료 첨부 의무화)

(2) 조회공시 답변서 확인서 양식

1 “중요정보 없음” 관련 확인서(예시)

한국거래소
이사장 귀하

○○○(주)는 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XXXX. XX. XX)에 대한 당사의 답변공시 제출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검토결과 현저한 사항변동에 대해 당사에서 답변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XXXX년 XX월 XX일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공시 및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이사 ○○○ (인)



2 미확정 공시에 관한 확인서(예시)

한국거래소
이사장 귀하

○○○(주)는 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XXXX. XX. XX)에 대한 당사의 답변공시 제출과 관련하여 현재 의사결정이 진행 중인 사항이 있으나 경영상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공시에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여 XXXX년 XX 월 XX 일 미확정이라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답변공시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상기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없으며 추후 재공시 기한 이내 구체적인 내용을 성실히 답변공시 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이사 ○○○ (인)

VI 자율적 해명공시

1. 개요

수시·자율·공정공시 등과 관련된 풍문·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 상장기업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해당사항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상장법인은 해명 공시를 할 수 없다.(공시규정 제26조의 2)

2. 주요내용

(1) 해명 대상: 풍문·보도 등

① 수시(포괄조항 포함)·공정·자율공시 관련 사항, ② 기타 상장법인의 주가·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8개 항목 열거)이 대상이다. 다만, 매매거래정지 대상 풍문 등(부도·해산 등 규정 제37조제2항 사항)은 해명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즉시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한다.

■ 8개 열거항목(공시규정 세칙 제13조의2제3항) ■

- ① 테마주와의 관련성 여부
- ②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조사 여부
- ③ 공시의무 사항인 소송 이외 소송 관련
- ④ 중요 임상시험 결과 관련
- ⑤ 영업 실적 개선·악화 관련
- ⑥ 국내외 법령 제·개정 및 조약 체결·종료 영향 관련
- ⑦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 ⑧ 대표이사 등의 신상 변동 관련



(2) 대상매체

해명공시 대상 언론매체는 ① 조회공시 대상매체, ② 조회공시 대상매체의 인터넷판, ③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등이다.

■ 해명공시 대상매체 ■

구분	내용
조회공시 대상매체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 보급 대상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신문법에 따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사	연합뉴스 등
거래소가 인정하는 국제뉴스 정보전문 제공기관	로이터, 블룸버그, AP 등

(3) 대상기업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외하는 상장법인 외에는 모두 해명공시를 할 수 있다.

(4) 절차 및 방법

풍문·보도에 대한 해명이므로 조회공시와 동일하게 ‘확정’, ‘부인’, ‘미확정’으로 공시한다.

- **(확정)** 풍문·보도가 사실이면 수사·공정·자율공시 관련 사항은 해당 공시서식으로, 기타 추가·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8개) 관련 사항은 별도 서식으로 해명*

* 서식명 :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 **(부인·미확정)** 풍문·보도가 사실무근인 경우 부인 해명공시, 미확정인 경우 미확정 해명공시 실시*

* 서식명 : [부인]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5) 공시시한

풍문·보도 발생일 당일(지면계재일·인터넷 게시시간 기준)까지 해명공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풍문 또는 보도 등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3. 사전 및 사후 관리

(1) 사전관리

해명공시에 대해서는 확인절차 면제법인이다더라도 거래소의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가 유지·적용된다.

(2) 사후관리

- **(재공시 의무 부과)** 미확정 공시로 해명시 조회공시에 대한 미확정 공시와 동일하게 일정기간* 이내 재공시
 - * 해명 공시일부터 1개월 또는 미확정 공시 당시 명시한 기간
- **(사후심사)** 조회공시와 마찬가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시 사후 심사를 거쳐 공시변복 여부를 결정
 - ① 재공시 기한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확정이 지연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② 미확정공시 이후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변경·중단·취소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③ 품문 등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중단·취소 또는 부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
 - ④ 품문 등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개월+15일이 경과한 후 기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중단·취소 또는 부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
- **(정정공시 적용)** 해명공시 내용의 취소·변경시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기 공시내용을 정정공시 해야함
- **(공시위반 제재)** 공시불이행, 공시변복, 공시변경 발생시 다른 공시사항과 동일하게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으며, 제재 심의과정에서 위반의 중요성 판단시 '중대한 위반'으로 처리



VII 시장신고사항

1. 개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주요경영사항(공시의무사항) 이외의 시장신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장신고사항 (공시규정 제38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자완료 / 감자주식의 취득완료 또는 취득기간 종료

감자완료는 감자 등기가 완료된 때 해당 등기부등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공시한다. 감자 주식의 취득을 완료하였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그 주식의 소각 완료시 신고한다.

(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한다. 정관으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또는 기간을 정해놓아 상법상 공고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공시규정에 따라 신고해야한다. 다만,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 및 분기·중간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은 수시공시**사항임을 유의한다.

*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기준일 설정시 '명부폐쇄기간'이 필요 없으며, 정관상 명부폐쇄기간을 두지 않는 상장기업들은 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가능

** 현금·현물배당(분기·중간배당을 포함)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결정한 때(정관에서 특정한 일자를 배당기준일로 정한 경우는 제외)

(3) 상호변경 안내

상호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시 주주총회결과 공시와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며, 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이 가결되면 변경 상장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변경상장신청서를 제출 (변경상장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한다.

(4) 본점소재지 변경

본점소재지 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또는 주주총회 결의시 주주총회결과 공시와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며, 변경 후 본점소재지가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필요. 정관에 위배되는 본점소재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함에 유의한다.

(5) 결산기 변경

결산기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시 주주총회결과 공시와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한다.

(6)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시 지체 없이 신고하며, 1차발행가액 결정공시는 당일 19시 까지 제출 가능하다.

(7) 단수주 및 실권주 처리

신주인수권자의 미청약에 따른 실권주식 처리 결정시 지체 없이 신고한다.

(8) CB, BW의 행사가액 및 EB의 교환가액 결정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행사가액 및 교환사채(EB)의 교환가액을 결정한 때 신고한다.

* 발행결정 공시와 동시에 발행가액·교환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행사가액·교환가액결정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9) CB, BW의 행사가액 및 EB의 교환가액 조정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행사가액* 및 교환사채(EB)의 교환가액의 조정(시가하락 및 시가상승에 따른 조정의 경우)때 신고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하향조정 또는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후 다시 시가 상승으로 인한 재조정이 있는 경우에 신고한다.



※ 유의사항 :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상장된 주식관련사채의 경우 반드시 조정 적용일의 직전 거래일에 행사가격을 산정하여 가격 변경 시장조치를 위한 공문 통보 및 공시 필수. 조정일 당일 행사가격 조정 조치 불가하므로 반드시 조정일의 직전 거래일에 공문 통보 및 공시 필요함.

(10) 전환청구권행사·신주인수권행사·교환청구권행사·주식매수선택권행사

CB, BW, EB 행사주식수 누계(기 신고분* 제외)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때 납입일 기준으로 신고한다.

* 기 신고분이란 기준에 해당 공시로 신고한 내역 및 '추가상장' 시장안내된 수량을 의미함

(11) CB, BW(신주인수권증권 포함), EB 발행 후 만기전 해당 사채 취득

만기일 이전에 CB, BW, EB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한다. 단순히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들어온 날 혹은 만기전 취득결정을 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취득금액을 지급하여 CB, BW, EB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

(12)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해지·변경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2조의3의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해지·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한다.

*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은 분기거래량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의 예외사유에 해당(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8호 및 상장규정시행세칙 제54조제3항)

(13) 최대주주인 명목회사·조합 등의 최대주주 변경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장규정 제51조제1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제2항에서 정하는 SPC 또는 투자조합 등인 경우, 그 자의 최대주주(회사가 아닌 경우 최대출자자)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지체 없이 신고하며,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공시규정 세칙 제18조의2).

VIII 공시유보

1. 개요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공시사항을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 상장법인이 기업경영상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시유보를 신청(“신청에 의한 공시유보”)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2. 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공시사항이 관계법규 등을 위반하거나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그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해당 공시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1) 공시유보 대상

1 군사기밀 해당사항

거래소는 공시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군사기밀이란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기타 군사기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군사기밀을 말한다.

2 관계법규 위반사항

거래소는 공시내용이 관계법령·규정에 위반시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참고** 관계법규 위반사례 예시**<증권관계법규 위반>**

- ① 자기주식 취득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주식 취득공시를 하는 경우
- ② 사외이사 자격요건 위반
- ③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발행가액 산정기준 위반
- ④ 상장규정상 반기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반기 검토보고서 제출
- ⑤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증권관계법규상 자기주식 처분절차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등
- ⑥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 1주 전보다 늦은 날짜에 동 유상증자 결정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등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위반 등>

- ① 공시내용, 첨부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②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 내용 기재누락
- ③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 ④ 증권관계기관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중대한 위반 등

3 공시내용의 근거사실 미확인

거래소는 다음과 같이 공시의 근거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 ① 수시공시 내용의 요건충족 여부 또는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또는 구속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한 경우
- ② 공정공시 중에서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수립과 관련된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참고 근거사실 미확인 사례 예시

- ①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은행 첨부서류, 특허수수료 납입영수증 등 미확인
- ② 우회상장 관련 확인서 등 입증서류 미비
- ③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공시시 행사가격 산정표 미첨부
- ④ 구속력이 없어 언제든지 취소 가능한 단순 MOU 계약
- ⑤ 실적·예측전망 공정공시의 경우 첨부서류의 내용상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예측수치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
- ⑥ 상기 사항 이외에 공시내용에 대한 증빙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시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거래소는 공시작성 및 제출방법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참고 투자판단 혼선 초래 사례 예시

- ① 이미 공시한 내용을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 ② 공시서식을 혼동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
(공시의무사항, 자율공시사항, 기타 주요경영사항 등 공시서식 혼동)
- ③ 대상회사명, 단위, 날짜 등 기재 오류 또는 누락
- ④ 상법상 자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오해하는 경우
- ⑤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공시를 지주회사 자체의 공시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
- ⑥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투자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경우
- ⑦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확정'임에도 불구하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분류 값 선택 오류
- ⑧ CB, BW의 발행과 관련하여 기한이익 상실조항, Option조항, 손실보전약정 등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투자판단 사항"에 미기재 등
- ⑨ 감사보고서 등 매년 단위 공시사항과 관련하여 공시본문 및 첨부자료를 전년도 수치 또는 첨부 자료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등

5 조회공시 재공시 내용이 이미 공시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조회공시 미확정 공시에 대한 재답변 공시가 이미 공시한 미확정 공시 내용과 유사하여 정보제공 효과가 없고 유사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거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거래소는 공시를 유보하거나 더 이상 유사한 재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참고 유사한 재공시 사례 예시

재공시 내용이 이미 공시한 미확정 공시 내용과 비교하여 사업규모, 추진가능성, 협상상대방, 계약조건 등에 관한 진척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없고 단지 재공시 기한을 다시 연기할 뿐으로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6 위 사항들 이외에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상기 5가지 사항 이외에 코스닥시장 공시정보의 신뢰도 훼손 등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참고 시장질서 훼손 우려 사례 예시

- ① 공시 의무사항이 아닌 내용을 상습적으로 “기타 주요경영사항” 서식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② 공시의 내용이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기보다 주가 부양 목적의 광고성 또는 허구성 사항인 경우
- ③ 최근 발생한 다른 회사의 유사한 공시사례를 고려할 때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2) 공시유보 방법**1 수정 및 보완 요구**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내용이 공시유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유보 후 다음과 같이 공시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①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 또는 수정
- ② 관계법규 위반내용을 제외 또는 수정
- ③ 수시공시 내용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 ④ 허위기재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제외 또는 수정
- ⑤ 기타 투자판단 혼선초래 또는 시장질서 훼손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외 또는 수정 등

2 수정 및 보완공시

거래소가 공시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한 경우 상장법인은 해당 공시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당일 공시제출 마감시간 이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시철회

상장법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철회할 수 있고, 상장법인이 공시를 철회하는 경우 거래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거래소가 공시유보 후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한 상태에서 해당 공시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취소된 경우
- ② 거래소가 공시내용을 승인하거나 수정·보완을 요구하기 이전에 상장법인이 먼저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4 공시유보 사실의 공표

거래소는 장기간 공시를 유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투자자에게 공시유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보내용과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서로 상반된 내용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5 투자유의 문구의 기재

상장법인이 공시내용에 “투자유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혼란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적절한 “투자유의 문구”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투자유의 문구”에 향후 변동가능성, 근거사실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 사유별 문구 예시

- ①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관계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공시내용중 ○○에 관한 사항은 ○○의 이유로 관계법규 위반가능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공시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구체적인 진행단계에 있으나 근거사실이 최종적으로 미확정된 경우 또는 근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 “공시내용중 ○○에 관한 사항은 근거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진행상태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

공시사항 중 일부가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상장법인이 해당 사항에 대해 거래소에 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시유보 신청대상

1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계약금액, 거래상대방 등 주요 계약조건에 대하여 공시유보를 신청하는 경우 공시유보를 승인할 수 있다.

2 신규시설 투자, 세척에서 정하는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공장증설 등

시설투자 등에 관한 결정 후 투자금액 등에 대하여 공시유보를 신청하는 경우 공시유보를 승인할 수 있다.

3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주의 공시사항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기술도입에 관한 결정 후 계약금액 또는 거래상대방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공시유보를 신청하는 경우 공시유보를 승인할 수 있다.

4 지주회사가 행하는 자회사공시 중 상기 세 가지 공시사항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신규시설 투자, 세척에서 정하는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공장증설 등 및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주의 공시사항을 공시할 때 상기 기준에 따라 공시유보를 신청하는 경우 공시유보를 승인할 수 있다.

(2) 자율공시 사항에 대한 공시유보 적용여부

자율공시 사항의 경우 공시유보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시서식에 기재된 계약금액, 계약상대방 등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공시유보 신청방법

- ① 상장법인은 공시유보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하여 [공시서식 4] 공시유보 신청서 및 거래상대방의 요청공문 등 소명자료를 통해서 소명할 수 있음
- ② 공시유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상대방 등을 미기재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거래소는 공시를 거부할 수 있음
- ③ 공시유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시승인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시문서를 제출(공시유보 신청서는 해당 공시에 비공개로 첨부)
- ④ 공시서식에는 공시유보 기한 또는 조건과 유보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4) 공시유보 승인기준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보호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공시유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유보 신청내용을 승인할 수 있다.

“경영상 중대한 비밀” 해당여부는 해당 계약의 특성, 영업·재무에 미치는 영향, 동종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근 주가 변동 상황, 신청법인의 과거 내부정보관리상태 및 풍문 빈발여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비밀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에서도 “경영상 중대한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공시유보 신청내용을 승인한다.

※ 계약서상 당사자간에 “비밀유지의무”가 기재되어 있거나 내부 규정상 비밀유지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유지 필요성이 자동적으로 소명되는 것은 아님

(5) 공시유보 기한

1 공시유보 기한의 결정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신청한 공시유보 기한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특성, 납품일정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기간으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이내에서 승인한다.



2. 공시유보 내용의 재공시

거래소가 공시유보를 승인한 이후 유보기간의 경과 또는 유보조건이 해제되는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유보내용을 전부 공시하여야 하며, 유보내용을 공시하는 방법은 당초 공시 내용에 대한 정정공시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경영상 비밀유지 등 필요시 계약상대방을 국적, 업종 등으로 개략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략적 공시는 유보기간 종료시까지 [공시 서식 4-1] 계속적 공시유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유보범위는 계약상대방 항목에 대해서만 허용(계약금액은 반드시 공개)된다.

* 예) 기업명 대신 '싱가포르 방산기업', '국내 IT기업' 등으로 기재

3. 공시유보 기한연장 또는 조건변경

거래소가 공시유보를 승인한 이후 유보기간을 연장 또는 유보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공시유보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①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의 경우 공시유보 사유 해소에도 불구하고 유보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공시규정 제27조제3호)
- ② '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의 경우 거래소가 공시유보한 공시의무사항에 대하여 유보사유를 해소한 이후에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공시규정 제27조제1호)

제2장 상장업무



- Ⅰ. 우회상장
- Ⅱ. 추가·변경상장
- Ⅲ. 의무보유

I 우회상장

1. 개요

우회상장이란 비상장법인이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양수, 현물출자,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의 경영권·사업내용 변동 등을 초래함으로써 비상장법인이 사실상 상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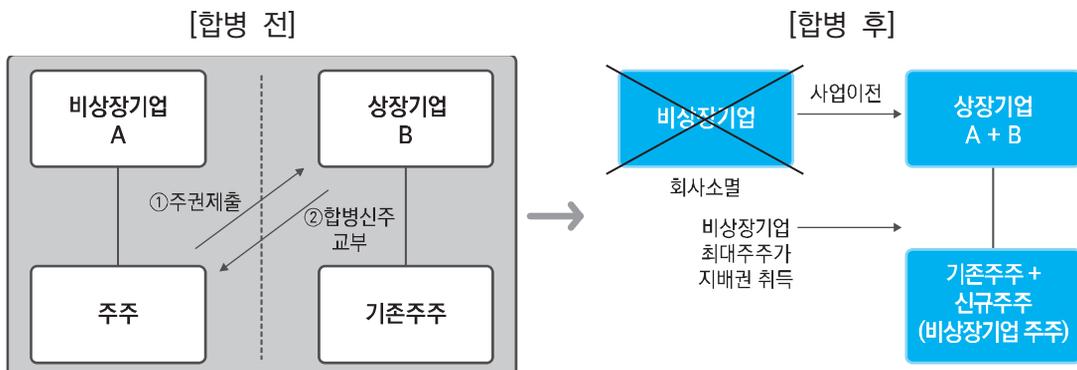
참고 외국의 우회상장 개념

- **(미국 Nasdaq)** 비나스닥기업이 나스닥기업과 결합을 통하여 나스닥기업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정의(NASD Rule 5110(f))
 - 지배권변동, 경영진·이사회 변경, 의결권, 재무·영업구조, 비상장기업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회상장 여부를 판단
- **(영국)** 상장기업의 비상장기업과의 합병, 영업·자산양수를 통한 상장기업 영업부문의 근본적 변화, 이사회 구성의 변화, 지배권 변동 등이 있는 거래(reverse takeover)로 정의(FSA The Listing Rules 10.2.2)

2. 우회상장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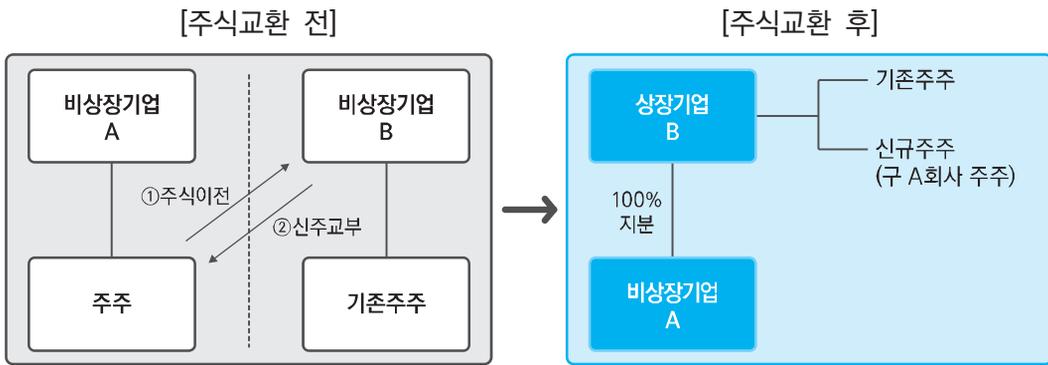
(1) 합병(분할합병 포함)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하면서 비상장법인은 소멸(또는 분할)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인수하는 구조다.



(2) 포괄적 주식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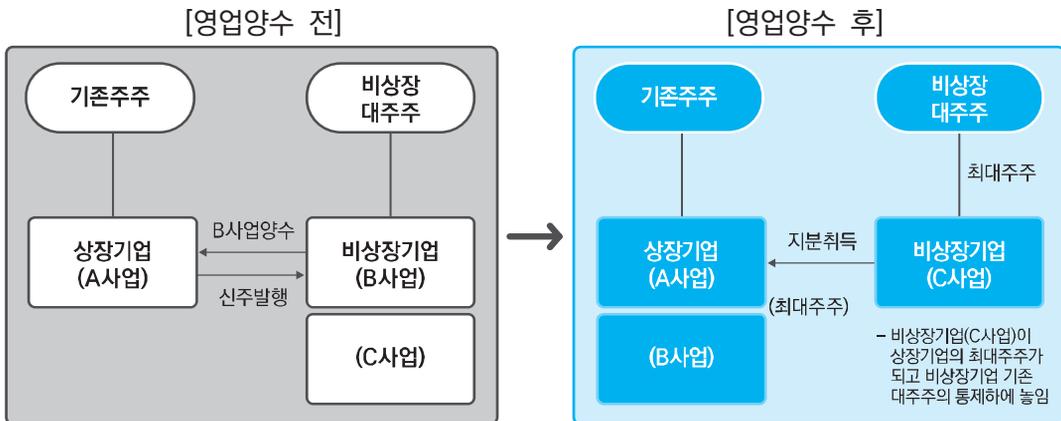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모두 상장법인에 이전하고 신주를 발행·교부하여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의 100% 자회사가 됨으로써 우회적으로 상장한다. 교환과 함께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교환비율만큼 상장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므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교환이후에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다.



(3) 영업양수 & 제3자배정 증자(또는 주식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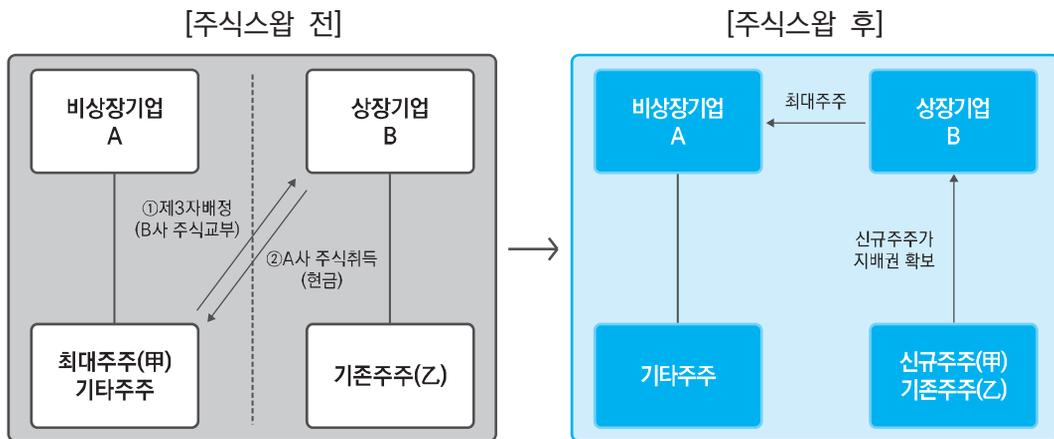
비상장법인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상장법인에 양도하고, 상장법인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여 대금지급에 갈음한다. 비상장법인의 사업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우회상장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기도 한다.

* 제3자배정으로 신주 등을 취득한 비상장법인(최대주주등)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됨(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를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로 임명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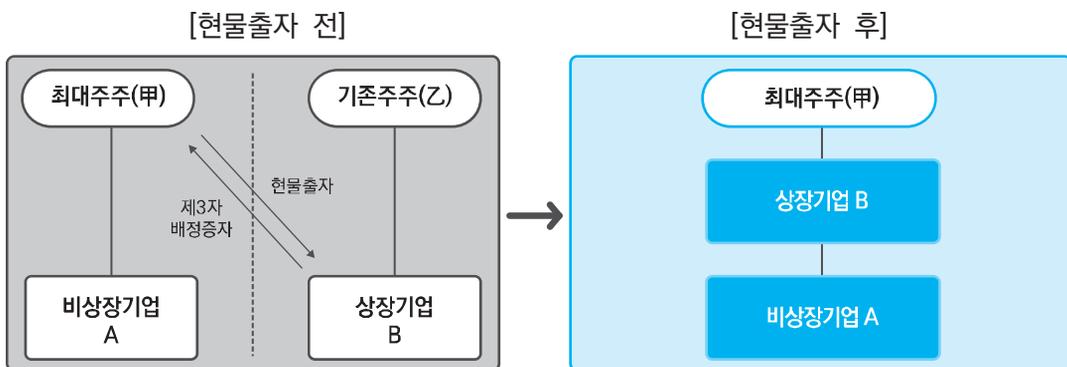
(4) 자산양수(주식스왑+기타지분증권 인수) & 제3자배정 증자(또는 주식이전)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에게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하고 제3자 배정 증자에 참여하여 상장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비상장주식을 상장주식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포괄적 주식교환이 개별주주의 의사에 상관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비상장법인 주식 전부가 상장주식으로 교체되는 데 반해, 주식스왑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주주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사인간의 행위로 주식의 일부가 상장주식으로 교체된다.



(5) 현물출자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금전이 아닌 현물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로 주식대금을 납입한다. 실질적으로 자산양수(지분인수)&제3자 배정 증자(주식스왑)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3. 우회상장 규제

상장규정은 우회상장을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면서 상장법인의 경영권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상장적격성이 떨어지는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신규상장에 준하는 우회상장 요건 충족을 요구한다. 또한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는 의무보유도 부과한다(상장규정 제36조~제37조).

거래소는 합병 등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① 경영권 변동이 없으면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에 대해 의무보유 의무만 부과하고, ② 경영권 변동이 있으나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회상장 종목임을 표시(최장 2년간)하고,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5%출자자 포함)에 대해 의무보유를 부과하며, ③ 경영권 변동이 있으면서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외형요건 미달 및 우회상장 미승인)에서 우회상장 추진 시 상장폐지 조치를 한다.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기업결합을 통한 우회상장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의 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우회상장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주요사항보고서 등 신고일 이전에 거래소와 협의해야 한다(상장규정 세칙 제32조). 한편, 특수관계인 파악이 미비되는 등 경영권 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정지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상장규정 세칙 제19조제1항제3호나목~마목).

4. 우회상장 심사대상 판단

(1) 합병

다음의 ① 또는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우회상장 심사 대상이다.

1 비상장법인의 규모가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우회상장에 해당한다 (상장규정 제33조제2항).

2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①, ②, 또는 ③에 해당)되는 경우

- ① (既 최대주주 변경)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상장규정 세칙 제30조제1항제1호)
- ② (합병결과 최대주주 변경) 합병으로 인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합병 주요사항보고서상 합병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함)(상장규정 세칙 제30조제1항제1호)
- ③ (5%이상 주주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5%이상 주주가 합병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거나 합병으로 인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상장규정 세칙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2항)

Key-point

- ◆ (최대주주 여부 판단) 합병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중인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해 증가될 주식과 법률·계약에 따른 인도청구권 등의 대상인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로 증가할 주식 기준)를 포함하여 판단(상장규정 세칙 제30조제3항)
- ◆ (합병 절차)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합병비율에 대한 외부평가, 합병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 ◆ (소규모·간이합병) 상법 제527의2·3에 따른 소규모합병 혹은 간이합병인 경우에는 우회상장 심사 대상인 합병에 해당하지 않음



(2) 주식교환

다음의 ①, ② 또는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우회상장 심사 대상.

- 1 (既 최대주주 변경) 주식교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상장규정 세칙 제30조 제1항제1호)
- 2 (주식교환 결과 최대주주 변경)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주요사항보고서상 교환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함) (상장규정 세칙 제30조제1항제1호)
- 3 (5%이상 주주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5%이상 주주가 주식교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상장규정 세칙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2항)

Key-point

- ◆ (최대주주 여부 판단) 주식교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중인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해 증가될 주식과 법률·계약에 따른 인도청구권 등의 대상인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로 증가할 주식 기준)를 포함하여 판단(상장규정 세칙 제30조제3항)
- ◆ (주식교환 절차) 비상장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해당 비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하려는 경우에는 교환비율에 대한 외부평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3) 영업양수 & 제3자배정(또는 주식이전)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① 영업을 양수하고, ②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 이전을 하는 경우로서, ③ 경영권 변동이 있는 경우(상장규정 제33조제1항제1호다목) 우회상장에 해당한다(①·②·③ 모두 충족).

1 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영업양수)를 할 것(상장규정 제33조제1항제1호다목).

참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중요한 영업양수(자본시장법 시행령 §171②1~4호)

자산액 기준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
매출액 기준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의 10% 이상
부채액 기준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의 10% 이상

* 양수대상 영업부문이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우회상장 심사대상 (상장규정 세칙 제31조제1항제3호)

2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또는 주식이전)

영업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의 1년 이전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방식의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최대주주 변경공시가 있는 경우에 한함, 상장규정 세칙 제30조제1항제2호)을 하는 경우

* 최대주주 및 최다출자자, 각각의 특수관계인 및 5%이상 주주·출자자를 포함

참고 우회상장 판단의 주요 포인트

제3자배정 (주식이전)대상 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지분증권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배정(이전)시기	영업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또는 이후 6개월 이내
배정(이전)대상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5%이상 주주

* 해당 비상장법인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3 경영권 변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권 변동(상장규정 세칙 제30조제1항제2호)

① 既 최대주주 변경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 이전을 하는 경우) 영업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예약매매 주식 등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 이전 하는 경우) 영업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의 1년 이전부터 해당 발행일(또는 주식 이전일) 이전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예약매매 주식 등은 주식등의 발행일 또는 주식 이전일을 기준으로 적용을 기준으로 적용)

② (제3자배정등으로 최대주주 변경) 영업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또는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발행된 주식등을 배정받거나 주식이전으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③ (5%이상 주주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 하는 경우) 영업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5% 이상 주주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해당 주식등의 발행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예약매매주식등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 이전 하는 경우) 영업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의 1년 이전부터 해당 발행일(또는 주식 이전일) 이전에 비상장법인의 5% 이상 주주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해당 주식등의 발행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예약매매주식 등은 주식등의 발행일 또는 주식이전일을 기준으로 적용)

Key-point

- ◆ **(최대주주 여부 판단)** 영업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중인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해 증가될 주식과 법률·계약에 따른 인도청구권 등의 대상인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로 증가할 주식 기준)를 포함하여 판단함(상장규정 세칙 제30조제3항)
- ◆ **(영업양수 절차)**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4) 자산양수 & 제3자배정(또는 주식이전)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① 자산을 양수하여 해당 비상장법인을 지배하고, ② 주식 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로서, ③ 경영권 변동이 있는 경우(상장규정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우회상장에 해당한다(①·②·③ 모두 충족).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자산양수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의 양수(자산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을 말함)**를 하고(상장규정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지분증권 양수 후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일 것.

* 최대주주 및 최다출자자, 각각의 특수관계인 및 5%이상 주주·출자자를 포함

** 중요한 자산양수 중 지분증권 양수만 우회상장 대상(상장규정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2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또는 주식이전)

자산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이전 1년 또는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방식의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

참고 우회상장 판단의 주요 포인트

제3자배정 (주식이전)대상 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지분증권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배정(이전)시기	자산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전 1년 또는 이후 6개월 이내
배정(이전)대상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5%이상 주주

* 해당 비상장법인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3 경영권 변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권 변동(상장규정 세칙 제30조제1항제2호)

① 既 최대주주 변경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 하는 경우) 자산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예약매매 주식 등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 이전 하는 경우) 자산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부터 해당 발행일(또는 주식 이전일) 이전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예약매매 주식 등은 주식등의 발행일 또는 주식 이전일을 기준으로 적용)

② (제3자배정등으로 최대주주 변경) 자산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또는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발행된 주식등을 배정받거나 주식이전으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③ (5%이상 주주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 하는 경우) 자산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5% 이상 주주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해당 주식등의 발행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예약매매 주식등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 이전 하는 경우) 자산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부터 해당 발행일(또는 주식 이전일) 이전에 비상장법인의 5% 이상 주주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해당 주식등의 발행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예약매매 주식 등은 주식등의 발행일 또는 주식 이전일을 기준으로 적용)

Key-point

- ◆ **(최대주주 여부 판단)** 자산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중인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해 증가할 주식과 법률·계약에 따른 인도청구권 등의 대상인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로 증가할 주식 기준)를 포함하여 판단함(상장규정 세칙 제30조제3항)
- ◆ **(자산양수 절차)**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5) 현물출자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① 제3자배정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②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로서, ③ 경영권 변동이 있는 경우(상장규정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 우회상장에 해당한다(①·②·③ 모두 충족).

1 제3자배정으로 주식을 발행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방식의 주식 발행을 할 것

* 최대주주 및 최다출자자, 각각의 특수관계인 및 5%이상 주주·출자자를 포함

참고 우회상장 판단의 주요 포인트

발행대상 증권	주권
배정대상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5%이상 주주
발행방식	제3자배정

* 해당 비상장법인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2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현물출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법인에 상법(제422조)에서 규정하는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가액이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고(상장규정 세칙 제31조제2항), 현물출자 후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30%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일 것

* 현물출자의 목적재산이 지분증권인 경우 우회상장 대상(상장규정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3 경영권 변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권 변동(상장규정 세칙 제30조제1항제3호)

- ① **(既 최대주주 변경)** 현물출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3자배정 방식 주식발행에 관한 신고가 있는 날 1년 이전이 되는 날부터 해당 주식의 발행일 이전까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예약매매 주식 등은 해당 주식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 ② **(제3자배정으로 최대주주 변경)** 현물출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을 배정받아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③ **(5%이상 주주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현물출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3자배정 주식의 발행에 관한 신고가 있는 날 1년 이전이 되는 날부터 해당 주식의 발행일 이전에 해당 비상장법인의 5%이상 주주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해당 주식을 배정받아 비상장법인의 5%이상 주주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Key-point

- ◆ **(최대주주 여부 판단)** 해당 주식의 발행일 현재 미행사중인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해 증가될 주식과 법률·계약에 따른 인도청구권 등의 대상인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로 증가할 주식 기준)를 포함하여 판단함(상장규정 세칙 제30조제3항)
- ◆ **(현물출자)** 출자대상 자산의 가치평가 적정성에 대한 법원인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5. 우회상장 처리절차 (상장규정 제34조, 세칙 제19조, 제32조, 제33조)

1 사전협의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과 우회상장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우회상장 해당 및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현물출자는 제3자배정 주식 발행에 대한 수시공시일) 이전에 거래소와 협의해야 한다.

2 우회상장 확인 및 매매거래정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우회상장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우회상장 관련 확인서(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21호 서식)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내용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지해야 한다.

* 합병 및 주식교환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에 제출
 영업양수/자산양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거나 주식 이전을 하는 경우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기 제출한 확인서의 첨부서류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은 생략 가능)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유형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규정 제6조에 따라 수시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간이·소규모 합병 제외)하고, 거래소가 상장법인에 대해 우회상장 해당 여부를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상장폐지 대상(확인서상 우회상장에 해당하고 외형요건 미충족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를 유지한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통지

거래소는 우회상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상장법인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4 우회상장 심사

우회상장 해당으로 통지받은 상장법인은 심사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우회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상장에 준하는 외형요건과 질적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심사서류는 상장주선인 또는 인수합병 전문기관을 통하여 제출한다.



<우회상장 심사요건>

① 외형요건

[합병, 주식교환, 자산양수&제3자배정, 현물출자의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

- ①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이상
- ② 자본잠식이 없을 것(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 ③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자기자본이익률(ROE) 10%(벤처 5%)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이상일 것(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 ④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최근 사업연도 기준)

[영업양수&제3자배정의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

- 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 ②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 ③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 부채액,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주식으로 기재된 양도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최근 사업연도 기준)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현물출자는 주식발행에 관한 공시일 기준
 - * 요건 적용시 비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

② 질적요건(다음을 모두 충족)

- ① 영업·재무상황 등 기업 계속성이 인정될 것
- ② 지배구조·내부통제·상장 전 주식거래 등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이 인정될 것
- ③ 투자자보호 및 시장 건전한 발전에 저해가 없을 것

참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상장규정 세칙 제33조제3항)

- 1) (상장법인) 상장 후 3년경과 / 최근 2년내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불성실공시법인이 아닐 것 / 최근연도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최근연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며 영업이익이 있을 것 / 최근 2년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된 바 없을 것
(비상장법인) 자금조달기능 저해나 선량한 풍속 위반 업종이 아닐 것 등
- 2) (상장법인) 최근 2년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된 바 없을 것
(비상장법인) 법인명이 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 전 1년 이내에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된 후 1개월이 경과할 것 / 최근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있을 것 / 인수합병 전문기관의 추천이 있을 것 / 비상장법인이 자금조달기능 저해나 선량한 풍속 위반 업종이 아닐 것 등

또한, 심사기간이나 우회상장 후 단기간 내 주가급변에 따른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과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상장·비상장법인 발행주식 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의무보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2장 “Ⅲ. 의무보유” 참조)

5-1 우회상장 사실 공표

우회상장 심사결과 비상장 법인이 상장규정이 정하는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합병 등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상장일 등으로부터 해당 신주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우회상장” 표시를 하여 공표한다.

5-2 상장폐지

비상장법인과 합병 등이 우회상장 요건(의무보유 포함)을 위반하여 합병 등을 완료한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 조치를 한다. 다만, 합병 등을 취소하고 그 이행이 확인된 경우는 상장폐지를 하지 않는다.



II 추가·변경상장

1. 개요

상장법인 주권의 주식수의 증가가 있는 추가상장이나, 상호변경, 액면분할 등 변경상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상장 주권이 원활히 거래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추가 및 변경상장 사유

(1) 추가상장 사유(신주의 발행이 있는 경우)

유형	효력발생일(발행일)	관련 법규
유상증자	납입일 익일	상법 제423조
무상증자	배정기준일, 주주총회 결의일	상법 제461조
주식배당	주주총회 결의일	상법 제462조의2
전환사채(CB) 전환	전환권 행사일	상법 제5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	신주인수대금 또는 채권대용 납입일	상법 제516조의1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행사가액 납입일	상법 제340조의5
합병 등	합병 등기일	상법 제234조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교환일	상법 제360조의2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전환청구일	상법 제350조

(2) 변경상장(기 상장된 주권의 권리 또는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유형	효력발생일(발행일)	관련 법규
상호변경	직전 회차 주식 발행일	-
주식분할·병합	병합기준일	전자증권법 제65조
자본감소	병합기준일	전자증권법 제65조
회사분할	분할등기일	상법 제530조의11
주식소각	병합기준일	전자증권법 제65조
종류주식의 전환	전환기준일	전자증권법 제64조

3. 신청기한 및 방법, 프로세스

(1) 신청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상장예정일의 5매매거래일 전까지 신청한다.

(2) 신청방법

사유별 상장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3) 추가·변경 상장 프로세스 (신청일로부터 5매매거래일 소요)

신청인은 상장예정일(D)의 5매매거래일 전까지 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며, 시장안내는 상장예정일 3매매거래일 전에 한다. 의무보유(전부·일부)가 있는 경우에 상장예정일의 3매매거래일 전 의무보유증명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장예정일 전일(D-1)에 의무보유청구내역서 확인 후 시장안내를 한다. (상장예정일(D) 당일에 의무보유증명서* 첨부 추가 필요)

* 의무보유예탁증명서, 의무보유예탁관리대장

추가·변경상장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① 추가 및 변경상장 사유별로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
- ② KRX상장공시제출시스템(filing.krx.co.kr) 접속 → 공시제출 → 상장문서 → 추가상장신청서 또는 변경상장신청서 선택
- ③ 해당 정보입력(발행회차, 액면가, 발행일, 변경사유 등)
- ④ 변경(추가)상장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로 업로드
 -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장예정일 전일에 제출)는 원본 제출
- ⑤ 상장수수료 납부 후 송금증 제출
 - 추가상장 주식수에 상장신청일 직전일의 종가를 곱하여 산정된 시가총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상장신청 시 거래소 계좌로 입금
 - 변경상장(감자, 상호변경, 액면분할/병합) 수수료는 건당 200만원



참고 **추가상장수수료 요율**

증가 자본금	요율
100억원이하	자본금의 0.25% (자본금 10억 미만 : 25만원)
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25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0.09%
3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43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0.08%
500억원초과 700억원이하	59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0.07%
7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730만원 + 700억원 초과금액의 0.06%
1,000억원초과 2,000억원이하	91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0.05%
2,000억원초과 5,000억원이하	1,410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0.04%
5,000억원초과	2,610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0.02%
* 최저한도액: 25만원/ 최고한도액 : 5,000만원	

※ 상장수수료 면제 법인

- 주된 영업이 정지된 상장법인
- 부과일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상장법인
- 코스닥대상 수상법인, 라이징스타 선정법인 (지정일로부터 1년간 면제)
- 스팩과 합병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합병상장의 경우에만 면제)
-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지정법인 (지정기간 동안 면제)

Key-point

◆ **상장수수료 계산시 유의점**

- 최저수수료 250,000원
- 상장신청서류 제출 직전일 기준 종가×추가상장 주식수로 계산
- 추가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별로 산정(상장신청서가 여러 건이더라도 상장신청일이 같으면 추가상장주식수는 합하여 계산)
- 10억원당 수수료를 산정시 10억원 미만의 금액은 올림하여 산정
- 상호변경, 액면병합, 액면분할 등 변경상장은 건당 200만원
- 변경상장신청일이 같은 접수일에 다수의 변경상장 신청 시 1건으로 간주하여 1건의 변경상장수수료 부과

4. 상장사유별 제출서류

공통서류와 상장 사유별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공통서류

① 추가상장신청서 또는 변경상장신청서

* 제출시스템 → 보고서 검색 : “추가상장신청서” 또는 “변경상장신청서”

-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만 발취 가능)
- ③ 발행등록사실확인서
- ④ 상장수수료 납부 송금증
- * 상장수수료 납부 영수증은 추가상장 절차 완료 후 KIND 제출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⑤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관련 공시에서 기재출한 경우 생략, 필요시 최종 의사록 및 관련 부분만 제출)

(2) 상장 사유별 추가서류

1 추가상장

상장사유 (사유발생일)	제출서류
유상증자 (주금납입일 익일)	①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별도서식), 주금납입사실에 관한 확인서(별도서식) 포함 제출 ②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한함 (증권신고서 면제대상으로 일정기간 의무보유 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무보유 당일) 제출) 소액공모인 경우 소액공모실적보고서 ③ 발행가액 산정내역서 ④ [의무보유 대상인 경우] 의무보유확약서(상장세칙 별지 제14호, D-5까지 제출)와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무보유증명서 등) - (증권사 통해 발급 가능) 의무보유청구내역(D-1 제출), 의무보유예탁증명서&의무보유예탁관리대장(D 제출) 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자금사용내역확인서(상장세칙 별지 제32호) 및 증빙서류(납입일~상장신청일 중 주금납입계좌의 입출금내역) ⑥ [현물출자/출자전환] 납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原 금전대차계약서, 상계확인서, 법원의 현물출자허가서, 회계원장 등) ⑦ [우리사주무예탁이 있는 경우] 예탁이행확약서, 예탁신청서(주식취득자금내역 등 포함), “예탁일자별 잔고확인서” 또는 “주식예탁증명서”
무상증자 (신주의 배정기준일) * 정관상 주총결의사항인 경우 주총결의일	① [의무보유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분]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무보유예탁증명서&의무보유예탁관리대장, D-5 제출가능) ② [우리사주무예탁이 있는 경우] 예탁이행확약서, 예탁신청서(주식취득자금내역 등 포함), “예탁일자별 잔고확인서” 또는 “주식예탁증명서”
주식배당 (주주총회 결의일)	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② [의무보유 주식에 대한 주식배당분]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무보유예탁증명서&의무보유예탁관리대장, D-5 제출가능)
전환사채(CB) 전환 (전환권 행사일)	① 전환청구서(신청서) ② 법인인감이 날인된 전환(행사)가액 변동 연혁표(단, 필요시 산정내역 징구 가능)



상장사유 (사유발생일)	제출서류
	③ [의무보유 대상인 경우] 의무보유확약서(상장세칙 별지 제14호, D-5까지 제출)와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무보유증명서 등) - (증권사 통해 발급 가능) 의무보유청구내역(D-1 제출), 의무보유예약증명서&의무보유예약관리대장(D 제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 행사 (신주인수대금 납입일 또는 채권대용 납입일)	① 신주인수권행사신청서 ② 법인인감이 날인된 전환(행사)가액 변동 연혁표(단, 필요시 산정내역 징구 가능) ③ 주금납입증명서(현금납입)* 또는 사채말소(사채대용납입) 확인서 * 주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금납입사실에 관한 확인서(별도서식)과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별도서식) 포함 제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주금납입일)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 ② 법인인감이 날인된 행사가액 변동 연혁표(단, 필요시 산정내역 징구 가능) ③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별도서식), 주금납입사실에 관한 확인서(별도서식) 포함 제출 ④ 행사 현황표* * 해당 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부여일, 행사기간, 최초 및 변동 부여주식수, 최초 및 변동 행사가격, 당해 행사수량, 누적 행사수량, 부여대상자 재직 여부 및 행사자격 적격 여부 등 기재 필요 ⑤ [우리사주의무예약이 있는 경우] 예약이행확약서, 예약신청서(주식취득자금내역 등 포함), “예약일자별 잔고확인서” 또는 “주식예약증명서”
합병 등 (합병등기일)	① 합병계약서 ② 합병종료보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③ [의무보유 대상인 경우] 의무보유확약서(상장세칙 별지 제14호)와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무보유증명서 등)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주식교환일)	① 주식교환계약서 ② 교환대상회사의 주주명부 ③ 교환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명단 ④ [의무보유 대상인 경우] 의무보유확약서(상장세칙 별지 제14호)와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무보유증명서 등)
우선주의 보통주전환 (전환권 행사일)	① 전환청구서(신청서) ② 법인인감이 날인된 전환비율 변동 연혁표(단, 필요시 산정내역 징구 가능)
우선주의 추가상장 (주금납입일 익일)	① 발행가액 산정내역서 ②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 변경상장

변경사유 (사유발생일)	제출서류
상호변경 (주주총회 결의일)	① 정관 ② 상호변경 일정내역(횃수별 상세현황) ③ 발행인관리계좌부 기재확인내역서(잔고확인서)
주식분할·병합 (병합기준일)	① 유통주식현황표 ② 정관 ③ [의무보유 대상인 경우] 의무보유확약서(상장세칙 별지 제14호)와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무보유증명서 등)
자본감소 (병합기준일)	① 유통주식현황표 ② [의무보유 대상인 경우] 의무보유확약서(상장세칙 별지 제14호)와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무보유증명서 등)
회사분할 (분할등기일)	① 유통주식현황표 ② 분할종료 보고서 ③ [의무보유 대상인 경우] 의무보유확약서(상장세칙 별지 제14호)와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무보유증명서 등) ④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계획
주식소각 (병합기준일)	① 유통주식현황표



[유의사항]

- ① 의무보유 증명서류 제출 관련: 상장예정일 전일에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후 의무보유청구내역을 거래소에 제출 (상장예정일 당일에 의무보유증명서 첨부)
- ② 상호변경시 정관, 상호변경 일정내역, 변경상장신청서, 등기부등본 및 (전자)변경상장신청서 간 내용을 일치시킬 것 (띄어쓰기, 영문 대문자, 점 및 쉼표 등 유의)

주요 Q&A

Q 추가상장 시장안내는 상장법인이 하는 건가요?

A 추가(변경)상장시 시장 안내는 상장예정일 3매매거래일 전에 거래소에서 상장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안내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의무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장예정일 전일에 의무보유 서류를 확인한 후 시장안내 공시를 내보냅니다. 추가(변경)상장 시장안내는 금융감독원(dart)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이 안되고 KRX홈페이지나 증권사 HTS 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회사의 종목명(한글상호 약명)만 변경하려는데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한글상호의 변경 없이 약명이나 영문명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KRX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서 변경상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① (상호변경)변경상장신청서 ② 정관 ③ 등기부등본 ④ 주총의사록을 제출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장예정일 5매매거래일 전에 요청하면 됩니다. 상장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Ⅲ 의무보유

1. 개요

의무보유란 주주 등이 가진 주식 등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의 조치에 의해 그 매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상장, 제3자배정 유상증자, 우회상장 등이 있는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주식관련사채 등의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핵심투자자의 책임경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의무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 ① 신규상장에 따른 의무보유
- ② M&A(우회상장) 관련 의무보유
- ③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의무보유(최대주주 변경시 또는 관리·환기종목 지정 상장법인)
- ④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사모발행시)에 의한 의무보유
- ⑤ 투자조합 등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의무보유
- 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시 의무보유
- ⑦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관련 의무보유



2. 의무보유 대상 및 기간

(1) 신규상장

구 분	대형법인 ^{주1)}	일반·벤처기업	기술성장기업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2)}	6개월	6개월	1년
상장예비심사신청일전 1년 이내에 -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 ^{주3)} 을 취득한 자 -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을 취득한 자 ^{주4)}	6개월	6개월	1년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주5)} (투자기간 2년 미만)	-	1개월	-
상장주선인 ^{주6)}		3개월 (모집(매출) 주식의 3%(Max 10억)) 다만, 혁신기술기업의 상장주선인이 일정한 사유 ^{주7)} 가 있는 경우 6개월	
SPAC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주주 등	주권 상장일부터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과 합병기일 후 6개월까지		

- 주1)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인 기업
- 주2) 신규상장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 ('22.03.28 이후 신규상장예비심사청구 접수 기업부터 적용)
- 주3) CB/BW의 신주전환을 포함
- 주4) 최대주주등 보유 주식등 중에서 코넥스시장을 통하여 취득한 물량은 매각제한 예외 적용
- 주5) 상장신청인이 기술성장기업으로서 K-OTC 등록·지정법인(상장예심신청일 기준 등록지정일이 1년 이상 경과하고 K-OTC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력이 없을 것), 대형법인, 상장예심신청일 기준 코넥스상장 1년 이상 경과 법인인 경우 제외
- 주6) 외국기업의 경우 모집(매출) 주식의 5%(Max 25억, 외국기술성장기업의 경우 Max 50억원)를 6개월간 의무보유.(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적격해외증권시장에 상장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기업은 제외. 또한 상장주선인의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신청일을 기준으로 함)이 6개월 미만인 주식 등은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상장규정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 5%에 해당하는 수량을 1년간 의무보유 하되,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 취득 주식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 주7) 혁신기술기업(규정 제2조제1항제39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성장기업이 상장한 이후 2년 이내에 투자주의환기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을 6개월로 연장
- 주8) 그 밖에 거래소가 투자자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 등에 대해서는 상장일부터 해당 의무보유자와 협의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제2장
 의무보유

(2) 우회상장 심사대상 기업결합

유형	의무보유 대상자	보유기간 ^{주5)}	대상 주식등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 ^{주1)}	6개월	비상장법인 및 상장법인 발행 주식 등
	비상장법인 주식등 취득자 (제3자배정 또는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소유 주식 등 취득자) ^{주2)}	6개월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 등
	벤처금융주 ^{주3)} & 전문투자자 ^{주3)} (투자기간 2년 미만)	1개월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 등
영업(자산)양수&제3자배정 (주식이전, 현물출자 포함)	최대주주 등 ^{주4)}	6개월	상장법인 발행 주식 등 ^{주6)}
우회상장 심사 중 의무보유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우회상장 심사일 ~ 종료일	상장법인 발행 주식 등

- 주1) 비상장법인의 5% 이상 주주가 신주 발행 1년 전에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합병 등으로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5% 이상 주주 포함
- 주2) 합병(주식교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전 6개월 전부터 추가상장일까지 제3자배정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 주3) 합병기일 현재 비상장법인 자본금을 기준으로 10%를 한도로 함
- 주4)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5%이상 주주 중 제3자배정 또는 주식이전에 참여한 자에 한함
- 주5) 의무보유 개시일: 합병-신주상장일, 주식교환-신주상장일 또는 주식교환일, 영업·자산양수-영업·자산양수 완료일, 추가상장일 또는 주식이전일, 현물출자-추가상장일
- 주6) 기 보유중인 구주와 제3자배정, 주식이전으로 받은 주식 등 모두 해당
- 주7)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그 밖의 기업결합(우회상장 심사대상 이외 의무보유 대상)

유형	의무보유 대상자	보유기간 ^{주4)}	대상 주식등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	6개월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 등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의 소유 주식등 취득자 ^{주1)}	6개월	
	벤처금융주 ^{주2)} & 전문투자자 ^{주2)} (투자기간 2년 미만)	1개월	
영업(자산)양수&제3자배정 (주식이전, 현물출자 포함)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 ^{주3)}	6개월	상장법인 발행 주식 등 ^{주5)}

- 주1) 합병(주식교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부터 추가상장일까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 주2) 합병기일 현재 비상장법인 자본금을 기준으로 10%를 한도로 함
- 주3)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중 제3자배정 또는 주식이전에 참여한 자에 한함
- 주4) 의무보유 개시일: 합병-신주상장일, 주식교환-신주상장일 또는 주식교환일, 영업·자산양수-영업·자산양수 완료일, 추가상장일 또는 주식이전일, 현물출자-추가상장일
- 주5)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제3자배정, 주식이전, 현물출자로 받은 상장법인 발행 주식 등만 해당



(4) 제3자배정 유상증자^{주1)}

의무보유 대상자	보유기간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제3자배정 ^{주2)} 에 참여한 모든 주주	6개월
관리종목 ^{주3)}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제3자배정에 참여한 모든 주주	6개월
제3자배정 신주 취득자에 대해 신주상장 전에 선급금 지급, 금전대여, 증권 대여, 출자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주1) 소액공모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도 포함

주2) 실권주 처리에 의한 경우도 포함

주3) 대규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이상(자기자본 10억원 미달 포함), 시가총액 미달 사유에 한함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사모발행 시)에 의한 의무보유

(제2-2조제2항)

상장법인이 사모방식(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 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 할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이 면제된다.

(6) 투자조합 등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의무보유(상장규정 제51조제1항)

1 적용대상

- ① SPC 중 연간 매출액 규모가 3억원 미만*인 법인(실체가 없는 법인) 및 ② 정부의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닌 단체(조합포함)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그 최대주주 등(특수관계인 포함)은 의무보유 대상 증권을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 및 검토보고서, 법인세·부가가치세의 납부내역 증명 혹은 회계법인의 매출액 검토 확인서 상 증명되는 금액

다만, 벤처창업투자 관련 특별법 상 투자조합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조합,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금융위원회 등록·보고 대상이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SPC, 투자목적 회사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변경유형 및 적용대상 ■

구분	변경사유
규제 대상자의 행위 (규제대상)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경영권 변경 계약 체결
	유상증자 신주 취득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제외)
	장내 지분 취득
	신주인수권 행사
	CB 전환청구
	주식매수권 행사(콜옵션)
	특수관계인 변경
	공개매수
제3자의 행위 등 (규제 미적용)	기존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 장내 처분
	기존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 장외 양도
	기존 최대주주인 투자조합의 해산
	기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변경
	기존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에 대한 담보권자의 처분
	주주명부 확인 결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증여, 상속

2 대상증권

해당 주식뿐만 아니라 기존 소유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 등(종류주식, 주식관련사채, 신주인수권 증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등)도 모두 의무보유 대상이다.

3 의무보유 절차

최대주주 변경 공시시점에 의무보유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시점까지 미확인 시 3영업일의 의무보유 대상 여부 확인 및 의무보유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변경 후 최대주주 관련 확인서, 증빙서류, 의무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의무보유 협약서를 첨부한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3영업일 내 회계법인과 매출액 확인을 위한 검토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제출하며, 이 경우 3주간 매출액 규모 확인 및 의무보유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7)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의무보유(상장규정 제57조제11항)

- 1 적용대상: 실질심사 진행 과정 중 거래소가 책임경영, 투자자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 등
- 2 적용기간: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3년 이내 기간
- 3 제출서류: 의무보유확약서 및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타 의무보유 관련사항

(1) 의무보유 주식의 일시 인출 가능사유(상장규정 세칙 제17조제4항)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기간 중 주식 등의 인출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출할 수 있다. 인출사유는 다음과 같다

-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에 따라 신주로 교환
- 회사의 합병(분할합병 포함), 분할에 따라 합병신주 등으로 교환
- 전환주식, 상환주식,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 전환주식, 상환주식,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위한 경우

- 금융기관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질권설정이 필요한 경우

* 발행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마련이나 발행회사의 유상증자(일반공모증자 및 제3자배정 증자는 제외)시 증자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에 한함

- 기 설정된 질권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 기타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해 주식 등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

(2) 의무보유 위반에 대한 제재

1 예약매매

의무보유 기간 중에 최대주주등이 예약매매 등의 방법으로 의무보유 주식을 사실상 매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예약매매 주식을 포함한 의무보유 대상 전체 주식에 대해

기존의 의무보유 잔여기간 외에 1년간 추가 의무보유(매월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이미 매각이 허용된 주식은 제외)를 부과한다.

2 위장분산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여 보유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무보유를 회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타인명의로 위장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주주로 명의변경을 한 후 해당 명의변경 주식과 기존 의무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당초의 매각제한 기간에 1년을 가산하여 의무보유 한다. 타인명의로 위장분산하여 보유한 주식을 상장 후 의무보유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 처분주식에 대한 재매입조치를 하고 재매입주식을 기존 보유주식과 함께 기존의 의무보유 잔여기간뿐만 아니라 1년을 가산하여 의무보유 한다.

3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의무보유 위반

최대주주 변경을 야기하는 의무보유 위반 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의무보유 위반에 따른 1년의 가산기간을 포함한 의무보유 연장기간 동안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4 투자조합 등 최대주주 변경 관련 의무보유 위반

의무보유 기한 내 미확인 및 의무보유 조치 미이행시 1년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의무보유 미이행이 확인된 날의 다음 날에 지정하며, 의무보유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그 확인일 다음 날에 해제한다. 다만,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1년이 경과한 날 해제한다.

(3) 의무보유 주식 관련 신주 배정 등

의무보유 대상인 주식등에 대하여 부여된 권리의 행사(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는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물적분할의 경우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장 상장관리업무



- I. 불성실공시
- II. 매매거래정지
- III. 투자주의 환기종목
- IV. 관리종목
- V. 형식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
- VI.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 VII. 업종심사 및 소속부 심사
- VIII. 공시교육 및 기업설명회(IR)
- IX. 공시우수법인 등 시상 및 혜택

I 불성실공시

1. 개요

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불성실공시 유형

상장법인의 공시위반 행위 양태에 따라 ① 공시불이행, ② 공시번복, ③ 공시변경으로 구분한다.

(1) 공시불이행(공시규정 제27조)

- ①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기한 까지 공시하지 않는 경우

*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

- ②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자율공시사항, 해명공시,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
- ③ 공시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보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 ④ 사전확인절차 면제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정 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않는 경우

(2) 공시번복(공시규정 제28조)

- ①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 등을 공시하는 경우
- ② 품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개월 이내(월력 기준)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 하는 경우



③ 현저한 시황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한 후 15일 이내(월력 기준) 답변 공시 한 사항 외에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참고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반복 해당사유(공시규정 세칙 제14조)

1. 매출액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또는 해지
2. 증자 또는 감자 결정
3. 주식소각 결정
4. 자기주식 취득·처분(신탁계약 등 체결·해지·연장) 결정
5. 주권 등의 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 제외) 결정
6. CB·BW·EB 또는 증권예약증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
7. 자진 상장폐지 결정
8. 자기자본 10%(대기업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결정
(주권관련사채권, 특정금전신탁 등 포함)
9. 주식배당 결정
10. 현금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포함) 결정 및 중간(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결정
11.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변경
12. 상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결정(상법 제3편제4장제2절제2관 및 제3관)
13. 상법상 합병, 영업양수도, 경영위임,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 포함) 등의 결정(상법 제374조,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2, 제530조의12)
14.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등(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 포함) 또는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 등의 해제·취소 등이 발생한 때
15. 상기사항 이외에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해당사항으로서 주가·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④ 조회공시 답변공시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 심사를 거쳐 공시반복에 해당하는 경우

-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 후 15일(월력 기준)이내 공시반복 사유를 제외한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한 경우로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미확정공시 재공시 기한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기 공시내용의 확정이지연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미확정 공시 후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변경·중단·취소한 경우로 의사결정의 변경·중단·취소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품문 등의 내용을 부인한 후 기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중단·취소 또는 부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반복 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장관리업무
제3장

- 부인공시 후 1개월(월력 기준)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시
- 위의 기간이 경과한 후 공시한 경우로서 공시내용의 중요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시번복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현저한 시황관련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경과일부터 7일 이내에 기공시내용 이외에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한 경우로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 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시변경(공시규정 제29조)

상장법인이 기 공시한 내용의 금액 및 비율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공시변경에 해당한다.

① 50%이상 변경(금액변경)

-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 주권관련사채권의 발행금액, 전환·행사가가격(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 유형자산 취득·처분금액, 타법인 주식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금액 (이상 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신규시설/시설외투자금액
- 단기차입금액, 채무인수·면제금액, 담보제공·채무보증금액
- 선급금,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액
- 영업양수·도금액(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 자율공시·해명공시 내용의 비율, 금액, 수량 등

② 20%이상 변경(비율변경)

- 증자(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금액), 감자(감자비율, 주식수)
- 주식소각 주식수, 주식분할 또는 병합비율
- 주식배당비율, 현금·현물배당금(금전 환산금액)
- 합병·분할·분할합병 비율(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③ 기타사항

- 증자, CB·BW 발행 결정 이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

*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까지를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날로 함



-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공정공시(자회사의 공정공시 포함)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까지 이행률 50% 미만
- 기타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00분의 50이상 금액변경 ■

구분	규정	공시내용	해당사항
1	§29,1	영업양수도(§6①3호가목(8))	양수·양도금액
2	§29,7	신규시설투자(§6①2호나목(4))	투자금액
3	§29,8	타법인주식·출자증권의 취득·처분(§6①2호나목(6))	취득·처분금액
4	§29,8의2	주권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6①2호나목(6))	취득·처분금액
5	§29,10	주식관련 사채발행 등(§6①2호가목(6))	발행금액, 전환·행사가격
6	§29,12	채무보증·담보제공 등(§6①2호다목(4))	채무보증, 담보제공금액
7	§29,13	단기차입금의 증가(§6①2호다목(1))	단기차입금액
8	§29,15	채무인수·면제 등(§6①2호다목(3))	채무인수, 채무면제금액
9	§29,17	유형자산취득·처분(§6①2호나목(5))	유형자산 취득·처분금액
10	§29,18	단일판매계약·공급계약(§6①1호다목)	단일판매계약·공급계약금액
11	§29,19	타인금전가지급·금전·유가증권대여(§6①2호다목(5))	금전 가지급, 대여금액
12	§29,23	기타 자율공시 사항 및 해명공시사항	비율, 금액, 발행주식수

■ 100분의 20이상 비율변경 ■

구분	규정	공시내용	해당사항
1	§29,2	합병·분할·분할합병(§6①3호가목(8))	합병·분할·분할합병 비율
2	§29,3	증자(§6①2호가목(1))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금액
3	§29,5	주식배당(§6①2호마목(4))	주식배당비율
4	§29,6	현금배당(§6①2호마목(5))	주당배당금
5	§29,9	주식분할·병합(§6①2호가목(4))	분할비율, 병합비율
6	§29,16	감자(§6①2호가목(1))	감자비율, 감자주식수
7	§29,16	주식소각(§6①2호가목(2))	소각주식수

제3장
 상정권리부

■ 기타 변경 공시 ■

구분	규정	공시내용
1	§29,3	유상증자 6개월 이상 납입기일 연기
2	§29,4	자기주식취득·처분(§6①2호가목(3))
3	§29,10	주권 관련 사채권(CB·BW 등) 6개월 이상 납입기일 연기
4	§29,18	단일판매·공급계약의 장기간(계약기간 2배일) 이행 지연(50%미만)
5	§29,22	자회사(10%이상)의 공시신고사항(§7) 및 공정공시 사항(제2장제3절)이 공시변경에 해당한 때
6	§29,24	기타 거래소가 중요하게 인정하는 사항

참고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공시규정 제31조)

-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 ① **(지정예고)**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발생 시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및 해당법인에 통보
- ② **(이의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통보일부터 7일 이내(매매거래일 기준) 거래소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 등에 대해 진술 가능
- ③ **(지정여부 결정)** 거래소는 이의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매매거래일 기준)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결정. 다만, 공시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공시세칙 제15조제9항) 심의생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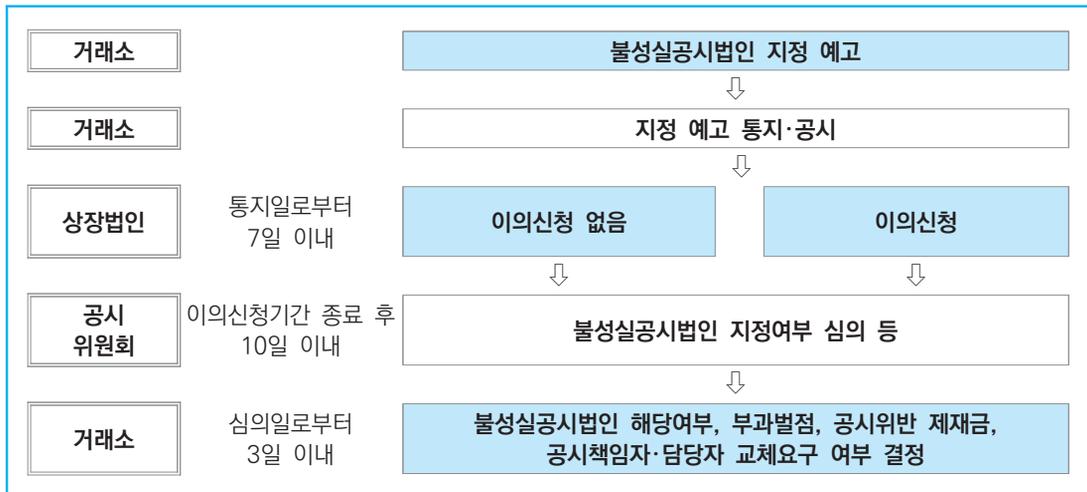
〈공시위원회 심의생략 사유(① 또는 ②해당)〉

- ①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이거나 위반의 중요성이 경미한 위반인 경우, 부과벌점이 8점 미만인 경우, 최근 1년내 누계벌점(해당 부과벌점 포함)이 15점 미만이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②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유로 인한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되기 전인 경우



- 지정시 : 벌점·공시위반제재금 부과
- 미지정시 : 성실공시 이행추구를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재차 지정예고 되는 경우 가중사유가 됨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 ■



증권관리위원회
 제3장

4.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1) 벌점 및 제재금 부과(공시규정 제32조제3항, 제34조)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투자자에 미친 영향) 기준에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지정 여부 및 부과벌점을 심의·부과한다. 벌점부과 이외에 5억원 이내에서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지정사실 및 부과벌점 공표(공시규정 세칙 제15조제3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5회 연속 증권시장지에 해당 사실 및 경위 등을 게재하며, 벌점 수준에 따라 증권시장지 및 정보단말기(CHECK) 등의 시세표상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 또는 불성실공시법인을 표시한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https://kind.krx.co.kr>)에 기업명,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을 2년간 게재한다.

■ 별점별 圖 표시기간 차등화 내용 ■

구 분	'圖' 표시기간*
별점 2점 이하	미표시
별점 2점 초과 ~ 5점 미만	1주일
별점 5점 이상 ~ 10점 미만	2주일
별점 10점 이상	1개월

* 해당사실 최초로 공표하는 날 포함

(3) 매매거래정지(공시규정 제37조제1항제3호)

부과별점이 8점 이상인 경우 1일간(지정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규정 제56조제1항 카목)

상장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별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이 경우 누계별점은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최근 1년 간의 별점을 합산한다.

(5)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화(공시규정 제33조)

최근 1년 이내의 공시위반 누계별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시위반과 관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시에는 제출이 면제된다.

개선계획서는 공시위반 경위, 공시의무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소가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내역은 개선계획서 제출일부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는 공시매체에 6개월 동안 공표한다.

상장법인이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는 2점의 별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별점부과로 해당 상장법인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별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교육(공시규정 제36조)**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한 불성실공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7) 공시책임자 등에 대한 교체요구(공시규정 제34조의2)**1 교체요구 요건**

고의 및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체요구 대상이다.

- * 해당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포함(심의 이전까지 1년간 2회 지정 + 해당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2 교체 절차

상장법인은 거래소의 교체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를 교체하되, 불응시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상장법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고의·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 교체는 교체요구 사실을 공표한다.

- *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해당법인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

■ 교체요구 불응시 부과 벌점 ■

구 분	부과벌점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 모두 미교체	3점
공시책임자 미교체	2점
공시담당자 미교체	2점

■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규정상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최대 1개월간 코스닥시장 전산망에 게재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게재
벌점 및 제재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당 14점 이내 벌점 부과 • 1건당 5억원 이내에서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거래정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1일간(벌점 8점 이상)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누계벌점 15점 이상) •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누계벌점 15점 이상)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5.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1) 제재심의기준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투자자에 미친 영향) 기준에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지정여부 및 부과벌점을 심의한다. 제재 심의기준표의 부과벌점을 기준으로 4점의 범위 내에서 사유별 경중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점수를 합산하되, 제재의 최대벌점은 14점, 최저 벌점은 0점으로 한다. 이 경우 '최근'의 기산점은 '금번 심의대상 위반행위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일'로 한다(이하 이 심의기준에서 같다).

$$0 \leq \text{부과벌점} \leq 14, \text{ 부과벌점} = \text{심의기준표상 벌점} \pm \min(|\text{감경사유} + \text{가중사유}|, 4)$$

■ 제재 심의기준표 ■

위반의중요성 \ 위반의 동기	고의	중대한 과실	통상의 과실	경미한 과실
중대한 위반	10점	8점	6점	4점
통상의 위반	8점	6점	4점	2점
경미한 위반	6점	4점	2점	0점

**참고** 병합처리

- 다수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동일·동종의 원인행위·사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공시의무 위반사실로 간주하여 처리
 - 병합처리시 벌점의 감경사유 미적용
 - 각각의 공시의무 위반사실별로 부과받은 벌점 중 가장 높은 벌점을 기준 벌점(가중사유를 반영한 이후의 부과벌점)으로 하고, 병합된 위반사실 1개당 벌점 1점씩을 추가 부과
 - 다만, 병합처리에 따른 추가 벌점은 기준벌점의 2분의 1 이내로 하며, 병합된 위반사실이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벌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하지 않을 수 있음

(2)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 판단기준**1** 위반의 동기

위반사실 또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여부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다. 공시경험에 따른 예견가능성, 위반행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위반의 불가피성 및 위반 회피노력 정도 등 구체적 정황 및 경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위반의 동기 ■

위반의 동기	내용
고의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등 관련된 사실관계를 통해 의도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관련된 사실관계를 통해 위반행위의 의도성을 부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통상의 과실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미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의 목적·동기·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반의 중요성(투자자 영향)

위반한 공시의무의 중요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다음 3단계로 구분한다. 위반금액의 기준금액 초과정도, 주가 변동정도, 거래량 변동정도, 공시의무 위반기간, 그 밖에 공시의무 위반내용 및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의 중요성을 1단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위반의 중요성 ■

위반의 중요성	내용
중대한 위반	공시내용이 관리종목, 상장폐지와 관련이 있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공시,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체결 공시, 경영권 변경공시, 해명공시, 공시규정 세칙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통상의 위반	공시내용이 '중대한 위반' 및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한 위반	의무비율 미만의 자율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장중 매매거래정지 대상(공시규정 세칙 제18조제1항)

-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이상이면서 100억원 이상인 단일판매·공급계약
- 배정비율이 20% 이상인 무상증자
-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인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 내부결산결과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기자본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최초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주당배당 비율이 20% 이상인 주식배당
-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6)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 주식교환·주식이전(상장규정 시행세칙 19조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대상인 주식교환 제외)
- 합병·영업양수(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물적분할 및 상장규정 시행세칙 19조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대상인 합병·영업양수 제외)
-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에 경영관리를 신청·신청취소하거나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경영 관리를 개시, 중단 또는 해제한 사실을 확인한 때(최초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 결정, 소취하·화해·청구포기의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판결
-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행정처분(정지기간 1개월 이하 제외)



(3) 감경사유 및 가중사유

구분	해당사유	가중·감경
감 경	위반사실을 거래소가 인지하기 전 자진신고한 경우	-1.0점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1.0점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면서 최근 5년간 IR 개최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한 횟수가 1회 이상인 법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공시·IR과 관련,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간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조회공시 건수가 없는 경우 • 최근 1년간 IR 개최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한 횟수가 1회 이상 • 최근 1년간 IR 개최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한 횟수가 2회 이상 • 최근 1년간 수시공시 정정비율이 10% 미만 또는 3건 미만 • 최근 1년간 실적예측공시건수가 1건 이상 • 최근 1년간 자율공시·해명공시 건수가 전체 공시건수의 5%(5건) 이상 	-0.5점 -0.5점 -0.5점 -1.0점 -0.5점 -0.5점 -0.5점
	최근 1년간 영문공시 건수의 비율이 해당 법인의 전체 공시건수 대비 10% 이상이거나 3건 이상인 법인	-0.5점
	공시의무사항이 특정 사안의 진행과정의 일부로서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관련된 최초의 공시가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	-1.0점
	최근 1년간 거래소가 개최하는 공시 관련 법규설명회 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는 경우	-0.5점
	코스닥협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를 분산개최한 경우	-1.0점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점
	가 중	은폐 또는 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출 거부
규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시 이행촉구 등 조치이후 6월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경우		+1.0점
최근 1년간 규정상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0점
관리종목 지정법인		+0.5점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회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최근 1개월내 지정된 경우 제외)		+1.0점
최근 1년간(2회 이상) 또는 최근 1개월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2.0점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경우		+1.0점
규정 제45조에 따른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공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0.5점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점

(4)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기준 등

구분	부과기준
추가부과	공시위반에 따른 해당 벌점 × 400만원* * 1년내 고의에 의한 공시의무 위반 3회 발생시 1점당 1천만원으로 가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시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해 벌점 이외에 제재금 추가부과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 기타 공시위반행위의 상습성, 고의·중과실,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체부과	공시위반에 따른 해당 벌점 중 제재금으로 대체할 벌점 × 400만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벌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부과하더라도 공시위반 재발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법인의 대체부과 신청이 있을 것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아닐 것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전력이 없을 것 • 부과벌점이 8점 미만일 것 (벌점 전부의 대체부과 시에는 부과벌점이 5점 미만이어야 하며,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5점을 초과하는 벌점에 대해서만 대체부과 가능) • 최근 2년간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교육미이수 사실이 없을 것

* 제재금 미납시

- 가중벌점 = (미납 제재금 / 400만원) × 1.2
(1년내 고의에 의한 공시의무 위반 세 번째 발생시에는 1천만원)
- 제재금 부과에 대한 미납시 가중벌점은 신규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본다.
(총벌점 = 부과벌점 + 가중벌점)
-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가중벌점을 부과한다.
- 상장폐지된 법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등(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정기보고서, 각종 신고서류, 그 밖의 증빙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거래소는 코스닥기업에 대하여 공시내용 및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장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이 거래소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점의 별점 부과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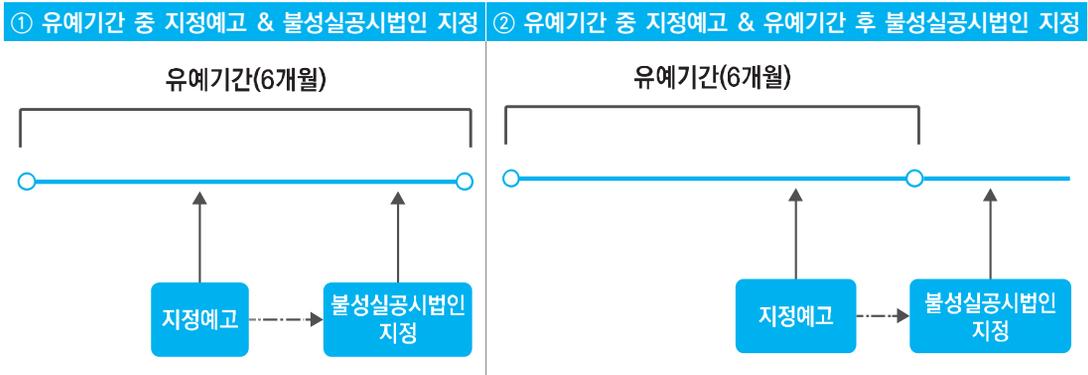
* 해당 별점 부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별점의 경감 또는 면제 가능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제392조제2항(공시의 실효성 확보) 및 동법 시행령 제361조(정보 제공 등의 요청)에 따라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코스닥기업의 공시내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7.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제도

상장법인의 성실공시 이행정도를 고려하여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별점 부과를 일정기간(6개월) 유예하는 제도로, 1회 1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 (지정유예 요건)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이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 이거나 위반의 중요성이 경미한 위반이며 부과별점 8점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 (지정유예 처리 지침)
 - i) 유예기간(6개월) 동안 공시위반이 없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으로 간주(별점 미부과)
 - ii) 유예기간 중 별도의 공시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되는 경우: 해당 지정예고 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한 별점 부과



주1) '지정시점'이 아닌 '지정예고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① 및 ②의 경우 모두 지정 대상

주2) 시세표상 불성실공시법인 표시 및 매매거래정지 대상 여부는 유예된 별점 및 별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별점을 합산하여 결정

- iii)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받은 법인은 6개월내 공시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른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및 공표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시 2점의 별점이 부과됨. 다만 해당별점 부과로 인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별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

8. 불성실공시 사례 및 예방 팁

(1) 불성실공시 사례

증권발행 관련

1 유상증자 주금 전액 미납입(공시반복)

- 甲사는 최대주주인 A사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A사의 주금 전액 미납입으로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함
- A사는 유상증자 대금을 외부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빚어지며 자금확보가 어렵게 됨
 - A사는 甲사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공시반복에 대한 甲사의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결정과정에서 배정대상자의 납입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함



2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공시변경)

- 乙사는 변경예정 최대주주인 B사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약 49%)함
- 乙사가 既 발행한 전환사채의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최대주주 변경사항이 있어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규모를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음
 - 乙사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

3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공시변경)

- 丙사는 최대주주인 C사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였으나, 납입기일이 6개월 이상 연기됨
- 납입기일 연기 사유는 丙사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사유의 발생이었으나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귀책 역시 회사에 있으므로 丙사의 공시위반 책임이 인정됨

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공시반복)

- 丁사는 변경예정 최대주주인 D사를 대상으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하였으나, 전임원이 既 제기한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인해 동 결정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됨을 인지하여 사채발행을 취소함

참고 증권법 제 5-21조

- 제5-21조(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공모발행 방식 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1. (생략)
 2.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분쟁사실이 신고·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

- 경영권분쟁 중 제3자배정 전환사채 발행이 규정 위반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규 및 규정 미숙지로 공시번복이 발생함

5 종속회사의 감사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戊사는 종속회사인 E사가 자본감소를 결정하였으나 공시사유 발생일을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주총회 승인일로 잘못 판단하여 이를 지연공시함
- 공시사유 발생일에 대한 규정숙지는 상장법인의 기본적인 책무임

최대주주 관련

1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甲사의 최대주주인 A사는 차익실현을 위하여 보유중인 甲사 주식 전량을 수일에 걸쳐 장내 매도하였으나 해당사실을 甲사에 통보하지 않아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甲사가 이를 지연공시 함
- 甲사는 A사에 지분매각 사실 여부를 이전부터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A사가 고의적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아 공시불이행 하였다고 주장하나,
- 공시규정은 대표이사·이사회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사의 공시위반 책임이 인정됨

2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해지(공시번복)

- 乙사는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한 우호지분 물색 과정에서 B사와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의 지속적인 대금납입 연장 요청 및 최종 대금 미납입으로 해당계약을 취소함
- 乙사는 최대주주 예정자의 자금여력 및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 B사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자의 예금 사본과 상당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점을 근거로 B사의 자금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사전에 양수인의 인수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봄



3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丙사의 최대주주인 C사는 채무불이행시 보유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D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공시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丙사에 해당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공시불이행이 됨
- 丙사는 C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담보부계약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 공시규정은 담보계약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丙사가 거래소 문의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최대주주인 C사를 丙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점 등 고려시 丙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시의무대상을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송 관련

1 소송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1)(공시불이행)

- 甲사는 A사로부터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소송(상고)이 제기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지연공시 함
- 甲사는 그간 두 번의 재판과정에 대한 공시를 진행하였으나, 이번 상고 건은 담당자가 대법원에서 송달한 상고장 부분을 분실하여 공시누락에 이르게 됨
 - 공시 의무사항의 생성, 관리, 공시진행 등 상장법인으로서 구비해야 할 내부 공시 업무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례

2 소송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2)(공시불이행)

- 乙사는 B가 동사에 제기한 소송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으나, 우편물 수발 담당 직원이 이를 즉시 유관부서에 전달하지 아니하여 이를 뒤늦게 지연공시 함
-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에 대한 교육을 전사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담당 임직원 역시 회사의 주요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공시대상이 되는 경영사항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1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공시(공시반복)

- 甲사는 A사와 태양광 발전소 건립 내용의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사의 사업부지 매입 실패에 따라 A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계약철회 공시를 하였음
- 甲사는 본 계약해지의 책임이 전적으로 발주자인 A사에 있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체결 공시 전 이미 A사가 사업부지 소유주에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부지매입계약 무효사유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수주금액이 대규모의 계약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 甲사에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사전에 철저한 검증(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 능력 등) 및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었어야 함

2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및 지연공시(공시반복·공시불이행)

- 乙사는 B사와 휴대폰 액세서리의 정품인증 스티커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의 캐릭터 인증획득 실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고, 동 해지 사실을 뒤늦게 공시함
- 乙사는 구속력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 사실을 6개월 이상 공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결여함

3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후 불이행(공시반복)

- 丙사는 해외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C사와 의료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자율공시(공시의무기준 금액미달)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에도 납품이 이행되지 않아 공시반복에 이르게 됨
- 丙사의 납품이행이 전무한 것은 수출국의 의료장비 수출입 제도에 따른 등록절차 지연에 의한 것이나, 공시의무 준수를 위한 丙사의 구체적인 이행노력이 부족하였음
- 계약기간 중 丙사는 사업구조 개편으로 체외진단사업 영업양도를 진행하면서 동 공급계약이 영업양도에 따라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판단하여 C사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후속 공시이행을 해태함

**결산 등 관련****1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동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甲사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사실을 주주총회소집 공고 이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나, 동 사실을 공고 이후에 지연공시 함
- 甲사는 현금배당결정 공시, 주주총회소집결의 정정공시 및 주주총회소집 공고 등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건을 공시마감 시한(18시)까지 공시하지 못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 '16년, '17년에도 손익구조 변동 발생사실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는 등 규정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음
 - 결산시즌에는 결산일정에 따라 연계되는 공시사항* 발생여부 및 공시시한 등을 숙지하여 적시에 공시해야 함

* 주식배당, 현금배당, 손익구조변경, 주주총회소집결의, 감사보고서 제출, 주주총회결과 등

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취소(공시반복)

- 乙사는 종속회사인 B사의 주식 일부 양도결정 사실을 공시하였으나, 주식 양수도 계약상 확약 사항인 B사 거래처 3사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수인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고 이를 공시함
- 거래처의 변심은 乙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매도인인 乙의 계약의무에 해당되므로 공시반복에 대한 책임이 인정됨

3 종속회사의 합병결정 철회(공시반복)

- 丙사는 관계회사인 C사가 丙사의 종속회사인 D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공시하였으나, D사에 대한 기업가치 산정 근거 미비 등 문제로 합병이 철회되었고 이를 공시함
- 감독당국이 D사의 기업가치 평가방법이 일반적 기준(K-IFRS)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丙사는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합병철회함

- 합병 성사 여부는 丙사를 비롯한 계열회사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수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철회 등 적시공시를 취했어야 하며, 합병 결정 전 관련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실시되었어야 함

4 종속회사의 영업정지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丁사의 종속회사이자 주요자회사인 E사가 관할당국에 의하여 영업정지 지시를 받고 동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사실을 지연공시 함
- 丁사는 E사 관할당국의 영업정지 지시가 단기간 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자회사들의 매출호조로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감소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나,
- 영업 재개는 관할당국의 허가를 전제로 하므로 丁사가 재개시점을 장담할 수 없으며, E사는 丁사 매출액 및 당기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됨

5 수시공시 의무 관련사항 등 공정공시 미이행(공시불이행)

- 戊사는 종속회사인 F신문에 보도된 자기주식 소각 검토 등 戊사 대표이사의 인터뷰 내용 관련 기사 전문을 戊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나
- 홈페이지 공지 전 사전적인 공정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6 타인에대한 채무보증 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시행사 己사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결의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지연공시 함
- 공시담당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시위반이 발생



(2) 불성실공시 예방 팁

1 공시규정 및 관련법규 숙지는 기본

- 공시대상, 공시사유 발생일 등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적시에 공시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

- **(증권발행 관련)** 자본감소 결정 관련 공시사유 발생일을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주총회 승인일로 착각하여 공시불이행 발생
- **(최대주주 관련)** 최대주주가 채무불이행시 보유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담보부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공시불이행 발생

- 공시 관련법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공시 진행 후이를 반복한 사례도 존재

- **(증권발행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영권분쟁 기간 중에는 제3자 배정 증권 발행이 불가하나 회사가 동 상황에서 사모 전환사채 발행결정을 하고, 해당사항이 법규위반임을 인지 후 철회해 공시반복 발생

예방 Tip

- ◆ **예단하여 공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반드시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공시하는 업무 습관이 중요**
 - 규정해석 관련 혼동시 거래소 등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규정개정 관련 거래소 안내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follow-up 및 법규설명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

2 증권발행 및 계약체결시 상대방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수

- 증권발행 대상자 및 계약상대방에 대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납입무산 및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사례가 다수 발생

- **(증권발행 관련)**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최대주주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며 주금 전액미납이 되었고, 동 결정을 철회해 공시반복 발생
-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계약상대방의 이행능력 부족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여 공시반복 발생

예방 Tip

- ◆ 상대방의 일방적인 납입의사 철회 및 계약해지 통보 등이 공시번복의 충분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공시관련 의사결정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증권발행) 최초 발행결정시 상대방의 자금 확보상황, 조달계획·능력 및 납입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의 내용 및 이행가능성을 충실히 검토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위험요인 등을 분석해야 함

3 공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공시업무시스템 구비

- 공시의무 사항의 발생 및 동 사항의 공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공시업무시스템 미비로 불성실공시 다수 발생

- (최대주주 관련)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공시불이행 발생
- (소송 관련) 회사에 송달된 상고장 부분을 분실하여 공시불이행 발생

예방 Tip

- ◆ 공시의무에 대한 교육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공시담당부서와 공시대상 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 주요 부서간 주요 경영사항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예시) 부서별 수시공시 발생여부를 일단위로 파악하여 점검하는 체계 마련
 -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수시공시 List를 만들고, 당일공시 해당사항 여부를 체크 후 해당 부서장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사적으로 공시책임자에게 취합하도록 하여 공시 누락 방지
 - 또한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공시는 기업에 대한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공시담당 부서는 최대주주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야 함



(2) 불성실공시 예방 주의사항

1 공시담당자에 의한 내부정보의 집중 관리

상장법인은 내부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공시 책임자·담당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 되어야 한다. 공시담당 부서와 공시발생 부서가 상이한 경우 공시사항이 제때에 전달되지 못하여 공시불이행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상장법인 내부정보관리규정」 마련
- 「공시업무처리요령(내규)」 마련
- 사내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을 이용하여 공시사항 점검
- 공시사항 결재전 공시업무 담당부서 통보 또는 협조

2 내부정보의 수시공시 의무사항 해당여부 점검

공시 책임자·담당자에게 집중된 내부정보가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수시공시 의무 해당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3 수시공시 서식의 작성방법 숙지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의 공시의무사항은 고유서식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식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서식 하단의 ‘기재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4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책임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하며, 기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번복 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공시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내용을 공시하기 이전에 증권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I 매매거래정지

1. 개요

매매거래정지제도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상에 명시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거래정지 기간 중 상장법인의 중요정보를 모든 시장참여자가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최소화하고, 주권의 병합(또는 분할) 등의 경우 주권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2. 매매거래정지 유형

(1) 공시규정상 매매거래정지(공시규정 제37조)

공시규정은 상장법인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 부도·은행거래정지, 영업정지, 파산·해산·회생절차·정리절차,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사유(감사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등) 발생,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별점 8점 이상)
-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시규정상 매매거래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 ■

정지사유	정지기간
<p>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p>	<p>조회공시 요구 시점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간</p>
<p>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8점 이상)</p>	<p>1일간</p>
<p>조회공시에 신고시한까지 불응</p>	<p>위반사실 확인 시점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간</p>
<p>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매출액 10%이상) 또는 주된 영업정지,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단, 1개월 이하는 제외 -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최근사업연도 매출액 이상 & 100억원 이상) - 무상증자(배당비율 20% 이상) 및 자본감소·주식소각(발행주식 총수 20% 이상) - (내부결산결과) 관리종목 지정 우려 사유 발생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 - 주식배당(배당비율 20%이상)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① 증선위의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의결 사실 확인, ② 검찰이 해당 상장법인 또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을 기소, ③ 임원이 증선위로부터 해임권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 - 상법상의 주식교환·주식이전 결정 - 상법상의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 결정 - 거래은행 등에 경영관리 신청·신청취하 또는 거래은행 등의 경영관리 개시, 중단, 해제 사실 확인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 등 허가신청 및 법원의 결정·판결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그 이후 진행사항은 X) - SPAC 합병 결정 이후 동 결정 취소·부인 및 SPAC 부적합 사유 발생 등 	<p>해당공시시점부터 30분간^{주1)}</p>
<p>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1일 (다만, 필요시 연장 가능)</p>

주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 당일 정규시장매매거래 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후 30분이 경과한 후 재개

Key-point

- ◆ 09시 이전 공시 : 당일 9시 30분부터 거래재개
- 14시 30분 이후 공시 : 익일부터 거래재개

(2) 상장규정상 매매거래정지(상장규정 제18조)

상장규정상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 상장규정상 매매거래정지 ■

정지사유		정지기간
관리종목 지정 (지정사유 추가는 제외)		관리종목 지정사유 확인일 당일 ^{주1)}
상장폐지사유 발생(실질심사 대상 사실 확인 포함) - 단, 코스닥·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피흡수합병 제외		상장폐지사유 확인일부터 상장폐지사유 해소일까지
투자자 보호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에 의한 감사의견 부적정 등 상장폐지사유 발생(이후 동일 감사인의 사유해소 확인서 제출시)		(최초) 감사의견 확인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시까지
주권비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포함)과 -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주권비상장법인 등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한함) - (우회상장으로 기재한 별지서식 확인서를 제출하는) 영업(자산)양수, 현물출자 공시시 - 영업(자산)양수 및 제3자배정(주식스왑, 현물출자 포함)등의 공시 제출시 거래소가 우회상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시점부터 우회상장해당여부 통지일까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정지 결정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거래정지지속 포함)부터 매매거래정지 사유해소 확인일까지
개선기간 동안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기간 종료 후부터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날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시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한 날까지 ^{주2)}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시		심사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상폐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한 날까지
자본감소, 액면병합 등으로 유통주식수 부족 (보통주식총수 대비 2% 또는 10만주 미만)		해당 변경(추가)상장일부터 사유 해소가 확인된 날까지 ^{주3)}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합병상장예비심사 대상	신고시점부터 심사결과통지 또는 합병중단 결의결정일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 비대상(상폐사유해당시)	신고시점부터 합병중단 결정일까지
기타		1일간(거래소가 필요시 연장가능)

주1) 사업보고서 미제출사유로 관리종목지정시 관리종목지정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회생절차개시신청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까지(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정지 계속 가능), 파산신청의 경우 동 사유해소 확인일까지(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 가능)

주2) 분할·분할합병의 취소결의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취소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주3) 의무보유기간의 만료 등으로 해당 법인이 제출한 유통주식현황표에 의해 이하 사항이 확인된 날까지
: 유통주식수 2% 미달의 경우 5% 이상이 된 때, 유통주식수 10만주 미달의 경우 30만주 이상이 된 때,
2% 및 10만주에 모두 미달의 경우 5% 이상이면서 30만주 이상이 된 때



(3) 업무규정상 매매거래정지(업무규정 제25조)

업무규정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관리부
 제정

■ 업무규정상 매매거래정지 ■

정지사유	정지기간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1일간 (필요한 경우 5일 이내)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의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 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요청받은 기간

주요 Q&A

● **Q** 품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어 매매거래정지를 하는 경우의 '품문 등'의 구체적 사례는?

▲ **A** 공시규정 제37조제2항은 '품문 등'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대한 품문이나 보도로 명시하고 있음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 개시
4. 최근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 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 나. 자본잠식률 50%이상(전액잠식포함)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다.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자기자본 50% 초과하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매출액 30억 미달
5.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6. 그 밖에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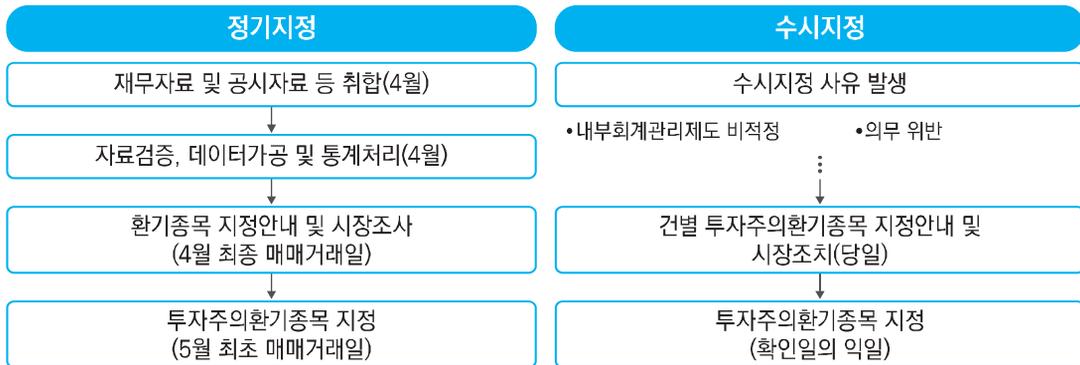
III 투자주의 환기종목

1. 개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향상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정기지정과 수시지정으로 구분된다.

2. 지정 및 지정해제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절차 ■



(1) 정기지정(상장규정 제52조제1항제1호)

상장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투명성 관련 기업부실요인을 고려한 「기업부실위험 선정 기준」에 따라 부실 징후 종합 측정치를 산출하고, 종합 측정치가 종합 임계치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감안하여 매년 5월 최초 매매거래일에 지정 및 지정해제 조치를 한다.

〈 부실 징후 종합 측정치 산출 방법 〉

$$\text{부실점수}(z) = \sum(\text{변수별 변수값} \times \text{변수별 가중치}) - 4.494$$

$$\text{부실 징후 종합 측정치} = e^z \div (1 + e^z)$$

주1) 종합 임계치는 0.7로 한다.

주2) e는 자연상수(자연로그의 밑값)를 말한다.

■ 기업부실위험 선정 변수, 기준치 및 가중치 ■

구분	변수	기준치 ^{주1)}	가중치
재무변수	①단기차입금 의존도	-	0.569
	②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	-2.332
	③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손실 발생	1.078
	④이자보상배율	1 미만	0.426
	⑤자본잠식	30% 이상	0.940
	⑥매출액 규모	50억원 미만	0.415
	⑦총자산회전율	-	-0.211
질적변수	⑧최대주주 변경(횟수)	3년간 2회 이상	0.282
	⑨대표이사 변경(횟수)	3년간 3회 이상	0.577
	⑩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횟수)	3년간 2회 이상	0.093
	⑪제3자배정 방식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발행(횟수)	3년간 2회 이상	0.511
	⑫불성실공시(횟수)	3년간 2회 이상	0.327
	⑬최대주주등 지분율	25% 미만	0.751
	⑭감사보고서 상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사유 발생 ^{주2)}	불확실성 발생	0.737

주1) 기준치는 변수별로 부실징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고, 기준치의 변수값은 기준치를 충족하는 경우 1, 미충족하는 경우 0으로 한다. 다만, 기준치가 없는 변수의 경우에는 변수 측정치를 변수값으로 하되, 변수 측정치가 아래의 상한 또는 하한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 상한 또는 하한을 변수값으로 본다.

변 수	상 한	하 한
단기차입금 의존도	2.653	0.000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0.318	-0.323
총자산회전율	2.808	0.000

주2) 감사의견이 적정이나,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이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수시지정(상장규정 제52조제1항제2호)

특정 부실유형 발생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자동 지정한다. 지정사유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비적정, 의무보유 위반, 실질적 자금조달 효과가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최근 재무제표 감사의견 한정 등이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가목)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

2 의무보유 위반(나목)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의무를 위반하고, 그 결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 해당한다. 의무보유 위반은 의무보유 대상자가 신규상장, 우회상장, 실질심사 등과 관련한 의무보유기간 중에 해당 주식등을 양수도계약 체결,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하는 것이다.

3 편법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다목)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해당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 등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해당한다. 출자는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특정 법인이 참여 후 6개월내 그 특정법인의 증자에 상장법인이 참여하는 것만 해당(구주취득은 해당되지 않음)하나, 그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증자와 동일하게 자금이 직접 유출되므로 “출자”에 포함된다.

4 감사의견(계속기업 불확실성 한정)(라목)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 해당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에도 해당한다.

5 투자조합 등 의무보유 여부 미확인 또는 미이행(마·바목)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시 인수 주체를 확인하여 경제적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 의무보유 부과(상장규정 제51조제1항)하는데, 이러한 의무보유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정한다. 또한,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한다.

6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사목)

최근 5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다만, 우량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지정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은 영업손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기준]

- ① 영업손실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하지 않음
- ④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 제외

7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아목·자목)

최근 반기말 기준으로 ①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②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적용기준]

-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 ③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동 규정 적용 제외

8 반기 감사인 의견 미달(차목)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은 연결재무제표 포함)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해당한다.



■ 수시지정·해제 시기 ■

요건	지정시기	해제시기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해당사실 확인일의 다음 날	차기 감사보고서에 의해 사유 해소가 확인된 날의 다음 날
② 의무보유 위반	해당사실 확인일의 다음 날	해당 의무보유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③ 편법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해당사실 확인일의 다음 날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④ 감사의견(계속기업 불확실성 한정)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다음 날	지정일 이후 도래하는 반기·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상 사유해소 확인일의 다음 날 ^{주1)}
⑤ 투자조합 등 의무 보유 여부 미확인	(상장세칙 별지 제26호 서식 ^{주2)} 및 이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의 다음 날부터 3일이 경과한날	변경 후 최대주주가 세칙 ^{주4)} 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 ^{주5)}
	(별지 제27호 서식 ^{주3)} 에 따른 회계법인과의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 계약서 제출일의 익일부터 3주가 경과한날	변경 후 최대주주가 세칙 ^{주4)} 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보유 이행 확인일의 다음 날 ^{주5)}
⑥ 투자조합 등 의무 보유 미이행	의무보유 미이행 확인일의 다음 날	의무보유 이행 확인일의 다음 날 ^{주5)}
⑦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다음 날	지정일 이후 도래하는 사업연도 말 감사보고서로 사유해소 확인일의 다음 날
⑧ 50% 이상 자본잠식	반기 검토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로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의 다음 날	지정일 이후 도래하는 반기 말 검토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업연도 말 감사보고서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것이 확인된 날의 다음 날
⑨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반기 검토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로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의 다음 날	지정일 이후 도래하는 반기 말 검토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업연도 말 감사보고서로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의 다음 날
⑩ 반기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반기 검토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로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의 다음 날	지정일 이후 도래하는 반기 말 검토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로 사유 해소가 확인된 날의 다음 날

주1)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사유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장유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포함)가 결정된 경우에는 상장유지가 결정된 날의 다음 날에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해제

주2) 상장규정 세칙 제47조제4항

주3) 상장규정 세칙 제47조제5항

주4) 상장규정 세칙 제47조제2항

주5) 다만,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 해제

제3장
 증권관리업무

(3)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련 조치사항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사·타목)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에 ①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또는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②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후 신주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하는 경우와, ③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상장규정 제52조제1항제2호라목)의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2 의무보유 강화(상장규정 제50조제1항제2호)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의무보유 6개월을 부과한다. 다만, 관리종목과 달리 매매방식 변경, 매매거래정지 및 대응증권 지정대상 제외 등의 제재는 없다.

3 코스닥시장 소속부 선정 대상에서 제외(별도 관리)(상장규정 제47조제1항)

코스닥시장 소속부 수시변경 사유에 해당된다.

4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실 공표(상장규정 제52조제2항)

전자공시매체, 증권시장지와 (주)코스콤이 운영하는 금융정보단말(CHECK) 등의 시세표상에 “환”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표시를 한다.

5 기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외감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라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며,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계약 내용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



IV 관리종목

1. 개요

상장법인의 경영악화, 공시의무 해태, 시장 유동성 부족 등과 관련하여 상장규정상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상장폐지 우려 등의 투자위험을 알리기 위한 제도이다. 관리종목지정 후 해당 사유가 일정기간 동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다.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소의 사실 확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2.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기준

(1) 관리종목 지정 사유(상장규정 제53조)

1 매출액 미달(제1호)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 예외를 두고 있다. 우선, 상장 시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을 제외한다) 및 이익미실현기업 특례로 상장한 경우에는 신규상장일(스팩 합병상장은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또한,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을 제외한다) 중 제약바이오기업은 위의 적용면제 기간 이후에도 ① 최근 3사업연도(면제기간 포함)의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 이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이거나, ② 연구개발 우수기업* 또는 시장평가 우수기업**으로 거래소가 상장세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경우 그 적용을 면제한다.

-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 ** 최근 사업연도 중 일평균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이면서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
- *** 단, 확인서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감사보고서 제출일 이전으로 한정)에 제출해야함

매출액 미달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장유지가 결정된 경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포함)에는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추후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상장유지가 결정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미달부터 기산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상장유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 미달부터 기산한다.

[적용기준]

- ① 매출액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나, 지주회사,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외국지주회사, 종속회사가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하지 않음
- ④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 제외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제2호)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지정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가 지속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기술성장기업은 신규상장일(스팩 합병상장은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면제하고, 이익미실현기업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 면제하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개 사업연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발생하는 경우 지정한다.

*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은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조정한다(당해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이 확인한 상장세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제한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장유지가 결정된 경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포함)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추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상장유지가 결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부터 기산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상장유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부터 기산한다.

[적용기준]

-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비지배지분을 포함
-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한 재무제표 기준 적용
-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하지 않음
- ④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 이후의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 제외

3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제3호 및 제4호)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①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②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일 사유가 지속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자본잠식 또는 자기자본 미달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장유지가 결정된 경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포함)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추후 자본잠식 또는 자기자본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상장유지가 결정된 사업연도의 자본잠식 또는 자기자본 미달부터 기산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상장유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자본잠식 또는 자기자본 미달부터 기산한다.

[적용기준]

-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 ③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동 규정 적용 제외

4 시가총액 미달(제5호)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한다. 해당 사유로 관리종목지정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 시황급변 등의 경우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

5 정기보고서 기한내 미제출(제6호)

자본시장법상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한다.

6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제7호)

상장법인이 상법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한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자산 2조원 이상 회사는 과반수 및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의 이사(사외이사가 2/3 이상)로 구성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7 거래량 미달(제8호)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지정 후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 유동주식수는 보통주식총수에서 다음을 제외한 주식수를 말한다.

1.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소유주식수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내국인 투자주식이 51% 이상인 경우의 외국투자자 소유주식수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된 주식수(거래소에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4. 상장규정에 따라 의무보유 중인 주식수

다만, 다음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신규상장된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제외한다.

- ①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액면주식은 액면가액 5,000원 기준) 이상
- ② 최근 사업연도말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해당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 ③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업무규정 제12조의3제1항)되어 있는 경우
- ④ 분기 매매거래일수가 분기 전체 매매거래일수 1/2 미만인 경우

또한,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유예하되, 관리종목지정 유예 중이라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보통주식 총수의 5%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상장규정 세칙 제54조제4항).

- 3년 이내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이 보통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 공개매수 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다음 연속 3개 사업연도까지
- 3년 이내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보통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가 보통주식의 95%를 초과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1분기까지

8 주식분산기준 미달(제9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①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②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20%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지정 후 1년 이내에 주식분산 미달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①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③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그 지정을 제외한다. 공개매수의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유예하고, 관리종목지정 유예 중이라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보통주식 총수의 5%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 3년 이내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이 보통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 공개매수 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음 연속 2개 사업연도까지
- 3년 이내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보통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가 보통주식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연도까지

9 회생절차 개시신청(제10호)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10 파산신청(제11호)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다만, 파산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① 파산신청 채권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 (대규모법인 5%) 미만인면서, 20억원 미만이거나, ② 해당 파산신청 채권액의 합계액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법원에 모두 공탁하거나, ③ 그 밖에 파산신청과 관련한 권리남용 여부, 채권 채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해칠 우려가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제외를 할 수 있다.



11 상장폐지사유 발생(제12호)

상장폐지사유(형식 상장폐지사유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그 폐지가 확정되기 전인 법인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대용증권·신용거래 제외,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관리종목지정과 연계되어 있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법인도 지정하고 있다.

다만, 형식 상장폐지사유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이전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피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는다.

12 재무관리위반(제13호)

변경·추가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3장
 증권관리업무

(2) 관리종목 지정·해제 시기

지정요건	지정시기	해제시기
① 매출액(30억원) 미달 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3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 & 최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③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잠식을 50% 이상) ④ 자기자본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감사보고서상 확인일 다음 날	사유해소 확인일 다음 날 ^{주6)} (감사보고서)
⑤ 시가총액 미달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확인일 다음 날	요건 충족 ^{주1)} 일의 다음 날
⑥ 정기보고서 기한내 미제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	사유해소일의 다음 날 ^{주2)}

지정요건	지정시기	해제시기
⑦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 ^{주3)}	사유해소 확인일 다음 날
⑧ 거래량 미달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 1% 미만)	분기종료일의 다음 날	거래요건을 충족한 분기종료일의 다음 날
⑨ 주식분산기준 미달 (소액주주수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20% 미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분산이 확인된 날 다음 날 ^{주4)}
⑩ 회생절차 개시 신청	확인일 다음 날	법원의 회생절차종결 ^{주5)} 결정일 다음 날
⑪ 파산신청	확인일 다음 날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으로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다음 날
⑫ 상장폐지사유 발생	(형식 상장폐지사유) 사유 발생 확인일 다음 날	사유해소 확인일 다음 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일 또는 상장폐지 결정일 다음 날	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 유지가 결정된 날의 다음 날
⑬ 재무관리기준 위반	확인일 다음 날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주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매매거래일 기준)가 10일 이상 계속
-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매매거래일 기준)가 30일 이상일 것

주2) 사유해소에도 불구하고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의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다만, 규정 제54조제1항제7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개선기간 이내에 미제출한 정기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여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3)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익일

주4) [상장세칙 별지 30호]에 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주명부 요약표와 소유자명세 등에 의하여 분산이 확인된 날의 익일

주5) 회생절차 취하 등 회생절차 종결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주6) 매출액 미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사유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장유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포함)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에도 상장유지가 결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



(3) 관리종목지정 관련 특례

- ① 감사보고서는 공시규정에 따라 신고한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해당 신고에 대하여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해당 신고일의 익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해제(상장규정 세칙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
- ② 정리매매기간 중에는 관리종목 지정·해제를 하지 않음(상장규정 세칙 제58조제2항)
- ③ 상장법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 관련 관리종목 지정·해제를 다음의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법정제출기한 전 3개월 이내에는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유예되나, 법정제출기한 전 3개월 이전의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유예(상장규정 세칙 제52조제1항)
 - 감사인이 외부감사법상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개월 이내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날까지
- ④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상장 한 경우 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및 주식분산기준 요건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거래량 미달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적용(상장규정 제53조제6항)

(4) 관리종목지정 관련 이의신청

- ① 지배구조, 주식분산, 회생절차개시 및 파산신청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관리종목의 지정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 ② 거래소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다.

(5)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상장규정 제81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류주식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관리종목을 지정한다.

지정요건	지정시기	해제시기
① 보통주식 관리종목지정	보통주식 지정·해제시기와 동일	
②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종류주식 주주수가 100명 미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분산이 확인된 날 다음 날 ^{주1)}
③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해당 종류주식의 상장주식수가 20만주 미만	확인일 다음 날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의 상장주식수가 20만주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의 다음 날
④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 매매거래일간 지속	확인일 다음 날	요건 충족 ^{주2)} 일의 다음 날
⑤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 ^{주3)}	분기종료일의 다음 날	거래요건을 충족한 분기종료일의 다음 날

주1) [상장세칙 별지 30호]에 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주명부 요약표와 소유자명세 등에 의하여 분산이 확인된 날의 익일

주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인 일수(매매거래일 기준)가 10일 이상 계속
-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인 일수(매매거래일 기준)가 30일 이상일 것

주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하지 않음

- 신규상장된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
- 분기 중 매매거래정지일수가 해당 분기의 매매거래일수의 50% 이상
-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업무규정 제12조의3제1항)

3. 관리종목지정에 수반하는 제재 내용

■ 매매거래정지

- 관리종목 지정사유 확인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 단, 사업보고서 미제출, 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신청의 경우에는 사유해소시까지 정지

- 기존 관리종목의 지정사유 추가시에는 매매거래정지 없음



■ 기타 제재

- 관리종목 지정사실의 전산 및 코스닥시장지 공표
-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따라 3자배정 유상증자 시 매각제한(6월)
- 위탁증거금융 대응증권 지정대상 제외
- 신용거래 대상종목 제외
- 상속 및 증여를 위한 유가증권평가 시 시세불인정
-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 의무화
- 코스닥150지수, KRX300지수 구성종목 선정 시 제외

Key-point

◆ 관리종목 지정 후 지정사유가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당법인 및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

주요 Q&A

-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되는 경우 관리종목지정사유 해당여부?
 A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 또는 양도'의 경우 과거 관리종목 지정사유였으나, 현재에는 관리종목 지정사유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후 상장규정 제56조제1항3호라목 및 세칙에 따라 주된 영업이 정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함
- 지주회사 전환 중의 관리종목 지정 여부?
 A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분할을 한 경우로서,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해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매출액 30억원', '최근3년 중 2년 자기자본 50% 초과 손실',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 미만'은 적용하지 않음
- 사외이사 수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시 예외가 되는 기업은?
 A 코스닥상장법인이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 총수의 1/4이상 이 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대상이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코스닥기업의 요건과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은?
 A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코스닥상장법인이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구성요건) 총 위원회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하며 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로 함
- 3자배정 유상증자시 매각제한을 받는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 ▲ 코스닥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서 발행일 현재 해당 종목이 다음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동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은 발행일로부터 6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함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변경된 최대주주 등에 한함)
-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해당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50%이상 자본잠식을
 -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 10억 미만
 -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간 지속되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 후 거래정지가 지속되는 사유는?

▲ 다음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경우 거래정지가 별도로 정한 시점까지 지속됨

관리종목 지정사유	매매거래정지 기간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파산신청	사유해소시까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예치신탁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재무활동 제한을 위반한 경우	관리종목 해제일까지
상장폐지사유발생	사유해소시까지

● 주식분산요건 적용시 소액주주 범위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보통주식을 소유하는 자
2.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
3.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기금
4. 벤처금융
5. 외국투자전문회사
6. 투자회사(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7. 그 밖에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외국기업으로서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법인

● 자본잠식 등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에서 지칭하는 “최근 사업연도”의 범위는?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함. 상장법인이 재감사 또는 감사의견 재발행으로 직전 사업연도 이전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이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다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상장폐지 요건 요약

구분	요건	이의신청
형식 상장폐지 (단독)	- 최종부도·은행거래정지, 해산(파산결정) -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
	- 자본전액 잠식	가능 (의견 불일치 한정시)
	- 감사의견 비적정 - 주식양도 제한 - 우회상장 기준 위반	가능
형식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후)	- 시가총액 40억원 미만(90일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
	-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 2년간 3회 이상 정기보고서 미제출 - 월평균거래량 2분기 연속 유동주식수 1% 미만 - 주식분산미달(소액주주 200명 / 소액주주 주식수 20% 미만)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2년 연속)	가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개별심사 사유) - 상장/실질심사 자료 허위기재 등(개별심사 사유)	가능
	- 매출액 2년 연속 30억원 미만 - 세전손실 2년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 발생 -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세전손실/자본잠식/매출액 등 상장폐지요건 회피 - 횡령배임 - 회계기준 위반 반영 시 폐지사유 해당 -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 통보 - 관리·환기종목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조치 - 분기 3억원·반기 7억원 매출액 미만(영업정지) - 자구이행을 통한 잠식요건 해소 - 자기자본 50% 이상 비매출채권 손상차손 - 관리·환기종목에 경영권변경 또는 제3자유증·대여 - 분할 등 후 자기자본 30억원 미만 - 이익미실현기업의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3년 연속 전년 50% 이상 감소 - 불성실공시벌점 15점 이상 - 감사의견 변경으로 상장폐지 해소 - 2년연속 계속기업 불확실성 한정	

상장관리업무
 제3장

V 형식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

1. 개요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권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법인의 재무내용,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 등이 부실하여 더 이상 다수의 투자자간 거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폐지는 적용 방법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구분된다. 본 파트에서는 형식적 상장폐지를 설명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한다.

2. 형식적 상장폐지 (상장규정 제54조제1항)

형식적 상장폐지는 사유 발생시 바로 폐지되는 단독사유와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사유로 구분되고, 이의신청 허용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

요건	관리지정	이의신청
① 감사의견 비적정	×	○
② 최종부도·은행거래정지	×	×
③ 해산(파산결정)	×	×
④ 월평균거래량 2분기 연속 유동주식수 1% 미만	○	○
⑤ 주식분산미달(소액주주 200명/ 소액주주 주식수 20% 미만)	○	○
⑥ 자본전액 잠식	×	△
⑦-1. 정기보고서 2회 연속 법정 제출기한내 미제출	○	○
-2. 정기보고서 2년간 3회 법정 제출기한내 미제출	○	○
-3.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	○
⑧ 주식양도 제한	×	○
⑨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	×
⑩ 우회상장 기준 위반	×	○
⑪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
⑫ 시가총액 40억원 미만(90일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	×

* “○”: 해당, “×”: 미해당, “△”: 예외적 해당(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수정 재무제표적용에 따른 자본잠식시)



1 감사의견 관련(제1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동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에는, 동일 감사인이 해당 사유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였으나, 확인서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반기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 2)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감사의견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서, 개선계획서 및 전문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 감사보고서를 신고하는 경우 감사보고서 신고한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 중 감사의견을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 한정은 제외함)으로 변경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다.

* 만약, 상장법인이 결산기 변경 등으로 그 기간이 1년보다 적게 되는 경우나 상장외국법인과 같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정제출기한(+10일)까지만 부여함

Key-point

- ◆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개선기간 중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면 바로 거래재개를 하지 않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상장법인의 상장유지가 적합한지를 점검함(상장규정 제56조제1항 제3호카목)

2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제2호)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은행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해당한다.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3 해산사유 발생(제3호)

상장법인이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 주식교환으로 완전 자회사로 변경, 파산선고 등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한다.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참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상법 제227조, 제517조)

- | | |
|-------------------------------------|----------------|
| • 합병 |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 • 주주총회의 결의 | • 파산 |
|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
| •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

4 거래량 미달(제4호)

거래량 미달(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5 주식분산기준 미달(제5호)

주식분산 미달(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 지분 20% 미만(유동주식수 기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주식분산기준 미달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해당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6 자본전액잠식(제6호)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의신청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정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의 적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한정 의견인 경우로서 해당 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감사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즉시 상장폐지 한다.

[적용기준]

-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한 재무제표 기준 적용
- ③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동 규정 적용 제외

Key-point

◆ 자구이행에 의한 형식적 상장폐지 예외

-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 사유발생 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상장폐지를 적용하지 않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56①3호마목)를 실시

7 정기보고서 관련(제7호)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 ①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최근 2년간 3회 이상 정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③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8 주식양도 제한 관련(제8호)

상장은 자유로운 주식 매매를 기초로 하므로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9 이전상장 관련(제9호)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위해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상장폐지 한다.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10 우회상장 규정 위반 관련(제10호)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기업결합(합병, 주식교환, 영업·자산의 양수, 현물출자)을 완료하거나 의무보유를 이행하지 않고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다만, 해당 상장법인의 기업결합에 대한 취소 결의·결정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하지 않는다.

11 기업지배구조 관련(제11호)

상장법인이 상법상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다만,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시가총액 관련(제12호)

시가총액 미달(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 매매거래일 지속)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매매거래일간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 시황급변 등의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 ①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매매거래일 이상 계속될 것
- ②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매매거래일 이상일 것

3. 상장폐지 관련 특례

상장법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연장된 경우, 거래소는 정기보고서 제출, 감사의견 및 자본잠식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법정제출기한에 다음의 기간을 가산(해당기간 동안 유예)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유가 정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3개월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상장규정 세칙 제52조 및 제59조제3항)

- 감사인이 외부감사법상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감사인의 파산,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 3개월 이내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 :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날까지

4. 상장폐지절차

(1) 상장폐지 기본절차

■ 형식적 상장폐지 세부절차 ■

[방법 및 절차]		[주체]
1 단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발생 확인(상장규정 §54①) ↓	거래소
2 단계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 통지 & 공시 ^{주1)} (이의신청 없음) ↓	거래소
3 단계	상장폐지 (절차 종료) ↓	상장법인
	이의신청 ^{주2)}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서 등 제출) ↓	
4 단계	(1차)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주3)} 여부 심의·의결 (20영업일 이내 개최) ↓	기업심사위원회
5 단계	상장폐지 (절차 종료) ↓	거래소
	개선기간 부여 통지 ↓	
6 단계	(2차)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 제출(종료 후 15영업일 이내) 및 상장폐지 여부 심의·의결(20영업일 이내) ^{주4)} ↓	기업심사위원회
7 단계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통지	거래소

주1)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중 부도·은행거래 정지, 해산사유발생, 이전상장, 시가총액 미달 등 객관적으로 폐지사유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주2)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주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감사의견 비적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 20영업일 이내 추가 연장 가능

1 상장폐지 사유발생 및 통지

주권의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사유 및 근거 등을 해당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동 서면에는 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 한정),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폐지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2 상장폐지 이의신청

상장법인은 해당 사유가 이의신청 가능 사유인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폐지사유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 없는 사유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없이 거래소가 즉시 상장폐지 한다.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의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 한다.

[이의신청서 첨부서류]

-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이 포함된 개선계획서
-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거래소는 해당 상장법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해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 개선계획의 타당성, 개선기간 부여여부 및 개선기간
-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정지여부 및 매매거래정지 기간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상장법인에 통지한다. 개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을 통해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에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기업으로서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 유지/폐지 여부 결정

개선기간 종료 후에는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 20영업일 이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상장법인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상장법인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상장법인이 상장을 자발적으로 폐지하려는 경우(유가증권시장 이전신청을 위한 상장폐지 신청 포함,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증서는 제외)에는 상장폐지 신청서와 다음의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장폐지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이전상장의 경우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부
- 상장주선인의 상장폐지 동의서(이전상장의 경우 제외) 2부

상장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의 상장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신청서에 상장폐지를 결의한 해당 종류주식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거래소는 당해 법인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투자자 보호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정리매매

거래소는 상장폐지 되는 주권(종류주식 포함)에 대하여 통상 7일(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주권이 상장폐지 되기 전에 투자자에게 마지막으로 환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VI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1. 개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제도는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 사실이 발생하면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 기업실질에 기초하여 상장유지 적격성을 심사하여 해당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일부 코스닥 상장법인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 행위가 발생하고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업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적격 기업을 퇴출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도입('09.2월)하였다.

2. 실질심사사유 및 심사기준

(1) 실질심사 사유

1) 개별적 요건 사유(상장규정 제56조제1항)

개별적 요건은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상장폐지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사실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 개별적 요건 사유 ■

구 분	기 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	-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 등이 있을 때. 다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장서류 허위 기재 등	-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합적 요건 사유(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

종합적 요건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1 상장폐지요건 회피(가목)

상장법인의 증자나 분할 또는 사업부 매각 등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

구분	요건
① 대규모 손실요건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의 과대평가, 가장납입을 통해 대규모 손실요건(자기자본 50% 초과 손실 발생(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하목)을 회피한 경우[상장규정 세칙 제6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 상장법인의 분할 및 사업부 매각 등을 중단사업으로 회계처리하여 대규모 손실요건(자기자본 50% 초과 손실 발생)(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하목)을 회피한 경우 [상장규정 세칙 제61조제1항제1호라목]
②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 요건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의 과대평가, 가장납입을 통해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 사유(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거목·너목)를 회피한 경우[상장규정 세칙 제6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③ 매출액 요건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매출액 미달사유(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파목)를 해소한 경우[상장규정 세칙 제61조제1항제1호다목]

그 밖에 상장폐지 기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을 회피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

2 횡령·배임(나목)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 해당 상장법인 직원은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5%(대기업의 경우 3%) 이상, 임원은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제3장
 상장권리취부

3 회계처리 위반(다목)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에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다목). 중대한 위반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구분	요건
① 회계처리 위반내용 반영시 상장폐지기준 해당	-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검찰의 기소내용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기준 또는 매출액 미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에 따른 실질심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상장규정 세칙 제61조제1항제3호가목]
② 검찰고발 등 조치	-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상장법인에 대하여 검찰 고발·통보(전·현직 임원에 대한 경우를 포함)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장규정 세칙 제61조제1항제3호나목]
③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증권위 등 과징금 부과조치	- 관리종목(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의 조치를 받은 경우[상장규정 세칙 제61조제1항제3호다목]

4 주된 영업의 정지(라목)

상장법인이 주된 영업이 정지되어 잔여사업부문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어려운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주된 영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상장규정 세칙 제61조제1항제4호)

- ①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업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말함)
- ② 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 또는 반납되는 경우
- ③ 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으로 주된 영업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이 경우 분할(분할합병 포함) 당시 또는 분할이후 지주회사의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에는 예외
- ④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반기 매출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업종대분류가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는 상장법인,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경우(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 한정) 제외하며, 이익미실현기업이나



우량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지정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 간 지정 제외한다. 또한, 우량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지정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및 (2) 최근 사업연도의 일 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각각 ‘연구개발 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근 사업연도에 대하여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 외국지주회사가 주요외국자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해당 주요 외국자회사가 외국자회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거나 주요외국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의 비중이 각각 외국지주사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의 50% 초과하는 자회사

- ⑥ 그 밖에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 결산이후 자구이행을 통한 자본전액잠식 요건 해소(마목)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전액잠식을 자구이행을 통해 해소(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6호 단서)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이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마목).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이 자구이행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면제한다.

6 대규모 영업외대손 발생(바목)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 50% 이상으로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바목). 손상차손은 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계금액이다.

7 부실징후기업의 경영권 변동(사목)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경영권 변동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사목). 경영권 변동은 최대주주 변경 사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예약매매 등 포함) 또는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 체결 공시를 말한다.

〈참고사례〉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관련 유의사항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대금지급/주식인수 전) 후에 관리종목(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동 계약이행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함

다만, 기업부실과 관련 없는 사유(기업지배구조, 거래량, 주식분산기준 미달 등)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신주의 발행으로 경영권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부실징후기업의 편법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목)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해당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에 관한 결정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사목). 다만, 기업부실과 관련 없는 사유(기업 지배구조, 거래량, 주식분산기준 미달 등)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9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법인의 부실화(아목)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상장법인이 해당 분할 또는 분할합병 결의일 현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예정 영업부문에 대하여 자기자본 30억원 미달 등 재무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아목1)). 다만,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중에서의 분할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존속예정 영업부문 재무요건〉**

- ①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5억원 이상)
- ② 자본잠식이 없을 것
- ③ 이익요건 충족(제43조제1항제3호의 재상장시의 요건 충족)
- ④ 위의 재무내용 등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적정

또한,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분할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존속될 법인의 주된 영업이 합병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아목 2)). 다만, 합병 당시 우회상장 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이익미실현법인의 매출액 미달(자목)

이익미실현 요건(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을 충족하여 상장한 법인이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자목). 최근 3사업연도는 상장 이후의 사업연도로서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되, 상장일로부터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11 불성실공시(차목)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 이 경우 누계벌점은 불성실공시법인 결정일이 아니라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벌점을 합산한다.

한편, 불성실공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관리종목 지정해제일 이후부터 공시위반에 따라 발생한 벌점을 누계하여 적용한다.

12 감사의견 변경(카목)

감사인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제54조제1항제1호)한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는다. 상장법인이 동 기간 내에 재감사로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 이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잠식과 같은 재무관련 부실이 발생하거나 기업계속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상장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13 2사업연도 연속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불확실성 존재(타목)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상장규정 제52조제1항제2호라목, 제3장 III. 참조)된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심사 대상 사유이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타목).

14 매출액 미달(파목)

매출액 3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적용기준]

- ① 지주회사의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하지 않음
- ④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 제외

Key-point

- ◆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파목의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임

**15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미달(하목)**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말에도 동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은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조정한다(당해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이 확인한 상장세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제한함)

[적용기준]

-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적용
-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하지 않음
- ④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 제외

16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거목, 너목)

50% 이상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최근 사업연도에도 50% 이상 자본잠식이 발생하거나,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최근 사업연도에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기준]

-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 ③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동 규정 적용 제외

17 기타 투자자보호(더목)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위에서 기술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더목). 상장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준하여 실질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심사기준

1) 개별적 요건

회생절차 개시신청기각 및 개시결정취소, 상장 또는 실질심사 관련서류 허위기재 등 개별적 요건 해당 사유 발생 시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상장폐지여부 심사한다. 즉, 개별적 요건은 해당 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중요성, 해당 기업 및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사항목	주요 심사기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 - 해당 법인의 계속기업 가능성 유무
상장관련 허위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신고 내용이 상장심사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 해당 법인의 고의, 중과실 여부 등

2) 종합적 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및 투자자보호 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관점에서 상장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한다. 종합적 요건 심사사유 발생이 직접적인 퇴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심사항목
(1)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가. 영업의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의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또는 이익규모, 추이 등 영업활동 악화로 인한 매출의 계속성 여부 - 신규사업 진출시 사업성격, 투자규모, 수익창출시기 등을 고려한 매출 지속성 여부 - 영업활동 개선계획으로 인한 매출 회복 가능성 여부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심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 회복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간 영업활동의 현저한 악화로 발생한 손실 규모 및 향후 손실 지속여부 대여금, 타법인주식 등 영업외손실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 영업활동 개선계획으로 인한 수익성 회복 가능성 여부
	나. 재무상태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상태 취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비율, 차입금 규모, 만기구조,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한 채무불이행이나 부도발생 가능성 여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규모 및 추이 등을 감안한 유동성의 악화 가능성 여부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잠식의 정도, 추이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 또는 이익의 발생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횡령·배임 등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횡령·배임 등의 발생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회수 가능성 분식회계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불법적인 지급보증, 담보 제공 등 우발채무의 실현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 가능성 여부 특히, 경영권 등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한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2) 지배구조, 내부통제 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	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관련여부, 횡령·배임 금액의 크기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관여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기타 불법행위 전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의 안전성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주주의 안정적 지분 보유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빈번한 교체 및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연속성 유지 여부
	나.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내부 통제제도 훼손여부 이사회 운영규정, 감사규정, 회계규정 등 내부 통제 제도의 구축 및 운영 여부 내부통제제도 개선 가능성 여부
	다.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처리 불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여부 최근 3년간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중대한 오류 및 특이사항 여부 분식회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개선 가능성 여부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심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위반 행위의 악의·상습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한 공시 내용이 시장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 위반한 공시 내용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 해당 법인의 고의, 중과실 여부 - 해당 법인의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 여부 - 공시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시체계 개선가능성 여부
(3) 기 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준하는 사유로서 증권시장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 폐지 필요 여부



3. 실질심사 상장폐지절차

(1)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

거래소는 실질심사 사유 발생 법인이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가능성이 있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사유 발생 후 15영업일 이내 결정)한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근거만으로도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실질심사 사유 발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제외 결정일 다음 날 매매거래정지 해제)할 수 있다.

참고 약식심사(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1조)

- 종합적요건 사유 중 ① 상장폐지요건 회피, ② 횡령·배임, ③ 회계처리 위반의 사유로 실질심사를 하는 경우 우량기업 기준표(실질심사지침 별표 3)에 따른 평가결과 영업, 재무상황 등이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심사자료(종합적 요건 중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에 관한 자료에 한함) 요청 및 현지조사 없이 심사 가능
- 실질심사 사유가 과거 실질심사 결과 실질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날 또는 상장유지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과거 실질심사 사유와 동일한 원인행위로부터 발생한 심사사유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실질심사 사유가 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과거 실질심사 완료 이후의 경영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

(2)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결정 통보 이후, 대상법인이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동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유지(거래재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중 택일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심의할 경우 심의일 이후 20영업일 이내에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확정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개선계획의 타당성, 이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가 가능하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기간 중에도 상장법인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기업으로서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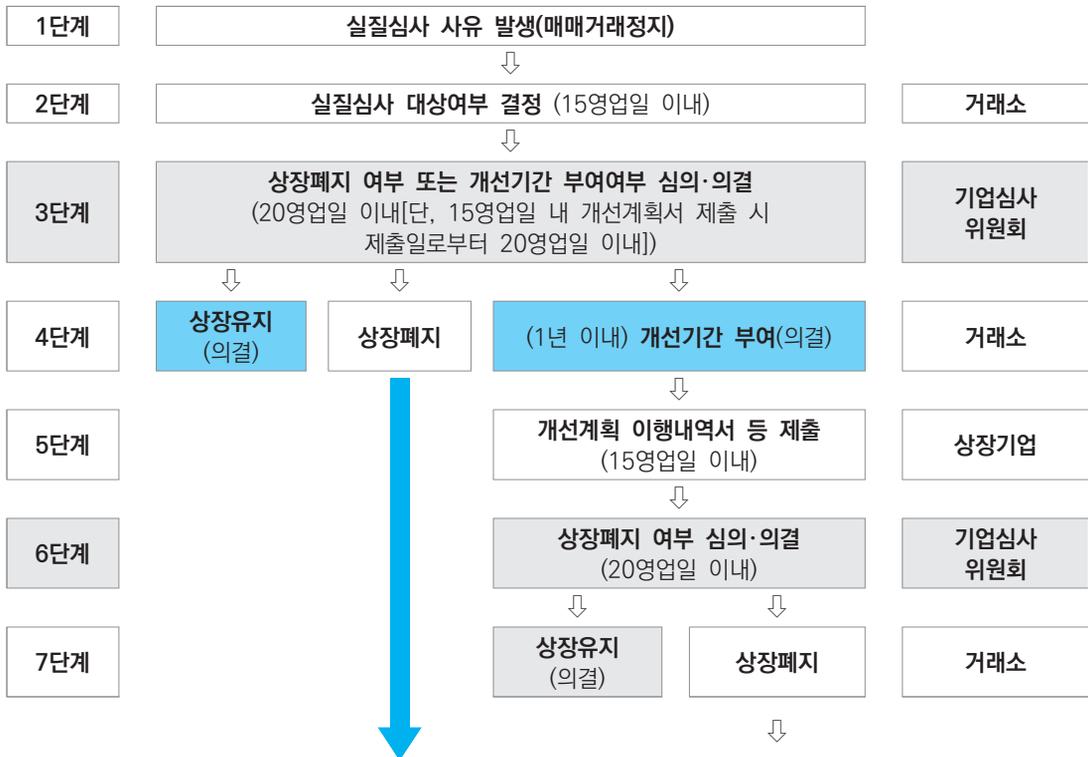
(3)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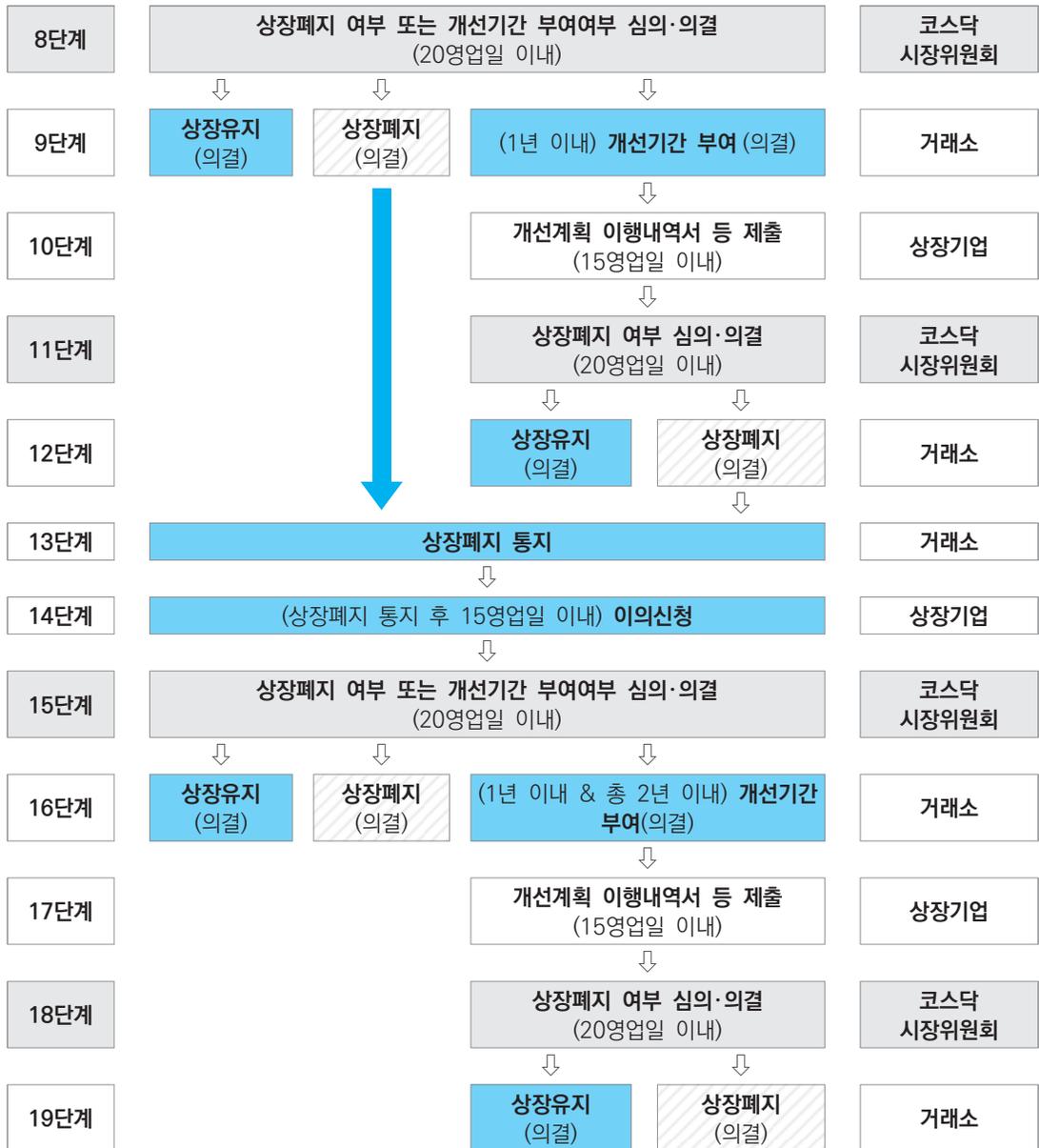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개선기간을 부여한 기업심사위원회(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될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4) 이의신청 심의 및 최종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한 경우 상장법인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법인은 시장위원회의 최종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세부절차 ■





상장폐지
 제3장
 상장관리업무

Ⅶ 업종심사 및 소속부 심사

1. 업종심사

(1) 업종심사의 의의

업종은 상장법인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업종별 통계자료의 발표, 업종별 종목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업종분류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1에서 정하는 업종 및 코드 분류표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분류한다. 상장법인의 사업종류가 2개 이상인 경우 매출액 비율이 큰 사업의 업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액이 큰 사업의 업종으로 분류한다. 이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종업원 수 또는 설비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며,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업종분류가 곤란한 경우 유사업종의 기타업종으로 분류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특정 산업부문의 매출액이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의 50%이상인 경우에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한다.

(3) 업종변경 심사(정기/수시)

1) 정기 업종변경

1 변경기준

- ① 주요제품의 매출액 비율순위가 최근 2사업연도 계속하여 변동이 있고, 앞으로 기 분류된 업종으로의 신장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
- ② 사업구조개편, 주력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근 1사업연도 주요제품에 대한 매출액비율 순위의 현저한 변동이 있고 상장법인이 업종변경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변경시기

해당 상장법인의 결산일을 포함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5개월이 되는 월의 최초 매매거래일에 변경한다. 다만,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수시 업종변경

1 변경기준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② 합병·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등으로 주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이 전환된 경우
- ④ 기타 업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변경시기

해당 사실이 확인된 때(합병 등의 경우 주된 영업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제출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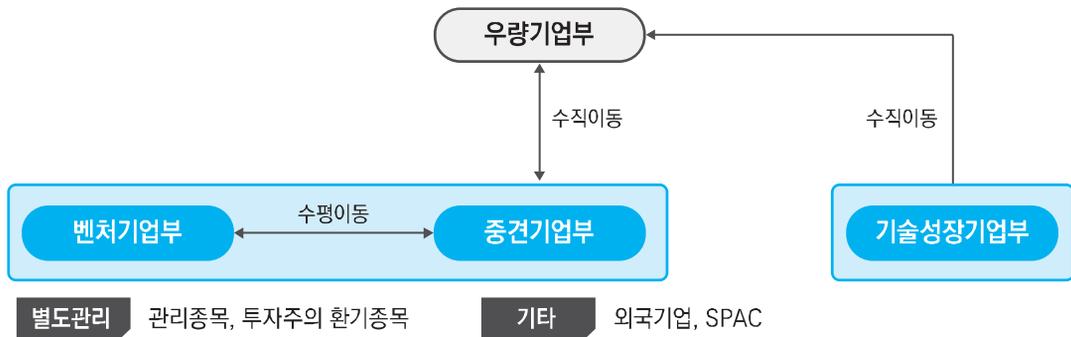
(4) 업종심사 자료제출

상장법인은 정기업종분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업종심사 자료 등)를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 별도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이다.

2. 소속부심사

(1) 소속부심사의 의의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업종 등 기업특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로 소속부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만, 외국기업,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소속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소속부 지정요건

구분	정기 변경	수시 변경
요건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기업 경영의 건전성, 업종 등 기업특성 및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지정	① 녹색인증, 벤처인증 또는 이노비즈인증의 취득·취소 또는 기간만료 ② 라이징스타 선정 또는 해제 ③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 ④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시기	매년 5월 최초 매매거래일	②③ 해당 사유 적용일 ①④ 사유 확인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3) 소속부간 지정·변경 기준

소속부 심사결과 2개 이상의 소속부에 해당하는 경우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순으로 지정·변경한다.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 이후 최초 정기심사 기준일(최초 정기심사 기준일까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정기심사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인은 중견기업부에 지정한다. 다만,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법인이 상장일 현재 또는 상장일 이후부터 해당 정기심사기준일 이전에 벤처기업부 수시 지정요건에 해당 시 해당 소속부로 지정한다.

기술성장기업부 소속 상장법인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신속이전기업 및 신속합병 상장기업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심사 기준일 이후부터 소속부를 변경한다. 기술성장기업(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및 이익미실현 요건(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을 충족하여 상장한 기업의 경우 최초의 변경은 우량기업부로의 변경에 한하며, 우량기업부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다시 기술성장기업부로 변경지정 할 수 없다.

상장관리부
지정

■ 코스닥 상장법인 소속부 ■

구 분		선정방법
소속부	우량기업부	(정기심사) 일정규모이상 우량 대표기업(건전성요건 포함)
	벤처기업부	(정기심사) 매출액 증가기업 등 일정요건 충족기업
		(정기심사)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기업
		(수시심사) 벤처인증 + 이노비즈인증 또는 녹색인증 보유 기업
		(수시심사) 거래소 선정 라이징스타 대상 기업
중견기업부	(정기, 수시심사)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 미해당기업	
기술성장기업부	(수시심사) 기술성장기업, 신속이전기업, 신속합병상장기업, 이익미실현 기업	
별도 관리	투자주의환기종목	기업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
	관리종목	재무요건 등 상장유지 부적격 우려기업
	관리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	기업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 재무요건 등 상장유지 부적격 우려기업
기타	외국기업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참고 소속부 심사 세부선정기준

■ 우량기업부

구 분		선정기준	심사유형	
선정 대상 (①,②,③ 모두충족)	기업규모(①)	자기자본 또는 시가총액 - 700억원 이상 - 최근 6월 평균 1,000억원 이상	정기심사	
	재무요건(②) - i), ii), iii) 모두충족	i) 자본잠식		- 없을 것
		ii) ROE 또는 당기순이익		- 최근 3년 평균 5% 이상 - 최근 3년 평균 30억원 이상
		iii) 매출액		- 최근 3년 평균 500억원 이상
기업경영 건전성(③)		- 2년간 상장적격성심사대상 결정사실 없을 것 - 2년간 불성실 벌점합계 4점 이하일 것 - 2년간 최대주주변경 사실이 2회 이하일 것 *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관리종목 제외		

■ 벤처기업부

구 분		선정기준	심사유형	
필수선정 대상		- (거래소가 선정하는) 라이징스타 해당기업 -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을 동시 보유 - 녹색인증 보유 - R&D 비율 5% 이상 기업	수시심사	
선정 대상 (①,②,③ 모두충족)	기업규모(①)	자기자본 또는 시가총액 - 300억원 이상 - 최근 6개월 평균 500억원 이상	정기심사	
	재무요건(②) - i), ii) 모두충족	i) 자본잠식		- 없을 것
		ii) 당기순이익		- 최근 3년 중 2년 흑자
	성장성(③) 시장건전성	매출액증가율 - 2년 평균 20% 이상 *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관리종목 제외		

■ 기술성장기업부(신규상장시에만 적용)

구 분	선정기준
선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성장기업 : 전문기관평가 신속이전기업 : 코넥스 이전상장 신속합병상장기업 : 코넥스 이전상장 이익미실현기업 : 시가총액 및 성장성 평가

■ 중견기업부

위 3개 소속부 미해당 기업 중 별도관리*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 별도관리 :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소속부 분류 제외 : 외국기업,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



3.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 지정제도

(1) 개요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질적 성장과 도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내 재무실적과 시장평가 및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들을 선별하여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22.11월 도입하였다.

(2) 지정요건 및 운영구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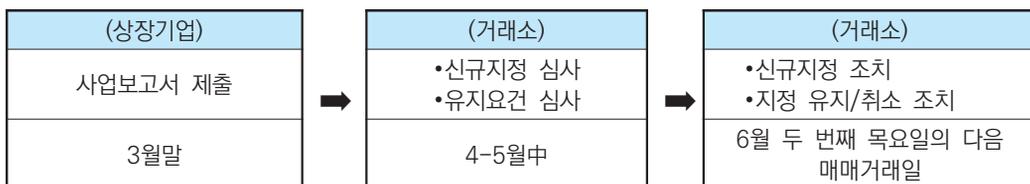
(신규지정)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으로 신규 지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①시장평가(시총) 및 재무실적 요건 + ②기업지배구조 요건 + ③기타요건(기업건전성, 회계투명성 등)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신규 지정 요건 ■

구분	요건
시장평가 및 재무실적	- ‘일반기업’과 ‘바이오기업’ 요건 중 택일
기업지배구조	- KCGS의 기업지배구조(G) 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타요건	- 기업건전성, 회계투명성, 최소상장기간 요건 등

(지정유지/취소) 기 지정된 기업에 대해 정기(년 1회) 심사하여 지정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신규 지정시보다 좀 더 완화된 시장평가 및 재무실적 요건을 적용하고, 기업지배구조 등급, 불성실공시 부과별점 등을 심사하여 매년 6월 두 번째 목요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일괄 지정취소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 기업 건전성 훼손 등 사유 발생시에는 발생 익일 즉시 지정취소 조치한다.

(운영구조) 거래소는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 지정요건 심사를 거쳐 매년 6월 두 번째 목요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일괄적으로 지정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기 지정기업의 지정유지 및 취소절차도 이와 동시에 진행한다.



상장권리범위
 제3장

참고

코스닥 글로벌 요건

■ 신규지정 요건: 기준일(3월말) 지정초치(6월 두 번째 목요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구분	선정기준
시장평가 경영성과 (① or ②)	① 일반기업 요건 : 최근 1년 일평균 시총 5,000억원 (or 시총 상위 7%) ② 바이오기업 요건 : 최근 1년 일평균 시총 1조원 (or 시총 상위 2.5%) & 자기자본 1,000억원
지배구조	1) 매출 3,000억원* 이상 or 2) 영업이익 300억원* 이상 & 최근 세전이익 시현 * 최근 및 최근 3사업연도 평균 모두 충족 임상 1상 이상 신약후보물질 2개이상 보유 & 택1 1) 10년 국내·외 신약허가(개량제외, 개발신약 限) 2) 2년 L/O 매출 100억 or TOP 20사 매출 3) 매출 300억 & 혁신형 제약기업 * 최근 및 최근 3사업연도 평균 모두 충족
기업 건전성	① 최근 1년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 ② 최근 1년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 미지정 & ③ 최근 2년 상장폐지관련 매매거래정지 미해당(실질대상 미지정 제외)
회계투명성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적정
상장기간	최소 상장기간 1년 및 매매거래일 60일 이상
기타	사회적 물의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 결격사유 없음(인·허가취소, 정부 제재조치 등)

* 매출액(별도재무제표, 지주회사 연결), 영업이익, 세전이익 및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구조변경(인적분할, 합병) 시 (시총) 변경·재·추가상장이후부터 계산하되 상장기간1년이상&60거래일 필요(거래소 인정시 그 미만의 기간도 가능), (재무)감사인 확인 최근 3년 재무수치 적용, (연구실적) 존속법인에 해당실적 사업부 존재, 심사일·지정일 현재 분할/분할합병진행중인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

■ 정기유지 요건(진입요건 70~80% 수준)

구분	선정기준
시장평가 경영성과 (① or ②)	① 일반기업 요건 : 최근 1년 일평균 시총 4,000억원 (or 시총 상위 10%) ② 바이오기업 요건 : 최근 1년 일평균 시총 4,000억원 (or 시총 상위 3.5%) & 자기자본 800억원
기업지배구조	1) 매출 2,500억원* 이상 or 2) 영업이익 250억원* 이상 & 최근 세전이익 시현 * 최근 및 최근 3사업연도 평균 모두 충족 임상 1상 이상 신약후보물질 2개이상 보유 & 택1 1) 10년 국내·외 신약허가(개량제외, 개발신약 限) 2) 3년 L/O 매출 100억 or TOP 20사 매출 3) 매출 250억 & 혁신형 제약기업 * 최근 및 최근 3사업연도 평균 모두 충족
기업지배구조	한국ESG기준원의 최근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C등급 이상일 것
불성실공시	최근 1년 불성실공시 부과별점 5점 미만
회계투명성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적정
기타	사회적 물의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 결격사유 없음(인·허가취소, 정부 제재조치 등)

* 신규상장시 글로벌 세그먼트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① 상장 후 1년 미경과시 시장평가·경영성과 요건 미적용, ② 상장 후 2년간 지배구조 요건 미적용

* 일반기업 요건과 바이오기업 요건 상호 호환가능(Ex : 신규지정시 일반 → 유지심사시 바이오 가능)

■ (수시) 취소 요건

: 상장폐지관련 매매거래정지 발생(실질대상 미지정 제외), 관리·환기종목 지정, 기타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항(예외적용) 등

■ 지정시 혜택

: 코스닥 글로벌 기업에 대한 추가·변경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연부과금의 경우 일할계산)



VIII 공시교육 및 기업설명회(IR)

1. 공시교육

(1) 공시교육의 의의

공시관련 지식의 전문성,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대리인에게 신규교육, 연례교육, 불성실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 등은 1년에 1회 이상 공시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44조 제5항).

■ 공시교육 과정 현황 ■

구분		교육내역	비고
의무	공시 책임자	신규교육	신규지정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 등
	공시 담당자	신규교육	신규지정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	공시담당자 워크샵 등 총 10회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담당자		지정후 4시간내외	회사별 1인이상 참석의무
선택	공시책임자·담당자	신규상장법인 방문	
온라인(의무, 보수)	공시책임자·담당자	9과목 11시간	전년도 의무교육 이수자

(2) 의무교육 미이수 법인 조치사항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시 별점 1점을 추가부과하며, 2년연속 의무교육 미이수시 공시책임자·담당자에 대한 교체 요구(교체요구일로부터 1개월 내 미교체시 별점부과)를 하게 된다.

2. 기업설명회 (IR; Investor Relations)

(1) IR의 의의

기업과 투자자간의 재무정보의 공개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현재 또는 잠재 투자자에게 해당 기업의 내용 및 전망에 대한 자발적으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기업의 총체적인 가치를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본비용을 인하시키고자 하는 종합적이고 전사적, 전방위적 마케팅 전략이다.

(2) 기업설명회(IR) 개최의무(상장계약서 제7조)

상장법인은 상장 이후 2년간* 연 1회 이상 기업설명회 개최의무가 있다. 통상 결산(반기 포함) 확정시점에 경영현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 개최한다.

* 상장일로부터 상장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

(3) 기업설명회(IR) 서비스 개요

거래소는 한국IR협의회와 함께 상장기업이 IR개최를 희망할 경우 참가자 섭외, 회의장 세팅, 자료 출력 등의 후속업무를 지원(현수막·엑스배너 제작, 음료·생수 제공, 인쇄물 지원 등)하는 '원스톱 I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대관장소

- KRX 컨퍼런스홀 : 행사장 대여 및 셋팅(유료)
 - 한국거래소 본관1층에 위치한 436석(1층 350석, 2층 86석) 규모의 행사장으로 세미나, 강연회, 사업설명회, 토론회 등 각종 대규모 행사에 적합
- 예약 및 문의 : 총무부 02-3774-4053
 - <https://www.krx.co.kr> → KRX 소개 → 고객센터서비스 → 컨퍼런스홀

(5) 지원신청 방법 : 전화/이메일 IR지원 신청

- Tel : 02-3774-9654 ~ 9656
- E-mail : kosdaqmkt@krx.co.kr



IX 공시우수법인 등 시상 및 혜택

1. 공시우수법인

(1) 선정취지

성실공시 풍토조성에 기여한 상장법인과 공시담당자에 대해 시상함으로써 그 공로를 치하하고 코스닥 시장의 경영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선정하고 있다.

(2) 공시우수법인 선정

■ 공시우수법인 선정 ■

구분	주요 평가 내용
장기성실공시 우수법인	불성실공시가 없는 기간이 가장 긴 법인 (2사)
실적예측공시 우수법인	직전년도 이전 3년간 실적예측공시(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를 말한다)를 제출한 법인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대한 예측과 실적의 오차율이 가장 낮은 법인 (2사)
IR활동 우수법인	IR개최횟수(신고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최장소, 대상자, 개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R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 (2사)
종합평가 우수법인	공시정확성/적시성/적정성, 투자활용도 높은 공시 제공노력 및 공시업무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 평가 결과 상위에 해당하는 법인

(3) 혜택

- 공시우수법인에 공로패 수여
- 공시업무유공자에 한국거래소 이사장 표창장 수여
- 공시우수법인 금전포상(200만원)
- 공시업무유공자 금전포상(30만원)
- 해외연수 포상 혹은 금전포상(100만원)*
 - * 천재지변 등으로 해외연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정후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 연례교육 이수 면제
- 전자공시시스템 공표

2. 라이징스타 (Rising Star)

(1) 선정취지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스타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여 코스닥시장 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정하고 있다.

(2) 혜택

- 거래소 주관 IR 참여
- 기업정보 제공지원(기업분석보고서 발간, 배포 및 홍보)
- 금융지원(금리 우대, 대출한도 상향, 경영 컨설팅 지원)
- 라이징스타 CEO 간담회 및 인증패 수여
- 선정 당해 연부과금 지원, 변경·추가 상장수수료 면제 및 소속부 변경(중견기업부인 경우 벤처기업부로 변경)

3.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코스닥협회)

(1) 선정취지

경영실적, 시장공헌도, ESG경영,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서 우수한 코스닥 기업을 시상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코스닥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정하고 있다.

(2) 혜택

- 1년간 한국거래소 변경·추가 상장수수료 면제
- 코스닥CEO포럼 교육비 50% 할인
- 코스닥협회 공시의무교육 무료 참여(임·직원 각 1회)
- 각 언론기관을 통한 시상기업 홍보



4. 한국IR대상 (한국IR협의회)

(1) 선정취지

상장기업 중 IR우수기업과 Best IRO를 선정·시상함으로써 상장기업의 IR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선정하고 있다.

(2) 혜택

- 우수기업 시상 및 개인상 시상

5. ESG 우수기업 (한국ESG기준원)

(1) 선정취지

지속가능경영은 모든 기업이 추구해야 할 필수적인 경영방침으로 매년 지속가능 경영 성과가 탁월한 회사를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2) 혜택

- 우수기업 시상

제4장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I. 공시제도

II. SPAC의 합병 및 상장관리

I 공시제도

1. 개요

(1) SPAC의 개념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이하 “SPAC”)란 주식의 공모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target company)을 인수 합병(M&A)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말한다.

다른 기업과의 M&A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그에 따른 자본 이득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일종의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SPAC은 그 자산이 현금으로 구성된 우량한 쉘(shell)로서 M&A 대상 기업에게 효과적인 자금조달수단이 됨과 동시에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통로로 활용된다.

참고 SPAC 연혁

- SPAC은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성행하던 백지수표회사(Blank Check Company, 이하 “BCC”라 한다)를 그 모태로 함. BCC는 주로 저가주(Penny Stock)를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기적 판매행위가 심각하게 문제되었음.
- 1990년 미국연방의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를 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라 한다)는 Rule 419를 신설함으로써 BCC 규제의 틀을 마련하였음
- Rule 419는 순자산(공모금액)이 5백만 달러 미만인 BCC가 기업공개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①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에스크로(escrow)”나 “신탁(trust)”계정에 예치할 것, ② 예치된 공모자금을 T-bill이나 MMF 등의 단기 안전자산에만 투자할 것, ③ 대상회사의 가치가 공모발행 총액에서 인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80% 이상일 것, ④ 기업공개 후 18개월 내에 M&A에 실패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예치금액을 환급할 것, ⑤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한 인수 관련 정보 공시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SPAC은 이와 같은 BCC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와 SEC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공모금액이 5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SEC Rule 419를 수용함으로써 시작되었음
- 미국 EarlyBird-Capital社의 David Nussbaum의 주도로 1993년과 1994년 사이에 총 13개의 SPAC이 기업공개를 하여 성공적으로 M&A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미국 기업공개 시장이 되살아나자 2002년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이후 SPAC은 2003년 중반 닷컴버블 붕괴 등에 기인한 미국 증권 시장의 침체기에 재등장하여 IPO시장의 대안적 상품으로 각광받았음



- 미국에서 SPAC은 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으나, 2005년부터 정규 시장인 AMEX(American Stock Exchange)에 상장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이후 기존의 SPAC과는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였음. 또한 주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참여했던 초기와 달리 이 시기에는 Citigroup, Deutsche Bank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참여함으로써 SPAC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발행규모도 급증하게 되었음
- 한편, 2005년 하반기부터 SPAC은 영국의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Euronext Amsterdam 에도 등장하였으나 유럽 시장은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비해 투자자보호 장치나 시장유동성 면에서 취약함

(2) 한국형 SPAC의 도입

1) 도입배경

2008년 전 세계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이하 “IPO”라 한다) 시장이 침체되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SPAC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한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NAIC(North Asia Investment Corp.)과 KMAC(Korea Milestone Acquisition Corp.)가 미국의 AMEX와 Nasdaq에 상장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내에서도 SPAC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

정부도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조정 지원을 위해 SPA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2009년 말에는 미국의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춘 한국형 SPAC의 관련 법규가 마련되었다. SPAC 제도의 도입이 조속히 추진된 것은 금융침체에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이 어렵고 직접 IPO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우량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상장·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고려된 것이다.

2) 한국형 SPAC의 개념 및 규제체계

1 SPAC의 개념

한국형 SPAC의 기본 개념은 자본시장법에 마련되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서는 SPAC의 명칭을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하고, 그 개념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정의하여, 공모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법인과 M&A를 추진하는 SPAC의 일반적 특성을 개념규정에 담았다. 다만 위 시행령 규정은 집합투자 적용배제 대상을 정하는 조항이므로 SPAC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2 SPAC의 규제체계

- 자본시장법 시행령 :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합투자 적용 배제(제6조 제4항) 사유 중 하나로 규정
- 금융투자업규정·증권발행공시규정 : SPAC의 특성 및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과 증권 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
- 상장규정 : SPAC의 신규상장, 상장관리, 합병심사기준 등을 규정
- 공시규정 : 수시공시사항, SPAC의 신고사항 등을 규정

참고 관련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정의) ㉔ 이 편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함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 목적회사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④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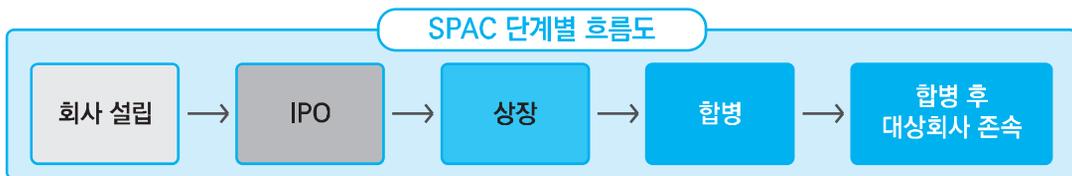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SPAC의 특징

<p style="text-align: center;">높은 투자 안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 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 • 예치금은 인출, 담보제공 금지 	<p style="text-align: center;">높은 환금성과 유동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 후 장내 매도기능 • 합병 반대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일반투자자에게 M&A 투자기회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가 합병을 결정(공모전 주주는 의결권 행사 제한) • 개인도 SPAC 주식 취득으로 M&A 투자 참여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우량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조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효과

(4) SPAC의 단계별 흐름



1) SPAC 설립 단계(공모전)

- ① 초기 SPAC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대표발기인(스폰서)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증권회사)로 한정한다.
-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스폰서(증권회사)는 SPAC 설립단계에서 출자를 이행하더라도 의결권 주식총수의 5% 미만으로 소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스폰서는 최저투자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의결권 주식이 아닌 주식관련사채(CB 등)를 취득하여 투자금액의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스폰서 보유 주식 및 CB에 대해서는 M&A 완료 후 6월 까지 매각제한을 한다.

* SPAC 스폰서의 총 투자금액은 SPAC이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최소 5%를 넘도록 하여 일반 공모 주주와 SPAC 투자에 대한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

- ③ 원활한 SPAC 공모를 위해 스폰서가 SPAC 공모 주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수 수수료를 분할지급 하도록 하여 인수수수료를 목적으로 SPAC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한다.

2) 공모(IPO) 단계

- ① 일반 증권신고서에 SPAC의 특수한 요건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추가한 별도의 증권 신고서를 마련·제출한다. 특수한 요건은 회사 목적(기업결합 목적), 스폰서 요건, 임직원 요건, 공모자금 예치 등이다.
- ② SPAC 스폰서·임원진과 비상장회사간의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해 IPO전 M&A 대상 회사의 특징이 금지된다. 다만, M&A 타겟 기업군의 국적·업종·일반적 특징 등은 IPO시 공표 가능하다.
- ③ 공모자금 예치·운용방법을 제한하여 투자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i)공모자금의 90% 이상을 증권금융에 예치(나머지는 운영비용 등 충당)하고, ii) 예치자금 운용은 국공채 등 위험이 낮은 증권 투자에 한정한다.
- ④ IPO 이후 LBO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재원 조달 필요시 유상증자 방식만 허용(차입 불허)한다.
- ⑤ IPO 이후 상장이 지연되어, 투자자들의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PO 후 90일 이내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3) 상장 단계

- ① SPAC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상장·공시·상장폐지 요건을 거래소 해당 규정에 마련 및 적용한다. SPAC 관련 요건 위반을 상장폐지 사유로 반영하여, SPAC 임원 등의 부당행위를 방지한다.
- ② SPAC의 핵심 경쟁요소인 경영진(M&A 대상 물색/협상) 변경 등에 대해서는 상장 심사시 및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상장시점에서 경영진 변경 기준(증권신고서 기재) 등을 심사하고, 상장이후에는 경영진 변경결의 시점(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선임 예정인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신규상장시 임원의 자격)을 심사한다. 또한, 금융투자업자 임원 자격요건 상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4) 합병(M&A) 단계

- ① 합병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투자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 위험의 관리 및 투자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증권시장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SPAC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내에 합병대상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SPAC이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상장폐지 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의 합병완료 시한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이고, 상장 규정상으로는 정관에서 정하는 존립기한의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 ②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은 예치된 SPAC 자금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규모가 작은 부실한 법인과의 합병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잠재적 상장법인으로서 적절한 규모를 갖춘 우량한 법인과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 ③ 기업결합승인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스폰서·경영진은 기업결합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 ④ 기업결합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 ⑤ SPAC이 비상장법인과 합병시 신규상장과 마찬가지로 합병상장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한편, SPAC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한다는 점에서 현행 상장규정상의 우회상장의 형태에 해당하므로 SPAC의 합병상장 요건은 우회상장 심사요건을 대부분 준용한다.

(5) SPAC의 신규상장

1) SPAC 신규상장 절차

1 상장예비심사청구

상장예비심사 청구시 SPAC의 상장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SPAC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서식과 현행 첨부 서류 외에 필요서류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상장예비심사청구 후 기업경영 등과 관련한 중요 사안이 발생하면 현행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예비심사 및 결과통보 등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지배구조' 등을 중심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SPAC 특성을 고려하여 상장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또한 회계기준 위반 또는 경영상 중요사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예비심사 청구서 허위 기재 등으로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기각하거나 심사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한다.

3 일반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주식모집

SPAC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회사이므로 공모전 주주 인수분을 제외한 대다수 주식의 공모가 이루어진다. 모집절차 및 신고서 작성 등은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진행한다.

4 신규상장신청

SPAC의 신규상장을 위해서는 주식공모 완료일(주금 납일기일)까지 SPAC주권 신규상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현행 주권 신규 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외에 모집자금예치확인서, 금융투자업자의 소유주식등 발행총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관,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상장계약서, 인수계약서, 주주명부요약표, 주금납입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이다.



2) 신규상장 심사요건

SPAC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은 현행 주권 신규상장심사 요건을 준용하며, SPAC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별도요건을 신설했으며, '형식적 요건', '질적심사 요건' 및 '정관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형식적 요건

SPAC의 신규상장심사시 현행 주권 신규상장 심사요건 중 ① 영업활동 기간, ② 경영성과, ③ 상장전 합병제한·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또한 ① 지배구조, ② 대표발기인(금융투자업자) 및 임원의 자격 등 별도 요건을 신설하였다. SPAC은 先공모의 성격이므로 일반기업의 평균 공모금액을 고려하여 일반기업의 진입보다 강화된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한다.

<형식적 심사요건>

- ① **(주식의 분산)**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이 되도록 주식을 분산해야 하며, 일반 기업 상장시 소액주주수 요건보다 상당히 완화된 요건을 적용(500명 → 200명)
- ② **(주식양도 제한)** SPAC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함
- ③ **(기업지배구조)** SPAC은 상장기업이므로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총수의 1/4 이상* 이어야 하며, 상법(제542조의10)에서 정하는 상근감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a) 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의 수가 3인 이상 & 과반수
 - b)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고형이상 선고자 등이 아닐 것, 상무이사가 아닐 것 등
- ④ **(자격 및 주식소유)** SPAC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상장 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SPAC의 주식등 발행총액의 100분의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⑤ **(임원의 자격)** SPAC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⑥ **(의결권행사제한 등 관련 약정 체결)** 의결권·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제한 및 예치·신탁자금 반환기준 준수에 관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간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2 질적 심사요건

거래소에서 형식적 요건 이외에도 현행 주권의 질적심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투자자 보호’, ‘지배구조 및 경영진 관련사항’, ‘내부통제제도’를 중심으로 질적심사를 실시한다.

〈질적 심사요건〉

- ① 독립적인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등 경영투명성
- ② 경영진 구성현황, 과거경력 등이 사업목적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 ③ 정관계재사항, 공모자금 예치(신탁)계약 등 각종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주이익 침해가능성 및 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심사

3 정관 필수기재사항 주요내용

상장규정에서는 투자자보호 관련 핵심사항을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핵심사항 중 일부는 상장규정으로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상장규정 세칙에 반영하고 있다.

■ 정관 필수기재사항 ■

- ① **(SPAC 상호(명칭))** SPAC은 상호에 ‘기업인수목적’이라는 표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M&A를 목적으로 하는 paper company의 성격이 나타나고 기존 투자회사 (Mutual fund)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임
- ② **(사업목적)** SPAC은 모집의 방법으로 주권을 발행·상장 후 최초 모집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야 함
- ③ **(주식납입자금 예치 및 인출제한)** 주식납입자금(IPO전 증자자금 제외)의 90% 이상(주식 등 납입대금 및 발생이자 포함)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 또는 신탁기관에 예치·신탁하여야 하며, SPAC 해산에 따른 투자자금 반환 또는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인출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 ④ **(재무활동 등 제한)** SPAC은 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IPO 이후 사채발행 등의 재무활동이 금지되며, 제3자배정 증자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고 있음
- ⑤ **(합병대상 및 규모)** SPAC의 공모전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에서 제외되며, 우량법인과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으로 합병대상을 제한하기 위해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총자산 또는 합병가액 기준)는 예치금액의 8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합병대상 법인의 특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대상 SPAC의 경우 합병대상이 벤처기업임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음
- ⑥ **(SPAC 해산)** SPAC은 최초 주권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상장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 미완료시 또는 합병등기 완료 전 상장폐지시 해산하게 됨
- ⑦ **(투자자금 반환)** SPAC이 해산하게 되면 예치·신탁자금을 공모전주주(IPO전 주식 및 CB 취득자) 외의 주주에게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데, 다만 공모전주주가 IPO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반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2. SPAC 공시제도

(1) SPAC 공시제도 개관

기업내용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내용 즉, 경영실적·재무상태 등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투자자 보호와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분배의 효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일반 주권상장 법인은 상장 이후 기업의 주요경영사항을 금융위원회(주요사항보고서) 및 거래소(수시공시, 공정공시, 자율공시, 조회공시)에 신고하고 있으며, 재무상황 등 포괄적 정보를 정기보고서(사업, 분기, 반기) 형태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IPO 이후 SPAC 주식은 일반 투자자의 거래대상 주권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SPAC에 대해서도 일반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한 공시관리·방법·절차 등이 적용된다. 다만, SPAC은 일반 상장법인과는 달리 영업활동·생산활동 및 매출 등이 없이 공모자금을 이용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에만 주력하는 회사이며,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채무증권 발행·자금차입 등이 제한되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만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거래소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공시의무사항을 별도로 정비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체계는 크게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로 구분한다. 발행시장 공시는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해당 증권과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제도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SPAC의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증권시장에 상장되므로 증권신고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이사항(자금의 예치 및 배분, 금융투자업자 적격여부, 집합투자 배제요건 충족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유통시장 공시는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완전하게 공표하도록 하여 증권의 취득,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크게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되고 그밖에 조회공시, 공정공시, 자율공시 등이 있다.

(2) SPAC의 특성에 따른 공시 의무사항

1) 정관 변경을 위한 이사회 결의 공시

SPAC은 상장규정에 따라 사업목적, 기업결합 대상·규모·시한, 경영진의 준수 의무 및 투자자금 반환방법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핵심사항을 정관에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정관의 변경은 해당 SPAC의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시의무(당일공시)를 신설하였다. 또한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주총소집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통한 공시의무도 동시에 부과된다.

2) 경영진의 변동 공시

SPAC은 특정한 사업 없이 오로지 합병대상법인을 탐색하고 합병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투자대상 불특정형(Blank Check) 투자인 SPAC 투자에 있어 일반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SPAC 경영진의 명성과 인수합병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진의 변동' 관련 정보는 투자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임원의 선임·해임 발생 당일, 임원의 사임은 발생일 익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 SPAC 경영진 변동 공시의 실무 적용방법

■ 임원 선임·해임(당일공시)

- 임원 선임·해임에 관한 주총소집결의 이사회 결정 시 공시
- 주총소집결의 및 주총결과 공시를 통해 당일까지 선임·해임의 상세 내역을 공시
 - * 사외이사자격요건확인서에 준하여 금융투자업자 임원요건 확인
- [사외이사] 선임·해임의 경우 별도로 금융위원회 공시서식을 이용하여 익일까지 신고

■ 임원 사임(익일공시)

- [이사] 중도사임 사실 발생시에는 익일까지 상세내역을 공시
- [사외이사]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시에는 별도로 금융위원회 공시 서식을 이용하여 익일까지 신고
-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시 익일까지 신고



3) 합병결정의 취소·부인

합병 결정 이후 그 취소·무산 등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기공시 내용의 변동사항 발생이므로 당연히 정정공시 대상이다. 다만, SPAC 합병결정의 취소·부인은 그 사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시의무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공시서식도 “[정정]회사합병 결정”뿐만 아니라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합병 취소·부인사실 발생” 서식으로 공시하며, 공시시점에서 SPAC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4) 예치(신탁) 자금 계약의 내용·비율 변경 공시

SPAC은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모집자금의 90% 이상을 주금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SPAC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와의 사이에서 동 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므로 사유 발생일의 익일까지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참고 SPAC과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 간의 자금예치·신탁 계약내용

-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표준약정서’ 체결을 통해 자금 예치·운용·인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 [자금예치/인출] (ㄱ) 합병등기전 자금인출, 담보제공 금지 및 예외적 인출 사유를 명시, (ㄴ)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치(신탁) 자금 인출·지급 가능 근거 마련 등
 - [자금운용대상/방법] 예치자금 운용대상, 방법 등을 표준약정서에 반영
 - [기타사항] 이차지급방법, 자금의 구분관리 및 선관주의의무, 예치자금 또는 자금운용에 따라 취득한 증권 등에 대한 담보제공 금지 및 양도제한 등

5) 예치(신탁) 자금 인출 공시

SPAC의 예치·신탁 자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① 해산으로 인한 투자자금 반환 또는 ②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수 대금의 지급 이외에는 인출·담보제공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합병의 실패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모자금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치자금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거나 부당한 인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SPAC은 자금의 인출사실이 발생한 때 사유발생 당일에 인출사유 및 금액, 인출

전·후 예치자금 변동 현황 등을 공시하여야한다. 만약 SPAC이 모집자금을 모집일 익일까지 90% 이상 예치하지 않거나 자금이 부당하게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술한 바와 같이 해당 SPAC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0일내 동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참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9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고사항)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2. 임원 선임·해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3. 임원의 사임
4. 합병 결정 이후에 동 결정이 취소 또는 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
5.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금의 예치·신탁계약 내용 및 예치·신탁 비율의 변경이 있을 때
6.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인출사실이 발생한 때

6) 합병 승인 관련 공시사항

상장규정에서는 SPAC의 공모전 주주등에 대해 합병과 관련한 의결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부적격 법인(합병 상장예비심사 결과 부적격 법인, 합병가액이 예치자금의 80% 미만인 법인, 관리종목인 법인, SPAC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SPAC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된다.

따라서 공시규정에서는 SPAC이 부적격한 법인 등과의 합병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하는 시점에 공모전 주주등이 제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과 부적격법인과 합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의무를 신설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사유발생 당일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 **공시사항**

- ① 합병후 매각제한 대상자 및 매각제한 기간
- ②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 등(공모전 주주등)이 합병반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 했는지 여부
- ③ 공모전 주주 등이 합병 주주총회시에 의결권을 행사 했는지 여부
- ④ 합병가액이 예치(신탁)자금의 80% 이상이라는 사실
- ⑤ 합병대상법인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 여부
- ⑥ SPAC과 합병대상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 ⑦ 신설합병 등인지 여부

※ 상기 내용은 해당여부에 대하여 관련 공시서식에 해당 여부를 표시

7) 최대주주 변경 공시 관련 유의사항

상장된 SPAC의 주식을 금융투자업자 등 전문투자자가 투자목적으로 매수하여 1대 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 대상이 아니다. 코스닥 공시규정상 최대주주 정의에서는 금융투자업자 등 전문투자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금융감독원 지분공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음) 한다.

참고 **관련 규정****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제7항(용어 정의) 이 편에서 “최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다만, 최대주주인 본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소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자를 최대주주로 보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동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최대주주로 되는 자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주주로 보며,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자인 주주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3조((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가 제외되는 자의 범위) 규정 제2조제7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2.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의 자.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제8호의 자 중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3.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3호의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해당 투자자의 성격 및 주식소유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 산정에 있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자율공시

1) 의의

공시의무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발생·결정이 있는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한다.

2) 자율공시 대상

SPAC의 경우 통상 해당 SPAC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율공시사항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SPAC과의 합병이 결정된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아래 항목들을 포함하여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사항 등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경우 거래소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공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 이외에도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정보들은 적극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참고 자율공시 사항

- 대규모 판매계약 체결 등 영업 관련 중요사항 발생
- 영업 또는 생산 활동 관련 중대한 차질 발생
- 회사발행 주식 등 관련 변동사항(증자, 감자, CB발행 등)
- 중요한 투자활동(대규모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 취득 등)
- 손익 관련 중요 정보(잠정실적 대외 공표, 재해·손상차손 등 대규모 손실 발생, 외부감사인 감사·검토 보고서 제출 등)
- M&A 관련사항(중요한 영업양수도, 대규모 지분인수 등)
- 지배구조 변동 관련사항(대표이사 변경, 경영권 변경 관련 계약체결 등)
- 회사 존립에 관한 사항(부도, 회생절차, 해산사유 등 관련)

(4) 조회공시

SPAC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건전한 거래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합병 이전에 합병 대상기업을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정보의 누설, 제공 등이 금지된다. 다만, SPAC의 합병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합병과 관련된 풍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여 풍문에 대한 해소를 요구한다.



(5) 불성실공시

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 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를 운영한다. 일반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SPAC도 주요경영사항 등 신고를 위한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투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 조치의 대상이 된다.

■ SPAC 관련 공시제도 요약 ■

구분	수시 변경	
공시사항	원칙	- 원칙적으로 SPAC에 대하여 일반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한 공시관리 방법·절차 등을 마련
	SPAC 특성	- 일반 주권상장법인과 다른 SPAC 특성 등을 공시의무사항에 반영하여 투자자보호 ① SPAC 경영진의 선임·퇴임 등 경영진 변경사항 ② M&A의 취소·무산 및 계약내용의 변경 ③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의 예치·인출에 관한 사항 등
	공시의 기능	- 정보형평을 통한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과 나아가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수행
공시유형	수시공시	-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 이사 결정 등) ① 영업 및 생산활동 관련사항 ② 재무활동(발행유가증권, 투자활동, 채권·채무, 손익, 결산) ③ 일반경영활동(지배구조, 존립, 소송, 주주총회 등) ④ SPAC 특성상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자율공시	-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사항
	공정공시	- 장래 사업계획 등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선별제공 하는 경우
	해명공시	- 수시·자율·공정공시 등과 관련된 풍문·보도에 대해 상장기업이 스스로 해명
	조회공시	- 중요정보에 대한 풍문 등이 있는 경우(M&A 관련사항 등)
공시위반 제재	불성실공시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실질심사	-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원칙적으로 일반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하며 SPAC 특성을 반영한 일부 완화·배제·추가기준 운영
공시방법 · 매체	공시책임자 등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지정(일반 주권상장법인과 동일)
	공시방법	- 전자문서(인터넷 제출) - 팩스제출(인터넷 제출이 곤란한 경우)
	공시매체	-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s://kind.krx.co.kr)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 정보문의단말기(CHECK) 및 HTS - 거래소 홈페이지(https://www.krx.co.kr) 등

II SPAC의 합병 및 상장관리

1. SPAC 합병의 개요

합병이란 상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 중 존속하는 1개 회사를 제외하고 소멸(흡수합병)하거나 전부 소멸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신설합병)하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통하여 조직을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조직의 다원화 및 비대화로 인한 마찰과 비능률을 해소하고 생산·판매·관리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으나, SPAC과 합병하는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셸(shell)과의 결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적인 합병의 효과보다는 지배 주주의 경영권이 유지되는 가운데 SPAC이 보유한 현금을 이전받아 자금조달과 동시에 증권시장 상장이라는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SPAC의 입장에서 합병은 합병대상법인과 결합을 통하여 SPAC 존립의 궁극적 목표이며 유일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결국 SPAC과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통하여 SPAC 자신은 소멸하게 되는 반면 SPAC의 합병대상법인은 합병 후에도 합병전의 물리적 실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상장법인인 SPAC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합병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SPAC은 최초 공모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신규상장과 동시에 조속히 합병대상 법인을 탐색하여야 한다.

이후 SPAC이 대상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 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 내용에 관한 주요 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SPAC은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스펙 존속(비상장기업 소멸) 방식의 합병만이 인정되었으나, 비상장기업의 법인격 및 업력 소멸에 따른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21.8월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스펙 소멸(비상장기업 존속) 방식의 합병을 허용하였다.(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 개정 시기를 반영하여 '22년 2월 시행)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이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SPAC은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되며,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새로이 발행된 신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함으로써 SPAC의 합병 절차는 종료된다.

합병의 결과로 SPAC의 투자자는 합병법인의 주주가 되며, SPAC과의 합병을 통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합병법인의 기업가치 상승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SPAC의 합병상장 절차 ■

구분	주요내용
① 합병대상법인 탐색	- SPAC의 신규상장 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량기업 탐색
② 합병이사회결의, 공시 및 합병계약 체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이사회 결의 당일 거래소에 결의내용 신고(공시) - SPAC과 합병대상회사간 합병계약 체결 ※ 실무적으로는 합병계약체결 당일에 이사회 결의
③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합병 상장심사 및 결과통보	-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상장 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 - 상장적격성 심사 및 신청서 제출 후 2개월 내에 심사 결과 통보
④ 주총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공고)	- 주주명부폐쇄일(기준일) 2주전까지 명부폐쇄 관련사항 공고
⑤ 합병의 증권신고서 제출	-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전까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출
⑥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 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총 소집통지 및 공고
⑦ 합병 반대이사 접수	- 합병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 반대이사 접수
⑧ 주주총회 개최	- 특별결의를 통한 합병 승인
⑨ 채권자 이익제출 공고 및 주식매수 청구 접수	- 주주총회 승인 후 2주 이내에 1월 이상의 기간동안 이익제출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⑩ 합병등기 완료	- 합병등기를 통하여 합병의 효력 발생
⑪ 합병신주 상장 신청	- 합병결과로 발행된 신주의 상장신청

SPAC 합병 절차별 공지사항

회사합병 결의시	회사합병결정 주권매매거래정지(SPAC합병(예비심사청구대상) 주요사항보고서
상장위원회 승인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상장예비심사결과통지(승인))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소집결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변경결정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선임결정 회사합병결정(정정) : 일정 변경 등 해당시
주주총회 결과	임시(정기)주주총회결과 상호변경안내
합병일-5일	【소멸합병】매매거래정지 안내(합병기일 2일 전~상장폐지일)
합병등기시	【흡수합병】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사임 【흡수합병】사외이사의 선임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흡수합병】대표이사 변경 【흡수합병】본점소재지 변경 【흡수합병】최대주주 변경
상장일-5일	【흡수합병】변경상장신청서(상호변경) 【흡수합병】업종심사자료 : 재무제표 첨부(최근 감사보고서상) 【흡수합병】소속부변경신청서 : 인증서 첨부(해당시) 【흡수합병】추가상장신청서(보호예수, 확약서, 증명서 등 제출)
상장일-3일	【흡수합병】변경상장(상호변경) 안내 【흡수합병】소속부변경 안내 【흡수합병】업종변경 안내
상장일-2일	【소멸합병】상장폐지 안내
상장일-1일	【흡수합병】추가상장(타법인흡수합병) 안내
상장일	【흡수합병】추가상장(타법인흡수합병) 【소멸합병】스팩상장폐지 및 신규상장

※ 스펙존속합병은 스펙이 상장유지되고 스펙의 합병신주가 추가상장되는 반면, 스펙소멸합병은 스펙이 상장폐지되고 비상장법인의 주권이 신규상장됨



2. SPAC 합병 절차별 유의사항

(1) SPAC 상장 후 합병결정 이전까지

합병 발표 이전에 사전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SPAC의 주가변동 추이 등을 정기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특이사항 발견 시 그 원인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래소 공시담당자와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전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 있다.

- **(사례 1)** 피합병 대상법인인 A사는 CFO를 비롯한 임직원과 주주 등이 합병 발표 이전에 스펙 주식 200만여주를 매집(미공개 정보 이용)하여 158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됨 →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
- **(사례 2)** B스팩은 상장 후 8매매거래일 중 4매매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113% 상승
→ 거래소에서 추가금등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과 함께 조회공시를 요구
→ B스팩은 “중요정보 없음”의 부인공시를 통해 합병 진행사항이 없음을 명확히 밝힘

(2) 합병결정 이후 합병상장시까지

1) 상장예비심사결과 확정시까지의 매매거래정지

SPAC이 합병 결의를 신고하는 경우 그 합병적격성 심사를 위해 합병결의 공시 시점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이는 합병심사 기간 중 주가가 급변하거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합병 결정 공시를 하기 전 거래소 공시 담당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 등의 시장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장예비심사결과, SPAC 합병 부적격의 심사결과가 통지된 경우에는 바로 주권 매매 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정지가 지속된다.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 이전에 합병결의를 취소·부인하는 경우에는 합병결정 철회 익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2)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 전에 합병 결정을 취소·부인하는 경우

합병결정 시 예비심사신청대상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인바, 합병결정 철회 익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3) 합병결정 이후 피합병법인 경영사항 관련 정보비대칭 문제

피합병법인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율공시 형태로 피합병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시한다.

참고 SPAC 피합병법인 주요경영사항 공시 실무 안내

- (공시 서식)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서식 활용
- (공시 시한) 자율공시 공시시한을 준용하여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공시
- (공시 사항) 아래 항목들을 포함하여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사항 등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경우 거래소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공시(열거된 사항 이외에도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정보 들은 적극적으로 공시)
 - 대규모 판매계약 체결 등 영업 관련 중요사항 발생
 - 영업 또는 생산 활동 관련 중대한 차질 발생
 - 회사발행 주식 등 관련 변동사항(증자, 감자, CB발행 등)
 - 중요한 투자활동(대규모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 취득 등)
 - 손익 관련 중요 정보(잠정실적 대외 공표, 재해·손상차손 등 대규모 손실 발생, 외부감사인 감사·검토 보고서 제출 등)
 - M&A 관련사항(중요한 영업양수도, 대규모 지분인수 등)
 - 지배구조 변동 관련사항(대표이사 변경, 경영권 변경 관련 계약체결 등)
 - 회사 존립에 관한 사항(부도, 회생절차, 해산사유 등 관련)
- (합병대상기업 공시관리 관련 유의사항)
 - 합병 결정 이후에는 합병대상기업 측에 중요정보의 투자자 공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할 필요
 - 합병이 결정된 시점부터는 합병대상기업이 상장기업에 준하는 시장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이에 걸맞는 정보 투명성이 필요
 - 합병대상기업과 공시정보 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하고 상기 자율공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 하여, 적시에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3. SPAC에 대한 시장관리

(1) 매매거래 정지

매매거래 정지 조치는 상장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투자자들에게 그 사유를 주지시킨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것이다. 이는 증권시장에서의 정보가 투자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1) 상장규정에 의한 매매거래 정지

SPAC의 경우에도 상장규정에 따른 일반적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SPAC이 합병 결의를 신고하는 경우 그 합병적격성 심사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하는데, 이는 합병심사 기간 중 주가가 급변하거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고 SPAC 합병 결의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

①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 대상인 경우

- 상장예비심사결과 승인시 : 승인결과 통보일까지
- 상장예비심사결과 미승인시 : 합병중단 결의일까지

②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부적격 법인과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 부적격법인과의 합병(상장규정 제73조제2항제9호가~라목)

주주총회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의 결의를 하는 경우

- (1)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한 상장예비심사의 부적격 통보를 받은 법인과의 합병의 결의
- (2)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및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75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법인과의 합병의 결의
- (3) 제53조제1항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합병의 결의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도 포함한다)과의 합병의 결의
- (4) 세칙에서 정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제69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주주등 및 임원을 포함한다)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합병의 결의
- (5)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합병의 결의. 다만,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라 스펙소멸방식으로 합병상장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 (6) 제75조제1항제6호의 요건을 위반하는 합병의 결의

또한,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에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면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수반되므로 SPAC의 경우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때에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특히 SPAC의 경우 자금 예치·신탁의무 위반이나 재무활동 제한 위반 등의 사유발생 시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됨에 유의한다.

참고 SPAC의 관리종목지정사유(상장규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이 제7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다만,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이고, 감사의 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어느 하나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1) 소액주주의 수가 40인 미만
 - (2)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에 미달. 다만, 6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정 예외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주식(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식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른 예치·신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나목을 위반하여 예치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이 인출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라. 기업인수목적회사 정관에서 정하는 채무증권 발행·차입·채무보증·담보제공금지 등의 재무활동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74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8)에 따른 합병의 결의 또는 결정(제74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 바.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공시규정에 의한 매매거래 정지

SPAC은 공시규정에 의해 상장법인으로서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담하고 SPAC의 특성을 반영한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무를 추가부담 한다. 이러한 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특별히 주가 또는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의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 기타 매매거래정지사항(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1항제9-2호)
 - 합병결정 이후 동 결정이 취소 또는 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
 - 합병주주총회 결의 관련 의결권행사 제한 등 위반사실 확인시 등



(2) 관리종목 지정

기본적으로 현행 상장법인의 관리종목지정 기준을 준용하되, SPAC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추가하고 있으며, 관리종목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지정 해제 등 시장관리 내용은 SPAC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1) 기본원칙

SPAC의 경우 일반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2) 완화·배제기준

주식분산기준 미달 요건(소액주주 40인 미만, 소액주주 지분비율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미달)은 일반법인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M&A 외에 별도 사업목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매출액·대규모 경상손실 기준을 배제하고, SPAC 상장초기의 거래부진 등을 감안하여 거래량 요건을 배제하고 있다

3) 추가기준

1 임원의 자격요건

- 임원이 신규상장기준에서 정하는 자격요건(금융투자업자 임원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자금예치·신탁의무(인출제한) 및 재무활동 제한 위반

- 모집일 익일까지 모집금액의 90% 이상 예치(신탁)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3 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 공모후 채무증권발행의 금지 등 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미신청 등

- IPO 후 30개월 이내에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합병 결의에 따른 공시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

* 주권비상장법인 등(주권비상장법인/유가증권 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인)과의 합병

** 상장법인과 합병(코스닥 상장법인)

5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금액 미달

- 대표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의 SPAC의 주식등 소유금액이 발행총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

■ SPAC의 주요 관리종목 지정사유별 적용 방식 ■

사유	관련조항	조치시점	조치해제
임원자격요건 상실	§72②1호	확인일의 익일	규정§70①7호의 자격요건 충족임원의 선임확인일의 익일
주식분산기준 미달	§72②2호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0호의 주주명부 요약표와 소유자 명세 등에 의해 분산이 확인된 날의 익일
자금예치 의무 위반 등	§72②3호	예치위반, 담보제공 등 사실 확인일의 익일	사유해소 확인일의 익일
재무활동제한의 위반	§72②4호	재무활동위반 확인일의 익일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서 미제출 등	§72②5호	신청서 미제출 또는 합병의 결의 신고가 없는 날의 익일	
금융투자업자 소유 주식등 발행금액 미달	§72②6호	확인일의 익일	



(3) 상장폐지

1) 기본원칙

SPAC의 경우 일반법인의 상장폐지요건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음

2) 완화·배제기준

주식분산기준 미달요건(소액주주 40인 미만, 소액주주 지분비율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미달)은 일반법인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동 미달요건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일 부터 1년 이내에 주식분산기준 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장폐지 한다.

SPAC은 M&A 외에 별도 사업목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활동정지요건을 배제하는 한편, 우회상장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합병상장 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3) 추가기준

1 임원의 자격요건 미달

- 임원 자격요건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목적 위반

- 다른 회사 주식의 소유, 영업·자산양수, 분할·분할합병 등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자금 예치·신탁의무(인출제한) 및 재무활동 제한 위반

- 자금 예치의무·인출제한 위반 및 재무활동제한 위반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0일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4 합병상장예비심사 미신청 등

- 합병상장예비심사 미신청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월 이내에도 심사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규정에 의한 합병결의 신고(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가 없는 경우

5 상장부적격 법인과 합병 결의

- SPAC과의 합병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과 합병을 결의한 경우

6 의결권행사 제한 등 약정 위반

- SPAC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주주 등이 상장규정 제70조제1항제10호의 약정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참고 SPAC의 자진상장폐지 가능 여부

- SPAC은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존속기간(3년 이내)이 짧은 회사임을 감안하여, 시장유동성 제공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환금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진상장폐지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 존속기간이 제한적인 현행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도 자진상장폐지 신청 불인정

제5장 상장외국법인



- Ⅰ. 공시제도
- Ⅱ. 상장외국법인 유의사항

I 공시제도

1. 상장외국법인 정의

상장외국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외국기업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외국기업을 말한다.

2. 상장외국법인 관련 특이사항

(1) 국가 간 제도차이 보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 상법 반영을 정관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고, 공시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2) 회계기준

회계기준은 K-IFRS, IFRS, US-GAAP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 당시 채택한 기준을 상장 이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장규정에 부합하는 외부감사인만 선임 가능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3) 공시기준

정기보고서 제출시한을 일반법인에 비해 연장하고, 자회사의 외화송금 제한 사실 발생 등 공시의무 추가된다. 또한, 시차를 고려한 공시시한, 기준환율 등 적용기준 마련하고 있다

(4) 상장관리

회계처리기준,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위반사유 등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 추가되고, 매출액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추가하고 있다. 또한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기업설명회 개최 의무가 있다.



II 상장외국법인 유의사항

1.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공시사항 적용체계

(1) 의의

공통 적용되는 주요경영사항 공시 외에도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중대한 행정조치 등으로 해당법인의 영업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국내투자자에게도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의무 추가 부여한다.

(2) 상장외국법인 공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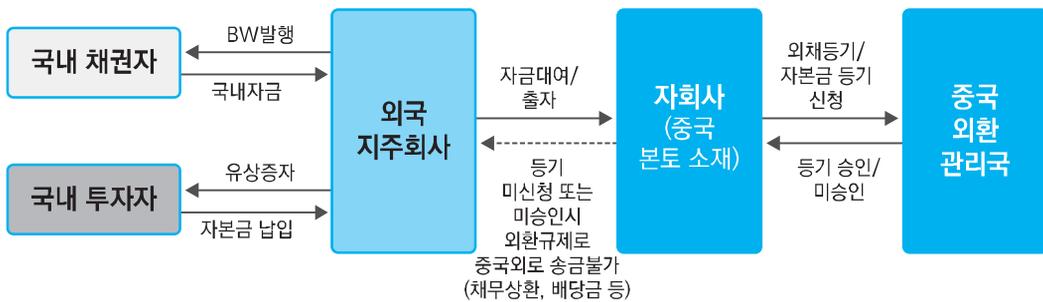
1) 주요경영사항 공시 : 국내 법인과 동일 + 추가사항

- 공시규정 제6조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공통)
- 투자판단을 위해 본국거래소에 신고·보고한 사항
- 상장외국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국 법령 등의 변경
 - * 예시) 주식의 양도제한, 해당 법인의 국유화 조치등
- 본국 등에서의 공개매수·안정조작 등
- 증권관계기관·거래소의 법규위반에 따른 조치 또는 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 등의 조치(해당법인 요청 포함)
- 본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때
-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식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취득·처분 결정
- 자회사가 본국 정부로부터 상장외국법인인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외화송금제한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때(조치내용 변경 포함)
- 감사인을 선임(기존 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한정), 해임 또는 변경
- 그 밖에 국내 증권시장 및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참고 외국지주회사 자금조달 유의사항

- 외국지주회사가 한국에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여 동 조달자금을 자금대여 또는 출자를 통해 중국 소재 자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 관련공시내용(유상증자 결정, CB/BW 발행 결정 등)에 중국 외환관리법규에 따른登記 신청 및 승인 여부* 기재
 - * 자회사로 동 자금 송금 전까지登記 완료 필수

※ 외국지주회사 외환규제 프로세스



※ A사 공시 예시 : 국내 투자자 대상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대여형식으로 중국소재 자회사 운영자금으로 조달한 경우

- ① (xxxx.xx.xx)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자회사 자금대여를 위해 중국 외환관리국에 외채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며, 외채등기 완료시 재공시 예정임을 기재
- ② (xxxx.xx.xx)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 자회사 자금대여를 위한 외채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안내(자회사 투자총액, 등록자본, 외채등기 신청금액 등 기재)
- ③ (xxxx.xx.xx) 자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결정 공시
 - 자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내용 안내

2)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 : 국내 법인과 동일



3)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 : 국내 법인과 동일

- (자회사 자산총액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 공시규정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

* 자회사의 주식분할·병합, 액면·무액면 전환, 주주총회 소집결의, 자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은 제외

- (자회사 자산총액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 부도, 해산, 회생절차개시 관련 공시사항

참고 외국지주회사·자회사 의미

- 외국지주회사 : 상장외국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인 경우)으로 하는 회사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 해당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
 -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의무」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의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의무」에 따라 신고

4) 자율공시 : 국내 법인과 동일

5) 시장신고사항 : 국내 법인과 동일 + 추가사항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8조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공통)
- 외국주식예탁증권 발행에 따른 예탁기관 또는 예탁기관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실질소유자 명부가 작성되었을 경우
-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외국주권 전환청구로 인하여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시장제도 주요내용

(1) 국가 간 제도차이 보완

1) 정관 필수기재사항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2)

본국법 및 해외상장지 제도는 인정하되, 국내 상법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은 외국기업 정관 필수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정관필수 기재사항 주요내용

- 주주총회 : 소집시기, 소집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소집장소, 종류주주총회
- 이사 : 이사의 수와 사외이사의 선임, 이사의 보수,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열람권, 이사의 책임 면제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감사의 수와 선임, 감사의 임기, 감사의 보선, 감사의 직무, 감사록,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위원회의 직무, 감사록
- 신주인수권
- 회계장부열람청구권
- 감사보고서의 정기주주총회 보고
- 정관필수기재사항의 적용 예외

2) 공시대리인 제도(공시규정 제22조, 상장규정 제13조제9항)

상장주선인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공시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해당기업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시담당자가 그 사무소에 상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장외국법인은 공시책임자 및 공시대리인 각 1인과 1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중 1인이 공시대리인 자격요건 충족 시 공시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상장외국법인 공시대리인 자격요건 ■

구분		자격 요건
1.경력 (가~라 중 택1)	가	코스닥·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대리인) 경력 2년 이상
	나	변호사
	다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기업자문·컨설팅 업무경력 2년 이상
	라	투자매매·투자중개업 영위 회사에서 기업금융·조사분석·고유자산운용 업무경력 2년 이상
2.벌점 기준		최근 2년 내 코스닥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로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15점 미만 ^{주1)}
3.주거 및 언어 (가,나 모두 충족)	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본국어 및 한국어 능통자
	나	본국어 또는 한국어 능통자를 업무보조자로 선임
4.교육이수		거래소 또는 코스닥협회가 개설하는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이수

주1) 공시대리인을 기준으로 벌점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시대리인 선임신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이후 원인 행위가 발생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부과받은 벌점을 기준으로 함



(2) 회계기준

1) 회계기준(상장규정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제2항제1호, 제68조제2항제3호)

상장외국법인은 K-IFRS, IFRS, US-GAAP 중 하나를 회계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예비심사신청시 채택한 회계기준을 다른 회계기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K-IFRS, IFRS, US-GAAP 중 하나의 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참고 회계기준을 변경할 경우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시 채택한 회계기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와 사전 협의 필수
- K-IFRS로 회계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결뿐만 아니라 별도 재무제표도 작성의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 또한, 재무상황과 관련된 시장조치 기준중 감사(검토)의견1)은 연결/별도 재무제표 모두 적용하며, 매출액2), 영업이익3)은 별도 재무제표(단, 지주회사는 연결 기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유의
 - 1) 감사(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 한정(상장폐지)
 - 2)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관리),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상장폐지), 매출액 분기 3억원/ 반기 7억원 미만(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3) 최근 5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실질심사)

2) 외부감사인 선임 제한(상장규정 제15조,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상장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자격조건을 갖춘 외부감사인만 선임할 수 있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3개사업연도 동안에는 감사인을 변경할 수 없다.

■ 상장외국법인 외부감사인 자격요건 ■

구분		자격 요건
국내 회계법인 (전부충족)		1. 설립 후 5년 이상 경과 & 소속된 공인회계사 수 50명 이상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 손해배상준비금·손해배상공동기금 합산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3. 회원사 30개국 이상 분포 & 소속 공인회계사 수 2,000명 이상인 외국회계감사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4. 최근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 건의, 업무의 전부·일부의 정지 건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외국 회계 법인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 아님 (전부충족)	1. 설립 후 5년이상 경과 & 소속 공인회계사 수 50명 이상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2. 회원사 100개국 이상 분포 & 회원사 소속 공인회계사 수 10만명 이상 (동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회계감사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 체결시 동 요건 충족 인정)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 (전부충족)	1. 설립 후 5년 이상 경과 & 소속 공인회계사 수 50명 이상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2. 회원사 30개국 이상 분포 & 회원사 소속 공인회계사 수 2,000명 이상 (동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회계감사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 체결시 동 요건 충족 인정)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것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재차 위반한 것이 차기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 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제출의무(상장규정 제19조, 제66조)

- 제출서류 :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4호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외부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서 첨부)
- 제출시한 : 매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 외국지주회사 및 국내 소재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외국자회사*에 대한 서류도 같이 제출. 다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미만인 자회사는 제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검토와 관련하여 중요한 취약점 존재 또는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3) 공시기준

1) 정기보고서 제출시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제2항)

- 사업보고서 : 법정사업보고서 제출일 + 30일 이내(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
- 분·반기보고서 : 법정 분·반기보고서 제출일 + 15일 이내(분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

2) 수시공시 적용기준

- 공시시한 : 공시의무 발생시점의 국내시간 기준으로 산정(공시규정 제24조)
- 기준환율 :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기준환율 등”)(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 재무상태표 재무내용 : 사업연도말의 기준환율 등
 - 손익계산서 재무내용 : 해당 재무제표 작성대상 사업연도 중 매일의 기준환율 등을 산술평균한 환율
 - 자본금 증감 시 : 증감발생 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등

3) 기타 유의사항

- 외환송금제한 공시 : 해외 자회사가 본국 정부로부터 상장외국법인인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외환송금제한 등 조치를 받는 때 (공시규정 제20조제1항제8호)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공시 : 출자금액, 자산총계 비중과 무관하게 외국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시 공시의무 발생(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6))
- 보도·풍문으로 인한 조회공시 답변시한 : 요구일 익일까지 (공시규정 제20조제2항)
 - 풍문 또는 보도, 시황급변 관련 조회공시 모두 조회공시 요구일 익일(18시)까지 답변 : 시차, 정보전달에 걸리는 시간 등 고려
-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 국내기업에 준하여 처리하되,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지리적 여건, 본국의 관습 등을 고려하여 예외처리 가능 (공시규정 제25조)

(4) 상장관리(상장외국법인에만 적용되는 상장관리 기준)

1) 관리종목 지정(상장규정 제67조제2항제1호·제2호)

- 상장규정 제3조제4항을 위반한 회계처리기준 변경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
- 상장규정 제15조제3항, 제4항, 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법인을 선임한 것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

2)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상장규정 제66조)

- 외국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토와 관련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등(상장규정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 해임 또는 변경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3) 상장폐지(상장규정 제68조)

-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규정 제6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나 사업연도의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상장규정 제3조제4항에 따른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외부감사인 선임 위반으로 상장규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나 사업연도의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상장규정 제15조제3항, 제4항,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
-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가 10만 증권 이하인 경우
- 해외상장 외국기업이 해당 해외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내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외국주식등의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규정 제56조 및 제68조,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 마목 및 바목)

- 외국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회사(이하 “주요 외국자회사”)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 매각시
- 주요 외국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참고 IFRS, US-GAAP 적용법인 유의사항

- IFRS, US-GAAP 적용 법인은 별도 재무제표 제출의무가 없으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요건 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제4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상장규정 제68조제1항제6호)
- 감사보고서상 영업이익 계정 누락시 영업손실 발생으로 간주

5) 기업설명회 개최의무(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4호 외국기업 상장계약서 제8조)

- 상장외국법인은 상장 이후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기업설명회 개최의무 부여. 다만, 상장일로부터 상장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 또는 반기별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장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
- 결산(반기 포함) 확정시점에 경영현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 개최

6) 소속부(상장규정 제47조제1항)

- 상장외국법인은 일률적으로 “외국기업(소속부 없음)”으로 관리

3. 상장외국법인 관련 주요 이슈

상장외국법인은 대한민국과 상이한 본국 제도와 회계·경영 관행 등으로 투자자 보호 관련 이슈발생 가능성 높다. 따라서, 법규 준수 및 회계 투명성·내부통제 강화 등 투자자 신뢰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 중국당국의 외환송금 제한 사례

- 중국에 주요 자회사를 둔 국내상장 지주회사가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여 조달자금을 자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회사에 외국채권으로 등기한 경우에만 채무상환을 위한 외환송금(자회사→지주회사)이 가능하나,
 - A사는 외국채권 등기 없이 BW를 발행·사용한 결과, 조기상환 요구에 따른 원리금 지급을 위한 외환 송금이 제한됨
- 이로 인해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한 채권자가 A사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최대주주 주식을 전량 처분
 - ☞ 외환송금 규제에 대한 수시공시의무* 신설 (공시규정 제20조제1항제8호)
 - * 상장외국법인인 외국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외국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에 한함)의 설립근거지가 다른 경우로서 자회사가 본국 정부로부터 상장외국법인인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외환송금제한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때(조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포함)
 - * 국내에서 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여 중국 소재 자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공시 (유상증자 결정, CB/BW 발행 결정 등)에 외환등기사항(신청 및 승인여부, 신청금액 등)을 기재
 - ☞ 역외지주회사와 중국 내 자회사간 투자 내부거래, 외환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상장심사 및 증권신고서 공시 강화

(2) 최대주주 허위 기재 사례

- B사는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 등에 최대주주를 허위 기재
 - 실제 최대주주가 명의신탁을 이용, 명의상 소유주를 최대주주로 기재
 - ☞ 금융위원회 과징금 20억원 부과

(3) 회계 투명성 부적정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례

: 중국고섬(‘12년, 유가증권시장), 연합과기(‘12년, 유가증권시장), 성용광전투자(‘12년, 코스닥시장), 완리(‘18년, 코스닥시장)



(4) 주요 자회사의 영업정지 : 차이나하오란('18년, 코스닥시장)

-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비중이 50% 이상인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주요 외국자회사)가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중단된 경우 실질심사 사유 해당
 - 전년도 연결 매출 및 당기 순이익 대비 각각 54.3%, 65.0%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자회사의 영업정지 발생
 -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4. 상장외국법인 불성실공시 사례 분석

(1)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관련 불성실공시

유형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지연공시 (공시불이행)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지주회사인 A사는 타법인 주식을 신규 취득하고 자회사로 편입했으나, 규정미숙지로 이를 지연공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연결 재무제표상 연결 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의미 • 따라서 출자금액, 비율 상관없이 연결 대상이 되거나 탈퇴되는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 필요

(2) 자회사 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

유형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지연공시(공시불이행)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사의 자회사는 매출액 대비 30%에 상당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상장회사인 지주 회사에 지연 통보하였고, • 지주회사 역시 지주회사 매출액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판단하여 공시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뒤늦게 오판한 것을 인지하여 지연공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의 자산총액이 10% 이상인 경우 자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공시의무 발생 • 이 경우 지주회사가 아닌 자회사 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판단해야 하며, 공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업무협조체제 구축 필요

(3) 유상증자 결정 철회 관련 불성실공시

유형	유상증자 결정 철회 (공시변복)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B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으나,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자 유상증자를 철회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조달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유상증자는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를 받으면 증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이슈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함

(4) 유형자산 처분 결정 관련 불성실공시

유형	유형자산 처분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D사는 대표이사가 증여한 토지 및 건물을 처분했으나, 동 사항이 공시의무사항 (자산총액 대비 10% 이상)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지연공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외국법인의 경우 공시대리인 또는 공시담당자의 규정 미숙지에 따른 업무 부주의로 인한 불성실공시가 자주 발생 공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규정 숙지 및 공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참고 상장외국법인 공시 유의사항

- 상장법인과 공시대리인 간 상시 공시정보 전달체계 구축
 - ⇒ 상장외국법인과 국내 공시대리인 상호간 규정개정사항, 공시유의사항 등 공시정보 전달체계 미비로 공시 누락, 공시오류가 종종 발생
- 본거지법률과 국내법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 사전 거래소 상담 필요
 - ⇒ 거래소 규정위반, 시장조치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 상담 필수
- 상장외국법인에만 적용되는 공시사항 숙지
 - ⇒ 상장외국법인에만 적용되는 공시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숙지

부록



- 시장조치를 수반하는 공시목록
- 주요 시장조치 재무제표 적용기준
- 전자공시 실무

시장조치를 수반하는 공시목록

※ 우회상장심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상장폐지 관련 공시 진행 시 매매거래정지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시장조치를 수반하는 공시 진행시에는 반드시 거래소와 사전협의 바랍니다.

시장조치	공시명	세부요건
우회상장 심사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 관리종목 내지 환기종목의 경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 관리종목 내지 환기종목의 경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최대주주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 관리종목 내지 환기종목의 경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회사합병결정	-
	주식교환·이전결정	-
	영업양수결정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취득)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 6개월 이내인 경우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 6개월 이내인 경우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유·무상증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 내지 제3자배정 유상증자 • 현물출자를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경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무상증자) 배정비율 20% 이상인 경우 → 매매거래정지
	유상증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 내지 제3자배정 유상증자 • 현물출자를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경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
회생계획 불인가		-
회생절차 폐지결정		-
가장납입 협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가장납입을 통해 상장폐지요건 회피
가장납입 협의 진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가장납입을 통해 상장폐지요건 회피 	



시장조치	공시명	세부요건
	가장납입 사실 확인	• 해당 가장납입을 통해 상장폐지요건 회피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	•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 3%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 5%이상(대기업은 3%이상)
	횡령·배임 사실확인	•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 3%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 5%이상(대기업은 3% 이상)
	횡령·배임 혐의발생	•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 3%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 5%이상(대기업은 3% 이상)
	회계처리기준 중대한 위반 확인	• 사업보고서 정정, 검찰기소,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등을 통해 회계 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 또는 실질심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전·현직 임원 포함)의 검찰고발 • 관리종목 내지 환기종목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중단 • 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취소 내지 반납
	영업양도 결정	• 주된 영업 양도
	생산중단	•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중단
	결산이후 자구 이행을 통한 감사보고서(의견수정) 정정제출	• 자본잠식 요건 해소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 자기자본 50% 이상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 부실징후기업(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3자배정 유상증자	• 부실징후기업(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급금, 가지급금, 금전대여, 증권대여, 출자 결정을 통해 자금 상환 시
	회사분할 결정	• 분할 후 존속될 상장법인 • 존속예정 영업요건 미달: 자기자본 30억원 미만 / 자본잠식 / 이익 일정미만 / 검토의견 적정 • 합병 후 3년내 분할결의(존속예정 법인의 주된 영업이 합병당시 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경우)
	회사분할합병 결정	• 분할합병 후 존속될 상장법인 • 존속예정 영업요건 미달: 자기자본 30억원 미만 / 자본잠식 / 이익 일정미만 / 검토의견 적정
	불성실공시	• 최근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정기(감사)보고서	•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이 감사의견이 변경된 경우로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 • 반기 매출액 7억원,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의 경우 • 일시적·임의적 매출을 통한 상장폐지요건 회피
	2사업연도 연속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존재	-



시장조치	공시명	세부요건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미만 → 2사업연도 연속의 경우 상장적격성실질심사 • 법인세차감전손실 10억원이상 & 자기자본 대비 50% 초과(최근3사업연도중2사업연도) → 2사업연도 연속의 경우 상장적격성실질심사 • 자본잠식률 50%이상 / 자기자본 10억 미만 → 사업연도 연속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 상장폐지	분기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미제출 • 2년간 3회이상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의 경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손상차손(매출채권제외)이 자기자본50% 이상 →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반기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미제출 • 2년간 3회이상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 반기 매출액 7억원,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의 경우 → 상장적격성실질심사 • 손상차손(매출채권제외)이 자기자본 50%이상 →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 감사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법인세차감전손실 10억원이상 & 자기자본 대비 50% 초과 → 2사업연도 연속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자본전액잠식 • 일시적·임의적 매출을 통한 상장폐지요건 회피 → 상장적격성실질심사 • 반기 매출액 7억원,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의 경우 → 상장적격성실질심사 • 손상차손(매출채권제외)이 자기자본 50%이상 → 상장적격성실질심사 • 감사의견 부적정 / 의견거절 / 범위제한한정 → 상장폐지 • 감사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2년 연속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정기주주총회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상 사외이사수 미달 내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 2사업연도 연속의 경우 상장폐지
	사업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미제출 →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시 상장폐지 • 2년간 3회이상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 상법상 사외이사수 미달 내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 2사업연도 연속의 경우 상장폐지 • 소액주주수 200인 미달 /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 주식수의 20% 미달



시장조치	공시명	세부요건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주명부요약표	• 소액주주수 200인 미만 /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 주식수의 20% 미만
	상장폐지결정	-
	상장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결정	-
	파산신청	-
	파산선고	-
	회생절차 개시신청	-
	부도발생	-
	은행거래정지·금지	-
	해산사유발생	-
투자주의 환기종목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의무보유 의무 위반한 경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의무보유 의무 위반한 경우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의무보유 의무 위반한 경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취득) 결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 6월 이내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 결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 6월 이내
	감사보고서 제출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 경우 → 2사업연도 연속의 경우에도 계속 유지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 의견 → 2사업연도 연속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금전 가지급 결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 6개월 이내
	금전대여 결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 6개월 이내
	선금금 지급 결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 6개월 이내
	증권대여 결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 6개월 이내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 (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 자본잠식률 50%이상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 의견거절 / 범위제한한정
	반기보고서	• 자본잠식률 50%이상 / 자기자본 10억 미만 •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 의견거절 / 범위제한한정
	정기(감사)보고서	•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매매거래 정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소송 허가신청	• 최초 확인 시
	주식소각 결정	•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
	주식배당 결정	• 주당 배당비율 20%이상



시장조치	공시명	세부요건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 최초 확인 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초 확인 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최초 확인 시
	감자 결정	•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
	무상증자 결정	• 배정비율 20%이상
	유무상증자 결정	• (무상증자) 배정비율 20%이상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 100억원 이상
	영업정지	• 1개월 이하 일시적 영업정지는 제외
	영업 양수 결정	-
	영업 양도 결정	• 주된 영업의 양도 → 실질심사
	회사 합병 결정	-
	회사 분할 결정	-
	회사 분할합병 결정	-
	주식교환·이전 결정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주식분할 결정	-
	주식병합 결정	-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관리종목 지정 우려 사유 발생 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기소	•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확인 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확인 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확인 시
기타	신주인수권 행사금액의 조정	• 기 상장된 신주인수권증권이 있는 경우
	결산기 변경 안내	-



주요 시장조치 재무제표 적용기준

1 관리종목 및 관리종목 연계 상장폐지 요건

구분	매출액	법인세전계속사업손실	자본잠식/자기자본
관리종목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10억원 이상) 손실 & 최근 사업연도 손실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상장폐지	형식	형식	형식
	실질	실질	실질
	①2년 연속 30억원 미만, ②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한 상기 형식요건 해소	①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 초과 손실(10억원 이상), ②현물출자 과대평가, ③가장납입, ④분할 및 사업부 매각(중단사업 처리)을 통한 상기 형식요건 해소	① 관리종목 지정 후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 억원 미만 ② 현물출자 과대평가, ③ 가장납입을 통한 상기 형식 요건 해소
연결법인 F/S	별도	연결	연결
지주F/S	연결 ^{주1)}	연결 ^{주2)}	연결
비지배기준	-	비지배지분 포함 ^{주3)}	비지배지분 제외
근거 (상장규정)	규정 §3⑦ 규정 §53①1 규정 §56①3가, 파 세칙 §61①1다	규정 §24② 규정 §53①2 규정 §56①3가,하 세칙 §61①1가,나,라	규정 §53①3, 4 규정 §56①3가, 거, 너 세칙 §61①1가, 나

주1) 재무제표 적용기준은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상장규정 §3⑦에 따름

주2) 상장규정 §3⑦에 지주회사 매출액 연결적용을 명시

주3) 상장규정 §53①2, §54①4 를 적용



2 기타 실질심사 재무요건(관리종목 연계 이외)

구분	횡령·배임	주된 영업의 정지	대규모 영업외대손	존속법인의 부실화	이익미실현기업 매출액 미달	
요건	(임원) 자기자본의 3% 또는 10억원 이상 (직원) 자기자본의 5%(대기업 3%) 이상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또는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매출채권 외 채권 발생 손상차손 자기자본 50% 이상	분할 또는 분할 합병후 존속될 영업부문이 다음의 요건 미충족 ①자기자본 30억원 이상, ②자본잠식無 ③법인세전계속 이익 존재 &이익 요건(ROE10%, 당기순이익20억원, 매출액100억원 이상) 충족 ^{주1)}	이익미실현 요건 상장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 매출액 5억미만 & 전년대비 50% 이상 매출감소 발생	
연결법인F/S	별도	별도 ^{주2)}	별도	연결 (매출은 별도) ^{주5)}	별도	
지주F/S	별도 ^{주3)}	연결 ^{주4)}	별도 ^{주3)}	-	-	
비지배 지분	-	-	-	비지배지분 제외 ^{주5)}	-	
근거	상장 규정	규정 §56①3나 세칙 §61①2	규정 §56①3라 세칙 §61①4라	규정 §56①3바 세칙 §61①5	규정 §56①3아 규정 §43①3	규정 §56①3차 규정 §3⑦ 세칙 §61①7
	공시 규정	규정 §6①2라(6) 규정 §3⑥3		규정 §6①2라(8) 규정 §3⑥3		

주1) 벤처기업은 ROE 5%, 당기순이익 10억원, 매출액 50억원 이상

주2) 재무제표 적용기준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상장규정 §3⑦에 따름

주3) 공시규정 §3⑥3에 별도기준 명시를 근거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없는바, 지주회사에도 동일기준 적용

주4) §3⑦에 지주회사 매출액 연결적용을 명시

주5) 재상장의 경우에도 상장규정§3⑦을 따르는 바,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으로 하되 비지배지분은 제외



전자공시 실무

1. 전자공시제도 개요

(1) 전자공시 개념

- 한국거래소에서 개발·운영하는 상장공시제출시스템(<https://filing.krx.co.kr>)을 통하여 상장법인 및 자산운용회사 등 공시제출의무자가 공시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작성 및 제출하고, 일반사용자는 인터넷 등 공시매체를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공시제도

(2) 관련 규정

- 공시규정 제2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 자본시장법 제436조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등이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의 제출과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등으로부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신고서등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아 공시하는 것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전자공시 대상 및 관련 용어 등

-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의 공시제출 메뉴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대상서류는 상장공시제출시스템 (<https://filing.krx.co.kr>) 공시제출 메뉴를 선택하고, 새문서작성 화면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여 전자공시 대상서류를 확인
 -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사항
 - 당일공시, 익일공시, 조회공시, 공정공시, 안내사항, 자율공시, 의결권공시, 상장법인 IR, 영문공시 등
 - 기타 한국거래소 업무관련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에 직접 제출하는 신고서 등

■ 전자문서 접수

- 전자문서 접수시간
 - 인터넷을 통한 직접 제출
 - 평 일 : 07:30 ~ 18: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전자문서 접수처
 - 인터넷을 통한 직접 제출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https://filing.krx.co.kr>)

■ 용어설명

- 전자공시시스템(KIND System)
 - 전자공시시스템(KIND System) : 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
 - 전자문서의 접수·처리·공시 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 <https://kind.krx.co.kr>
 - 상장공시제출시스템 : <https://filing.krx.co.kr>
- 공시대상회사
 - 공시문서작성의 대상이 되는 회사
 - 수시공시인 경우는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의무자가 같으나, 의결권공시인 경우는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의무자가 다름
- 제출의무자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5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 제출인
 -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제출시스템을 위해서는 먼저 거래소에 제출인으로 등록을 해야 함



- 고유코드(거래소 고유번호)
 - 한국거래소(채권시장부 채권상장공시팀)에서 상장법인에 대해 부여하는 고유코드로서 상장공시제출시스템 신규가입시에 사용
- 본문
 - 제출하고자 하는 전자문서 중 첨부서류를 제외한 것으로 규정상 제정된 서식의 기재 사항을 말함
- 첨부문서의 분리제출
 - 공시문서 제출시에 본문과 첨부문서를 나누어 제출하는 것. 단, 첨부문서를 분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했던 본문에 대한 공시가 완료된 후에만 첨부문서 제출 가능

2. 전자공시시스템 사용을 위한 준비사항

(1) 가입신청 전 준비사항

■ 금융감독원 고유코드 발급

- 공시제출인은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금융감독원 고유코드를 발급받아야 함 (<https://filer.fss.or.kr>)

■ 인증서 신청

- 인증서 종류 및 등록가능 인증서

인증서		내용	공시제출용 등록가능여부
법인	범용	법인, 개인사업자, 임의단체가 발급받는 인증서로 은행, 카드 등의 업무에 적용가능한 인증서	사용가능
	용도제한용	법인, 개인사업자, 임의단체가 발급받는 인증서로 특정 용도에서만 사용가능함이 명시된 인증서	사용가능
개인	범용	자연인으로서 개인이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모든 업무에 적용 가능한 인증서	사용불가
	용도제한용	자연인으로서 개인이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특정 용도에서만 사용 가능함이 명시된 인증서	사용불가



- 인증서 발급 및 관리

인증서 발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https://www.yesign.or.kr) - (주)코스콤(https://www.signkorea.com) - 한국무역정보통신(https://www.tradesign.net) - 한국전자인증(https://www.crosscert.com) - 한국정보인증(https://www.signgate.com)
인증서 발급 대행기관	각 시중은행 및 증권사

※ 한국거래소는 인증서 발급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 인증서 등록

- 공시제출시 본 과정을 통해 등록된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
-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법인은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하여 사용되던 기존의 사설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음

- 인증서 재등록

- 인증서가 만료되었거나 폐기되어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할 때 재발급받은 인증서나 다른 인증서로 재등록할 수 있음
- 기 등록된 인증서와는 상관없이 재등록할 수 있으며 인증서 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법인용 공인인증서만 재등록 가능
- 다른 인증서로 재등록할 경우 해당 발급기관에 가서 인증서 폐기를 한 후에 재등록 가능
-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된 인증서는 만료일 이후 발급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재등록해야 바로 사용 가능

- 회사코드 발급

- 회사코드(5자리)는 종목코드 6자리 중 마지막 1자리를 제외한 5자리 코드이며, 이를 위해 표준코드시스템(<https://isin.krx.co.kr>)에서 종목코드 6자리(기관코드)를 부여받아야 함

(2) 가입절차

- 제출인 등록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 것을 의미하며, 등록방법은 상장공시제출시스템(<https://filing.krx.co.kr>) 첫 화면에서 신규상장인 경우는 “신규가입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신청하면 됨
- 거래소 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 승인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E-mail 주소로 결과 통보

공시서식 작성실무안내



해당 자료는 수시공시 사항(거래소 단독 서식에 한함) 중 최근 사업연도 기준 공시빈도가 많은 서식을 대상으로 항목별 기재상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실제 서식 작성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규정 및 법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식〉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1. 판매·공급계약 내용		계약명(계약물품, 수량, 규모 등) 기재
2. 계약내역	조건부 계약여부	해당/미해당
	확정 계약금액	조건과 관련없이 이행되는 금액
	조건부 계약금액	해당 조건이 성취된 후 이행되는 금액
	계약금액 총액(원)	확정 계약금액과 조건부 계약금액 합계
	최근 매출액(원)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계약금액 총액 / 최근 매출액
3. 계약상대방		계약상대방 기재
- 최근 매출액(원)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기준
- 주요사업		계약상대방의 주요 영위사업
-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 등에 해당할 경우 기재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해당/미해당
4. 판매·공급지역		국가명 등 기재
5. 계약기간	시작일	YYYY-MM-DD
	종료일	YYYY-MM-DD
6. 주요 계약조건		①
7. 판매·공급방식	자체생산	해당/미해당
	외주생산	해당/미해당
	기타	
8. 계약(수주)일자		YYYY-MM-DD(계약체결일)
9.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기한	YYYY-MM-DD
	유보사유	비밀유지 등 유보사유 기재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기재사항 외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자세히 기재 ²⁾
※ 관련공시		



[유의사항]

- ① 대금지급 일정, 계약의 효력발생·계약이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허가 사항 등을 자세하게 기재
 - (예) 인허가사항 : 신약허가 신청서 제출 후 24개월이내 제품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지 인허가 획득에 따른 모든 비용지불과 책임의 의무는 OOOO에게 있다.
 - (예) 인허가 완료 후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2년간 최소구매수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당사에 본계약에 대한 해지 권리가 발생하며, 중도해지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다.
 - (예) 발주처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요구 조건 등
- ②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 기재
 - (예) 계약서상 '계약해제·해제'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
 - 토지매입 또는 인허가 지연 등으로 OOOO년 OO월 OO일까지 분양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여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예) 계약서상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변경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
 - 향후 인허가 신청 진행과정에서 사업진행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과정 또는 도급계약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은 향후 진행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 계약서상 '계약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
 - 당사가 지분 OO%를 투자한 계열회사입니다.
 -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당사가 지분 OO%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예) 계약서상 '조건부 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
 -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인·허가 관련 내용 및 일정, 계약금액 중 일부만 매출액에 반영되는 경우 그 이유, 계약금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의 경우 환율 관련 사항, 그 외 계약상 중요한 특약사항 등

〈첨부서식〉

단일판매·공급계약 주요내용 요약서

한국거래소 이사장 귀하

당사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와 관련하여 계약의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 주요내용 -

구 분		주요내용	비고
1. 계약 주요사항			
1-1. 계약목적물			계약서 제0조
1-2. 계약상대방			계약서 제0조
1-3. 계약기간	시작일	0000-00-00	계약서 제0조
	종료일	0000-00-00	
1-4. 계약(수주)일자		0000-00-00	계약서 제0조
1-5. 계약 금액	확정 계약금액(원)		계약서 제0조
	조건부 계약금액(원)		계약서 제0조
	계약금액 총액(원)		계약서 제0조
1-6. 계약조건	대금지급 결제조건/일정/금액		계약서 제0조
	대금지급 관련 특약 여부		계약서 제0조

2. 구속력 낮은 계약사항			
2-1. 본 계약을 근거로 별도의 추가적인 주문(구매요청)이 있어야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내용			계약서 제0조
2-2. 계약상대방이 중간유통업자로서 그 판매실적에 따른 발주량에 따라 상장법인의 매출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내용			계약서 제0조
2-3. 계약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책(면제)하는 명시적 조항(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			계약서 제0조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계약서 제0조
4. 외국어 계약서의 경우 상기 1-5, 1-6, 2-1, 2-2, 2-3번과 관련된 부분의 발췌 국문 번역 제출			제출/미제출

- 요약서는 외국어 계약서(외국어 P/O)*, 계약내용이 복잡한 국문 계약서 등의 경우 제(단순 국문 계약서, P/O 첨부시 미제출 가능)

* 외국어 계약서 or P/O를 첨부하는 경우 주요내용 확인을 위해 국문 번역본 추가 첨부



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서식〉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미국) ^①	대표이사	홍길동
	자본금(원)		회사와 관계	종속회사 ^②
	발행주식총수(주)	③	주요사업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예 / 아니오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③		
	취득금액(원)	④		
	자기자본(원)	⑤		
	자기자본대비(%)			
3. 취득후 소유 주식수 및 지분비율	대기업 여부	해당 / 미해당 ^⑥		
	소유주식수(주)	③		
지분비율(%)				
4. 취득방법		현금 취득 ^⑦		
5. 취득목적		신규사업 진출, 사업 다각화로 성장동력 확보		
6. 취득예정일자		YYYY-MM-DD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취득가액/자산총액(%)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사항없음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예 / 아니오 / 해당사항없음 ^⑧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YYYY-MM-DD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참석 인원 수		
	불참(명)	불참 인원 수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 미해당 ^⑨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예 / 아니오 ^⑩		
- 계약내용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기재사항 외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자세히 기재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⑧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해년도						
전년도						
전전년도						

[유의사항]

- ① 외국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국적을 별도로 기재한다. 예시) ○○○(미국)
- ② “회사와 관계”란은 종속회사, 관계회사, 계열회사, 기타 등을 기재한다.
- ③ 외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 ④ “취득금액”은 당해 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 ⑤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한다.
- ⑥ “대기업여부”에서 대기업이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코스닥 시장상장법인을 의미한다.
- ⑦ “취득방법”은 현금취득,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에 의한 취득,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취득,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취득 등 해당취득방법을 기재한다.
- ⑧ 향후 6개월 이내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 “예”로 기재한다.
- 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당해 신고사항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 ⑩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란에는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처분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 여부 및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 ⑪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발행회사가 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인 경우는 연결 재무제표상의 재무정보를 기재한다.
- ⑫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3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공시서식>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미국) ^①	대표이사	
	자본금(원)		회사와 관계	종속회사 ^②
	발행주식총수(주)	③	주요사업	
2. 처분내역	처분주식수(주)			
	처분금액(원)	④		
	자기자본(원)	⑤		
	자기자본대비(%)	00.00		
	대기업여부	해당 / 미해당 / 코스닥상장법인 ^⑥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비율(%)	00.00		
4. 처분목적	재무구조 개선 or 현금 유동성 확보			
5. 처분예정일자	YYYY-MM-DD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YYYY-MM-DD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참석 인원 수		
	불참(명)	불참 인원 수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 불참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 미해당 ^⑦			
8.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예 / 아니오 ^⑧			
- 계약내용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기재사항 외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자세히 기재			

[유의사항]

- ① 외국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국적을 별도로 기재한다. 예시) ○○○(미국)
- ② “회사와 관계”란은 종속회사, 관계회사, 계열회사, 기타 등을 기재한다.
- ③ 외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 ④ 처분금액은 당해 증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실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재한다.
- ⑤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한다.
- ⑥ “대기업여부”에서 대기업이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코스닥 시장상장법인을 의미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당해 신고사항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100억원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 ⑧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란에는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처분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 여부 및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 ⑨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4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공시서식〉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YYYY-MM-DD	
	종료일	YYYY-MM-DD	
	기준일	YYYY-MM-DD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현금/현물 배당 주주 확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YYYY-MM-DD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참석 인원 수	
	불참(명)	불참 인원 수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불참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기재사항 외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자세히 기재	
		※ 관련공시	

[유의사항]

- ① 정관에서 특정한 일자를 배당기준일로 정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음
- ② 전자증권시행 이후 정관상 명부폐쇄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명부폐쇄 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 생략 가능

5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서식〉

현금·현물배당 결정

1. 배당구분		결산배당 / 중간배당 / 분기배당
2.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배당 / 현금·현물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ex) 자사주, 채권, 옵션 등
3.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소액주주 기준(차등배당의 경우 기타란에 기재) 현물배당은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종류주식	
- 차등배당 여부		해당/미해당
4. 시가배당율(%)	보통주식	- (1주당 배당금) /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는 경우 결정일 직전 매매 거래일로부터 과거 1주일간 산술평균 가격으로 계산
	종류주식	
5. 배당금총액(원)		이익배당한도내 배당금 총액 기재
6. 배당기준일		정관상 기재된 배당기준일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기준일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YYYY-MM-DD
8. 승인가관		주주총회/이사회(정관 근거 확인)
9. 주주총회 예정일자		YYYY-MM-DD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YYYY-MM-DD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참석 인원 수
	불참(명)	불참 인원 수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불참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금총액 산정근거 기재 ex) 총발행주식수 XXXX주에서 자기주식 XXX를 제외 -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 - 배당금은 상법 제4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 후 1개월 내에 지급 예정입니다. - 이사회 승인시: 정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배당을 승인하고 주주총회 보고로 진행될 수 있음을 기재 		
※ 관련공시		



〈단위서식〉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종류주식명	종류주식구분	1주당 배당금(원)	시가배당률(%)	배당금 총액(원)
4우선주	전환우선주	XX	-	XXX,XXX,XXX

-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말하며,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는 경우 해당 단위 서식 기재

6 주식배당 결정

〈공시서식〉

주식배당 결정

1. 1주당 배당주식수 (주)	보통주식	1주당 배당주식수
	종류주식	
2.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배당할 주식수
	종류주식	-
3.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	배당전 발행주식 총수
	종류주식	-
4. 배당기준일		YYYY-MM-DD (정관상 기재된 배당기준일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기준일)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YYYY-MM-DD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참석 인원 수
	불참(명)	불참 인원 수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불참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주식배당 결정의 건은 제X기('2X1.1~'2X.12.31) 정기주주총회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주 처리방법 :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제X기 정기주주총회 전일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 - 배당주식의 총수는 총발행주식 x,xxx,xxx주 중 자기주식 직접취득 및 자기주식신탁계약 등을 통해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xxx,xxx주를 제외한 x,xxx,xxx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수로 향후 자기주식 신탁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단위서식〉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종류주식명	종류주식구분	1주당 배당주식수(주)	배당주식 총수(주)	발행주식 총수(주)
4우선주	전환우선주	0.0x	x,xxx,xxx	xxx,xxx,xxx

-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말하며,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는 경우 해당 단위 서식 기재



7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공시서식〉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1. 재무제표의 종류	연결/개별			
2.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내용 (단위: 원)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증감금액	증감비율(%)
- 매출액	감사전 재무제표 수치 기재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수치 기재	부호(+, -)와 함께 원단위 기재	비율(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버림) or 흑자/적자전환 유무 기재
- 영업이익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당기순이익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미해당			
3. 재무현황(단위 : 원)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 자산총계	감사전 재무제표 수치 기재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수치 기재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4.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관련 주요원인을 상세히 기재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YYYY-MM-DD			
- 사외이사	참석(명)	N		
참석여부	불참(명)	N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불참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기재사항 외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자세히 기재			
	※ 관련공시	①		
<p>당해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함에 있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p>				

[유의사항]

- ① 기공시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공시 정보(공시일자, 제목)를 기재
- ② 공시대상법인이 신규상장법인 및 SPAC 상장법인 등인 경우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고, 상기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당해·직전 수치 기준 명시

구분	전기	당해
신설법인	잠정실적 공정공시(손익구조 변동 공시 x)	
신규상장법인	전기 감사보고서 재무수치	당해 감사전 재무제표 수치
SPAC 합병법인	비상장 존속법인 재무수치	당해 감사전 재무제표 수치
연결→개별 전환 법인	전년도 연결기준 재무수치	당해 개별기준 재무수치
개별→연결 전환 법인	전년도 개별기준 재무수치	당해 연결기준 재무수치



8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감사의견 및 재무요건]^①

구분	당해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1. 연결 감사의견 등		
- 감사의견	당해 감사의견 ^②	직전 감사의견 ^②
-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	(당해 사업연도 기준) 해당/미해당	(직전 사업연도 기준) 해당/미해당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비적정 등 여부	(당해 사업연도 기준) 해당/미해당	(직전 사업연도 기준) 해당/미해당
2.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여부	(당해 사업연도 기준) 기재/미기재	(직전 사업연도 기준) 기재/미기재
3. 연결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당해 감사보고서 기준) XXX,XXX,XXX,XXX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4. 연결 손익내용(원)		
- 매출액	(당해 감사보고서 기준) XXX,XXX,XXX,XXX	
- 영업이익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당기순이익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5.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단위 : 사)	n	n
6. 주요종속회사 수(단위 : 사)	n	n

[유의사항]

- ① 당해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단위서식을 추가하여 수치를 기재하고, 당해 및 직전 사업연도 모두 올해 감사보고서상 수치를 기재. 단, 직전 사업연도에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기재란에 “-” 기재
- ② “적정”, “한정(감사범위의 제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및 직전 사업연도 감사의견을 각각 기재

[개별/별도재무제표 관련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1.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가. 감사의견 등		
- 감사의견	당해 감사의견 ^①	직전 감사의견 ^①
-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	(당해 사업연도 기준) 해당/미해당	(직전 사업연도 기준) 해당/미해당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의견 비적정 등 여부	(당해 사업연도 기준) 해당/미해당	(직전 사업연도 기준) 해당/미해당
나.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여부	(당해 사업연도 기준) 기재/미기재	(직전 사업연도 기준) 기재/미기재
다. 주요 재무내용(단위 : 원)		
- 자산총계	(당해 감사보고서 기준) XXX,XXX,XXX,XXX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영업이익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당기순이익		
2. 회계감사인명	XX회계법인	
3. 감사보고서 수령일자	YYYY-MM-DD	
4.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예/아니오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기재사항 외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자세히 기재 (↓ 예시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입니다. - 외부감사인이 감사종료 후 당해법인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②

[유의사항]

- ① “적정”, “한정(감사범위의 제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및 직전 사업연도 감사의견을 각각 기재
- ② 기공시한 내용(“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변동”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공시 정보(공시일자, 제목)를 기재



[자본잠식률](개별/연결 기준)

(단위 : %, 원)

구분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XX.X (자본잠식이 없으면 “-” 기재)	
자기자본[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비지배지분 제외]	당해 감사보고서 기준 (당해 감사의견 비적정은 “-” 기재)	직전 감사보고서 기준 (직전 감사의견 비적정인 경우, 전전사업연도)
자본금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개별/연결 기준)

(단위 : %, 원)

구분	당해사업연도 (T)	직전사업연도 (T-1)	전전사업연도 (T-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자기자본)×100(%)	XX.X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없으면 “-” 기재)		
	50%초과 / -	50%초과 / -	50%초과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당해 감사보고서 기준 (당해 감사의견 비적정은 “-” 기재)	적정의견의 직전 감사보고서 기준 (직전 감사의견 비적정인 경우 전전)	적정의견의 전전 감사보고서 기준 (전전 감사의견 비적정인 경우 전전전)
리픽싱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실 제외 여부	해당/미해당	해당/미해당	해당/미해당
자기자본[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비지배지분 포함]	당해 감사보고서 기준 (당해 감사의견 비적정은 “-” 기재)	적정의견의 직전 감사보고서 기준 (직전 감사의견 비적정인 경우 전전)	적정의견의 전전 감사보고서 기준 (전전 감사의견 비적정인 경우 전전전)

[최근 5사업연도의 영업손실](개별/별도 기준)

(단위 : 원)

구분	당해사업연도 (T)	직전사업연도 (T-1)	전전사업연도 (T-2)	전전전사업연도 (T-3)	전전전전사업연도 (T-4)
영업손실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별도 재무제표,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당해 감사보고서 기준 (영업손실이 없거나, 당해 감사의견 비적정은 “-” 기재)	적정의견의 직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감사보고서 기준 (해당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그 전의 적정의견을 받은 사업연도 수치를 기재)			

[손상차손비율 50%이상 해당여부](개별/별도 기준)

손상차손비율 50%이상 여부 ※ 손상차손비율(%) = [해당사업연도 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누계액/자기자본]×100	예 / 아니오
--	---------

9 주주총회소집 결의

〈공시서식〉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YYYY-MM-DD ^①
	시간	오전 00:00 or 오후 00:00 ^①
2. 장소		상세주소 ^①
3. 의안 주요내용		②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YYYY-MM-DD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참석 인원 수
	불참(명)	불참 인원 수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 불참
-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기재사항 외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자세히 기재		
※ 관련공시	③	

[유의사항]

- ①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주주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주소) 등을 기재
- ② 의안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일부 안건은 단위서식을 추가하여 세부내역을 추가로 기재. 복수의 임원을 선임하거나, 수인의 후보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각 후보자의 선임 여부를 별개의 의안으로 구성
- ③ 기 공시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공시 제목 및 일자 등 기재

**〈단위서식〉****[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홍길동	YYYY-MM	n년	신규선임/재선임	

- 각 후보자의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주요경력”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홍길동	YYYY-MM	n년	신규선임 /재선임		

- 각 후보자의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주요경력”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
- 다른 회사(비상장법인 포함)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으로 재임 중인 경우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에 모두 기재
-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거 확인서 필수 첨부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 (현직포함)
홍길동	YYYY-MM	n년	신규선임 /재선임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각 후보자의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주요경력”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홍길동	YYYY-MM	n년	신규선임 /재선임	상근/비상근	

- 각 후보자의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주요경력”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사업목적 삭제			

- 정관 개정을 통해 사업목적을 추가, 변경 및 삭제하는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

[집중투표제도입·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	적용
집중투표제 배제	적용	배제

- 도입 및 배제하는 경우에 따라 현행·개정 정관에 다음과 같이 기재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MM-DD	MM-DD

- 정관 개정을 통해 정관상에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또는 이익배당을 위한 기준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세부내역 기재
-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도록 변경(예: 이사회 결의로 정함)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입력
- 어느 한쪽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지 않은 기준일에는 종전 기준일 기재



10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서식〉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보고				
제 XX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 (별도)	- 자산총계	XXX,XXX	- 매출액	XXX,XXX
	- 부채총계	XXX,XXX	- 영업이익	XXX,XXX
	- 자본금	XXX,XXX	- 당기순이익	XXX,XXX
	- 자본총계	XXX,XXX	*주당순이익(원)	기본주당이익 ^①
나. 연결	- 자산총계	XXX,XXX	- 매출액	XXX,XXX
	- 부채총계	XXX,XXX	- 영업이익	XXX,XXX
	- 자본금	XXX,XXX	- 당기순이익	XXX,XXX
	- 자본총계	XXX,XXX	*주당순이익(원)	기본주당이익 ^①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②
			연결	②
2. 배당 결의·보고 ^③				
가. 현금·현물 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현물배당/현금·현물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현물배당인 경우 상세내역 기재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X,XXX
		종류주식	중간·분기배당금	X,XXX
	배당금총액(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X,XXX
		종류주식	중간·분기배당금	X,XXX
시가배당율(%) (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④	
	종류주식		④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⑤	
		종류주식	⑤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내이사 n명, 사외이사 n명, 감사n명 선임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n		
	사외이사총수	n		
	사외이사선임비율(%)	xx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n		
	비상근감사 수	n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n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n		
4. 기타 결의사항		⑥		
5. 주주총회일자		YYYY-MM-DD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기재사항 외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자세히 기재		
※관련공시		⑦		

[유의사항]

- ①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기재(원 단위임에 주의)
- ② “적정”, “한정(감사범위의 제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③ 현금·현물 배당 등이 있는 경우, 배당 관련 상세내역을 기재
- ④ “시가배당률”은 주주명부폐쇄시작일(명부폐쇄를 하지 않는 경우 기준일의 익일) 2매매거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
*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 ⑤ 1주당 배당주식수×100을 기재하고,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Ex. 1주당 배당주식수가 0.05주인 경우, “5” 기재)
- ⑥ 의안 안건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일부 안건은 단위서식을 추가하여 세부내역을 추가로 기재
- ⑦ 기공시한 내용(“주주총회소집결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금·현물배당 결정”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공시 정보(공시일자, 제목)를 기재



〈단위서식〉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홍길동	YYYY-MM	n년	신규선임/재선임	

- 각 후보자의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주요경력”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홍길동	YYYY-MM	n년	신규선임/재선임		

- 각 후보자의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주요경력”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
- 다른 회사(비상장법인 포함)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으로 재임 중인 경우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에 모두 기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홍길동	YYYY-MM	n년	신규선임/재선임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각 후보자의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주요경력”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홍길동	YYYY-MM	n년	신규선임/재선임	상근/비상근	

- 각 후보자의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주요경력”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사업목적 삭제			

- 정관 개정을 통해 사업목적을 추가, 변경 및 삭제하는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

[집중투표제도입·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	적용
집중투표제 배제	적용	배제

- 도입 및 배제하는 경우에 따라 현행·개정 정관에 다음과 같이 기재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MM-DD	MM-DD

- 정관 개정을 통해 정관상에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또는 이익배당을 위한 기준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세부내역 기재
-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도록 변경(예: 이사회 결의로 정함)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입력
- 어느 한쪽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지 않은 기준일에는 종전 기준일 기재



11 대표이사 변경

**〈공시서식〉
대표이사 변경**

1. 변경내용	변경전 대표이사	홍길동
	변경후 대표이사	이순신
2. 변경사유	대표이사 사임에 의한 신규선임	
3. 변경일	YYYY-MM-DD	
4. 이사회결의일	YYYY-MM-DD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홍길동 전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직은 유지함	
※ 관련공시	YYYY.MM.DD 최대주주 변경①	

[유의사항]

- ① 당해 신고내용이 기 공시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공시 정보(공시일자, 제목)를 기재

〈단위서식〉

[변경후 대표이사 전체 내역]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식수(주)	지분비율(%)	비고
이순신	YYYY-MM-DD	최대주주	4,552,100	43%	-

-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선임 이후 당해 법인의 모든 대표이사에 대해 기재

[주요경력]

성명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폐지일 (상장폐지된 법인의 경우)	직위	입사 연월일	퇴사 연월일	비고
이순신	거북선 주식회사	상장 (코스닥)	-	부사장	YYYY-M M- DD	YYYY-M M- DD	-

-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선임 이후 당해 법인의 모든 대표이사에 대해 기재
- 최근 5년간의 경력을 공백기 없이 모두 기재하되, “상장여부”란에는 소속되었던 법인의 신고일 현재시점에서의 증권시장 주권상장여부를 기재
 - ① 신고일 현재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상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해외거래소)”로 기재
 - ② 신고일 현재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가.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었던 사실이 없는 법인: “비상장”으로 기재
 - 나.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된 법인: “상장폐지(코스피/코스닥/코넥스/해외거래소)”로 기재



12 최대주주 변경

〈공시서식〉
최대주주 변경

1. 변경내용	변경전	최대주주등	000 외 0명 ^①		
		소유주식수(주)	0,000,000 ^②		
		소유비율(%)	00.00 ^③		
	변경후	최대주주등	000 외 0명 ^①		
		소유주식수(주)	0,000,000 ^②		
		소유비율(%)	00.00 ^③		
2. 변경사유		주식양수도계약 or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의한 최대주주 변경			
- 실권주 인수로 인한 변경 여부		예 / 아니오 ^④			
- 양수도 주식의 의무보유 여부		예 / 아니오 ^⑤			
3. 지분인수목적		경영참여 or 단순투자			
- 인수자금 조달방법 ⑥	자기자금(원)	0,000,000			
	차입금(원)	0,000,000			
	차입처	000인베스트 ^⑦			
	차입기간	YYYY-MM-DD	~	YYYY-MM-DD	
	담보내역	000 보통주 0,000,000주 ^⑧			
- 인수후 임원 선·해임 계획		YYYY년 MM월 DD일 개최될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신규 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⑨			
4. 변경일자		YYYY-MM-DD ^⑩			
5. 변경확인일자		YYYY-MM-DD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기재사항 외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자세히 기재			
※ 관련공시		YYYY.MM.DD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유의사항]

- ① 최대주주등 : 최대주주 본인명을 기재한다.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000 외 0인 등 특수관계인의 수를 기재한다.
- ② 소유주식수 : 변경전·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수를 각각 기재한다. 이 경우 「상법」제344조의3·제369조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및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포함)은 소유주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③ 소유비율 : 변경전·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수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한다. 이 경우 「상법」 제344조의3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④ 실권주의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예로 기재한다. 이 경우 아래 별도의 단위서식을 작성한다.
- ⑤ 변경 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의무보유 여부를 기재한다. 변경 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의무보유 여부와는 무관하다. ‘예’로 기재시 아래 별도의 단위 서식을 작성하며 의무보유 위반 사유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할 수 있다.
- ⑥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인하여 종전 2대주주등이 추가적인 지분취득 없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3. 인수목적(인수자금 조달방법, 인수후 임원 선·해임 계획 포함)”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 ⑦ 외부차입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의 차입처, 차입기간, 담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담보내역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 회사 고유 자산 등 담보자산을 기재한다.
- ⑧ 주주총회 ‘이사선임의 건’ 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 ⑨ 사유발생일을 기재한다.



13 소송 등의 제기(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서식〉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①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가합12345
2. 원고(신청인)	홍길동		
3. 청구내용	② 1. 채무자 〇〇〇은 채무자 주식회사 〇〇〇에 대하여 제기하는 주주총회에 대한 부존재 확인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〇〇〇 주식회사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YYYY-MM-DD ^③		
7. 확인일자	YYYY-MM-DD ^④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⑤		
	※ 관련공시	YYYY.MM.DD 소송 등의 제기·신청 ^⑥	

[유의사항]

- ① 다음의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 분쟁 소송(가처분 포함) 등이 제기·신청된 사실이 확인된 때 신고. 해당 소송과 관련한 원고 또는 피고에 의한 상소·상소취하를 포함
 - 가.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 나.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
 - 다.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 ② 청구내용: 청구취지 내용을 기재
- ③ 제기·신청일자: 원고(신청인)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소장에서 확인 가능)
- ④ 확인일자: 해당 상장법인이 소장을 송달받는 등 소 제기(신청) 사실을 확인한 일자
- ⑤ 상기사항 외 소송 등의 제기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 기재
- ⑥ 당해 신고내용이 기 공시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공시 정보(공시일자, 제목)를 기재

14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서식〉

소송 등의 판결·결정^①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4가합12345
2. 원고(신청인)	홍길동, 주식회사 000		
3. 판결·결정내용	<p>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동안 영업시간(09:00부터 18:00 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용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이동식 저장매체로 하는 컴퓨터 파일 복사 포함)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②</p> <p>2.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p> <p>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p>		
4. 판결·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YYYY-MM-DD ^③		
7. 확인일자	YYYY-MM-DD ^④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 공시 ^⑤ YYYY.MM.DD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유의사항]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소송(가처분 포함)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때 신고
 - 가.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및 권리의 변경
 - 나.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
 - 다.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의 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분쟁 소송
- ② 판결·결정내용: 판결문 주문을 기재
- ③ 판결·결정일자: 판결·결정문에 표기된 일자
- ④ 확인일자: 해당 상장법인이 판결·결정문을 송달 등을 통해 확인한 일자
- ⑤ 소송 등의 판결·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특히, 해당 소송의 제기·신청 공시를 기재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

발 간 번 호 KRX2024-01

발 행 일 2024년 1월

발 행 처 한국거래소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전 화 02-3774-9000

홈 페이지 <http://www.krx.co.kr>

※ 본 책자는 2023.12월까지의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

2024.1

A Financial Platform adding Value through Innovation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

2024.1

KRX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KRX 한국거래소

| COPYRIGHTS 2023.KRX.All rights Reserved. | www.krx.co.kr |

KRX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